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2021년 12월 31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본 자료는 2021년 기준 관련법령 , 사업시행지침, 보험약관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 목 차 >

1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보험의 이해	1
제1절 위험과 보험	1
제2절 보험의 의의와 원칙	12
제3절 보험의 기능	19
제4절 손해보험의 이해	24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46
제1절 농업의 산업적 특성	46
제2절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52
제3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56
제4절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58
제5절 농업재해보험 법령	60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65
제1절 제도 일반	65
제2절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시설작물 제외) 작물별 특성	89
제3절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115
제4절 계약 관리	179
제4장 가축재해보험 제도	201
제1절 제도 일반	201
제2절 가축재해보험 약관	219
제3절 특별약관	223
제4절 가축재해보험 계약	231

2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	239
제1절 손해평가의 개요	239
제2절 손해평가 체계	242
제3절 현지조사 내용	247
제2장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249
제1절 보장방식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249
제2절 손해평가 기본단계	270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272
제4절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349
제5절 밭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369
제6절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412
제7절 농업수입보장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426
제3장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448
제1절 보상하는 손해	448
제2절 보상하지 않는 손해	454
제3절 손해의 평가	463
제4절 특약의 손해 평가	478
제5절 보험금 지급 및 심사	485

부 록

부록 1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549
1.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550
2.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용어	551
3.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559
부록 2 주요 법령	563
1. 농어업재해보험법	564
2.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573
3.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	591
4.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603
5.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606
부록 3 참고문헌	607

<1권>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보험의 이해

제1절 위험과 보험

1. 일상생활과 위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위험에 직면한다. 개인의 경우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아침 식사를 하고 일터로 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곳곳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아침 인사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든가 “별고 없으십니까?” 등 간밤에 무탈하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자동차로 출근하거나 일터로 가는 도중에는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일터에서는 화재나 기계적 오작동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다. 농업인은 농기계를 몰고 농장으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농장에서는 농기계로 농사일을 하다가 고장이 날 위험은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 일할 때만이 아니라 여행을 갈 때에도 위험은 존재한다. 여행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교통사고의 위험,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소나기를 만날 위험, 맛있게 먹은 점심으로 배탈이나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는지 등 걱정거리가 많다. 한편 가정에서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가장의 실직이나 소득원의 단절, 가족의 사망 등의 위험이 상존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입장에서도 위험은 산재해 있다. 기업의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지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는 직원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지 경쟁업체의 신제품 출시로 판매량(액)이 급감하지는 않을지 자금 회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부도날 위험은 없는지 걱정한다.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대형 건물에서의 화재나 붕괴, 육·해·공에서의 교통사고, 공단에서의 폭발사고, 강력한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이나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 등 많은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국제적으로는 외교상의 마찰, 무역 마찰, 전쟁 등의 위험도 상존한다.

이와 같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일단 위험이 발생하면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과 아울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며, 실제로 언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일상생활이 위축되어서도 안된다. 평소에 정상적인 주의를 가지고 위험에 대비하면서 활동하면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험의 개념 정의 및 분류

가. 위험의 정의

위험(危險)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위험에 대한 정의는 명쾌하게 정의된 것은 없으며, 논자의 관점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일반적으로 위험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데, 이 말을 들여다보면 ①미래의 일이고, ②안 좋은 일이며, ③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석승훈 2020: 14). 그러나 위험이라는 말의 어원에서부터 위험을 사용하는 분야나 관점에 따라서도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흔히 위험을 영어로는 ‘risk’로 번역하지만, 위험과 리스크(risk)는 엄밀하게는 다른 의미라고 하여 영어 발음대로 ‘리스크’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¹⁾. Risk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험에 직면할[손해를 볼, 상처(따위)를 입을] 가능성이나 기회”(possibility or chance of meeting danger, suffering, loss, injury, etc)로 정의되어 있다²⁾. 여기에서는 위험(危險, risk)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렇게 위험에 대해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제시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해보면 손실의 기회(the chance of loss), 손실의 가능성(the possibility of loss), 불확실성(uncertainty),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the dispersion of actual from expected result),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probability of any outcome different from the one expected) 등(최정호 2014; 4)이라고 할 수 있다.

1) 한 사례로 김창기(2020)는 위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리스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범문사. 1988. p.1342.

나. 위험과 관련 개념

위험(risk)과 관련이 깊으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용어가 있다. 손인(Peril)과 위태(hazard)는 사전에서는 ‘위험 또는 모험’으로 해석하여 risk와 혼동하기 쉬운데 유사하지만 다른 의미이므로 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1) 위태

Hazard는 위험 상황 또는 위험한 상태를 말하며, 이를 줄여 ‘위태’(危殆)라고 한다. Hazard를 ‘위험 상황’이나 ‘위험’ 또는 ‘해이’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위태(危殆)로 사용하기로 한다. 위태는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손인

Peril은 손해(loss)의 원인으로서 이를 줄여 손인(損因)이라고 하기도 한다. 화재, 폭발, 지진, 폭풍우,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이 바로 손인이다.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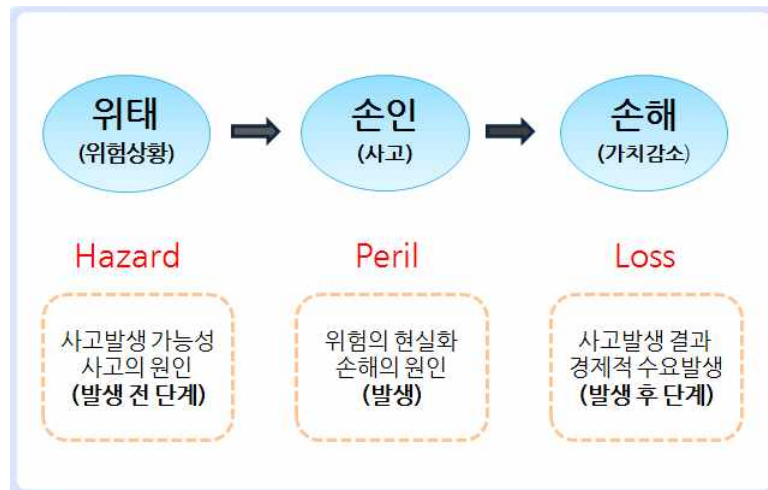
3) 손해(Loss)

위험한 상황(hazard)에서 사고(peril)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경제적·정신적 손해이다. 즉, 손해(損害, loss)는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를 의미한다.

4) 위태, 손인 및 손해의 관계

위태와 손인 및 손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위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단계이고 손인은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말하며, 손해는 위험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그림 1-1. 위태와 손인과 손해의 구분



다. 위험의 분류

위험은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또는 손실의 기회(chance of loss)나 이득의 기회(chance of gain)가 존재하는가,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가,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위험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위험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 보험이라는 사회적 장치를 통해 전가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허연 2000: 23~26).

1)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위험 속성의 측정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objective risk)과 주관적 위험(subjective risk)으로 구분한다. 객관적 위험은 실증자료 등이 있어 확률 또는 표준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말한다. 페퍼(Irving Pfeffer)와 나이트(Frank H. Knight)처럼 측정 가능한 것을 위험, 측정이 불가능한 것을 불확실성으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1).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객관적 위험이다.

2)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위험의 속성에 손실의 기회(chance of loss)만 있는가, 이득의 기회(chance of gain)도 함께 존재하는가에 따라 순수위험(pure risk)과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으로 구분한다. 순수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이다. 즉, 순수위험은 이득의 범위가 0에서 $-\infty$ 이다. 흔히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말한다. 홍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이나 부상 및 질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투기적 위험의 이득의 범위는 $-\infty$ 부터 $+\infty$ 까지 광범위하다.

순수위험에는 ①재산손실위험(property loss risk), ②간접손실위험(indirect loss risk), ③배상책임위험(liability risk) 및 ④인적손실위험(human risk)이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13; 17~20) 재산손실위험은 문자 그대로 각종 재산 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이다. 재산손실위험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가치평가방법이 다른데,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는데 비해 동산은 이동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재산 외에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있는데 이들은 가치평가가 상대적으로 더 어렵다.

간접손실위험은 재산손실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위험을 말한다.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거나 영업활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생산을 못 하고 영업을 할 수 없더라도 고정비용은 지출되어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산 중단이나 영업 중단으로 순소득도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간접손실이라고 한다.

배상책임위험은 민사적으로 타인에게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위험을 말한다. 배상책임위험은 피해자가 야기한 손해의 법적 회복에 필요한 추가 비용의 발생, 기업 활동의 제약 또는 법규의 준수 강제, 벌금 납부, 기업 이미지 손상 등을 동반한다.

인적손실위험은 개인의 사망,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다. 이러한 인적손실위험은 소득의 감소 및 단절, 신체 및 생명의 손실 등을 야기하는데 단기적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것도 있다.

3)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위험의 발생 빈도나 발생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정태적 위험(static risk)과 동태적 위험(dynamic risk)으로 구분한다. 정태적 위험은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사고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을 말한다. 동태적 위험은 시간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가 어려운 위험으로 소비자 기호의 변화,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기술의 변화, 환율 변동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4) 특정적 위험과 기본적 위험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 특정적 위험(specific risk)과 기본적 위험(fundamental risk)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정적 위험은 한정적 위험으로, 기본적 위험은 근원적 위험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정적 위험은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말한다. 주택 화재나 도난, 가족의 사망이나 부상 등은 가족이 나 가까운 친척에 영향을 준다.

반면에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태풍 같은 위험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2020년 초부터 발생하여 아직 해소되지 않는 코로나(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본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5)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 및 면책위험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담보 위험, 비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위험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담보위험(부담보위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된 위험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위험을 제외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면책위험이고 어디까지가 비담보위험에 해당하는가는 명확하지 않아서 자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면책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이다. 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또는 전쟁위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위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위험, 정태적 위험 및 특정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위험과 동태적 위험의 경우 어떤 종류는 설령 손실 규모가 너무 크고 손실 발생의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사회복지나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화하는 위험도 있다.

3. 위험관리의 의의 및 중요성

1) 위험관리의 의의

위험관리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위험관리³⁾는 우연적인 손실이 개인이나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적인 관리 또는 경영활동의 한 형태이다.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목표는 첫째,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위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둘째,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이다.

위험관리의 목적은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 확보, 불안의 해소, 타인에 전가할 수 없는 법적 의무의 이행 그리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하여 안심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이에 비해 사후적 목적은 생존, 활동의 계속, 수익의 안정화, 지속적 성장,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2) 위험관리의 중요성

보험사업은 위험을 대상으로 하고 위험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용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업을 안정적이고 건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잠재하고 있는 각종 위험을 인식, 분석,

3) 최근에는 위험관리보다 광범한 위험처리(危險治理, risk governance)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위험처리는 현대 사회에서 위험이 거대해짐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의 입장에서 위험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국가나 국제적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자각과 함께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석승훈 2020: 50).

평가하여 그러한 위험의 발생 원인과 발생 결과에 대하여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4. 위험관리 방법

위험관리 방법은 발생할 위험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험통제를 통한 대비 방법과 위험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 방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물리적 방법을 의미하며, 후자는 위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는 재무적 방법을 의미한다.

가. 물리적 위험관리 : 위험 통제(risk control)를 통한 대비

1) 위험회피

위험회피(risk avoidance)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 대비 수단으로서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해버리는 방법이다. 자동차 사고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자동차를 타지 않는다면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면 물에 빠지는 것을 무서워해 배를 타지 않는 것 등이 위험회피에 해당한다. 손실 가능성을 회피하면 별다른 위험관리 수단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일 수 있으나 위험회피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위험회피는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상당한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무서워 자동차를 타지 않으면 다리도 아프고 시간이 많이 걸려 매우 비효율적이다.

2) 손실통제

손실통제(loss control)는 손실의 발생 횟수나 규모를 줄이려는 기법, 도구, 또는 전략을 의미한다. 손실통제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간접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손실의 발생을 사전적으로 억제, 예방,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손실통제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구분할 수 있다.

손실예방(loss prevention)은 특정 손실의 발생 가능성 또는 손실 발생의 빈도를 줄이려는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속도제한, 홍수 예방 댐 건설, 음주단속, 방화벽 설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이 손실 예방에 해당한다. 손실 감소(loss reduction)는 스프링클러와 같이 특정 손실의 규모를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자동차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손실 감소는 다시 사전적 손실 감소와 사후적 손실 감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전적 손실 감소는 특정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산, 인명 또는 기타 유가물의 수와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한편 사후적 손실 감소는 손실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비상 대책이나 구조대책, 재활 서비스, 보험금 또는 보상금의 청구 등에 초점을 둔다. 자동차의 에어백과 안전띠 장착도 손실 감소의 예에 해당한다.

3) 위험 요소의 분리

위험 요소의 분리는 잠재적 손실의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위험 분산 원리에 기초하며, 복제(duplication)와 격리(separ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복제는 주요한 설계 도면이나 자료, 컴퓨터 디스크 등을 복사하여 원본이 파손된 경우에도 쉽게 복원하여 재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격리는 손실의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시간적·공간적으로 나누는 방법으로써 위험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거나 재산이나 시설 등을 여러 장소에 나누어 격리함으로써 손실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한다. 위험물질이나 보관물품을 격리 수용하는 방법도 이에 해당한다.

위험 요소의 분리와 반대로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관리 방법도 가능하다.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 단일 제품 생산으로 인한 위험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시설을 분산 설치하여 큰 위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위험의 심도와 빈도를 줄일 수 있다.

4)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risk transfer)란 발생 손실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임대차 계약이나 하도급 또는 하청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5) 위험을 스스로 인수

위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이다. 즉 스스로 위험을 감당(risk taking)하는 것이다. 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만 별다른 대응방법이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나. 재무적 위험관리 : 위험자금 조달(risk financing)을 통한 대비

1) 위험보유

위험보유(risk retention)는 우발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여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는 것으로 각자의 경상계정에서 손실을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준비금이나 기금의 적립, 보험 가입 시 자기책임분 설정, 자가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보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보유하는 소극적 위험보유와 위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서 위험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위험을 보유하는 적극적 위험보유로 구분할 수 있다.

2)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제3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데에는 그만큼 비용이 발생한다.

3)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으로 위험에 대응함으로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위험을 대비하는 방법이다.

보험(insurance)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계약에 의해 보험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위험전가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다. 위험관리 방법의 선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위험관리에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개인이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위험관리를 선택할 방법은 상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어느 하나의 방법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면 그만큼 위험관리가 신축성이 있고 효과도 클 것이다.

위험관리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고려(예측)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상 손실의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를 예측해야 한다. 둘째, 각각의 위험 통제 기법과 위험재무 기법이 위험의 속성(발생 빈도 및 손실 규모)에 미칠 영향과 예정손실 예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각각의 위험관리 기법에 소요될 비용을 예측해야 한다. 위험관리 방법은 다양하여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으며 각자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위험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라 <표 1-1>과 같은 네 가지 위험관리 수단이 고려될 수 있다.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①)는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 자가보험과 같은 보유가 적절하다.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발생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②)에는 외부의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생 빈도가 높지만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③)에는 손실통제를 위주로 한 위험보유 기법이 경제적이다. 손실 발생 빈도가 높고 손실 규모도 큰 경우(④)에는 위험회피가 적절하다.

표 1-1.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관리 방법

손실 횟수(빈도) 손실 규모(심도)	적음(少)	많음(多)
	작음(小)	① 보유 - 자가보험
큼(大)	② 전가 - 보험	④ 위험회피

제2절 보험의 의의와 원칙

1. 보험의 정의와 특성

가. 보험의 정의

보험(保險, insurance)은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제도이다. 보험에 대한 정의도 논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보험의 정의를 종합하면, 보험이란 위험 결합으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시설을 말한다. 즉, 보험은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을 한 곳에 모으는 위험 결합 행위(pooling)를 통해 가계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으로 입게 되는 실제 손실(actual loss)을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손실(average loss)로 대체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험은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조성하고,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수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은 보험이 본질적으로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적어도 경제적, 사회적, 법적 및 수리적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다. (이경룡 2013: 105).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보험의 근본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즉, 위험의 감소(reduction of risk)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험 전가(transfer of risk) 및 위험 결합(pooling or combination of risk)을 이용한다. 보험은 개별적 위험과 집단적 위험을 모두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보험의 속성은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의 합리적 결합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수단 또는 제도는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사회적 관점에서 보험은 사회의 구성원에게 발생한 손실을 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손실의 분담(sharing of loss)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수인으로부터 기금을 형성하는 것이다. 예기치 못한 손실이 사회에 발생하지만 그 손실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는 불확실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 제도로써 보험을 고안한 것이다. 보험의 사회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구는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라고 할 수 있다. 이 문구가 함축하고 있는 뜻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은 소수인으로 성립할 수 없고 다수인이 참여할 때 보험다운 보험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에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돕는 운영원리이다. 끝으로 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각각 개별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법적인 관점에서 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의 보전(indemnity of financial loss)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법적인 관점에서 보험의 이해가 중요한 것은 보험과 다른 제도를 명확히 구별하고 실질적 제도 운용의 원칙과 방법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법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 없이 보험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넷째, 수리적 관점에서 보험은 확률이론과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이다. 즉 보험제도의 실제 운영은 수리적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이해가 수리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나. 보험의 특성

1)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예기치 못한 손실이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의의 손실을 의미하며,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고의적이지 않은 손실은 모두 보상된다는 의미이다.

손실의 집단화(the pooling of fortuitous losses)란 손실을 한데 모음으로써 개별위험을 손실집단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을 집단화하기 전에는 각자가 개별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손실을 집단화함으로써 개별적 위험의 의미는 퇴색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손실은 위험집단의

평균손실로 대체된다. 손실을 집단화할 때 중요한 것은 발생 빈도와 평균손실의 규모 면에서 동종의 손실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어야 한다. 이질적인 손실을 집단화하게 되면 보험료 책정이나 보상 측면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위험 분담

위험의 집단화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험을 서로 나누어 부담하는 위험 분담(risk sharing)이 된다. 위험 분산은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손실을 나누어 분담함으로써 손실로부터의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상호부조 관계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시장거래를 통해 달성된다는 점이 보험의 주요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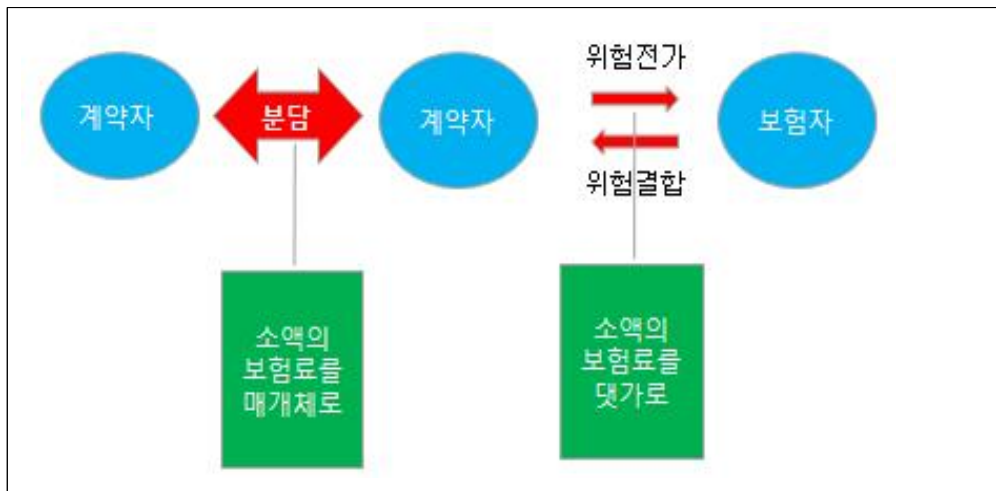
3) 위험 전가

보험은 계약에 의한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이다. 계약을 통해 재정적으로 능력이 취약한 개인이나 조직이 재정적인 능력이 큰 보험자에게 개인의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 빈도는 적지만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4)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실 보상(indemnification)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원상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되며 보험 보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實損補償)은 중요한 보험의 원칙 중 하나로 발생손실만큼만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사기 행위와 같은 도덕적 위태를 줄일 수 있다.

그림 1-2. 위험의 분담, 전가, 결합 및 보험의 관계



5)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the law of large numbers)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이다. 즉, 표본의 수가 늘어날수록 실험 횟수를 보다 많이 거칠수록 결과값은 예측된 값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대수의 법칙 또는 평균의 법칙(the law of averages)이라고 한다. 계약자가 많아질수록 보험자는 보다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

2. 보험의 성립 조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험은 위험관리의 한 방법이다. 위험 분류상으로 순수위험과 객관적 위험이 보험 가능한 위험이라고 했으나, 이들 위험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보험으로 성립할 수 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며, 분야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완적인 방법이나 유사한 조건으로 불완전하지만 보험을 설계할 수는 있다.

가.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동질적 위험이란 발생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을 의미한다.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위험끼리 결합되어야 동일한 보험료(체계)가 적용되어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용 승용차와 영업용 택시에게 동일한 보험료 체계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운행 거리가 짧고 운행 시간도 적은 자가용 승용차가 불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주택과 고층 아파트 및 고층 건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손실 예측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많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약자가 많을수록 좋다.

또한 이러한 동질적 위험이 각각 독립적이어야 한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손실 발생이 다른 손실 발생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미터 간격으로 건설된 공장건물의 경우 한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접한 공장건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개별 위험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위험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동질적 위험 특성을 너무 엄격히 적용하다가는 개별위험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별위험에 대한 속성 파악과 보험료 산정에 지나친 비용을 소비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위험 속성이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하다면 동질적 위험으로 보고 보험을 실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간다.

나. 손실의 우연적 발생

보험이 가능하려면 손실이 인위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누구도 예기치 못하도록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계약자의 고의나 사기 의도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만이 보험화가 가능하다. 사고 발생여부가 고의성이 있는지 모호할 경우 보험자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우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다. 한정적 손실

보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및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피해 원인과 피해 장소 및 범위, 그리고 피해 규모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면 정확한 손실 예측이 어렵고 이에 따라 보험료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인수하기 어렵다. 급속하게 퍼지는 전염병이나 질병의 경우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또 후유증 유무 및 정도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손실을 한정 지을 수 없다. 즉, 전염병이나 대규모로 발생하는 질병은 보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 전염병이나 질병의 경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하에 보험화하는 경우가 있다.

라. 비재난적 손실

손실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한다. 손실이 재난적일 만큼 막대하다면 보험자가 감당하기 어려워 파산하게 되고 결국 대다수 계약자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보험자가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만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해야 한다.

재난적 규모의 손실 발생은 천재지변의 경우에 자주 발생한다. 지진이나 쓰나미 등이 이러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천재지변만이 아닌 9·11사건과 같이 인위적인 사고도 재난 규모로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재난적 손실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보험사업을 추진하거나 민영보험사를 통해 운영하기도 한다.

마.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보험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손실 발생 가능성, 즉 손실발생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장차 발생할 손실의 빈도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보험료 계산이 어렵다. 정확하지 않은 예측을 토대로 보험을 설계할 경우 보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며, 결국 보험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

바.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확률적으로 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더라도 즉, 계산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산출되는 보험료 수준이 너무 높아 보험 가입대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어 보험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보험이 가능한 위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이 발생하는 빈도와 손실 규모로 인한 손실이 종적(시간적) 및 횡적(계약자 간)으로 분산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제3절 보험의 기능

위험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보험은 보험 가입 당사자는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다양한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의 역기능(비용 발생)도 발생한다.

1. 보험의 순기능

가. 손실 회복

보험의 일차적 기능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거나 최소화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시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클 경우 개인이나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도 하는데 보험금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보험금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 단기간에 원상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나. 불안 감소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불안감을 해소시켜준다. 개인이나 기업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불확실한 위험에 보험으로 대비함으로써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가·사회적으로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험을 통해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다수의 개인과 기업이 안정되면 사회도 안정되고 국가도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 신용력 증대

보험은 계약자의 신용력을 높여준다. 보험은 예기치 않은 대규모 위험이 닥치더라도 일정 수준까지는 복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약자의 신용력은 높아진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할 경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정한 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보험을 통해 계약자의 일정 수준의 신용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라. 투자 자원 마련

계약자에게는 소액에 불과할지라도 다수의 계약자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모이면 거액의 자금이 형성된다. 이러한 자금을 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려 보험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원활하게 필요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

마.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개인이나 기업 등의 경제주체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한다. 각 경제주체는 투자할 때 각각의 자원 투입에 따른 기대수익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설령 기대수익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도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면 투자를 주저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보험을 통해 예상되는 손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이다.

바. 안전(위험 대비) 의식 고양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미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위험 발생에 스스로 대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한다. 보험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거나 보험 가입 중이더라도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나 장치를 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것도 위험에 대한 대비를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안전 의식이 고양되면 보험 운영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험의 역기능

가. 사업비용의 발생

보험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비용이 초래된다. 이러한 비용(지출)은 보험이 없다면 다른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사회 전체로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비용 항목은 보험자 직원의 인건비를 비롯해 보험 판매 수수료, 건물 임차료 및 유지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업이윤 등이다. 이 외에 광고비 및 판촉비도 적지 않다. 보험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이러한 비용은 커지게 된다.

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방만하게 하면 계약자의 위험 대비 수단으로써의 기능은 저하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지 않게 보험자가 난립한다면 국가·사회적으로도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나. 보험사기의 증가

보험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인데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더욱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받는 보험사기도 종종 발생한다. 다수가 결합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건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 보험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가 증가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어 보험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보험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다.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보험에 가입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크기를 부풀려 보험금 청구 규모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충돌로 인한 고장이나 부품만이 아니라 사고 전에 있던 결함이 있는 부분까지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경미한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과잉

진료를 하거나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를 늘리기 위하여 퇴원을 미루어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과잉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보험금 과잉 청구도 보험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킨다.

3.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

보험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최대한 노력하여 계약자의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가 발생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위태(moral hazard)가 발생한다.

가. 역선택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험료를 책정·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파악하여 보험을 판매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게 결과가 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역선택이란 경제학 용어는 중고차 시장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211).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중고차의 품질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시장에 나온 중고차가 좋은 차(peach car)인지 외형상으로는 멀쩡하지만 고장이 잦은 엉터리 차(lemon car)인지 간단히 파악할 수 없다. 좋은 차와 엉터리 차를 구별하지 못하면 중고차 가격은 두 차 가격의 중간이나 평균값으로 결정될 것이다. 이와 같이 좋은 차와 나쁜 차를 구별하지 못하면 나쁜 차의 주인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구입자는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가에 차를 팔려고 한다. 반대로 좋은 차 주인은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자신의 차를 평가절하하여 평균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팔기를 꺼릴 것이다.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으로 역선택 문제가 팽배해지면 중고차 시장은 엉터리 차가 주로 매물로 나오게 되고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차의 품질은 점점 떨어질 것이다. 이를 소비자들이 알게 되면 찾아오는 소비자가 점점 줄게 되고 결국 그 중고차 시장은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보험시장에서도 이러한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나. 도덕적 위태

도덕적 위태는 어느 한 쪽이 보험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보험에 가입한 후부터 평소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심한 경우 방치하거나 손실의 규모를 키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비교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는 실손을 보상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보험가액에 비해 보험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이익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위태를 야기한 당사자에게 귀착되는 반면, 피해는 보험자와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들에 돌아가 결국 보험사업의 정상적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황희대 2010: 334~335).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데 비해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한다는 점이다.

‘보험은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와의 싸움’이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보험이 있는 곳에는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가 상존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건실한 보험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손해보험의 이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며, 보험 내용이나 체계도 각양각색이다. 다양하고 제각각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재물과 관련된 손해보험과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생명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험목적물에 따라 내용은 달라지지만 보험체계는 유사하다. 다만, 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보험은 일반손해보험과 다른 측면이 많다. 그렇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과 같은 정책보험도 기본적으로는 손해보험의 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보험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1.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가. 손해보험의 의의

손해보험에 대한 정의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어 보험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다양한 가운데 공통적인 것을 모아 정리해 보면,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가 생기면 생긴 만큼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험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상법과 보험업법인데 상법에서는 손해보험에 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보험업법에서는 제2조(정의)에서 ‘보험상품’을 정의하면서 ‘손해보험상품’을 정의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손해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손해보험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손해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으며, 생명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손해보험은 재산보험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명보험 중 생명 침해를 제외한 신체에 관한 보험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김창기 2020: 217).

나. 손해보험의 원리

1) 위험의 분담

1만 명이 1억 원짜리(땅값을 뺀 건물값만)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채씩 화재가 나서 소실되고 만다. 불이 난 그 집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 그런데 1만 명 중 누가 그 불행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다. 이럴 때 한 집 당 1만 원씩 부담해서 1억 원을 모아 두었다가 불이 난 집에 건네주기로 하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하여 큰 위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보험이다.

이와 같이 손해보험은 계약자가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위험을 분담하게 되는데 독일의 보험학자 「마네즈」는 보험을 일컬어 「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서로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2) 위험 대량의 원칙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적용되는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이 위험 대량의 원칙이다.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중에 그 위험집단에서 발생할 사고의 확률과 함께 사고에 의해 발생할 손해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 대량의 원칙은 보험에 있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잘 적용되어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위험이 대량으로 모여서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험계약은 단체성의 특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100명이 모여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그 100명이 우연히도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면 보험자는 곧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고스란히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고 발생 확률이 보다 잘 적용되어 안정적인 보험경영이 가능해진다.

3)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給付 反對給付 均等의 原則)에서 ‘급부(給付)’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며 ‘반대급부(反對給付)’는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한다. 즉 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에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를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 한다.

예를 들어 1만 명이 1억 원짜리(땅값을 빼 건물값만)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1년에 한 채씩 화재가 나서 소실된다면 1만 원씩 내서 1억 원을 모아 두었다가 불이 난 집에 건네주기로 하면 되는데 이때 보험료 1만 원은 보험금 1억 원에 사고발생확률 1만분의 1을 곱한 금액과 같게 된다.

$$\text{보험료} = \text{지급보험금} \times \text{사고 발생 확률}$$

4)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수지상등의 원칙(收支相等의 原則)인데 여기에서 ‘수(收)’는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보험료)을 말하며 ‘지(支)’는 지출(보험금)을 의미한다. 즉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보험료 총액과 사고 시 지급하는 지급보험금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위에서 예를 든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1인당 1만 원씩 1만 명에게 받은 총 보험료는 1억 원이 되고 이는 곧 지급하는 총 보험금 1억 원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앞의 수입부분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자금운용수익, 이자 및 기타 수입 등이 포함되며, 지출부분에는 지급보험금 외에 인건비, 사업 운영비, 광고비 등 다양한 지출항목이 포함된다.

수지상등의 원칙이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보험 수리적 원칙인데 반하여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수입 보험료 합계} &= \text{지출 보험금의 합계} \\ \text{계약자 수} \times \text{보험료} &= \text{사고 발생 건수} \times \text{평균 지급보험금} \end{aligned}$$

5) 이득금지의 원칙

손해보험의 가입 목적은 손해의 보상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받아야 하며,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직전의 경제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보험에 의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이 된다. 이럴 경우 그 이득을 얻기 위해 인위적인 사고를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어 「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손해보험의 대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적 규제로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2.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와 원칙

가. 손해보험 계약의 의의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에 직접 생긴 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상법(제638조)에서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보험계약의 의의를 정의하고 있다.

나. 손해보험 계약의 법적 특성

1) 불요식 낙성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특별히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이라는 당사자 쌍방 간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여 불요식·낙성계약(諾性契約)이다.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요식(不要式)이며,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낙성(諾性)이다.

2) 유상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계약자의 보험료 지급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계약(有償契約)이다.

3) 쌍무계약성

보험자인 손해보험회사의 손해보상 의무와 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대가(對價) 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雙務契約)이다.

4) 상행위성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위이며(상법 제46조) 영업행위이다.

5) 부합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동질(同質)의 많은 계약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계약조건을 미리 정형화(定型化)하고 있어 부합계약(附合契約)에 속한다. 부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만들어 놓은 계약조건에 상대방 당사자는 그대로 따르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으로 인해 약관이 존재하게 된다.

6) 최고 선의성

손해보험 계약에 있어 보험자는 사고의 발생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위태의 야기 가능성이 큰 계약이다. 따라서 선의성실의 원칙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다.

7) 계속계약성

손해보험 계약은 한 때 한 번만의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에 걸쳐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 관계를 존속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다. 보험계약의 법적 원칙

1) 실손보상의 원칙

실손보상(實損補償)의 원칙(principle of indemnity)은 문자 그대로 실제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의 기본인 이득금지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험으로 손해를 복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득까지 보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가격이 2,000만 원인 자동차가 사고로 300만 원의 물적 손해를 입었다면 300만 원까지만 보험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실손보상 원칙의 목적의 하나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피보험자의 재산인 자동차를 손해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다.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이득을 얻을 수는 없다. 또 다른 목적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손실(사고)이 발생하면 보험으로부터 보상받는데 원상회복을 넘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손보상 원칙의 예외로는 기평가계약, 대체비용보험 및 생명보험이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18)

가) 기평가계약(valued policy)

전손(全損)이 발생한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이다. 골동품, 미술품 및 가보 등과 같이 손실 발생 시점에서 손실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와 보험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

나) 대체비용보험(replacement cost insurance)

손실지급액을 결정할 때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이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새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물건이나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경우 대체비용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해 다

타버린 주택의 지붕은 새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감가상각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 생명보험(life insurance)

생명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망이나 부상의 경우 실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방법이 없어 인간의 생명에 감가상각의 개념을 적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의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다.

2) 보험자대위의 원칙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보험관계 밖에서 어떻게 피보험자에게 영향을 주는가는 보험계약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아직 잔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보험자가 이에 개의치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오히려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라 한다. 상법은 제681조에서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즉 목적물대위 또는 잔존물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제682조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즉 청구권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가) 목적물대위(잔존물대위)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제681조), 이것을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라 한다.

보험 목적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손해액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것을 보상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계산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들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피보험물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것을 희망하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한 가치까지 피보험자에게 남겨 준다면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잔존물을 도외시하고 전손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그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이다.

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 한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보험에 의해 보상될 피보험이익의 결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한다면 피보험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권리의 실현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소송의 졸렬 또는 제3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또 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서도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행사하도록 한다면 피보험자는 이중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래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의 원칙(principle of subrogation)은 3가지 목적이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23). 첫째, 피보험자가 동일한 손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제3자와 보험자로부터 이중보상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둘째,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을 묻는 효과가 있다. 셋째, 보험자대위권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손실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즉, 보험자는 대위권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과실이 있는 제3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의 책임 없는 손실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3) 피보험이익의 원칙

피보험이익은 계약자가 보험담보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즉, 계약자가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때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다. 피보험이익이 존재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No insurable interest, no insurance)”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낸다.

피보험이익의 원칙(principle of insurable interest)은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20).

첫째, 피보험이익은 도박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피보험이익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전혀 관련이 없는 주택이나 제3자에게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화재가 발생하거나 일찍 사망하기를 바라는 도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피보험이익은 도덕적 위태를 감소시킨다. 보험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이 명확한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계약자는 없을 것이다.

셋째, 피보험이익은 결국 계약자의 손실 규모와 같으므로 손실의 크기를 측정하게 해 준다. 즉, 보험자는 보험사고 시 계약자의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데, 보상금액의 크기는 피보험이익의 가격(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최대선의의 원칙

통상적인 상거래(계약)는 서로 거래할 의사가 있으면 성사되는 것이지 자신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경우는 다르다. 보험은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미래지향적이며 우연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쌍방은 모든 사실에 대해 정직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즉, 보험계약 시에 계약당사자에게 일반 계약에서보다는 매우 높은 정직성과 선의 또는 신의성실이 요구되는데 이를 최대선의(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이라고 한다. 보험계약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계약 체결 후에도 위험의 증가, 위험의 변경 금지의무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대선의의 원칙은 고지, 은폐 및 담보 등의 원리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보험경영연구회 2021: 124).

고지(또는 진술)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사실 및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진술된 내용을 토대로 계약의 가부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진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보험자는 제대로 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없게 되어 보험자의 안정적인 경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자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보험자가 계약 전에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계약조건으로 체결되었을 정도라면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해당해 보험자의 선택에 의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계약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한 진술에서 고의가 아닌 실수 또는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수도 있으나 효과는 허위진술과 동일하다. 따라서 계약자는 보험계약 시에는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보험자에게 진술해야 한다.

상법(제651조)에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은폐(의식적 불고지)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시에 보험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숨기는 것을 말하며, 법적인 효과는 기본적으로 고지의무 위반과 동일하나 보험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대한 사실은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담보(보증)는 보험계약의 일부로서 피보험자가 진술한 사실이나 약속을 의미한다. 담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다. 담보의 내용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실의 존재, 특정한 조건의 이행, 보험목적물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상황의 존재 등이 될 수 있다. 담보는 고지(진술)와 달리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약속한 보험계약상의 조건이기 때문에 위반하게 되면 중요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담보는 사용되는 형태에 따라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약속한 묵시담보(implied warranty)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속한 명시담보(expressed warranty)로 구분된다. 또한 보증 내용의 특성에 따라 약속보증(promissory warranty)과 긍정보증(affirmative warranty)으로 구분된다(이경룡 2013: 185). 약속보증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전 기간을 통해 이행할 것을 약속한 조건을 의미하며, 긍정보증은 보험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서 어떤 특정의 사실 또는 조건이 진실이거나 이행되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3. 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쌍방이 최대한의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보험자의 의무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보험자의 의무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만일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손해사정 과정을 추진하여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자의 의무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보험계약 시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두 번째는 만일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손해사정 과정에서도 전문적인 분야라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일방적으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의

과정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손해사정 결과를 수
 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사정 과정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면 보험상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져 다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보험자는 보험경영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보험경영은 다수
 의 선의의 계약자들이 기여한 보험료를 밑천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
 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보험자는 소비자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

보험계약은 쌍방의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 계약과 관련한 정
 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보험자는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정보(내용)를 공개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관련한 정보는 계약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 등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1) 고지의무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진실을 알려야 할 보험 계약상의 의무를 말한다(한낙현·김흥기 2008: 96).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자가 강제적으로 그 수행을 강요하
 거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고지는 법률상으로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등 어느 것도 가능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현실적으로는 표준약관에 의하여 청약서에 기재하는
 서면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고지해야 할 시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이다.

2)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에는 고지의무 외에 위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발생 요건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이어야 한다.

나) 위험 유지 의무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는 스스로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증가시키거나 제3자에 의해 증가시키도록 하여서는 안 될 의무를 지고 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고지의무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같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보험자에 대한 진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3) 손해 방지 경감 의무

가)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의의

우리나라 상법은 손해보험 계약에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상법 제680조)하고 있는데, 이를 손해 방지 경감 의무라 한다.

나) 인정 이유

손해 방지 경감 의무는 보험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보험자나 보험단체 및 공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인정된다. 또 보험사고의 우연성 측면에서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늘어난 손해는 우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내용

(1)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범위

(가)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상법상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지는 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상법 제 680조). 또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과 지배인도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진다.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 각자 이 의무를 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의무는 손해보험에서만 발생하는 의무로서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존속기간

① 발생 시점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손해 방지 경감 의무에 대하여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언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또는 ‘보험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이라고 규정하여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시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안 때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② 사고 자체의 예방이 포함되는지 여부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기간은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존속기간이 아니며, 사고 자체를 막아야 하는 것은 이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소멸 시점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부담하는 기간은 손해방지 가능성이 있는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소멸 시점은 손해방지의 가능성이 소멸한 때이다.

(다)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방법과 노력의 정도

① 방법과 노력의 정도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방법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 상황에서 손해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방법이면 된다.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은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이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손해 방지 경감 의무의 방법과 노력의 정도는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한다.

②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통보를 받은 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시한 경우, 계약자 등이 이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보험자가 직접 손해 방지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자 등이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 방지 경감 의무가 보험단체와 공익 보호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 방지 경감 의무를 해태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법상 별다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개별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중과실 또는 고의의 경우에만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늘어난 손해)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손해 방지 경감 의무 위반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로 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3) 손해 방지 경감 비용의 보상

(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보상

손해방지는 보험단체나 공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액이 감소되므로 보험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계약자 등이 부담하였던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였다(상법 제680조).

여기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란 비용지출 결과 실질적으로 손해의 경감이 있었던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그 상황에서 손해경감 목적을 가지고 한 타당한 행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된다고 본다.

(나) 일부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방지 비용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잔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한다.

4.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

가. 보험증권

1) 보험증권의 의미

보험증권(insurance policy)은 보험계약 체결에서 그 계약이 성립되었음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기명, 날인 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권 오 2011; 232).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증권의 특성

보험증권은 보험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교부한다.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단지 증거증권으로서 배서나 인도에 의해 양도된다.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사전에 작성해 놓고 보험계약 체결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실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효력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3) 보험증권의 내용

보험증권의 내용은 ①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작성되는 표지의 계약자 성명과 주소, 피보험자의 성명과 주소, 보험에 붙여진 목적물, 보험계약 기간, 보험금액, 보험료 및 보험계약 체결 일자 등이 들어가는 부분, ②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의 계약 내용이 인쇄된 보통보험약관, ③어떠한 특별한 조건을 더 부가하거나 삭제할 때 쓰이는 특별보험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가) 요식증권성

보험증권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요식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보험경영연구회 2021: 134). 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보험의 목적, ②보험사고의 성질, ③보험금액, ④보험료와 그 지급 방법, ⑤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⑥무효와 실권(失權)의 사유, ⑦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보험계약의 연월일, ⑨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 연월일 등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상법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도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증거증권성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證據) 증권이다. 계약자가 이의 없이 보험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기재가 보험관계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해 사실상의 추정력을 갖게 되지만, 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다.

다) 면책증권성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 지급에 있어 제시자의 자격과 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는 면책(免責)증권이다. 그 결과 보험자는 보험증권을 제시한 사람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보험금 등을 지급한 때에는 그가 비록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한다.

라) 상환증권성

실무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증권과 상환(相換)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환증권의 성격을 갖는다.

마) 유가증권성

일부 종류 보험의 경우에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의 성격을 지닌다. 법률상 유가증권은 기명식에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시식(指示式)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될 수도 있다. 실제로 운송보험, 적하보험 등에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이 이용되고 있다. 적하보험과 같이 보험목적물이 운송물일 경우 보험증권이 선하 증권과 같은 유통증권과 같이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지시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명보험과 화재보험 등과 같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면 도덕적 위태와 같은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운송보험, 적하보험에서와 같이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증권에 기재되어 유통되는 경우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을 인정하여 배서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보험약관

1) 보험약관의 의미

보험약관은 보험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간에 권리 의무를 규정하여 약속하여 놓은 것이다. 보험약관에는 계약의 무효,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 적혀 있다.

보험약관은 통상 표준화하여 사용되고 있다. 보험이라는 금융서비스의 성격상

다수의 계약자를 상대로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그 내용을 정형화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 및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많은 불편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통일성이 결여된 경우 약관 조항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법적 시비가 발생하고, 일반 소비자가 일일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2) 보험약관의 유형

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과 특별보험약관으로 구분된다.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반적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형적으로 정하여 놓은 약관이다. 보통보험약관을 보충, 변경 또는 배제하기 위한 보험약관을 특별보험약관이라고 한다. 특별보험약관이 보통보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거나 특약조항을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가능케 할 수는 없다.

3) 보통보험약관의 효력

가) 보험약관의 구속력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그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보험약관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통보험약관은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약관에 따를 의사의 유무를 불문하고 약관의 내용이 합리적인 한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나) 허가를 받지 않는 보험약관의 사법상의 효력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법상의 효력의 문제는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약관을 사용한 보험자가 보험업법상의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익에 어긋나는 약관을 사용한 때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보통보험약관의 해석

가) 기본 원칙

당사자의 개별적인 해석보다는 법률의 일반 해석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의 단체성·기술성을 고려하여 각 규정의 뜻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한낙현·김흥기 2008: 95).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성질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보험 약관상의 인쇄 조항(printed)과 수기 조항(hand written)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수기 조항이 우선한다. 당사자가 사용한 용어의 표현이 모호하지 아니한 평이하고 통상적인 일반적인 뜻(plain, ordinary, popular : POP)을 받아들이고 이행되는 용례에 따라 풀이해야 한다.

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em rule)

보험약관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즉, 하나의 규정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뜻으로 풀이되는 경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불리하게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풀이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5. 재보험

가. 재보험의 의의와 특성

1) 재보험의 의의

재보험이란 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한 보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험기업 경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산업발전과 함께 위험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보험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즉,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또다른 보험자에게 분산함으로써 보험자 간에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따라서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간에 위험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2) 재보험계약의 독립성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 계약은 원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661조). 이것은 원보험 계약과 재보험 계약이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임을 명시한 것이다.

3) 재보험 계약의 성질

재보험 계약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손해보험 계약에 속한다. 따라서 원보험이 손해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손해보험이 되지만 원보험이 인보험인 계약의 재보험은 당연히 인보험이 되지 않고 손해보험이 된다. 그러나 재보험은 보험업법상 예외 규정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도 인보험의 재보험을 겸영할 수 있다.

4) 상법상 책임보험 관련 규정의 준용

상법상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상법 제4편 제2장 제5절)은 재보험 계약에 준용된다(상법 제726조).

나. 재보험의 기능

1) 위험 분산

재보험의 기능은 위험 분산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세분하면 양적 분산, 질적 분산, 장소 분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양적 분산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산시킴으로써 한 보험자로서는 부담할 수 없는 커다란 위험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험의 양적 분산 기능이다.

나) 질적 분산

원보험자가 특히 위험률이 높은 보험 종목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재보험으로 분산시켜 원보험자의 재정적 곤란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위험의 질적 분산 기능이다.

다) 장소적 분산

원보험자가 장소적으로 편재한 다수의 위험을 인수한 경우, 이를 공간적으로 분산 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위험의 장소적 분산 기능이다.

2)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capacity)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 강화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capacity)의 확대로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원보험자는 재보험을 통하여 재보험이 없는 경우 인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보험을 인수(대규모 리스크에 대한 인수 능력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경영의 안정화

실적의 안정화 및 대형 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등 원보험사업의 경영 안정성(재난적 손실로부터 원보험사업자 보호)을 꾀할 수 있다. 즉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및 대형 재해의 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영업실적의 급격한 변동은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게 된다. 재보험은 이러한 각종 대형 위험 등 거액의 위험으로부터 실적의 안정화를 지켜주므로 보험자의 경영 안정성에 큰 도움을 준다.

4) 신규 보험상품의 개발 촉진

재보험은 신규 보험상품의 개발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한다. 원보험자가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손해를 추정 등이 불안하여 신상품 판매 후 전액 보유하기에는 불안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정확한 경험통계가 작성되는 수년 동안 재보험자가 재보험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원보험자의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제2장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제1절 농업의 산업적 특성

1. 농업과 자연의 불가분성

우리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크건 작건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인간이 생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활동(산업)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은 자연과의 관련성 및 영향의 정도가 타 산업과는 크게 다르다. 농업은 물(수분), 불(온도, 빛) 및 흙(토양) 등 자연조건의 상태에 따라 성공과 실패, 풍흉이 달라지는 산업적 특성 때문이다.

농업은 생물인 농작물을 기르는 산업이기 때문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물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된다. 또한 작물과 시기에 따라 필요한 양이 달라 물(수분)은 제때에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즉 비가 많이 내리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농작물 자체가 잠기거나 유실되어 생산량의 감소를 초래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이 호우(豪雨)이며, 비가 장기간 내리는 것이 장마이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에 속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봄·가을에는 적게 내리는 계절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철 강우는 적어지는가 하면 가을장마가 자주 발생하기도 한다. 반대로 물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농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농작물이 고사(枯死)하기도 한다. 비가 장기간 오지 않아 물 부족이 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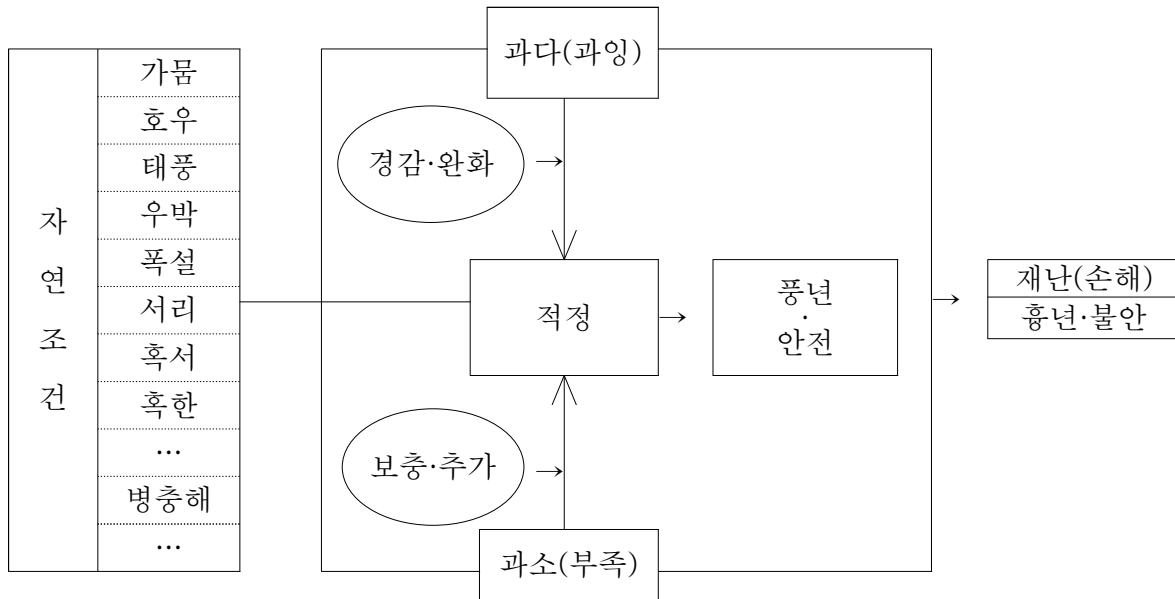
물 부족이나 과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저수지 설치나 농업용 또는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물을 최대한 가두어 홍수 조절 기능을 하고 가뭄 때에는 농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1960~70년대에는 가뭄과 홍수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했으나 전국적으로 저수지 설치와 개·보수 및 다목적 댐 건설 등으로 과거에 비해 가뭄과 홍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가뭄이나 호우가 장기간 대규모로 발생하면 인간이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재해로 발전한다.

농업에서 온도(빛)도 필수이다. 과중부터 생육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어 수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온도와 빛이 적당하게 주어져야 한다. 이들이 부족하게 되면 생육이 더디거나 불완전하여 결실이 불충분하므로 수확량이 적어지고 너무 많으면 웃자라거나 시들어 버려 결실을 맺지 못한다. 농작물이 생육에 필요한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때문에 열과 빛을 동시에 공급하는 햇빛(일조시간)은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온이 지나치게 낮으면(이상저온) 생육을 멈추거나 심한 경우 동해(凍害)를 입게 된다. 근래 들어 사과와 배 등 과수의 경우 꽃 필 무렵에 이상저온이 며칠간 이어져 꽃이 어는 피해가 자주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화기뿐만 아니라 작물 생육기간에 이상저온이 발생하면 생장 및 결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기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도 작물 생장에 지장(고온 장애)을 초래한다. 기온이 지나치게 높으면 생장을 멈출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시들거나 고사(枯死)하기도 한다. 몇 년 전 여름철 고온이 장기간 지속되어 사과 등 과일이 햇빛에 데는 일소(日燒)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햇빛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농작물의 광합성에 없어서는 안된다. 구름에 가려 햇빛이 비치지 않는 흐린 날이 장기간 지속되면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한다.

아울러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토지(땅)가 필수적이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구의 지각변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다만 인간은 농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변용하여 농지를 조성할 뿐이다. 그러나 토지라 해도 동일하지 않고 토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내용에 따라 토지의 성질은 다양하다. 또한 모든 토지가 농업용으로 적합한 것은 아니며 매우 제한적이다. 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질 좋은 농작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면 기대하는 만큼의 수확을 하기 어렵다. 또한, 토양 성분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토양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그림 2-1. 자연과 농산업의 관계



이와 같이 생물(농작물)을 생산(재배)하는 농업은 물(水), 불(火, 光), 땅(土)과 바람(風) 같은 자연조건이 알맞아야 한다. 농작물 생육기간에 이러한 자연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적절하게 주어질 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수확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해(災害, disaster)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물, 불, 흙 및 바람 등은 생명체의 생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소들이지만 과다하거나 부족하면 생명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농업은 자연조건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자연조건은 극복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자연에 순응하는 농업을 영위하게 된다. 지역마다 토질은 물론 기온 및 강수량 등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자연조건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작물을 선택하는 적지적작이 중요하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일 작물 또는 유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일정 지역에 모여 단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주산지이다.

2. 농업재해의 특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은 자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농업은 주어진 자연조건에 적응하면서 때로는 적절히 활용하여 농작물을 생산한다. 농업인은 자연조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들을 택해 영농활동을 한다. 농업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다양한 농업재해들이 발생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불예측성

농업재해는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기상청에서는 장기예보 및 단기예보를 발표한다. 실시간 기상 상황의 변화도 알려주고 있다. 여러 위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대형 컴퓨터 등 첨단 과학 장비를 동원하여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기상 발표와 실제 날씨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기예보를 보고 사업이나 야외 행사, 여행 등을 계획하다가 예보와 달라지면 낭패를 보게 된다. 농업인들은 본인의 경험과 장기예보를 토대로 한 해 농사를 계획하는데 장기예보가 맞지 않으면 일 년 농사를 망치게 된다. 농업인들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상예보와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고가의 첨단장비를 가지고도 날씨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기상예보가 실제 날씨와 맞지 않는 것이 첨단장비의 결함이나 전문가의 분석력이 부족한 탓이라기보다는 기상 변화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나. 광역성

기상재해는 발생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몇 개 지역에 걸쳐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발생하는 지역의 범위도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농업인들은 태풍이 어느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의 폭으로 지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해서 소멸될 때까지 주시해야 한다. 일단 재해가 발생하면 인근 지역 전체가 재해를 입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각자의 재해복구에도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농가를 도울 여력이 없다. 재해가 일정 지역을 넘어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문제가 된다.

다. 동시성·복합성

기상재해는 한 번 발생하면 동시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장기간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가 발생하는데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 습해 및 저온 피해가 발생한다. 2020년에는 장마가 54일 동안이나 지속되어 기상관측 사상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었다. 장마 중에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태풍은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긴 장마가 끝나면 병충해가 연례행사로 발생한다. 이렇게 몇 개의 재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농업인들은 그만큼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라. 계절성

우리나라는 온대지역에 속해 4계절이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봄과 가을은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4계절은 뚜렷하다. 동일한 재해라도 계절에 따라 영향은 달라진다. 비를 예로 들면 연중 비가 고르게 내린다면 재해가 아니라 농사에 지원군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강수량 중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이 기간은 농작물이 한창 생육하는 때라서 장마나 집중호우는 풍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겨울철에 드물기는 하지만 장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겨울철에 농사를 짓는 일부 작목에는 막대한 영향을 주겠지만 여름철에 비해 농사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 오히려 겨울철 비나 눈은 봄철 모내기나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중요한 공급원이 된다.

태풍도 주로 영농철인 여름에 발생한다.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피해는 엄청나다. 태풍의 경우 언제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지만, 특히 늦여름이나 가을 태풍은 일 년 농사에 치명적이다. 벼의 경우 이삭이 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과일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태풍이 지나가면 일 년 농사 결실이 다 떨어진다.

마. 피해의 대규모성

가뭄이나 장마, 태풍 등이 발생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다. 개별 농가 입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지자체 수준)에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2020년의 긴 장마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상저온으로까지 이어져 전국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도 가장 많이 지급되었다.

바. 불가항력성

각종 기상재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동원된다. 농가는 지역의 기후조건에 적합한 작목과 품종을 선택하여 비배관리도 적절히 함으로써 최대의 수확을 거두려고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저수지나 댐을 만들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경지정리와 관·배수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수월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로 자연재해는 예측하기도 어렵고 일단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 농가 및 국가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농업재해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크다. 그러나 불가항력적이라고 해서 재해대비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2절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1.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가. 국가적 재해대책과 한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 제6항).”라고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재해에 취약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재난 대책 외에 별도의 법령인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농업재해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재해대책은 개별 농가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한 재해 지역의 농가에게 재해복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농업재해대책은 재해복구지원대책이지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재해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나. 농업(재해)의 특수성 : 대규모성 및 불가항력성

농업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광역적이며 대규모로 발생하여 사람의 노력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농업재해의 특성을 살펴보았지만 다시 요약해보면 첫째,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상 관측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예측 및 대응이 가능하지만, 그 영향이 어느 범위까지 미칠지를 알기 어렵다(예측 불가능성). 또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설령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동시 광역성). 둘째, 발생지역에 따라 피해 정도의 차이가 크다. 동일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미한 피해에 불과한 지역

도 있다(피해의 불균일성). 따라서 재해 규모만으로 피해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셋째, 계절별로 다른 재해가 발생한다. 작물 및 계절별로 발생하는 재해의 종류가 상이하다. 반대로, 동일한 재해라도 농작물에 주는 영향이 계절에 따라 다르다(피해 발생의 이질성). 넷째,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이다. 기상 관측기술의 발달과 각종 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및 영농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느 정도의 자연재해는 극복할 수 있지만, 이상기상으로 인한 대규모 재해는 인간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불가항력성).

이렇게 농업재해가 불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개별 농가 수준에서 대처하여 농가 스스로 재해의 충격 및 손실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 WTO협정의 허용 대상 정책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농가를 직접 지지해오던 가격정책은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자유무역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국의 농업정책들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열악한 농업을 보완하는 정책은 허용되는데, 직접지불제와 농업재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WTO 체제하에서도 허용되는 정책인 농업재해보험을 농가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라. 시장 실패와 정책보험

자유경쟁시장에서는 모든 상품(보험도 상품)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림 2-2(A)>에서 수요(D)와 공급(S)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P)이 결정되어 Q만큼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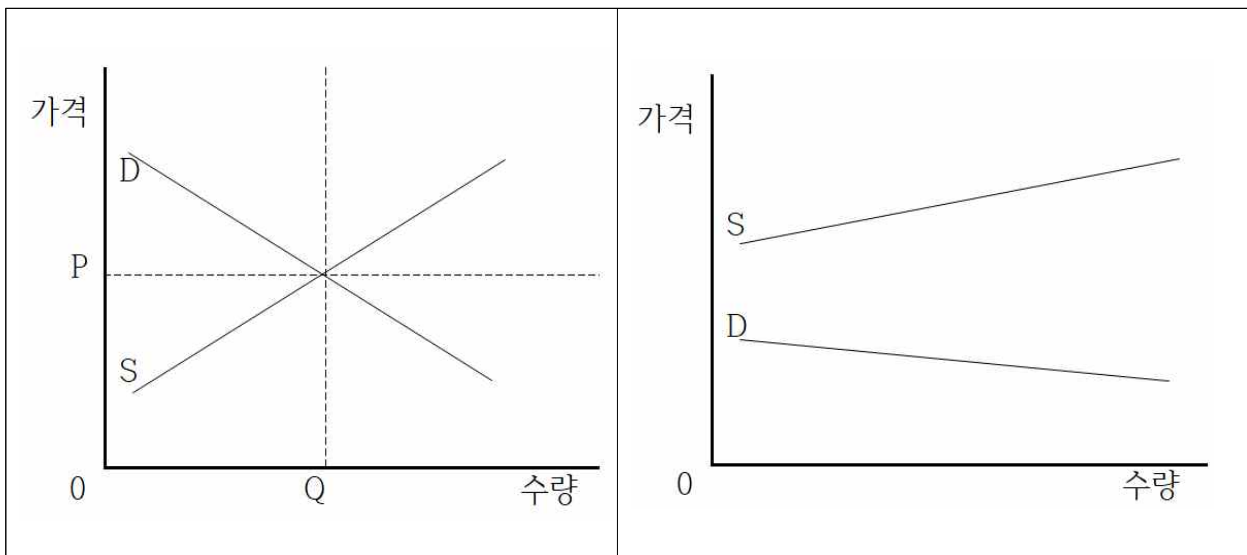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는 <그림 2-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요는 너무 낮은데 비해 가격이 너무 낮은 수준에서는 공급이 어려운 경우이다. 농업재해보험이 이러한 경우로 보험시장에만 의존하면 농업재해보험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높은 가격(보험료)

을 지불하고 보험을 구입(가입)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망설일 수 있다. 한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 가격을 낮추어 회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농업재해보험을 판매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자가 농업재해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농업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림 2-2. 수요와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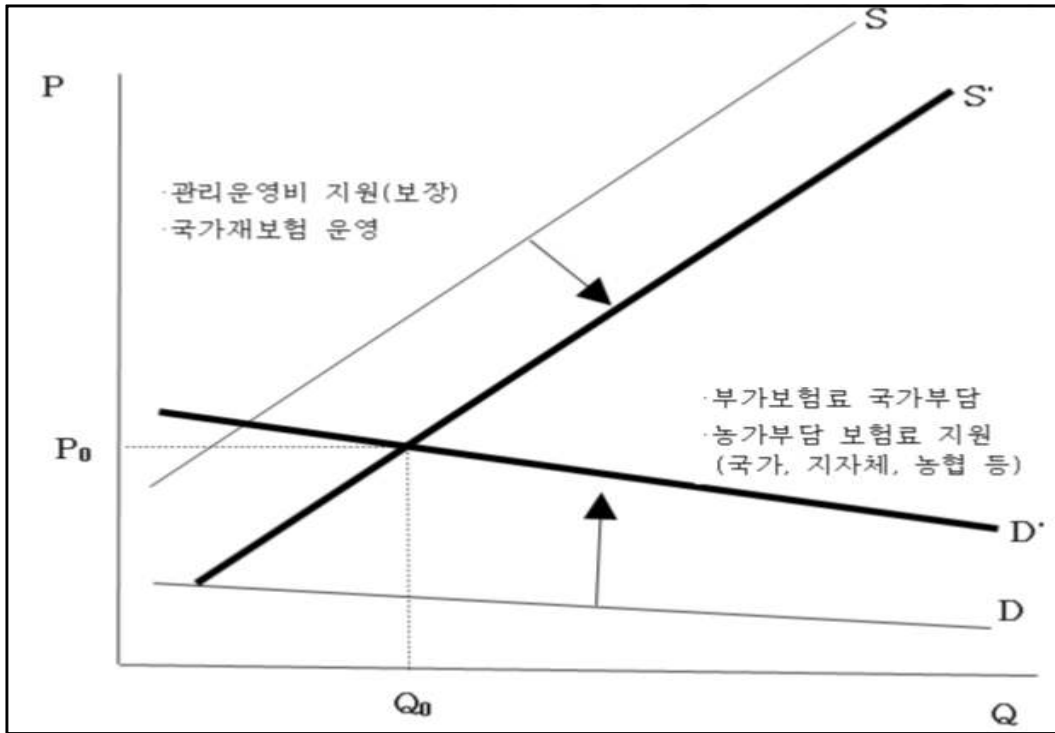
(A)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경우

(B) 수요와 공급이 만나지 않는 경우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가 농가가 부담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구매력을 높여 수요를 증가시키고($D \rightarrow D'$), 공급자인 보험자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재보험을 통해 위험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저렴한 가격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S \rightarrow S'$). 결국은 변경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수준에서 가격(P_0)이 결정되어 Q_0 만큼의 농업재해보험이 거래된다. 이와 같이 농업재해보험이 보험시장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거래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데 국가 개입의 정도는 각국의 보험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농업재해보험을 민영보험시장에 맡기기 어려운 상황인 국가에서는 직접 국가가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림 2-3. 정책보험으로서의 농업재해보험



제3절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1.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징

가. 보험 대상 재해가 자연재해임

민영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일반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한 보험이다. 자연재해는 한 번 크게 발생하면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민영보험사에서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보험시장이 발달한 현재도 농작물재해보험만은 민영보험사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나. 손해평가의 어려움

생물(生物)인 농작물의 특성상 손해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재해 발생 이후 어느 시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농작물은 생물이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기상조건이 어떠한가에 따라 재해 발생 이후의 작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재해 입은 농작물은 부패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단기간에 평가를 집중해야 하므로 손해평가에 큰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된다.

다.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험이 낮은 계약자와 높은 계약자를 구분해야 하나 농작물 재해는 그 위험을 세분화하기가 쉽지 않다.

라.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계약자의 경제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보험에 대한 가입 욕구가 발생한다. 그러나 농산물가격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태에서 농자재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농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는 농업인은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마. 물(物)보험-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생산과정에서의 재해로 인한 농작물 손실을 보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人)보험이 아니라 농작물이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물(物)보험이다. 또한 농작물의 손실을 보전하는 손해보험이다.

바. 단기 소멸성 보험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의 생육이 확인되는 시기부터 농작물을 수확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은 농작물이 생육을 시작하는 봄부터 농작물을 수확하는 가을까지로 그 기간은 1년이 채 안 된다. 물론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연중인 경우도 있으며, 과수작물의 경우 꽃눈이 형성되어 과실로 결실을 맺어 수확하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포함한다고 해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기간은 2년 미만으로 단기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 국가재보험 운영

농작물재해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책보험으로 실시되고 있다. 국가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험사업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이러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사업자는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위험을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해보험사업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수한 책임의 일부를 나누어가지는 국가재보험을 실시한다.

제4절 농업재해보험의 기능

1. 재해농가의 손실 회복

농업재해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농가에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재해로 인한 충격이 몇 년간 지속되고 심한 경우에는 폐농(廢農)에 이르기도 한다. 그러나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보험금이 지급되면 재해를 입은 농가는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게 된다. 원상회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한 농가는 대출받은 영농자금을 상환할 수 있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다음 해 영농 준비에도 차질을 빚지 않게 된다.

2. 농가의 신용력 증대

농업재해보험은 농가의 신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예기치 않은 재해로 커다란 손실을 입더라도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손실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대출한 자금 회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농가의 신용을 보증하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미국 등 농업보험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보험 가입 농가와 미가입 농가의 대출 조건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다.

3. 농촌지역경제의 안정화

경제 발전으로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작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여 농업생산이 크게 감소하면 농가경제가 위축되고 농가의 구매력 감소는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생산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면 농촌지역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도 농업재해보험을 통해 일정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4. 농업정책의 안정적 추진

농업정책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융통성을 발휘할 여유는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대규모 농업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로는 부족하여 다른 예산으로 재해복구에 충당하다 보면 당초 계획했던 농업정책사업들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혼란을 초래한다.

농업재해보험이 보편화되면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농업정책당국으로서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이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즉, 농업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

5. 농촌지역사회의 안정

예로부터 가을이 되면 농촌에서는 농산물 값은 어떻게 될지언정 일단 풍년이 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그전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지만 일단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것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옛말에 ‘타작(수확) 마당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다. 풍족해야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이다. 달리 말하면 흉년이 들면 이웃을 돌볼 겨를이 없고 지역사회 분위기도 침체하게 될 것이다.

농업재해보험은 재해로 경제적 타격이 심하더라도 상당한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다.

6. 재해 대비 의식 고취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들도 재해 발생 시 이웃 농가가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복구해 평년과 비슷한 경제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농업재해보험의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한편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평소 재해 발생을 대비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재해 발생을 줄임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제5절 농업재해보험 법령

1.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연혁

태풍 및 우박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업소득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2001.1.26. 제정되었다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9년 8월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로 전국적으로 67명이 죽거나 실종되었고, 이재민 2만 5,327명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는 1조 1,500억 원으로 태풍 피해로 1조 원이 넘어선 것이 처음일 정도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9년에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농어업 전반에 관련된 재해에 대비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적용 대상을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 재해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및 화재까지 포괄하여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이법으로 통합·일원화하고 법제명도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변경하는 등 2009. 3. 5일 전면 개정하여 2010.1.1.부터 시행하였다.

2014년에는 효과적인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한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한 손해평가사 자격제도를 1년간의 준비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조건으로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020년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주요 변천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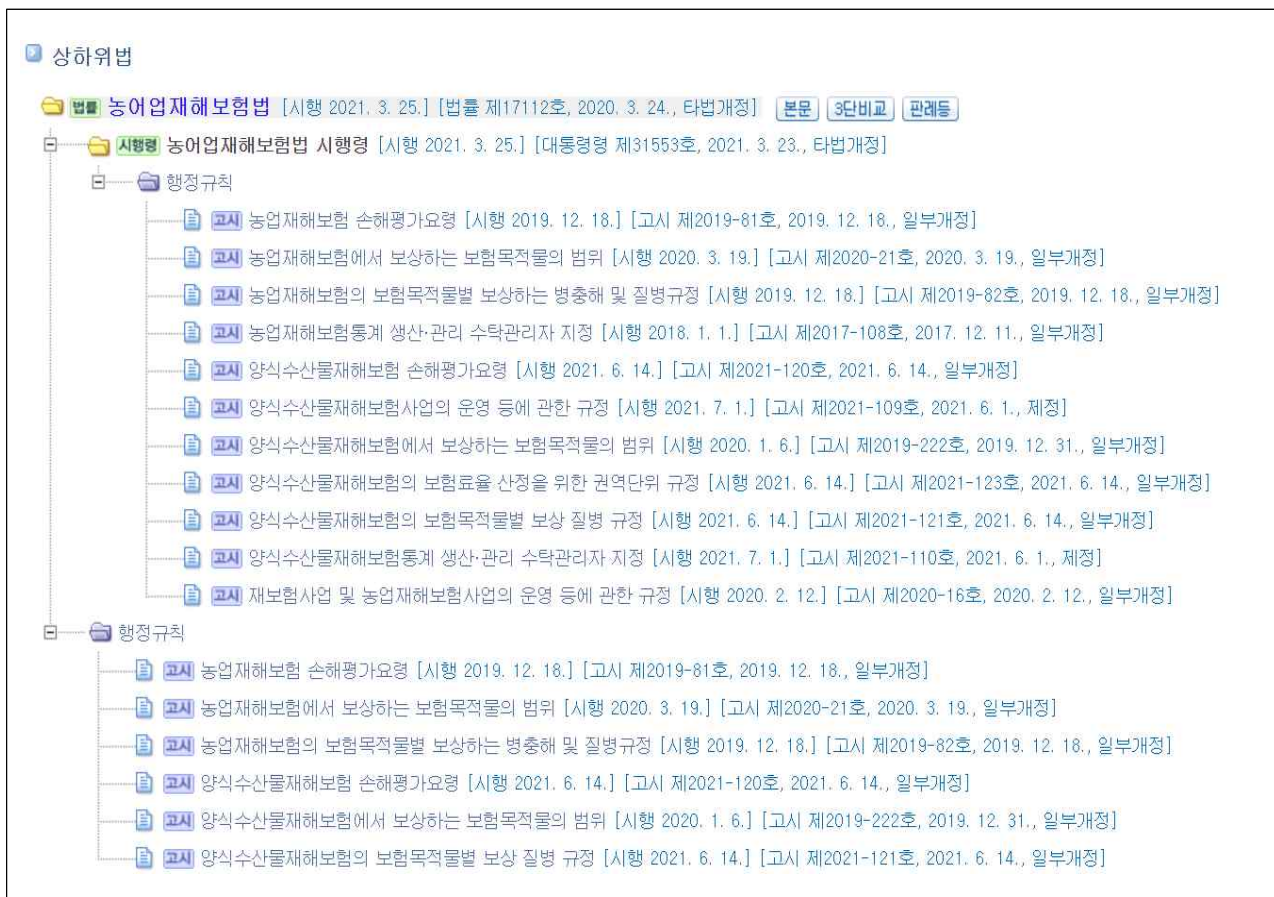
연도	제정 및 시행일시	주요 내용
2001년	2001.1.26. 제정 2001.3.1. 시행	<농작물재해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 설치 ◦보험 대상 농작물의 종류 피해 정도, 자연재해의 범위 등을 대통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정(선정, 지원 근거 등)
2005년	2005.1.27. 개정 2005.4.28. 시행	<농작물재해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정부 전액 지원 ◦국자재보험제도 도입 ◦농작물재해보험기금의 설치
2007년	2007.1.26. 개정 2007.7.27. 시행	<농작물재해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농작물의 품목과 보상 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
2010년	2009.3.5. 개정 2010.11.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 법제명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이 법으로 통합·일원화 ◦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을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 ◦재해보험의 대상 재해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및 화재까지 포괄
2012년	2011.7.25. 개정 2012.1.26.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작물재해보험의 목적물에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여 범위를 명확히 함 ◦계약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하여 지원 근거 마련
2014년	2014.6.3. 개정 2015.6.4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의 양성 및 자격제도를 도입
2017년	2017.3.14. 개정 2017.3.14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위탁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2020년	2020.5.26. 개정 2020.8.27.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

2. 농업재해보험 주요 법령 및 관련법

농업재해관련 주요 법령으로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있으며, 행정규칙으로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목적물의 범위”,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규정”, “농업재해보험통계 생산관리 수탁관리자 지정”,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규정“ 등이 있다.

농업재해보험 관련 주요 법률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산림조합법”, “풍수해보험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그림 2-4. 농어업재해보험법령 체계도



3.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2001년 제정된 농작물재해보험법을 모태로 2010년 전부 개정하여 농작물,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을 통합하였다.

총 32개의 본문과 부칙으로 되어있으며, 32개 본문은 제1장 총칙(제1-3조),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제4장 보험사업 관리, 제5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보충하는 제1조부터 제23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구체적인 사항,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계약자의 기준, 손해평가인 관련 사항,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 관련 사항, 업무위탁, 재정지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시범사업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1호(2019.12.18. 부 개정)로 제1조 목적부터 제17조 재검토기한까지의 본문과 부칙 및 별표 서식으로 되어있다.

주요 내용은 목적과 관련 용어 정의, 손해평가인의 위촉 및 업무와 교육, 손해평가의 업무위탁, 손해평가반 구성, 교차손해평가, 피해 사실 확인,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 결과 제출, 손해평가 결과 검증, 손해평가 단위, 농작물·가축·농업시설물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산정,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손해평가 업무방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라. 기타 농업재해보험 관련 행정규칙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21호(2020.3.19. 부 개정)로 보험목적물(농작물, 임산물, 가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2호(2019.12.18. 부 개정)로 농작물의 병충해 및 가축의 축종별 질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운용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40호(2019.10.1. 부 개정)로 제1장 총칙부터 제7장 보칙까지로 본문은 제1조 목적부터 제26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0-16호(2020.2.20. 부 개정)로 본문은 제1조 목적부터 제18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업무위탁, 약정체결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장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제1절 제도 일반

1. 사업실시 개요

가. 실시 배경과 사업목적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농업 분야의 많은 피해가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정부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생계구호적 차원의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지원 수준은 해당연도의 지원 수준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율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정책자금 이자 상환 연장, 학자금 지원, 대파종비, 농약대 등을 지원하는 등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개별농가의 입장에서는 지원 수준이 미미하여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은 1970년대 중반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보험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정보, 즉 경작 상황, 자연재해의 발생 및 피해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정책으로 도입되지는 않았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99년 8월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로 전국적으로 67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으며, 이재민 2만 5,327명이 발생 및 재산피해는 1조 1,500억원에 육박하는 등 극심한 피해였고, 이에 따라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난 이후인 2001년에 도입되었다. 태풍이라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복구 방안으로 보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사과와 배 두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나. 사업 추진 경위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200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01년 3월 1일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해 2001년 3월 17일부로 사과, 배 2개 품목을 주산지 중심으로 9개도 51개 시·군에서 보험상품을 판매 개시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이와 유사한 보험제도가 없었고, 보다 합리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나 보상 기준 등에 대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등 연이은 거대 재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보험사업의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는 막대한 보험금 지급을 유발하였고, 이는 곧 보험사업에 참여했던 민영보험사들의 막대한 적자로 연결되었다.

민영보험사들은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거대 피해에 대해 민영보험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2005년부터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국가재보험 도입 초기에는 손해율 18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손해율 발생 시 그 초과 손해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었으나, 2014년에는 품목별 위험 정도에 따라 손해율이 차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고, 2017년부터는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분담하는 손익분담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다. 사업 운영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 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사업 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 사업관리 제2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관리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 관계법령의 개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 보조금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 업무를 총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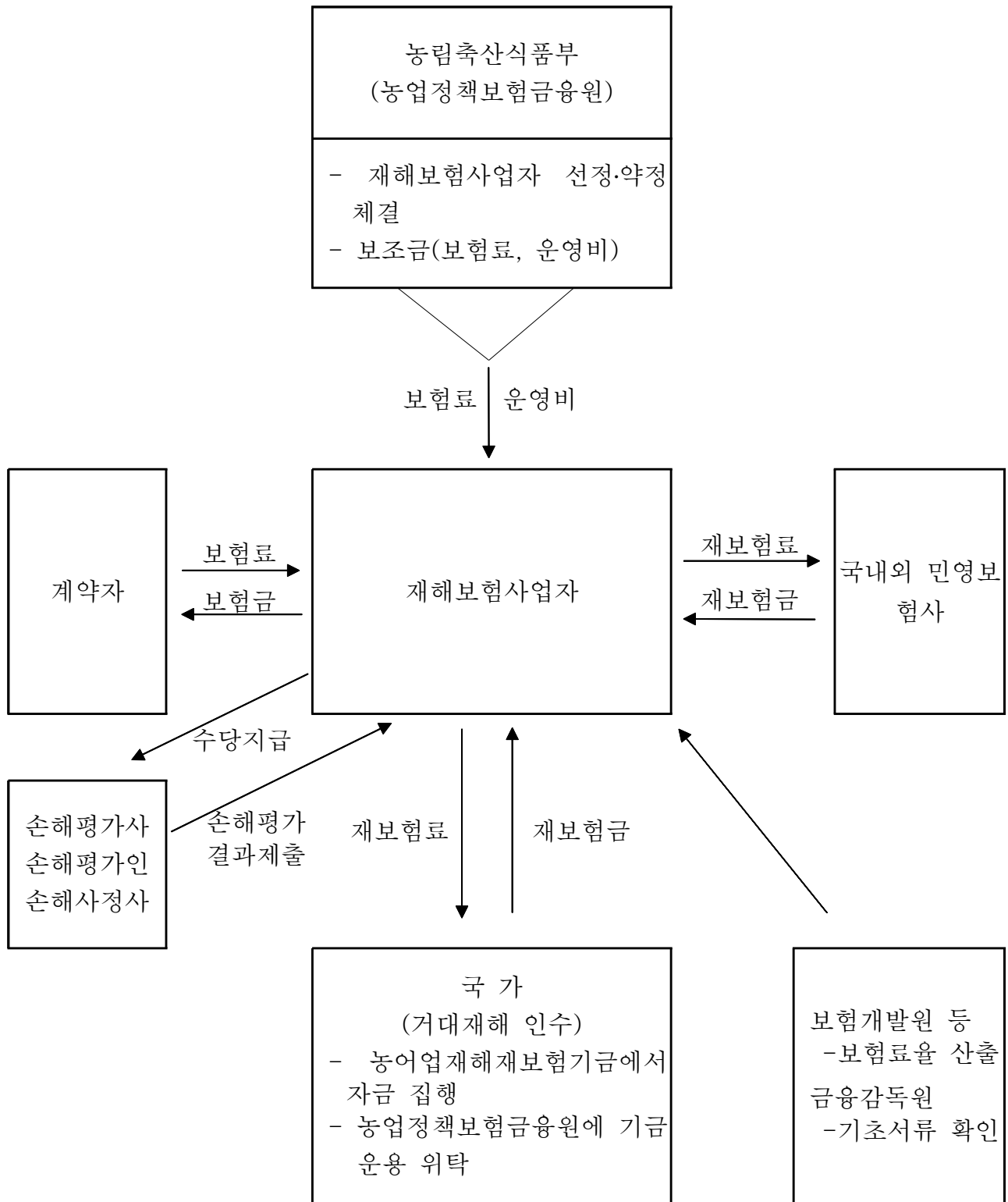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 업무는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관련 업무,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운용 업무 등이다.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 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로,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자는 NH농협손해보험이며,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을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해보험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설치되어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사업 재정지원, 손해평가 방법 등 농업재해보험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를 담당할 손해평가사의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수탁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다.

그림 3-1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보험 운영체계



2. 사업시행 주요 내용

가. 계약자의 가입자격과 요건

1) 계약자(피보험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대상자는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 대상 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업대상자 중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에 의한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작물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1의 2. 임산물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입자격 및 요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방식은 계약자가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이어야 하며, 둘째는 보험 대상 농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경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에 보험료의 50% 이상의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한다.

가) 과수, 논·밭작물 및 버섯류 : 사업 실시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

나)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 내 작물을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개인 또는 법인

표 3-1.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가입자격(2021년 기준)

품목명	가입자격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참다래, 자두, 밤, 감자, 양파, 고구마, 마늘, 매실, 대추, 고추, 포도, 인삼, 복숭아, 복분자, 오디,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브로콜리, 살구, 호두	농지의 보험 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200만 원 이상
옥수수, 콩, 배추, 무, 과, 호박, 당근, 팔, 시금치	농지의 보험 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100만 원 이상
벼, 밀, 보리, 메밀	농지의 보험 가입금액(생산액 또는 생산비) 50만 원 이상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단지 면적이 300m ² 이상
차,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농지의 면적이 1,000m ² 이상

나. 보험 대상 농작물별 재해 범위 및 보장 수준

1) 보험 대상 농작물(보험의 목적물)

보험 대상 농작물은 2021년 현재 67개 품목이며, 이외로 농업시설물로는 버섯재배사, 농업시설물 등이 있다.

(1) 식량작물 (9개 품목)

벼,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 보리, 팥, 메밀

(2) 과수작물 (16개 품목)

사과, 배, 단감, 감귤, 뽕은감, 참다래,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유자, 살구, 무화과, 대추, 밤, 호두

(3) 채소작물 (11개 품목)

양파, 마늘, 고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파, 당근, 시금치

(4) 특용작물 (5개 품목)

인삼, 차, 오미자, 복분자, 오디

(5) 버섯류 (4개 품목)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

(6) 시설작물 (22개 품목)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부추, 시금치, 상추, 가지, 배추,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2) 보험사업 실시지역

보험사업 실시지역은 시범사업은 주산지 등 일부 지역(특정 품목의 경우 전국)에서 실시하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된 본사업은 주로 전국에서 실시한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사업지역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지역을 제한한다. 감자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재배되는 작물의 특성 때문에 보험사업 실시지역을 가을 감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고랭지감자의 경우에는 강원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밀의 경우에는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으로 한정하고 있다. 2021년도 구체적 보험사업 실시지역은 <표 3-2>에서와 같다.

표 3-2.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별 및 사업지역

구분	품목	사업지역
본사업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벼, 밤, 대추, 감귤, 고추, 고구마, 옥수수, 콩, 마늘, 양파, 인삼,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참다래,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버섯작물(표고, 느타리), 농업용시설 및 버섯재배사	전국
	감자	[가을감자] 전국 [고랭지감자] 강원
	밀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시범사업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전국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제주) 제주, 서귀포
	메밀	전남, 제주
	차	(전남) 보성, 광양, 구례, (경남) 하동
	봄감자	경북, 충남
	오디	전북, 전남, (경북) 상주, 안동
	복분자	(전북) 고창, 정읍, 순창, (전남) 함평, 담양, 장성
	오미자	(경북) 문경, 상주, 예천, (충북) 단양, (전북) 장수, (강원) 인제, (경남) 거창
	유자	(전남) 고흥, 완도, 진도, (경남) 거제, 남해, 통영
	배추	[고랭지] (강원) 정선, 삼척, 태백, 강릉, 평창 [월동] (전남) 해남
	무	[고랭지] (강원) 홍천, 정선, 강릉, 평창 [월동] (제주) 제주, 서귀포
	단호박	경기
	파	[대파] (전남) 신안, 진도, 영광, (강원) 평창 [쪽파, 실파] (충남) 아산, (전남) 보성
	살구	(경북) 영천
	호두	(경북) 김천
	보리	(전남) 보성, 해남, (전북) 김제, 군산, (경남) 밀양
	팥	(전남) 나주, (강원) 횡성, (충남) 천안
시금치	(경남) 남해, (전남) 신안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보험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일부 지역에서 보험설계의 적정성, 사업의 확대 가능성, 농가의 호응도 등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전국적 본사업 실시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3년차 이상 시범사업 품목 중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 심의에 따라 본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표 3-3. 2021년도 시범사업 품목(24개)

구 분	5년차 이상	4년차	3년차	2년차
작물명	복분자, 오디, 차, 양배추, 오미자,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배추, 무, 호박, 과, 당근, 봄감자,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보리, 팥, 살구, 시금치, 호두
작물수	7	4	4	5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 등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 특정 재배방법, 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과 협의하여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3)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

보험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위험방식과 종합위험방식으로 구분한다. 특정위험방식은 해당 품목에 재해를 일으키는 몇 개의 주요 재해만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며, 종합위험방식은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자연재해와 화재 및 조수해(鳥獸害) 등을 보험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2021년 현재 특정위험방식은 인삼에 해당되며, 종합위험방식은 다시 적과전 종합위험방식과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종합위험방식으로 구분하는데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사과, 배, 단감, 뽕은감에 해당되며, 수확전 종합위험방식은 복분자, 무화과에 해당된다. 종합위험방식은 특정위험방식과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수확전 종합위험방식을 제외한 품목에 해당된다.

종합위험방식(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포함)은 보험 대상으로 하는 주요 재해는 기본적으로 보장하고(주계약), 주요 재해 이외에 화재, 화재대물 배상책임, 병충해 등 특정 재해를 특약으로 보장(계약자가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표 3-4. 보험 대상 품목별 대상 재해

구분	대상 품목	대상 재해
특정위험	인삼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냉해
적과 전 종합위험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적과 후)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 피해, 가을동상해
수확 전 종합위험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종합위험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유자, 살구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복숭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세균구멍병)
	밤, 대추, 오디, 오미자, 호두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특약 : (호두) 조수해(鳥獸害), 부보장
	마늘, 양파, 고구마, 콩, 옥수수, 차, 양배추, 밀,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호박, 당근, 파, 시금치, 팔, 보리, (사료용)벼, (사료용)옥수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고추·감자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종합위험	농업시설,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특약 :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재위험 부보장
	벼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특약 :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감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11.30일 이전) 특약 : 동상해(12.1일 이후)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비가림시설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특약 : 화재

4) 보장유형(자기부담금)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모든 피해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농작물재해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소소한 피해까지 보상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하여 보험으로서의 실익이 없으며, 한편으로는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보장 유형이 다양하다.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은 크게 3가지 유형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과·배 등 과수작물, 벼·밀 등 식량작물, 마늘·감자 등 밭작물의 경우처럼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상품과 고추·브로콜리·시설작물 등과 같이 생산비를 보장하는 상품과 농업시설과 같이 시설의 원상 복구액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수확량을 보장하는 상품의 경우 평년 수준의 가입수확량과 가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장 유형을 설정한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유형은 60%~90% 사이에서 품목에 따라 다양하다. 품목별, 분야별 구체적 보장 유형은 표 3-5와 같다.

생산비를 보장하는 품목 중 브로콜리, 고추의 경우 보험금 산정 시 잔존보험 가입금액의 3% 또는 5%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하며, 시설작물의 경우 손해액 10만원까지는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화재손해인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한다. 다만, 해가림시설을 제외한 농업용 시설물과 비가림시설 보험의 화재특약의 경우 화재로 인한 손해 발생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보험 대상 품목별 보장 수준

품목	대상 재해	보장 수준 (보험 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적과 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 후)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	○	○	○	○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	○	○	○
복숭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세균 구멍병)	○	○	○	○	○
감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11.30일 이전) 특약 : 동상해(12.1일 이후)	○	○	○	○	○
무화과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	○	○	○	○
복분자	(5.31일 이전) 자연재해·조수해·화재 (6.1일 이후) 태풍(강풍)·우박	○	○	○	○	○
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떡 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	○	○	○	○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오디, 밤, 대추, 오미자, 양파, 마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	○	○	○
감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	○	○	○	○
양배추,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시금치, 호두, 메밀, 팥, 보리, 유자, 살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약 : (호두)조수해(鳥獸害) 부보장	○	○	○	-	-
브로콜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 가 입금액의 3% 또는 5%				
고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자기부담금) 잔존보험 가 입금액의 3% 또는 5%				
인삼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폭염, 냉해	○	○	○	○	○

품목	대상 재해	보장 수준 (보험 가입금액의 %)				
		60	70	80	85	90
해가림시설(인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부대시설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재위험부보장	(자기부담금)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비가림시설(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 화재	(자기부담금)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적용하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쑥갓), 버섯작물(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 :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 보장형 별 보험 가입금액의 40%, 30%, 20%, 15%, 10%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름

다. 품목별 보험 가입단위 및 판매 기간

1) 품목별 보험 가입단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 대상 목적물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 대상 목적물은 크게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작)물로 구분된다.

먼저 농작물은 필지에 관계없이 논두렁 등으로 경계 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한다.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등 예외 사항은 사업관리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업시행기관(재해보험사업자)이 별도 협의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 버섯재배사·버섯작물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 및 타인 소유 목적물은 제외된다. 단지는 도로, 독방,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이다. 농업용 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의 경우 인접한 단지의 면적을 합하여 가입자격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물리적 단위 외에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 가입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옥수수·콩, 배추, 무, 사과, 호박, 당근, 팔, 시금치는 농지 당 100만 원 미만이고, 벼, 보리, 밀, 메밀은 50만 원 미만,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단지 300㎡ 미만, 차, 사료용 옥수수와 사료용 벼는 농지의 면적이 1,000㎡ 미만은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보험 판매 기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기간은 농작물의 특성에 따라 타 손해보험과 다르게 판매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작물의 생육시기와 연계하여 판매한다.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과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은 2월에서 11월, 과수는 11월부터 익년 6월, 일반작물 등은 4월에서 10월 등 작물별로 판매 기간이 다르다. 자세한 품목별 보험판매기간은 표 3-6과 같다.

표 3-6.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기간

품목	판매 기간
사과, 배, 단감, 뽕은감	1~3월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썩갓)	2~11월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양송이, 새송이, 표고, 느타리)	2~11월
밤, 대추, 감귤, 고추, 호두	4~5월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옥수수	4~6월
단호박	5월
감자	(봄감자) 4~5월, (고랭지감자) 5~6월, (가을감자) 7~8월
배추	(고랭지) 4~6월, (월동) 9~10월
무	(고랭지) 4~6월, (월동) 9~10월
파	(대파) 4~6월, (쪽파) 8~10월
벼, (사료용)벼	4~6월
참다래, 콩, 팥	6~7월
인삼	4~5월, 11월
메밀, 당근	7~8월
양배추	8~9월
브로콜리	9~10월
마늘	(난지형) 10월, (한지형) 10~11월
차, 밀, 양과, 보리, 시금치	10~11월
자두, 매실, 복숭아, 오디, 복분자, 오미자, 무화과, 살구	11월
포도, 유자	11~12월

※ 판매 기간은 월 단위로 기재하였으나, 구체적인 일 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 ③ 판매기간은 변동가능성 있음

※ 판매 기간 및 사업지역 변경 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지자체로 별도 통보, 보험사업자는 홈페이지 및 보험대리점(지역 농협)을 통해 홍보

※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 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

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1) 재해보험 가입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험 가입 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계약자) → 현지 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등의 순서를 거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를 담당한다.

2) 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 납입은 보험 가입 시 일시납(1회 납)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즉시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는 신용카드 납부 시 할부 납부가 가능하다.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계약 인수와 연계되어 시행되며,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나, 인수심사 중에는 사전수납 할 수 없다.

마. 보험료를 적용, 할인·할증 및 보험기간, 보험 가입금액 산출

1) 보험료를 적용

보험료율은 주계약별, 특약별로 지역(시·군)별로 자연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된다.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은 보험료율이 높고 반대의 경우는 낮다. 즉, 지역별 자연재해의 정도에 따라 시·군·구별로 보험료가 다르다.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지역단위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이나, 2022년에는 사과, 배 품목을 대상으로 통계신뢰도를 일정수준 충족하는 읍·면의 경우 시범적으로 보험료율 산출 단위 세분화(시·군 → 읍·면)를 추진한다.

2)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보험료의 할인·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 품목별 재해보험 요율서에 따라 적용되며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방재시설별 할인율 등을 적용한다.

표 3-7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률

손해율	평가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30%미만	-8%	-13%	-18%	-25%	-30%
30%이상 60%미만	-5%	-8%	-13%	-18%	-25%
60%이상 80%미만	-4%	-5%	-8%	-13%	-18%
80%이상 120%미만	-	-	-	-	-
120%이상 150%미만	3%	5%	7%	8%	13%
150%이상 200%미만	5%	7%	8%	13%	17%
200%이상 300%미만	7%	8%	13%	17%	25%
300%이상 400%미만	8%	13%	17%	25%	33%
400%이상 500%미만	13%	17%	25%	33%	42%
500%이상	17%	25%	33%	42%	50%

※ 손해율 =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 ÷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

표 3-8 방재시설 할인율 (단위 %)

구분	밭작물								
	인삼	고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옥수수	감자	콩	양배추
방조망			5						
전기시설물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5			5		5	
관수시설 (스프링쿨러 등)	5	5	5	5	5		5	5	5
조수해방재시설									5
경음기			5						

구분		적과전 종합위험방식II			과 수								
		사과	배	단감 곶감	포도	복숭아	살구	참다래	대추	매실	유자	감귤	감귤 하우스
지주 시설	개별지주	7		5									
	트랜리스방식 (2선식)	7											
	트랜리스방식 (4선식)	7											
	지주					10							
	Y형					15							
방풍림		5	5	5	5	5		5			5		
방풍망	측면 전부설치	10	10	5	5	10		10			5	5	기본 할인
	측면 일부설치	5	5	3	3	5		5			3	3	-
방충망		20	20	15	15	20						15	추가 할인
방조망		5	5	5	5	5		5				5	기본 할인
방상팬		20	20	20	10	10	15	10		15		20	추가 할인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		20	20	20	10	10	15	10		15		20	추가 할인
덕 또는 Y자형 설치			7										
비가림시설					10					10			
비가림 바람막이								30					
바닥멀칭					5								
타이백 멀칭	전부설치											5	추가 할인
	일부설치											3	추가 할인

※ 2개 이상의 방재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폭 30%

※ 방조망, 방충망은 과수원의 위와 측면 전체를 덮도록 설치되어야 함을 유의

※ 농업수입보장 상품도 동일

※ 대추 : 비가림시설이 과수원 전체에 설치된 경우에 한함

※ 감귤 : (기본할인) 방조망 및 방풍망 측면 전부설치 방재시설로 적용 (최대 10% 할인)

(추가할인) 현장조사 시 실제 설치여부 확인 후 추가할인 적용 (최대 20% 할인)

단지 전체가 하우스 감귤인 경우 하우스 감귤 방재시설 할인을 적용 가능하나, 과수원의 일부가 하우스 감귤인 경우 방재시설 할인불가.

방상팬, 서리방지용 미세살수장치는 동상해 특별약관에서 적용

3) 보험기간 적용

보험기간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장하는 기간을 말하며, 특정위험방식·종합위험방식의 품목별로 생육기를 감안하여 보험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다. 보험기간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 기술된다.

4) 보험가입금액 산출

보험가입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수량에 가입(표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품목 또는 분야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품목별·분야별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다르며, 일부 품목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확량감소보장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보험의 목적물(농작물)의 kg당 평균가격(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나무의 1주당 가격)으로 과실의 경우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 벼의 보험가입금액은 가입 단위 농지별로 가입수량(kg 단위)에 가입(표준)가격(원/kg)을 곱하여 산출하며, 만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벼의 표준가격은 보험 가입연도 직전 5개년의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수매가 최근 5년 평균 값에 민간 RPC 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다.
- 벼섯(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의 보험가입금액은 하우스 단지별 연간 재배 예정인 벼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벼섯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자(계약자)가 10% 단위로 가입금액을 결정한다.
-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가입금액은 단지 내 하우스 1동 단위로 설정하며, 산정된 재조달 기준가액⁴⁾의 90%~130%(10% 단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단, 기준금액 산정이 불가능한 콘크리트, 경량 철골조, 비규격 하우스 등은 계약자의 고지사항 및 관련 서류를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한다.

4)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인삼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근별 (보상)가액에 재배면적(m²)을 곱하여 결정한다.
- 인삼의 가액은 농협 통계 및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기초로 연근별로 투입되는 누적 생산비를 고려하여 연근별로 차등 설정한다.
- 인삼 해가림시설의 보험가입금액은 재조달가액에 감가상각률⁵⁾을 곱하여 결정한다.

바. 손해평가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게, 손해평가인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손해평가사는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보조인은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필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할 수 없다.

<참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제도

1. 손해평가란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2. 자격시험 실시
 - 제1차 : 상법 보험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 제2차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3. 손해평가사의 업무
 -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4. 교육
 -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무교육(자격 취득 후 1회) 및 보수교육(자격 취득 후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 이수토록 규정

5) 설치 장비나 시설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지는 비율

사. 재보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품목에 대해 일정 부분은 정부가 국가재보험으로 인수하며, 재해보험사업자는 국가(농업정책보험금융원)와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의 손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으로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 금액, 비율 등 실적내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의 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재원은 보험료이다. 보험료는 보험 가입 시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납입 순보험료의 50% 내외를 지원한다. 다만, 아래 품목은 보장 수준별로 38~60% 차등 보조한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해야 한다.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 진행

표 3-9. 정부의 농가부담보험료 지원 비율(2021년 기준)

구분	품목	보장 수준 (%)				
		60	70	80	85	90
국고 보조율 (%)	사과, 배, 단감, 곶감	60	60	50	40	38
	벼	60	55	50	48	47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⁶⁾는 국고에서 100% 지원한다.

6)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용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 영업비, 모집수수료 등

4. 기관별 역할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등이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역할 분담과 긴밀한 업무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단계별로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을 정하고 있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한다.

재해보험사업자에게는 농작물재해보험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를 거쳐 배정한다.

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개선연구·개선,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하고,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을 실시(법 제8조)한다.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해 현장의견·자체검토 및 연구하여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검토하고, 품목별 상품개선안, 보험요율 등 품목별 상품개선안을 재해보험사업자에 통보하여 시행한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농업인·지자체에 제도홍보 및 손해평가사 교육 등을 추진한다.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당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기관의 징계, 계약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재해보험사업자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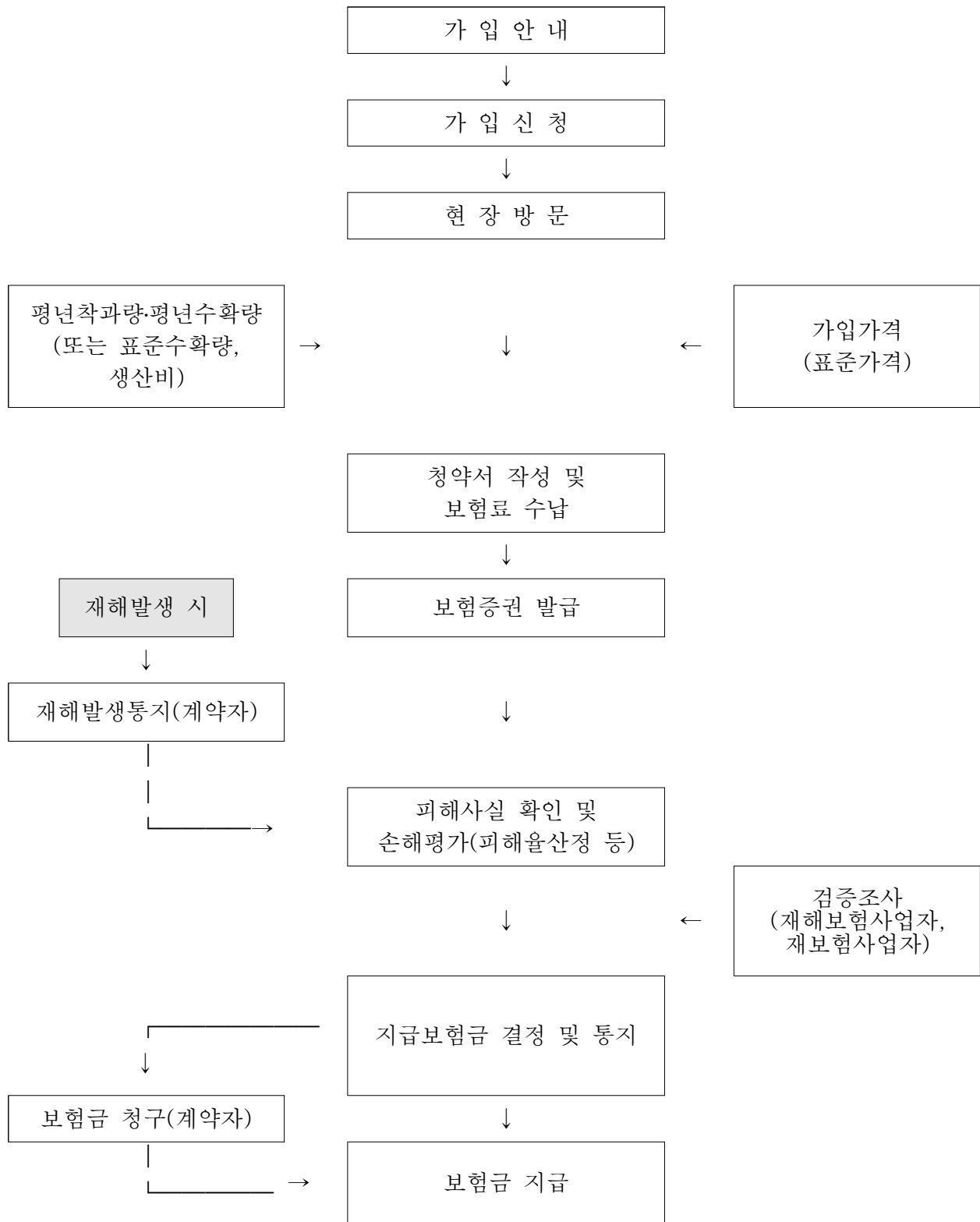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보험사고 접수현황과 지급보험금 등을 조사 및 지급한다. 또한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상품 내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평가인에 대한 보험 상품 내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 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계약자 및 보험목적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5. 농작물 재해보험 추진 절차



제2절 농업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시설작물 제외) 작물별 특성

1. 사과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북부 온대과수이다. 때문에 30℃ 이상의 고온이 되면 호흡작용이 왕성해져서 탄수화물 생성량보다 호흡에 의한 소비량이 많아 물질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과실비대가 불량해지고, 꽃눈형성도 나빠지게 된다.

흐린 날이 계속되어 일조시간이 부족하게 되거나 수관 내부가 복잡하여 햇빛의 투과가 나쁘면 새 가지의 신장이 불량해지고 꽃눈형성, 착과 및 과실발육이 나빠진다.

내건성은 복숭아나무나 포도나무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가뭄피해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조기에는 관수가 필요하다.

봄철 냉해피해로 인해 착과과실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우박, 일소, 강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주요 피해이다.

탄저병과 갈색무늬병 등 병충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므로 우박피해과 또는 일소피해과와 구분이 필요하다.

그림 3-1 탄저병과 일소피해과의 구분



탄저병



일소피해과

그림 3-2 갈색무늬병과 우박피해과의 구분



갈색무늬병

우박피해과

2. 배

배 과수원의 토양이 자갈이나 모래가 많으면 조기에 결실되지만 수량이 감소되고 수세가 약해진다. 배수가 불량한 과수원은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뻗지 못하여 가뭄의 피해를 받기 쉽고 생산력도 떨어지며 과실품질도 좋지 않다. 또한 조기 낙엽, 동해발생 등이 많이 발생한다.

생육기의 긴 장마는 검은별무늬병 등 병충해 발생을 유발시킨다. 검은별무늬병은 과실 수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품질을 크게 저하시키나 사과와 같이 병충해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3. 단감

감나무는 온대성 과수로서 생육기간 중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기온은 생육뿐만 아니라 수량과 품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단감은 뚝은감보다 추위에 약하여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나무가 얼어 죽거나 꽃눈 착생 상태가 불량하다.

재식된 나무는 4~5년째부터 과실이 달리기 시작하여 15년이 되면 성과기에 이르고 40년이 지나면 노쇠하여 생산량이 줄어들고 품질이 저하되는 등 해거리가 심하다.

감나무는 유목기(幼木期)에 가뭄 피해를 받기 쉽다. 그러나 뿌리가 깊게 뻗기(심근성, 深根性) 때문에 성목기(成木期)에는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모래땅, 자갈이 많이 섞인 경사지, 토심이 얇고 유기물 함량이 적은 토양은 토양 수분의 변화가 심하여 나무의 발육은 물론 과실비대가 불량하고, 낙과(落果)가 심하며 과실이 햇볕에 데는 일소현상(日燒現象), 정부열과(頂部裂果), 꼭지들림, 조기낙엽 및 녹반증 등의 발생이 많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동화량이 저하되고 저장양분이 부족하게 되어 과실이 낙과되기 쉬우며 가지의 자람새가 불충실하고, 꽃눈 분화와 발육이 불량하여 다음해에 착과 결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요 재해로는 태풍·강풍으로 인한 낙엽피해와 수확기 가을동상해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

4. 뚝은감

뚝은감은 단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한 경향이 있다. 단감과 뚝은감 품목은 다른 과수 품목과는 달리 잘 낙과되지 않는 반면 과실의 생육에 잎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잎의 피해가 심하면 과실이 조기낙과 되기도 한다. 때문에 손해평가지 잎피해를 조사하는 품목이기도 하다.

감 재배지에서는 등근무늬낙엽병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피해를 입은 나무는 조기낙엽 및 과실이 낙과되거나 연화되며, 낙과되지 않더라도 과실비대가 불량하고 당도가 떨어진다. 해에 따라서는 발병 후 잎이 붉게 변하기 전에 일시에 낙엽이 지는 급성피해도 나타난다. 잎에만 발생하며 강풍에 의한 낙엽피해와 구분하여야 한다.

5. 포도

포도나무는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넓어 내건성과 내습성이 강하므로 적당한 토심이 확보된다면 경사지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

광이 부족하게 되면 가지가 웃자라게 되어 꽃눈의 형성과 결실 그리고 과실의 품질이 불량하게 되므로 광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고 재식거리, 수형 등을 조절하여 잎이 겹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는 꾸준한 수분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연 강수량 중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므로 열과나 병해충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비가림 시설 재배, 유대 재배(봉지씌우기) 등 관리가 필요하다.

자주 걸리는 병으로는 잣빛곰팡이병과 가루깍지벌레가 있으며 병충해와 포도 알숙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열과는 영농활동 부주의로서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6. 복숭아

복숭아나무는 수확기 직전부터 수확기에 걸쳐 강우가 많을 때에는 복숭아의 품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병 발생이 많아진다.

겨울철 저온으로 심한 동해를 받아 나무가 죽거나 꽃눈 피해로 수량이 감소하는 등 수확을 거의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확기 이후 동해방지책을 세워 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써야한다.

과수 중에서 복숭아나무는 내습성이 약한 편에 속하며 물 빠짐이 나쁜 곳에서는 습해 피해를 받아 발육이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바람뿐 아니라 냉해, 호우피해로도 조기낙과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냉해피해를 입은 과실은 정상적인 과실에 비해 크기나 무게가 줄어들 수 있다.

세균구멍병, 잣빛무늬병, 복숭아순나방 등 병충해를 입기 쉬우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복숭아 품목은 세균구멍병에 한하여 피해의 50%를 보상한다. 세균구멍병은 잎에는 수침상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확대되어 갈변하며 시간이 지나면 그 부위가 탈락되어 구멍이 뚫린다. 잎의 기공이나 바람에 의해 발생하는 잎의 작은 상처 등을 통하여 침입하며, 병원균 월동 부위에 형성된 코르크층의 일부가 파괴되어 병반이 확대된다.

그림 3-3 세균구멍병



7. 자두

대부분의 품종이 자가불합성으로 수분수 혼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품종에 대하여 수분수 2~3개 품종을 20~30% 혼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품종이 섞여있지 않으면 수정불량으로 인한 착과수 감소가 유발될 수 있어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착과수 감소와 구분 시 참고하여야 한다.

자두나무는 다른 핵과류와 같이 과습을 싫어하는데 특히 물이 고이기 쉬운 토양에서는 뿌리가 말라죽거나 병충해(수지병, 검은점무늬병)도 많이 발생한다. 대석조생 품종에는 주머니병 발생가능성이 있어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8. 밤

밤나무가 월동 중에 받는 피해는 겨울철 낮은 온도에 의한 동상해 피해가 대부분이나 잎이 피는 시기가 특히 빠르거나 생장 정지기가 매우 늦어 가지 내 수분유동이 왕성할 때 이른 서리 또는 늦서리가 내리는 경우는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밤나무는 뿌리 발달이 심근성이어서 내건성이 비교적 강한 편이나 어릴 때부터 생육이 왕성하여 많은 수분을 요구한다. 따라서 토심이 낮은 곳에서는 뿌리가 얇게 발달하여 여름철에 강우량이 적을 경우 한발 피해로 수세가 약해지고, 과실의 발육이 장애를 받게 되며 심하면 생리적 낙과 피해를 받을 수 있다.

개화기인 6월 초순부터 하순경에 강우기간이 길면 결실이 불량하게 되고, 여름철 강우가 많고 공중습도가 높아 고온다습하면 흰가루병의 발생이 많으며, 과실의 성숙기에 강우가 많을 때에는 과실탄저병의 피해가 심할 수 있다.

9. 호두

여름철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온화한 산간지방으로 비가 적은 곳과 북서풍의 맞바람이 불지 않고 습기가 적은 곳이 재배적지이다.

일반작물에 비하면 호두나무는 심근성이지만 상당량의 뿌리가 표토에도 분포되어 있으며, 그 속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한다. 그러나 많은 과수원은 경사지에 위치하여 집중호우 시 토양이 침식되기 쉬우므로 표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청설모 등 조수해 피해를 입기 쉬워 울무나 갓 등 방재시설이 필요하고 탄저병, 가지마름병, 박쥐벌레유충 등 병충해 피해를 입기 쉽다.

10. 참다래

참다래는 다른 과수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해충이 적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수 중 가장 친환경 재배에 적합한 수종이다.

참다래는 건조에 매우 약한 과수로 6~7월 과실의 급격한 비대 성장기에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어야 고품질의 큰 과실을 생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우량 대부분이 여름 장마철인 6~8월에 집중되어 있어 비가림 시설 등 관수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장마철에 습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과실연부병 등 병충해 피해가 있을 수 있다.

11. 대추

대추는 기후 적응성이 매우 강한 과수로서 대추나무는 내한성과 내서성이 강하다. 최저기온이 -30°C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으로서 개화기인 6월 중·하순에 비가 적게 오고 태풍의 피해가 적은 내륙 지방이 대추재배에 적합하다. 대추는 크게 재래종과 사과대추(왕대추)로 구분하는데 재래종은 생과상태로 상품가치가 있는 생대추와 말린 상태로 상품가치가 있는 건대추로 나눌 수 있다. 사과대추와 생대추의 경우 장마 뒤 강한 햇빛을 동반한 폭염이 찾아오면 열과피해를 입을 수 있어 비가림 시설 등 관수 관리가 필요하며 노지 대추는 수정시기에 냉해피해를 입으면 과실 착과가 불량하여 수확량이 크게 감소 할 수 있다. 생대추의 경우 생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확 한달전부터 농약 등 방제를 하지 않는다. 녹병, 흰가루병, 썩어나방, 빗자루병 등 병충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빗자루병의 경우 병이 깊어지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기도 한다. 대추는 나무손해보장 특약이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할 정도로 빗자루병이 심화될 경우 농가의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

그림 3-4 녹병, 빗자루병



녹병



빗자루병

12. 매실

매실나무는 연평균기온이 12~15℃ 되는 따뜻한 지역에서 안전하게 재배될 수 있다. 그러나 매실은 다른 과수보다 휴면기간이 짧아서 겨울철의 온도 변화에 예민한 편이다, 그러므로 겨울철이 따뜻한 남부지방이나 따뜻한 해에는 개화기가 너무 빨라져 서리 피해를 받기 쉬워 불완전화의 발생이 많을 뿐만 아니라 꽃가루를 옮겨주는 꿀벌과 같은 방화곤충(訪花昆蟲)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여 충분한 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실률 또한 낮아진다. 반면에 겨울철 기온이 낮은 지방 또는 겨울철 기온이 낮았던 해에는 생육이 늦고 개화기가 자연히 늦어져서 봄동상해의 피해를 피할 수 있고 대부분의 품종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개화되어 방화 곤충의 활동이 활발하므로 수분과 수정이 잘 이루어져 착과량이 증가한다. 대체로 남부의 따뜻한 지방에서 개화기가 빠른 해일수록 개화기가 늦은 해 보다 결실이 나쁠 때가 많은데 이는 개화기에 봄동상해의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매실나무는 뿌리가 땅속 깊이 뻗지 않는 천근성이기 때문에 특히 가뭄에 약하다. 또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은 장마철과 여름철에 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데 5월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아 과실 수확 직전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어 과실 비대가 나빠지거나 수확을 앞둔 과실에 가뭄피해를 입기 쉽다.

매실은 껍질채 이용되는 과실이기에 대추와 같이 수확 전 농약 등 방제를 하지 않아 검은별무늬병, 잿빛무늬병, 유리나방 등 병충해 피해가 많다.

13. 살구

재배 적지는 온대 북부지역의 비교적 한랭한 지역이 적합하다. 반면에 감귤 재배지와 같이 겨울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휴면 타파가 불완전하여 생리적 낙화가 일어나고 성숙기에는 기온이 높아 과실의 성숙이 늦어져 재배가 어렵다. 살구나무는 매실나무보다 직립성이 강하고 크게 자란다. 특히 유목기에는 나무의 세력이 왕성하여 수관 확대가 빠르고 결실연령에 도달하는 것도 빨라 봄동상해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여 늦서리 피해에 의한 착과 부족 현상으로 수관 확대가 더욱 쉬워 거목이 되기 쉽다.

살구나무의 겨울철 휴면은 매실보다 깊고 내한성도 자두보다 강하여 -20°C 이하에서도 견딜 수 있지만 개화 중이나 개화 직후의 늦서리나 추운 바람은 꽃기관이나 어린 과실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피해를 줄뿐 아니라 방화곤충의 활동을 어렵게 하여 결실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과실 성숙기의 강우는 열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살구나무의 뿌리는 수분에 매우 약하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과수원이나 물빠짐이 나쁜 곳에서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물이 토양 속에 고이지 않도록 물빠짐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14. 오미자

내한성이 강하고 고온에 약하므로 오미자는 여름철 고온을 피할 수 있는 기후를 지닌 서늘한 산간 지역이 오미자의 재배적지이다.

오미자의 뿌리는 천근성이라서 가뭄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서북향은 석양빛에 의해 과실 표면이 타는 일소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냉쿨성 다년생 식물로 V자 형이나 울타리형으로 유인틀을 설치하여 재배한다.

15. 유자

감귤류 중에서 유자는 내한성이 강하지만 유자의 온도 조건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지역이 재배하기에 좋다. 유자 재배지의 한계는 특히 겨울철의 저온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특히 겨울철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 잎에 동해를 입기 쉽다. 이때 가뭄이 계속되고 찬 북서풍이 불게 되면 탈수현상이 심하게 되어 쉽게 동해피해를 받게 되고 낙엽이 지게 되고 심하면 나무가 고사하기도 한다.

유자는 다른 과수에 비해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 및 겨울철에 강수량이 많은 곳이 좋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은 유자를 재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으나 대부분의 강수량이 6~8월에 집중되기에 봄, 가을, 겨울에는 가뭄을 타게 되므로 건조기에는 충분히 관수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흑점병(검은점무늬병)이나 굴소리진딧물의 병충해 발병이 많으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16. 오디

오디는 심은 후 2년차부터 오디가 결실되고 수확이 가능하므로 오디의 수량성 확보를 위해 어릴 때부터 가지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디는 과습에 약하므로 물이 잘 빠지면서도 건조하지 않은 땅이 좋으며 냉해피해로 인한 착과감소, 강풍피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주요 재해이다.

균핵병, 뽕나무이, 흰불나방(유충)등 병충해 발병도 많아 미보상비율 적용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3-5 균핵병, 뽕나무이



균핵병



뽕나무이

17. 감귤

일반적으로 감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감귤은 주로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된다. 감귤은 발아가 빠른 경우 동상해 피해를 입거나 추위가 3~4월에 내습하면 발아된 눈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햇빛이 적어도 잘 자라는 내음성 작물이지만 햇빛이 부족하면 꽃눈형성이 저해되고 잎의 발육이 좋지 않아 수량도 적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온주밀감의 꽃눈이 형성되는 겨울철에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으면 그 해에는 꽃의 양이

적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장마철 햇빛 부족은 낙화 및 낙과를 촉진시켜 전체 수량이 감소하기도 한다.

해거리가 심하고 제주지역의 특성상 바람으로 인한 풍상과가 많지만 낙과는 잘 되지 않는다.

18. 복분자

복분자는 줄기의 수가 60~90%를 차지하고 있어 겨울철에 가지가 얼어 죽거나 말라죽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겨울철 일교차가 심하면 낮 동안에는 상대습도가 낮아지면서 줄기의 상처 부위를 통해 수분이 수탈되어 건조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겨울철에 한풍을 맞을 수 있어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지역은 가지가 고사하기도 한다.

뿌리는 지표면 30cm 이내 지점에 분포되어 있고 염류에 약할 뿐만 아니라 습해에 잘 견디지 못한다.

고온다습과 강우가 잦을 때 탄저병 발생이 증가하는데, 병원균 포자는 비바람, 태풍 등에 의하여 전파되기 쉽다. 특히, 7월에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발생이 심해지고, 병원균 포자가 빗방울에 의해 튀어 확산되어 피해를 증가시킨다.

19. 무화과

무화과는 비교적 온도가 높고 비가 적게 내리며, 여름철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기후대에 적합한 나무이다.

성숙기에 강우가 잦을 경우 과일에 열과가 생기거나 산패하기 쉬워 품질이 저하되고, 잦은 강우에 의하여 일조량이 부족해지면 착색이 불량하여 품질이 저하되고 수량도 감소한다

무화과 과수원은 비가 내린 후 곧바로 배수가 되어 침수가 없을 정도로 물 빠짐이 좋아야 한다.

역병에 걸리면 과일이 쉽게 낙과하고 역병 등 병충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시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의 구분이 필요하다.

20. 벼

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온과 수온의 영향은 생육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벼의 생육초기부터 어린 이삭이 형성되는 시기(이삭 패기 전 약 25일)까지는 기온보다 수온의 지배를 더 크게 받으며, 어린 이삭이 형성된 이후에는 수온보다 기온에 의해 벼 생육이 영향을 받는다.

벼의 일생 중에 수잉기, 출수기, 이앙기에 필요한 물의 양이 많은 편이고, 헛가지 치는 시기에는 물공급이 필요 없는 시기이다. 논벼는 수도작으로 재배되어 가뭄에 취약하므로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병충해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을 때 총 7가지의 병충해를 보장한다. 병해로는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세균성벼알마름병을 보장하고 충해로는 먹노린재와 벼멸구를 보장한다.

그림 3-7 도열병



도열병은 벼의 유묘기부터 수확기까지 전 생육기를 걸쳐 발생하며, 피해부위별로 보면, 잎, 줄기, 목, 가지, 벼알, 썩은 잔해물까지도 침해한다. 이삭목과 이삭줄기는 광합성 산물이 이삭으로 이행되는 단 하나의 통로로서 이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면 이삭 전체가 말라죽거나 쪽정이가 된다.

흰잎마름병은 저습지대 관수피해 논, 풍수해 피해지역이나 질소질 비료오용으로 발병되며 출수기 전후 잎에 발생 잎의 선단부나 가장자리에 황록색의 수침상

병반 줄무늬가 생긴다. 태풍 후나 침수지에서는 병징이 급격히 진전된다.

줄무늬잎마름병은 조기과중 및 조기이앙 하였을 때 주로 발병하며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였을 때도 발병한다. 전염된 잎은 상하로 노란 줄무늬가 나타나며 새 잎은 말린 채 퍼지지 않고 늘어져 말라죽는데 이 병에 걸린 포기는 이삭이 나오지 못한다.

깨씨무늬병은 갈색 반점이 생긴 후 커질수록 가운데 부분은 회색, 바깥 부분은 갈색의 병반으로 변한다. 벼의 초기 생육이 너무 왕성하거나, 생육이 쇠퇴하면 다량으로 발생하고 야간 기온이 높고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이 지속되어도 많이 발병한다.

세균성벼알마름병은 씨앗 전체가 초기는 회백색, 후기에는 옅은 황색으로 변한다. 주로 수확기 이삭에서 발생하고 벼의 출수 개화기에 고온 다습하면 발병하기 쉽다.

그림 3-8 먹노린재



먹노린재는 약충과 성충이 낮에는 벼 포기 아래부위에서 줄기를 빨아먹고, 논둑에 가까운 논 가장자리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벼멸구는 비옥지나 습답에서 피해가 크며 암갈색, 회갈색 병반이 생기고 피해를 받은 부분이 둥근 모양으로 고사된다. 벼대의 아랫부분 주로 수면 위 10cm 부위에 서식하면서 흡즙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쉽게 도복되고 심하면 고사하기도 한다.

21. 밀

밀 생산에 대한 재배적 측면에서 문제점은 벼 수확 후 논의 과습으로 과중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 수확하고 건조하여야 하는데 수확시기가 장마기와 겹쳐 수확기간이 길어지면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출수와 개화기에 과도하게 기온이 낮거나 높으면 수정이 저해되어 불임이 될 우려가 있으며 등숙기의 기온이 급상승하면 걸마르기 쉽고 등숙기간이 짧아지면 종실의 발달이 불량해진다. 등숙기의 기온은, 특히 밤에 온도가 높고 토양이 건조하면 줄기와 잎이 푸른데도 갑자기 퇴색되어 걸말라 익는 현상이 나타난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녹병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22. 보리

출수기경(5월)에 높은 온도와 잦은 강우가 지속되면 맥류 전체의 수량성 감소와 함께 발아 저하 등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리는 산성 토양에 극히 약하며 쌀보리는 걸보리보다 더욱 약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잘 견디는 특성을 갖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붉은곰팡이병, 감부기병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23. 마늘

마늘은 내한성이나 내서성이 아주 강한편은 아니기에 폭염이나 냉해의 피해를 입기 쉽다.

12시간 이상 장일조건에서 구 비대가 촉진되고 12시간 이하의 단일조건 하에서는 구 비대가 억제되며 별마늘 발생이 많아진다.

토양이 건조하게 되면 토양 중에 있는 양분이 흡수 이용하기 어려운 불가급 태로 되어 생육에 지장을 주며, 과중 후나 월동 시에 건조하면 뿌리의 발육이 불량하여 동해를 받게 된다.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는 마늘의 품질이 나빠지고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등 병해충의 피해도 많아지게 되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림 3-9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고자리파리(유충)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고자리파리(유충)

24. 양파

양파는 저온에는 비교적 강하나 고온에는 약한 작물로서 경엽 생육시 온도가 높을수록 성장도 빠르나 아울러 노화도 빠르다. 고온에서는 생육이 둔해지고 고온이 계속되면 생육이 정지되고 휴면에 들어간다.

유묘기에는 뿌리가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습하거나 과도하게 건조한 상태가 아니면 큰 피해는 없으나, 월동 후 생육이 재생된 다음에는 건조 및 과습이 생육과 구 비대에 피해가 크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노균병, 잎마름병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림 3-10 노균병, 잎마름병



노균병



잎마름병

25. 고추

고추의 뿌리는 주로 토양 속에서 깊이 자라지 않고 흙의 표면에 분포하는 천근성(淺根性, 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토양이 건조하면 수량이 낮아지며 여러 가지 생육 장애가 발생한다.

고추는 역병, 탄저병 등 병해충 피해를 입기 쉬운 작물이라 병해충을 등급별로 나누어 보장해 준다.

<고추 병해충 등급별 인정비율>

구분		병·해충	인정비율
품목	급수		
고추	1등급	역병, 풋마름병, 바이러스병, 세균성점무늬병, 탄저병	70%
	2등급	잿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50%
	3등급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	30%

역병은 육묘상에서 전 생육기에 발생된다. 노지에서는 6월 초순부터 발생되고, 장마기에 주로 전반되어 8,9월에 발생이 가장 심하다. 토양이 장기간 과습하거나 배수가 불량하고 침수되면 병 발생이 조장되는데 연작지에서 발생이 더욱 빈번하다. 탄저병은 고온다습과 강우가 잦을 때 병 발생이 증가하는데, 병원균 포자는 비 바람, 태풍 등에 의하여 전파되기 쉽다. 특히, 7월에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발생이 심해지고, 병원균 포자가 빗방울에 의해 튀어 확산되는데 이로 인해 30% 이상 수량이 감소하여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잿빛곰팡이병은 여름철 장마기때 주로 발생하며 과실과 줄기 및 가지에서 발생한다. 과실에서는 꽃고추의 꽃이 달린 부위에서부터 회색으로 물러 썩으며 진전되면서 과실의 안쪽으로 썩어 올라간다. 감염부위에는 잿빛의 곰팡이가 많이 형성된다. 줄기와 가지에서는 줄기와 가지가 빙 둘러 썩으며 병반이 확대되고, 감염부위 위쪽은 말라죽게된다.

시들음병은 초기에는 아랫잎이 시들며 밑으로 처지는데, 역병의 초기 증상과 비슷하지만 병 진전이 느리고 잎이 약간 누렇게 변하면서 서서히 죽는다. 병든 뿌리나 줄기는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보이고 껍질은 쉽게 벗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3-11 역병, 탄저병



역병



탄저병

26. 감자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감자는 재배기간에 따라 2월~8월에 재배하는 봄감자와 6월~12월에 재배하는 가을감자로 구분한다.

봄감자는 모래나 왕겨를 너무 두껍게 덮으면 감자싹이 너무 길어져 아주심을 때 싹이 상처를 받기 쉽고 흙덮기가 어려워 싹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되므로 서리피해를 받기 쉽다. 또한 너무 얇게 덮으면 싹틔움상이 말라 감자싹의 자람이 늦어지게 되므로 알맞은 두께로 덮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래를 덮은 다음에는 미지근한 물을 골고루 충분히 뿌려주고 비닐로 터널을 만들어 보온을 하는데, 밤에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비닐 위에 거적을 덮어 싹틔움상 내의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하며, 낮에 상내의 온도가 올라가면 잠시 비닐을 걷어 바람이 통하게 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을감자는 원래 서늘하고 밤과 낮의 온도교차가 큰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저온성 작물로 단일조건에서 잘 자란다. 가을철 기온은 고온에서 점차 저온으로 떨어지며 주·야간의 온도차가 크고 일장도 단일로 변화되므로 감자의 생육조건에 매우 유리하다.

감자 품목의 주요 병충해는 더듬이병, 진딧물등 이며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일반적인 다른 품목들과는 달리 병충해를 보장한다.

더덩이병은 감자의 수량이나 저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나 감자 품질, 특히 외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병해이다. 괴경에 나타나는 병반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지름 5~8mm 정도의 원형이지만, 병반이 합쳐져서 나타날 때는 모양이나 크기가 불규칙한 경우도 있다.

진딧물은 식물의 진액을 빨아먹어 말라죽게 만드는 해충이다.

27. 고구마

고구마는 온도가 높고 햇볕이 많은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다. 15~35℃ 범위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생육이 왕성하며 대체로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무상기간)이 긴 환경에서 수량이 증가한다.

고구마 묘를 심은 후에 비가 계속 내리거나 구름이 끼어 일조가 부족하면 덩이뿌리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생육기의 일조 부족은 광합성에 영향을 주어 수량 감소의 원인이 된다. 즉 일조가 부족하면 지상부에서 생산된 물질이 덩이뿌리로 옮겨져 저장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지상부의 줄기와 잎 수량은 오히려 증가되나 고구마 수량은 크게 감소된다. 토양의 건조가 심하지 않는 한 일조가 많아야 좋으며 단일조건이 덩이뿌리의 생육에 유리하다.

고구마는 건조에 비교적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생육시기에 따른 수분의 영향은 매우 크다. 생육기간 중에 강우량이 많으면 토양이 과습해져 토양통기성이 낮아지고 일조부족과 기온 저하를 초래하여 줄기가 도장하며, 줄기마디에서 뿌리발생이 심하여 불리하고 덩이뿌리의 비대 감소를 유발하여 고구마의 건물 생산 및 수량이 낮아진다. 수확기 때 강우가 많으면 고구마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저장력이 약해진다. 토양수분이 많으면 고구마 비대가 나빠져서 잎에서 만들어진 동화물질이 고구마로 이동되지 않고 줄기와 잎의 생장에 이용되므로 지상부의 생육만 왕성하게 된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검은무늬병, 담배거세미나방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28. 옥수수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와 기계화가 용이한 키가 큰 작물이다. 줄기가 튼튼하여 기계로 병해충 방제를 쉽게 할 수 있지만 강풍이나 조수해 피해로 인해 도복피해를 입기 쉽다.

생육기 초반에 가뭄이 지속되면 파종이 지연되고 발아가 불량할 수 있다. 또 온도가 낮으면 줄기가 약해져 도복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장마기에 비가 많이 오면 습해로 인해 감부기병 등 병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29. 양배추

재배기간에 따라 봄재배와 가을재배가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대상인 가을재배는 고온기인 7월에 파종하여 가을의 적온기에 결구를 완성시키는 작형으로 생육초기의 고온에 견딜 수 있고 생육기간 중에 비교적 적은 일조 조건하에서도 결구가 잘 되는 양배추 품종이 적합하다.

고온에서는 생육이 느려지고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진다. 저온에 대한 내한성은 강하나 품종과 생육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을재배용 품종은 -10°C 까지는 동해에 잘 견디며 그 이하의 저온에서도 단시간 경과 시에는 상해를 입지 않는 품종도 있다. 내서성은 비교적 약하며 30°C 이상의 고온에서는 생육의 장애를 받는다.

양배추는 연작장애가 발생하므로 십자화과 채소를 재배한 밭에서는 3~4년간 간격을 두고 재배하는 것이 좋다. 토양온도가 저온에는 조기추대, 고온에서는 결구형성이 잘 안되며, 가뭄에는 열구 등의 생리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검은 썩은병, 진딧물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30. 콩

콩은 1g의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물의 양, 즉 이수량이 비교적 높은 작물이므로 가뭄피해에 취약하다.

염분에 견디는 성질이 약해 간척지 등 염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염분 농도가 0.03% 정도인 밭에서 자라기는 하나 심한 장해를 입는다.
재배기간 중 잦은비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 자주무늬병 등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며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림 3-12 자주무늬병



31. 팔

팔은 생육기간 중 너무 건조하면 식물체의 성장과 결실률이 떨어지고 진딧물 발생이 많아져서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 또한 과습한 상태에서도 생육이 나빠 잘록병 등의 발생이 많아진다. 꽃피는 시기 및 익는 시기에 잦은 강우에 세찬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지고 꼬투리의 발육이 나빠지며, 쓰러짐이 발생하게 되어 수량과 품질이 동시에 떨어진다.

그림 3-13 바이러스병



작물이 어릴 때에는 가뭄에 비교적 잘 견디지만 성장하며 흡수분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가물면 정상적인 성장에 직접 영향을 받으며, 꽃과 꼬투리가 떨어지고 빈 꼬투리가 생기며 씨알이 작아진다. 흡수분이 지나치면 통기가 나빠지고 근류균의 생육이 나빠져 식물체가 일찍 쇠퇴하게 된다.

어릴 때 늦서리와 성숙할 때 저온과 일찍 오는 서리에 매우 약하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바이러스병, 담배거세미나방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32. 브로콜리

이용 부위를 기준으로 할 때 브로콜리는 화채류로 분류되어 꽃봉오리인 화퇴를 수확 대상으로 하며, 물빠짐이 불량하거나 습한 곳, 그리고 사질토양에서 재배하면 생육이 불량해진다.

8월~10월에 비가 잦으면 습해로 인해 이상꽃봉오리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검은썩음병, 도둑나방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33. 메밀

메밀은 생육 기간에 온도와 수분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때 메밀 착립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되어 그 결과 종실 수량을 감소시킨다. 잦은 비와 무더운 기상 조건이 겹치게 되면 메밀 착립 및 종실 발육이 좋지 않다.

산성 토양에서도 내성이 강하고 사질이나 식양토 같은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 가장 잘 적응하지만 석회석 함량이 높은 토양이나 다습한 점질 토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또한 점질 토양은 표면이 딱딱해지면 파종 후 출아가 불량하여 입모 주수 확보가 어렵게 된다.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정을 저해하거나 접합체 발육 불량 및 이상을 초래하므로 가뭄이 지속되거나 고온일 때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흰가루병, 진딧물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34. 호박

박과에 속하는 1년생의 덩굴성 초본 식물로 줄기는 덩굴성으로 길게 자란다. 뿌리는 깊고 넓게 분포하여 흡비력과 내건성이 매우 강하다.

생육초기 저온피해로 착과가 불량할 수 있고 4~7월 가뭄과 고온피해로 과실비대 불량, 생육불량, 일소피해를 입기 쉽다.

잦은 비로 인한 습해와 탄저병등 병해충 피해를 입기 쉽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아메리카잎굴파리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림 3-14 단호박 일소피해



35. 당근

당근은 수분에 민감한 작물로 과습하면 표피가 거칠어지고 병충해가 생기며 뿌리가 옆으로 커진다. 한편 건조하게 되면 뿌리의 신장, 비대, 착색이 저해되며 수분이 불규칙적이라면 뿌리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저온이 지속되면 뿌리가 불량하고 착색이 저해되는 등 냉해피해를 입기 쉽고 제주 화산회토의 경우 비와 태풍으로 흙이 유실되어 뿌리 상단부 노출이 심하므로 숙음 및 복주기가 필요하다. 뿌리 상단부가 노출되면 녹색으로 변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썩 등 조수해 피해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균핵병, 뿌리썩음병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36. 배추

배추는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배추는 호냉성 채소로 생육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잘 자라며 생장이 촉진되지만 결구를 시작하면 고온에는 약해져서 결구가 불량하며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해진다.

점질토 받은 물 빠짐이 좋지 않으므로, 배추 재배에는 사질토 밭보다는 비교적 유리하지만 물이 너무 빠지지 않으면 배추 무름병 등의 발생이 쉽고, 물이 마르면서 흙이 단단해지면 토양의 통기성이 불량해지는 단점이 있다.

배추의 구성성분은 대부분이 수분이며 짧은 기간에 왕성하게 발육하므로 비교적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배추는 건조에 약하여 생육 초기에 가물면 잎 발생과 생육이 억제되어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과습하면 뿌리가 썩지 못하고 생육이 불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배추 생육 초기인 8~9월에는 건조하므로 가뭄피해를 입기 쉽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무름병, 배추흰나비유충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림 3-15 무름병



37. 무

우리나라의 무 재배는 가을 김장무 재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조기 출하를 하기 위해 하우스 재배를 하는 봄무 재배,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고랭지 무, 따뜻한 제주지역에서의 월동무가 가입대상이다.

무는 재배하기에 서늘한 기후가 적당하고, 추위와 더위에는 약한 편이다. 저온에서도 비교적 견디기는 하지만 성장을 마친 무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동해피해를 입을 수 있다.

뿌리가 터지는 것은 수확기가 늦어지면 일어나기 쉬우며, 토양수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토양수분이 많으면 뿌리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뿌리가 터질(열근) 가능성이 크며 자라는 중간에 건조해도 발생하기 쉽다. 뿌리가 터지는 시기는 일정하지는 않지만, 재배 시기상이나 토양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되며, 특히 높은 수분상태보다는 건조했다가 수분이 많아지는 경우에 터지는 현상이 많아진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더랭이병, 배추흰나비(유충)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38. 시금치

고온에서는 장해를 받기 쉬운 반면, 저온에는 아주 강해서 0℃ 이하에서도 한해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는 -10℃에서도 견딘다. 한해를 받아 지상부가 말라 죽더라도 뿌리가 살아남아 기온이 상승하면 다시 싹이 난다. 그러나 고온에는 아주 약해서 25℃ 이상에서는 병해가 많이 발생하기 쉽다.

산성토양에서는 극히 약하며 pH 5.0 이하에서는 발아가 나쁘고 발아를 해도 떡잎이 작아서 생기를 잃으며, 잎 끝과 주변이 점차 황화하고 뿌리 끝이 황갈색이 되면서 발육이 정지되어, 결국에는 말라 죽을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흰가루병, 시금치 꽃파리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39. 파

재배시기에 따른 분류는 봄 파종과 가을 파종 재배로 나눌 수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대파와 쪽파(실파)로 나뉘며 쪽파(실파)는 다시 사업지역과 파종 및 수확시기로 가입대상이 1형·2형으로 구분된다.

<쪽파(실파)의 가입대상 구분>

구분	내용
1형	충남 아산 지역에서 9월 15일 이전에 파종하거나, 전남 보성 지역에서 재배하여 당해연도에 수확하는 노지 쪽파(실파)
2형	충남 아산 지역에서 9월 15일 이후에 파종하여 이듬해 4~5월에 수확하는 노지 쪽파(실파)

파는 비교적 냉랭한 기후조건에서 생육이 왕성하다. 파의 습해는 온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저온에서는 다습(토양수분이 포화상태)이 계속되어도 생육 불량이나 뿌리의 고사현상은 발생하지 않지만 25℃ 이상의 고온에서 다습하게 되면 잎이 말라 들어가고 뿌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전체가 말라서 죽게 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흑색썩음균핵병, 파굴파리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40. 인삼

인삼은 생육기간 동안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이지만 출아기인 봄철에 냉해가 유발되기 쉽다.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서 해가림시설 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에 비하여 수분 증산량이 적고 가뭄에 잘 견디는 내한성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5~6월의 뿌리 신장기 및 비대기에 장기간 가뭄을 겪으면 뿌리 신장 발육이 불량해져 후기생육도 불량해질 수 있다.

4~5월에는 강우량이 적어 토양수분이 부족하고, 강우량이 집중되는 7~8월에는 토양과습 등으로 인해 적변(뿌리 표면이 붉게 변하는 증상) 및 근부병(뿌리썩음병)이 증가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근비대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신개간지나 척박한 토양에서는 인삼의 생육이 부진하지만 너무 비옥한 토양은 뿌리썩음병 등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41. 차

차는 40℃를 넘어가는 고온에서는 잎이 타는 고온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새싹이 동해를 받아 고사할 수 있으며, 심하면 가지가 고사하는 등 피해가 많아질 수 있다.

차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적당한 토양은 약산성 토양이다. 반면에 pH 6~7의 중성 토양에서는 차 생육이 좋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강산성인 pH 3~4에서도 생육을 하는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다. 차 떡병 등 병충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림 3-16 인삼 뿌리썩음병, 차 떡병



인삼 뿌리썩음병



차 떡병

제3절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내용

1. 과수작물

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뽕은감)

구분	약관	내용	
과실 손해 보장	보통약관 (기본)	적과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적과종료 전의 과실손해를 보장
		적과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로 인한 적과종료 후의 과실손해를 보장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 (선택)	해당 특약 가입 시 적과종료 이전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를 제외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으며, 적과종료 후에는 보통약관의 내용과 같이 보장	
	적과종료이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약 (선택)	해당 특약 가입 시 적과종료 이후에는 가을동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적과종료 이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내용과 같이 보장	
	적과종료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약 (선택)	해당 특약 가입 시 적과종료 이후에는 일소피해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으며, 적과종료 이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의 내용과 같이 보장	
나무 손해 보장	나무손해보장 특약 (선택)	해당 특약 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나무의 손해를 보장	

1) 특징

- 가) 가입대상 품목은 과수 4종으로 사과, 배, 단감, 뽕은감 4개 품목이다.
- 나) 보장방식은 적과 전 종합위험보장방식이다. 적과 전 종합위험보장방식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기간 개시일 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 (사과·배 6월 30일, 단감·뽕은감 7월 31일 초과불가)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 다) 보장개시일부터 통상적인 적과를 끝내는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 당시 정한 평년착과량과 적과 종료 직후 조사된 적과 후 착과량의 차이를 보상하고, 적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는 태풍(강풍) 및 우박과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할 시에 약관에 따라 해당 재해로 감소된 양을 조사하여 보상한다.

< 과수 4종의 보험기간별 보장 재해 >

구분	적과 전	적과 후
보험 기간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적과 종료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배, 사과 : 6월 30일 - 단감, 뽕은감 : 7월 31일	적과 종료 이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보장 재해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2) 보장 유형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과실 손해 보장	사과, 배, 단감, 뽕은감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 자기부담감수량 = 기준수확량 × 자기부담비율	종합위험 착과감소보험금 =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 감수량) × 가입가격 × (50%, 70%) 특정위험 과실손해보험금 = (적과 후 누적감수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자기부담감수량은 착과감소보험금에서 차감된 만큼 과실손해보험금에 적용된다.
나무 손해 보장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 결과주수

3) 상품 내용

가)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목적인 가입대상 품목의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가입대상 품목	재해발생 시기	보장하는 재해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적과종료 이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나) 보험기간

구분		가입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	약관		대상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과실 손해 위험 보장	보통 약관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사과, 배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 뽕은감	계약체결일 24시	적과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적과 종료 이후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적과 종료 이후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사과, 배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판매개시연도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단감, 뽕은감	판매개시연도 9월 1일
				일소피해 보장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적과종료 이후
나무 손해 위험 보장	특별 약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사과, 배, 단감, 뽕은감	판매 개시연도 2월 1일. 다만, 판매개시연도 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월 31일	

주1) “판매개시 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 연도
의 다음 연도를 말한다.

주2) 과실손해위험보장에서 보험의 목적은 판매개시 연도에 수확하는 과실을 말한다.

다) 보험가입금액

(1) 과실손해위험보장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천원 단위 이하 절사)으로 한다. 이때, 가입수확량이 기준수확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제외되도록 가입수확량을 조정한다.

(2) 나무손해위험보장특약 가입금액

(가) 가입한 결과주수(이하“결과주수”라 한다)에 1주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입한 결과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결과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 가입수확량이 조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 차액보험료를 반환한다.

$\text{차액보험료} = (\text{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 \times \text{감액미경과비율}) - \text{미납입보험료}$ <p>※ 감액분 계약자부담보험료는 계약자부담보험료 중 감액한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부분</p>
--

<감액미경과비율>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품목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사과,배	70%	63%
단감,뽕은감	84%	79%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품목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사과,배	83%	78%
단감,뽕은감	90%	88%

(다) 차액보험료는 적과후착과수 조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후착과수 보다 큰 경우에는 지급한 차액보험료를 다시 정산한다.

라) 보험료

(1)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자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순보험료}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순보험요율} \times \text{할인·할증률} \\ \text{부가보험료}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부가보험요율} \times \text{할인·할증률} \end{aligned}$
--

(가) 순보험요율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부가보험요율

- ①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이라 한다.
- ②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2) 보험료의 환급

(가)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환급보험료 = 계약자부담보험료 × 미경과비율(별표)

※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②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③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다)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마) 자기부담비율

(1) 과실손해위험보장의 자기부담비율은 지급보험금을 계산할 때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로서,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2)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②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과수원으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③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3) 나무손해위험보장 특별약관의 자기부담비율 : 5%

바) 특별약관

(1)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로 인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2) 적과종료 이후 일소피해 부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후 일소피해로 인해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

보상하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적과 종료 이전에는 보험의 목적이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등의 재해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종합위험방식 상품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등 15개 품목)

구분	품목	가입가능약관							
		보통 약관	나무 손해 보장 특별 약관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별약관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조수해 (鳥獸害) 부보장 특별약관	동상해 과실손해 보장 특별약관	비가림시설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수확기 부보장 특별 약관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	복숭아	✓	✓	✓	-	-	-	-	-
	자두	✓	✓	-	-	-	-	-	-
	밤	✓	-	-	-	-	-	-	-
	호두	✓	-	-	-	✓	-	-	-
	매실	✓	✓	-	-	-	-	-	-
	살구	✓	✓	-	-	-	-	-	-
	오미자	✓	-	-	-	-	-	-	-
	유자	✓	✓	-	-	-	-	-	-
종합 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 방식	포도	✓	✓	✓	-	-	-	✓	-
	대추	✓	-	-	-	-	-	✓	-
	참다래	✓	✓	-	-	-	-	✓	-
수확전 종합 위험 보장 방식	복분자	✓	-	-	-	-	-	-	✓
	무화과	✓	✓	-	-	-	-	-	-
종합 위험 과실 손해 보장	오디	✓	-	-	-	-	-	-	-
	감귤	✓	✓	-	✓	-	✓	-	-

1) 특징

가) 가입대상 품목은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포도, 참다래, 대추,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 이다.

나)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품목의 보장방식은 종합 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이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비율이 자기부담비율 초과 시 보장한다.

- 이 중 호두 품목은 조수해(鳥獸害)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조수해(鳥獸害)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은 보험의 목적이 식재된 과수원에 조수해 방제를 위한 시설이 없거나, 전체둘레의 80%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 이거나, 가입 나무에 조수해 방제를 위한 시설이 80% 미만으로 설치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조수해 방제를 위한 시설은 목책기(전기목책기, 태양열 목책기 등), 울무, 갓모형, 원통모형을 말한다.

다) 포도, 참다래, 대추 품목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이며, 노지뿐 아니라 비가림시설에서도 재배되므로 비가림시설을 보장하여 농작물보험금과 비가림시설보험금으로 구분된다. 비가림시설은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를 보장하며 화재는 비가림시설 화재위험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장한다.

라) 복분자, 무화과 품목의 보장방식은 수확전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각 품목별 수확 이후에는 태풍(강풍), 우박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한다.

복분자 품목은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 보장대상이 된다. 또한 수확기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6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마) 오디, 감귤 품목은 과실손해 종합위험보장으로 보장하는 재해로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다.

바) 밤, 호두, 오미자, 대추, 복분자, 오디 품목은 나무손해보장특약이 없기 때문에 나무는 보장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보장유형

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구분	보험의 목적	지급금액
수확감소 위험보장 (기본)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복숭아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나무손해 위험보장 (선택)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수확량 감소 위험 추가 보장 (선택)	복숭아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 주1) 보상하는 손해는 종합위험(자연재해·조수해·화재)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주2) 수확량, 피해주수, 미보상감수량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한다.
- 주3) 평년수확량은 과거 조사 내용, 계약자가 제시한 출하 증빙자료, 해당 농지의 식재 내역, 과수원 현황 및 경작상황 등에 따라 정한 수확량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주4) 수확감소위험보장의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 시 선택한 비율로 한다.
- 주5) 미보상감수량이란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써 피해율 산정 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나)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보장	보험의 목적	지급금액
비가림 과수 손해 위험 보장 (기본)	포도, 참다래, 대추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화재 위험 보장 (선택)	비가림 시설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비가림시설)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피복재단독사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함(단,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음)
나무 손해 위험 보장 (선택)	포도, 참다래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선택)	포도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다)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보장	보험의 목적	지급금액
경작 불능 위험 보장 (기본)	복분자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과실 손해 위험 보장 (기본)	복분자, 무화과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나무 손해 위험 보장 (선택)	무화과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라)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보장	보험의 목적	지급금액
과실 손해 위험 보장 (기본)	오디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
과실 손해 위험 보장 (기본)	감귤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 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과실 손해 동상해 위험 보장 (선택)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 과실손해 동상해위험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사고피해율)} × 수확기잔여비율 × 동상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동상해 피해율 = 수확기 동상해 피해과실수 ÷ 기준과실수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min(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나무 손해 위험 보장 (선택)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함
과실 손해 위험 추가 보장 (선택)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times 10\%$

3) 상품내용

가)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목적인 가입대상 품목의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복숭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복숭아 품목의 보장하는 병충해는 세균구멍병에 한해 보장한다.

(2)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포도, 참다래, 대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3) 수확전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재해발생시기	보장하는 재해
복분자	이듬해 5.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이듬해 6.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무화과	이듬해 7.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이듬해 8.1일 이후	태풍(강풍), 우박

(4) 과실손해 종합위험보장방식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오디, 감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나) 보험기간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구분		가입대상 품목	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 통 약 관	수확감소 종합위험 보장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복숭아 : 10월 10일 - 자두 : 9월 30일 - 매실 : 7월 31일 - 살구 : 7월 20일 - 오미자 : 10월 10일
		밤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호두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개시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 별 약 관	종합위험 나무손해 보장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유자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복숭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방식

구분		가입대상 품목	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수확 감소 종합 위험 보장	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꽃눈분화기 다만, 꽃눈분화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추	신초발아기 다만, 신초발아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비가림 시설	계약체결일 24시	포도 :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대추 : 10월 31일
특별 약관	화재 위험 보장	비가림 시설	계약체결일 24시	포도 : 10월 10일 참다래 : 이듬해 6월 30일 대추 : 10월 31일
	나무 손해 위험 보장	포도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다만, 12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1월 30일
		참다래	판매개시연도 7월 1일 다만, 7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6월 30일
수확량 감소 위험 추가 보장	포도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3)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구분		보험기간			
약관	가입 대상 품목	보장	보장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약관	복분자	경작 불능 위험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개시시점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과실 손해 위험 보장	이듬해 5월 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5월 31일	
			이듬해 6월 1일 이후	태풍 (강풍) 우박	이듬해 6월 1일	이듬해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무화과	과실 손해 위험 보장	이듬해 7월 31일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7월 31일	
			이듬해 8월 1일 이후	태풍 (강풍) 우박	이듬해 8월 1일	이듬해 수확기 종료시점 다만,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약관	무화과	나무 손해 위험 보장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판매개시 연도 12월 1일	이듬해 11월 30일

(4)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구분		가입대상 품목	보험기간	
계약	보장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과실손해 종합위험 보장	오디	계약체결일 24시	결실완료시점 다만,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귤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11월 30일
특별 약관	과실손해 동상해 위험 보장	감귤	판매개시연도 12월 1일	이듬해 2월 말일
	나무손해 위험보장		발아기 다만, 발아기가 지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과실손해 위험 추가보장		계약체결일 24시	11월 30일

다) 보험가입금액

- (1) (과수) 보험가입금액 : 가입수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
- (2) (나무) 보험가입금액 : 가입한 결과주수(이하 “결과주수”라 한다)에 1주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한 결과주수가 과수원 내 실제결과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한다.
- (3) (비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 : 비가림시설의 m²당 시설비에 비가림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 (산정된 금액의 80% ~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보험가입금액 결정)

라) 보험료

(1)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순보험료}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순보험요율} \times \text{할인·할증률}$ $\text{부가보험료}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부가보험요율} \times \text{할인·할증률}$

(가) 순보험요율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나) 부가보험요율

- ①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이라 한다.
- ②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 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2) 보험료의 환급

(가)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text{환급보험료} = \text{계약자부담보험료} \times \text{미경과비율(별표)}$ <p>※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p>
--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②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③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다)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마) 자기부담비율

(1)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

(2) 과실손해위험보장 자기부담비율

(가)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호두, 살구, 유자의 경우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이다.

(나) (과실)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 ①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한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②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한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③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3) (비가림시설) 자기부담금

(가) 30만원 ≤ 손해액의 10% ≤ 100만원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나) 다만, 피복재 단독사고는 10만원 ≤ 손해액의 10% ≤ 30만원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4) 나무손해위험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비율 : 5%

(5)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복분자)

(가)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나)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2. 논작물(벼, 맥류)

구분	품목	가입가능약관			보장명 (보통약관)				
		보통 약관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이양·직파 불능 부보장 특별약관	이양·직파 불능 보장	재이양· 재직파 보장	수확감소 보장	경작불능 보장	수확불능 보장
종합 위험 수확 감소 보장	벼	✓	✓	✓	✓	✓	✓	✓	✓
	조사료용 벼	✓	-	-	-	-	-	✓	-
	밀	✓	-	-	-	-	✓	✓	-
	보리	✓	-	-	-	-	✓	✓	-

가. 특징

- 1) 가입대상 품목은 벼(조사료용 벼), 밀, 보리 이다.
- 2)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보장방식이며,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비율이 자기부담비율 초과 시 보상한다.
- 3) 벼품목은 보장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지 못하게 된 경우 이양·직파 불능 보장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양·직파불능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 시 이양·직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벼 품목은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해당 면적을 재이양(재직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양·재직파 보험금을 지급한다.
 - 벼 품목은 보장하는 재해로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자가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수확불능보장 대상이 된다.
 - 벼 품목은 병해충 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 병충해 7종(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을 보장한다.

- 4) 조사료용 벼 품목은 수확감소보장은 없고 경작불능보장만 가능하다.
- 5) 밀, 보리 품목은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감소보장, 경작불능보장이 가능하다.

나. 보장 유형

보장명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이양·직파 불능 보장 (기본)	벼	보상하는 손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 10%
재이양· 재직파 보장 (기본)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양(재직파)한 경우(1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 피해율 ※ 면적 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경작 불능 보장 (기본)	벼 밀, 보리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149p)
수확 불능 보장 (기본)	벼	보상하는 손해로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보험금 참조(150p)
수확 감소 보장 (기본)	벼 밀, 보리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벼 품목의 경우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는 병해충 특약 가입 시 보장

다. 상품 내용

1)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목적인 가입대상 품목의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7종(특약)
조사료용 벼, 밀, 보리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벼 품목(조사료용 벼 제외)의 보장하는 병충해 7종은 흰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이며 특별약관 가입으로 보장한다.

2) 보험기간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 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이양 직파 불능 보장	종합 위험	벼	계약체결일 24시	7월 31일
	재이양 재직파 보장			이양(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양(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7월 31일
	경작 불능 보장			벼 조사료용 벼	이양(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양(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밀 보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구분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약관	보장	대상 재해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통 약관	수확 불능 보장	종합 위험	벼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감소 보장		벼	이앙(직파)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이앙(직파)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밀 보리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병해 충 보장 특약	재이앙 재직파 보장	병해 충 (7종)	벼	보통약관 보험시기와 동일	보통약관 보험종기와 동일
	경작 불능 보장				
	수확 불능 보장				
	수확 감소 보장				

3)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단, 조사료용 벼는 보장생산비와 가입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4) 보험료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순보험료}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순보험요율} \times \text{할인·할증률} \\ \text{부가보험료}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부가보험요율} \times \text{할인·할증률} \end{aligned}$
--

(1) 순보험요율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2) 부가보험요율

(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이라 한다.

(나)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나) 보험료의 환급

(1)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text{환급보험료} = \text{계약자부담보험료} \times \text{미경과비율(별표)}$ <p>※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p>
--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나)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3)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5) 자기부담비율

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나)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1)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간척지농지의 벼, 보리 품목의 경우 20%, 30%, 40% 이다.

(2)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가)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나)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다)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다) 자기부담비율에(조사료용 벼는 보장비율)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1)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 (벼, 밀, 보리)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2) 조사료용 벼의 보장비율은 경작불능 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로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비율은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5%	90%	100%

(3)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라)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수확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1) 보장하는 재해로 재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수확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60%
15%형	보험가입금액의 57%
20%형	보험가입금액의 55%
30%형	보험가입금액의 50%
4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2)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3. 밭작물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등 19개 품목)

구분	품목	보장명 (보통약관)					
		병충해 보장	경작불능 보장	재정식 보장	재파종 보장	조기파종 보장	해가림시설 보장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방식	마늘	-	✓	-	✓	✓	-
	양파	-	✓	-	-	-	-
	감자 (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	✓	-	-	-	-
	고구마	-	✓	-	-	-	-
	옥수수 (사료용옥수수)	-	✓	-	-	-	-
	양배추	-	✓	✓	-	-	-
	콩	-	✓	-	-	-	-
	팥	-	✓	-	-	-	-
	차	-	-	-	-	-	-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	✓	-	-	-	-	-
	브로콜리	-	-	-	-	-	-
	메밀	-	✓	-	-	-	-
	단호박	-	✓	-	-	-	-
	당근	-	✓	-	-	-	-
	배추 (고랭지배추, 월동배추)	-	✓	-	-	-	-
	무 (고랭지무, 월동무)	-	✓	-	-	-	-
	시금치	-	✓	-	-	-	-
	파(대파, 쪽파)	-	✓	-	-	-	-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보장 방식	인삼	-	-	-	-	-	✓

가. 특징

- 1) 가입대상 품목은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茶),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월동, 고랭지), 무(월동, 고랭지), 시금치, 사과(대과, 쪽과), 인삼 이다.
- 2)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茶) 는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한다.
- 3) 고추,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시금치, 사과(대과, 쪽과) 품목은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으로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확이 개시된 후의 생산비보장보험금은 투입된 생산비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는 수확기에 투입되는 생산비는 수확과 더불어 회수(차감)되기 때문이다.
- 4)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이며 감자와 고추 품목은 병충해를 보장한다.
- 5) 마늘품목은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적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한다.
- 6) 조기파종보장은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 적용되며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적고, 10월 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보상한다.
- 7) 양배추 품목은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정식 보험금을 지급한다.
- 8) 인삼품목은 작물특정·시설종합위험방식으로 인삼(작물)은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의 특정한위험만 보장하며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의 종합위험을 보장한다.
- 9) 차, 고추, 브로콜리, 인삼 품목은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

나. 보장 유형

-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감자, 봄감자,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茶)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작 불능 보장 (기본)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 봄, 가을),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일정비율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단, 사료용 옥수수는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경과비율
수확 감소 보장 (기본)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콩, 팥, 차(茶),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감자(고랭지, 봄, 가을),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옥수수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주1)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다만, 감자(고랭지 재배, 가을재배, 봄재배)는 병충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한다.

주2)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가입 시 결정한 비율(10%, 15%, 20%, 30%, 40%)로 한다.

(단, 양배추, 팥의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로 한다.)

2) 재파종·조기파종·재정식 보장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파종 보장 (기본)	마늘	보상하는 손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출현 피해율 ※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조기파종 보장 (기본)	제주도 지역 농지에서 재배하는 남도종 마늘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상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월 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25% × 표준출현 피해율 ※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재정식 보장 (기본)	양배추	보상하는 손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 20% × 면적피해율

3) 생산비보장 -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시금치, 파(대파, 쪽파)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작불능보장(기본)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 파(대파, 쪽파)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농지의 계약 소멸)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 자기부담비율에 따른 경작불능보험금 참조
생산비보장(기본)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4) 생산비보장 - 고추, 브로콜리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산비보장(기본)	고추	보상하는 손해로 약관에 따라 계산한 생산비보장보험금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충해가 없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 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 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합계액)
	브로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충해가 없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 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 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합계액)

주1)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다만, 고추는 병충해로 발생하는 피해를 포함한다.

주2) 경과비율, 피해율 등은 보통약관 일반조항에서 규정한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산정한다.

주3)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또는 5% 이다.

5) 작물특정 시설종합위험보장 - 인삼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인삼 손해 보장 (기본)	인삼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1 - \text{수확량} \div \text{연근별 기준수확량}) \times (\text{피해면적} \div \text{재배면적})$
해가림 시설 보장 (기본)	해가림 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일 경우 보험가액을 한도로 함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imes (\text{보험가입금액} \div \text{보험가액})$

다. 상품 내용

1)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목적인 가입대상 품목의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감자(고랭지, 봄, 가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양배추, 콩, 팥, 차(茶)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나)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고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브로콜리, 메밀, 단호박, 당근, 배추(고랭지, 월동), 무(고랭지, 월동), 시금치, 파(대파, 쪽파)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다) 작물특정 시설종합위험보장

구분	보장하는 재해
인삼(작물)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해가림시설(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2) 보험기간

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위험 재파종 보장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다만, 조기파종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 시점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
종합위험 재정식 보장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완료일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종합위험 경작불능 보장	마늘	계약체결일 24시 다만, 조기파종 보장 특약 가입 시 해당 특약 보장종료 시점	수확개시시점
	콩, 팥	계약체결일 24시	종실비대기 전
	양파, 감자(고랭지재배),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수확 개시 시점 다만, 사료용 옥수수는 8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자(봄감자, 가을감자)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개시 시점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위험 수확감소 보장	마늘, 양파, 감자(고랭지재배),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콩, 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마늘 : 6월 30일 - 양파 : 6월 30일 - 감자(고랭지재배) : 10월 31일 - 고구마 : 10월 31일 - 옥수수 : 9월 30일 - 콩 : 11월 30일 - 팔 : 11월 13일
	감자 (봄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감자 (가을재배)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제주는 12월 15일, 제주 이외는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아래의 날짜를 초과할 수 없음 - 극조생, 조생 : 이듬 해 2월 28일 - 중생 : 이듬해 3월 15일 - 만생 : 이듬해 3월 31일
	차	계약체결일 24시	햇차 수확종료시점 다만, 5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주) "판매개시연도"는 해당 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하며, "이듬해"는 판매개시연도의 다음 연도를 말한다.

나)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고추	계약체결일 24시	정식일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브로콜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정식일로부터 160일이 되는 날 24시
	메밀	과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과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최초 수확 직전 다만, 11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무	과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과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과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무 : 7월 31일 - 월동무 : 10월 15일 - 당근 : 8월 31일 - 쪽파(실파)[1·2형] : 10월 15일 - 시금치 : 10월 31일	과종일부터 80일째 되는 날 24시
	월동무		과종일부터 120일째 되는 날 24시
	당근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2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1형]		최초 수확 직전 다만, 판매개시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쪽파(실파) [2형]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시금치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이듬해 1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 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배추 : 7월 31일 - 월동배추 : 9월 25일 - 대파 : 5월 20일 - 단호박 : 5월 29일
	월동배추	정식일부터 120일째 되는 날 24시	
	대파	정식일부터 200일째 되는 날 24시	
	단호박	정식일부터 90일째 되는 날 24시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종합 위험 경작 불능 보장	고랭지무	과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과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단, 과종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무 : 7월 31일 - 월동무 : 10월 15일 - 당근 : 8월 31일 - 쪽파(실파)[1·2형] : 10월 15일 - 시금치 : 10월 31일	최초 수확 직전 다만, 종합위험생산비보장에서 정하는 보장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월동무		
	당근		
	쪽파(실파) [1형,2형]		
	시금치		
	고랭지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정식완료일은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 - 고랭지배추 : 7월 31일 - 월동배추 : 9월 25일 - 대파 : 5월 20일 - 단호박 : 5월 29일	
	월동배추		
	대파		
	단호박		
	메밀	과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과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다) 작물특정, 시설종합위험방식

구분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1형	인삼	판매개시연도 5월 1일 다만, 5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4월 30일 24시 다만, 6년근은 판매개시연도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가림 시설		
2형	인삼	판매개시연도 11월 1일 다만, 1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이듬해 10월 31일 24시
	해가림 시설		

3) 보험가입금액

가) 수확감소보장

보험가입금액은 가입수확량에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단, 사료용 옥수수는 보장생산비와 가입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나) 생산비보장

보험가입금액은 재해보험사업자에서 평가한 단위 면적당 보장생산비에 농지내 작물 재배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보험의 목적이 고추 또는 브로콜리인 경우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다) 해가림시설

(1) 재조달가액에 $(1 - \text{감가상각율})$ 을 곱하여 산출하며 천원단위에서 절사한다.

(2) 감가상각률 적용방법

(가) 해가림시설 설치시기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① 계약자에게 설치시기를 고지 받아 해당일자를 기초로 감가상각 하되,

최초 설치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인삼의 정식시기와 동일한 시기로 할 수 있다.

- ② 해가림시설 구조체를 재사용하여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설치시기를 기초로 감가상각하며, 최초 설치시기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체의 최초 구입시기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나) 해가림시설 설치재료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 ① 동일한 재료(목재 또는 철제)로 설치하였으나 설치시기 경과년수가 각기 다른 해가림시설 구조체가 상존하는 경우, 가장 넓게 분포하는 해가림시설 구조체의 설치시기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② 1개의 농지 내 감가상각률이 상이한 재료(목재+철제)로 해가림시설을 설치한 경우, 재료별로 설치구획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만 인수 가능하며, 각각의 면적만큼 구분하여 가입한다.

(다) 경년감가율 적용시점과 연단위 감가상각

- ① 감가상각은 보험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기간 동안 동일하다.
- ② 연단위 감가상각을 적용하며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은 미적용한다.

예) 시설년도 : 2021년 5월

가입시기 : 2022년 11월 일 때

경과기간 : 1년 6개월 → 경과기간 1년 적용

③ 경년감가율

유형	내용연수	경년감가율
목재	6년	13.33%
철제	18년	4.44%

④ 잔가율 : 잔가율 20%와 자체 유형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경년감가율을 산출하였고,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현재 정상 사용중에 있는 시설을 당해 목적물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잔가율을 최대 30%로 수정

(라) 재조달가액 : 단위면적당 시설비에 재배면적을 곱하여 산출

4) 보험료

가) 보험료의 구성

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text{순보험료}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순보험요율} \times \text{할인·할증률}$ $\text{부가보험료}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부가보험요율} \times \text{할인·할증률}$

(1) 순보험요율

품목별, 지역별, 담보별, 상품유형별로 순보험요율이 다르며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검증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2) 부가보험요율

(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보험요율이라 한다.

(나)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나) 보험료의 환급

(1)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반환한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준다.

-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자부담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해당 월 미경과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보험료’를 계산한다.

$\text{환급보험료} = \text{계약자부담보험료} \times \text{미경과비율(별표)}$ <p>※ 계약자부담보험료는 최종 보험가입금액 기준으로 산출한 보험료 중 계약자가 부담한 금액</p>
--

-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계산한 해당월 미경과비율에 따른 환급보험료.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나)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의 해지 또는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다)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3)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반환해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5) 자기부담비율

- 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나)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 (1)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10%, 15%, 20%, 30%, 40%)
팔과 양배추의 자기부담비율은 20%, 30%, 40% 이다.

(2) 수확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가) 10%형 : 최근 3년간 연속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나) 15%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 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다)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다) 자기부담비율(사료용 옥수수는 보장비율)에 따른 경작불능 보험금 산출방식

(1)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의 표와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의 45%
15%형	보험가입금액의 42%
20%형	보험가입금액의 40%
30%형	보험가입금액의 35%
40%형	보험가입금액의 30%

(2) 사료용 옥수수의 보장비율은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로 보험가입을 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하며, 경과비율은 사고 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0%	90%	100%

(3)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된다.

2) 자기부담금

가) 해가림시설

- (1)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 범위 안에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한다.
- (2) 자기부담금은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나) 생산비보장방식 - 고추, 브로콜리

- (1) 보험 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잔존보험가입금액의 3%, 5%)
- (2) 생산비보장 자기부담금 적용 기준
 - (가) 3%형 : 최근 2년간 연속 보험가입계약자로서 2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다.
 - (나) 5%형 : 제한 없음.

4.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버섯 포함)

가. 특징

- 1)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에 대한 피해를 보장한다.
- 2) 자연재해, 조수해를 보장하며 화재는 보통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 3) 농업용시설물 가입 후 부대시설, 시설작물 가입이 가능하다.
- 4) 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대시설 가입이 가능하다.
- 5) 비닐(피복재) 피해에 대하여 손해평가 후, 다음과 같이 피해를 인정한다.
 - 가)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교체를 한 경우 전체 피해로 인정한다.
 - 나)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부분 교체를 한 경우 교체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한다.

다)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한다.

※ 시설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손해액이 소손해면책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점까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투입된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보상한다.

6) 가입대상 시설작물로는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파프리카, 호박, 장미,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시금치, 파, 무, 쪽갓, 장미, 부추와 버섯(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이 있다.

7) 시설작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경우(혹은 발령되었더라도 기상특보와 관련된 피해가 아닌 경우)

(1) 작물 피해율 70% 이상

(가)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 작물피해 보상

(나) 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작물피해 미보상

(2) 작물 피해율 70% 미만일 경우 작물피해 미보상

나)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발령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물피해 보상

다) 농업용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작물피해 보상

8) 표고버섯의 확장위험담보특약을 가입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가)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던 경우(혹은 발령되었더라도 기상특보와 관련된 피해가 아닌 경우)

(1) 표고버섯(작물) 피해율 70% 이상

(가) 버섯재배사 내 전체 표고버섯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 표고버섯(작물) 피해 보상

(나) 버섯재배사 내 전체 표고버섯의 재배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표고버섯 (작물)피해 미보상

(2) 표고버섯(작물) 피해율 70% 미만일 경우 미보상

나)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발령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표고버섯에 피해가발생한 경우 보상

다) 버섯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나. 보장 유형

1)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의 계산 ◦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함 - 시가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재조달특별약관 가입 시 재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함

2) 시설작물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산비 보장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풋고추, 파프리카, 호박, 장미, 국화, 수박, 멜론, 상추, 가지, 배추,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시금치, 파, 무, 쪽갓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text{피해작물 재배면적} \times \text{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times \text{경과비율} \times \text{피해율}$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산비 보장	장미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장미 재배면적 × 장미 단위면적당 나무 생존시 보장생산비 × 피해율 ◦ 나무가 죽은 경우 장미 재배면적 × 장미 단위면적당 나무 고사 보장생산비 × 피해율
	부추		부추 재배면적 × 부추 단위면적당보장 생산비 × 피해율 × 70%

3) 버섯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산비 보장	표고버섯 (원목재배)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생산비보장 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재배원목(본)수 × 원목(본)당 보장생산비 × 피해율
	표고버섯 (툽밥배지재배)		재배배지(봉)수 × 배지(봉)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느타리버섯(균상재배)		재배면적 ×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느타리버섯 (병재배)		재배병수 × 병당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새송이버섯 (병재배)		재배병수 × 병당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양송이버섯 (균상재배)		재배면적 ×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 단, 일부보험일 경우 비례보상 실시 (세부 내용은 품목별 보험 약관 참조)

다. 상품 내용

1)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목적인 가입대상 품목의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가) 종합위험 원예시설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 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부대 시설	모든 부대시설(단, 동산시설 제외)	
시설 재배 농작물	화훼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비화훼류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쪽파), 무, 미나리, 쑥갓

시설재배 농작물의 경우 품목별 표준생장일수와 현지히 차이 나는 성장일수 (정식일(파종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일수)를 가지는 품종은 보장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된다.

나)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장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 (단, 동산시설은 제외함)	
시설 재배 버섯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 (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2) 보험기간

가) 종합위험 원예시설 손해보장

(1)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가지, 배추, 파(대파),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품목은 ‘해당 농업용시설물 내에 농작물을 정식한 시점’과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중 늦은 때를 보장개시일로 한다.

(2) 시금치, 파(쪽파), 무, 쑥갓 품목은 ‘해당 농업용시설물 내에 농작물을 파종한 시점’과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중 늦은 때를 보장개시일로 한다.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종료일 24시
부대시설	모든 부대시설(단, 동산시설 제외)			
시설재배 농작물	화훼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비화훼류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쪽파), 무, 미나리, 쑥갓		

나) 종합위험 버섯 손해보장

구분	보장 대상 목적물	보장개시, 보장종료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 연동 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납입한 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종료일 24시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 (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 (단, 동산시설은 제외함)		
시설재배 농작물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 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 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 버섯(균상재배)		

3) 보험가입금액

가) 농업용 시설물

- (1) 재조달 기준금액의 90~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2) 기준금액 산정이 어려운 유리온실(경량철골조), 내재해형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 (가) 유리온실(경량철골조)은 m²당 50,000~500,000원 범위에서 가입금액 선택 가능하다.

나) 부대시설

- (1)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 보험가입금액 결정한다.

다) 시설작물

- (1) 하우스별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작물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을 보험가액으로 설정한다.
- (2) 가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결정(10% 단위)한다.

4) 자기부담금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단,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한다.

나)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다) 화재손해는 자기부담금을 미적용한다.(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에 한함)

라) 소손해면책금 (시설작물에 적용) : 보장하는 재해로 1사고당 생산비보험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소손해면책금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5) 특별약관

가)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 : 특별약관 가입시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

나)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1) 가입 대상 : 이 특별약관은 특별약관의 '화재위험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목적 :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된다.

다) 수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상습 침수구역, 하천부지 등에 있는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 특별약관 : 보험의 목적을 표고버섯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연재해 및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가)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서 작물피해율이 70% 이상 발생하여 농업용 시설물 내 전체 시설재배 버섯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

(나)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해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소멸

가)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 미만인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않으며, 보험 가입금액 이상인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의 목적(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계약은 소멸한다.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 손해액에는 보상하는 손해의 '기타 협력비용'은 제외한다.

6. 농업수입보장

가. 특징

- 1) 농업수입보장방식의 가입대상 품목은 포도,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콩 이다.
- 2) 농업수입보장방식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收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산물가격하락을 반영한 농업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 산출 시 가격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즉, 수확기가격이 상승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가격은 가입할 때 결정된 기준가격이다. 따라서 실제수입을 산정 할 때 실제수확량이 평년수확량 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확기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확량 감소에 의한 손해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의 손해에 농산물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까지 더하여 보상한다.

나. 보장 유형

보장	보험의 목적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보통약관 농업수입 보장	포도, 마늘, 양파, 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양배추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기준수입-실제수입) ÷ 기준수입

다. 작물의 상품 유형

1) 목적

이 보험계약은 계약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의 목적인 가입대상 품목의 보장하는 재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가입대상 품목	보장하는 재해 및 가격하락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마늘, 양파, 고구마, 양배추, 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가격하락
가을감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

2) 보험 기간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대상재해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재파종 보장	마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10월 31일
재정식 보장	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정식 종료 시점 다만, 10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경작 불능 보장	콩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종실비대기 전
	감자 (가을 재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수확 개시 시점

보장	가입 대상 품목	대상재해	보험기간	
			보장개시	보장종료
경작 불능 보장	양배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수확 개시 시점
	마늘, 양파, 고구마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	
농업 수입 감소 보장	포도	가격하락	계약체결일 24시	수확기가격 공시시점
	감자 (가을 재배)		파종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파종 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	
	양배추		정식완료일 24시 다만, 보험계약시 정식완료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4시이며 정식 완료일은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마늘, 양파, 고구마, 콩		계약체결일 24시	

3) 보험가입금액

가입수확량에 기준(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천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4) 자기부담비율

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금액)로 자기부담비율(금) 이하의 손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나) 수입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 (1) 보험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20%, 30%, 40%)
- (2) 수입감소보장 자기부담비율 적용 기준
20%형, 30%형, 40%형 : 제한 없음.

5) 가격 조항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수입보장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산출한다.

가) 품목 : 콩

(1)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콩의 용도 및 품종에 따라 장류 및 두부용(백태), 밥밀용(서리태), 밥밀용(흑태 및 기타), 나물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나)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다음과 같다.

용도	품종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장류 및 두부용	전체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백태(국산) 가격	수확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밥밀용	서리태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서리태 가격	
	흑태 및 기타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흑태 가격	
나물용	전체	제주도 지역농협의 평균 수매가격	

(다) 기준가격의 산출

① 장류 및 두부용, 밥밀용

-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평균가격 산정 시 중품 및 상품 중 어느 하나의 자료가 없는 경우, 있는 자료만을 이용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한다. 양곡 도매시장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국 지역농협의 평균 구매가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② 나물용

- 제주도 지역농협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연도별 평균구매가를 올림픽 평균하여 산출한다.
- 연도별 평균구매가는 지역농협별 구매량과 구매금액을 각각 합산하고, 구매금액의 합계를 구매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라) 수확기 가격의 산출

① 장류 및 두부용, 밥밀용

수확연도의 서울 양곡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양곡 도매시장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국 지역농협의 평균 구매가격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② 나물용

기초통계 기간 동안 제주도 지역농협의 평균 구매가격으로 한다.

(마)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 용도(또는 품종)의 콩이 식재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해당용도(또는 품종)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품목 : 양과

(1)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양과 품종의 숙기에 따라 조생종, 중만생종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나)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조생종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중만생종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다) 기준가격의 산출

- 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 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②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수확기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락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 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품목 : 고구마

(1)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고구마의 품종에 따라 호박고구마, 밤고구마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나)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품종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밤고구마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8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호박고구마		

(다) 기준가격의 산출

- 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의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②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수확기가격의 산출

- ① 수확연도의 서울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의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② 하나의 농지에 2개 이상 용도(또는 품종)의 고구마가 식재된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을 해당용도(또는 품종)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가중하여 산출한다.

라) 품목 : 감자(가을재배)

(1)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감자(가을재배) 품종 중 대지마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나)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대지마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 기준가격의 산출

- 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의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②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수확기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서울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의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마) 품목 : 마늘

(1)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마늘 품종에 따라 난지형 (대서종, 남도종)과 한지형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나)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난지형	대서종	경남 창녕군 농협공판장 (창녕농협, 이방농협) 가격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남도종	전남 지역농협(신안, 남신안, 땅끝, 전남서부채소, 녹동, 팔영)과 제주도 지역농협(대정, 한림, 김녕, 조천, 한경, 안덕) 수매가격	전남지역 :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주지역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지형		경북 의성군 지역농협(의성, 새의성, 금성, 의성중부) 수매가격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 기준가격의 산출

- ① 기초통계의 연도별 평균값의 보험가입 직전 5년(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 ② 연도별 평균값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수확기가격의 산출

기초통계의 수확연도의 평균값으로 산출한다.

바) 품목 : 양배추

(1)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양배추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나)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양배추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 기준가격의 산출

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수확기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가락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 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사) 품목 : 포도

(1)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의 산출

(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은 보험에 가입한 포도 품종과 시설재배 여부에 따라 캠벨얼리(시설), 캠벨얼리(노지), 거봉(시설), 거봉(노지), MBA 및 델라웨어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나) 가격산출을 위한 기초통계와 기초통계 기간은 아래와 같다.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초통계 기간
캠벨얼리(시설)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캠벨얼리(노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거봉(시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거봉(노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MBA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텔라웨어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 기준가격의 산출

- ①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연도별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의 보험가입 직전 5년(가입연도 포함) 올림픽 평균값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② 연도별 평균가격은 연도별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라) 수확기가격의 산출

수확연도의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가락도매시장 중품과 상품 평균가격에 농가수취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마) 가격구분 이외 품종의 가격은 가격구분에 따라 산출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제4절 계약 관리

1. 계약 인수

가. 보험가입 지역

-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참다래, 대추, 매실, 감
귤, 벼, 마늘, 양파, 고추,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원예, 버섯, 인삼 : 전국
- 오미자 : 경북(문경, 상주, 예천), 충북(단양), 전북(장수), 경남(거창), 강원(인제)
- 유자 : 전남(고흥, 완도, 진도), 경남(거제, 통영, 남해)
- 오디 : 전북, 전남, 경북(상주, 안동)
- 복분자 : 전북(고창, 정읍, 순창), 전남(함평, 담양, 장성)
- 무화과 : 전남(영암, 신안, 해남, 목포)
- 밀 : 전북, 전남, 경남, 충남, 광주광역시
- 보리 : 전북(김제, 군산), 전남(해남, 보성), 경남(밀양)
- 봄감자 : 경북, 충남
- 고랭지감자 : 강원
- 양배추 : 제주(서귀포, 제주)
- 차 : 전남(보성, 광양, 구례), 경남(하동)
- 팔 : 강원(횡성), 전남(나주), 충남(천안)
- 브로콜리 : 제주(서귀포, 제주)
- 메밀 : 전남, 제주(서귀포, 제주)
- 단호박 : 경기 전 지역
- 당근 : 제주(서귀포, 제주)
- 고랭지 배추 : 강원(평창, 정선, 삼척, 태백, 강릉)

- 월동 배추 : 전남(해남)
- 고랭지 무 : 강원(홍천, 정선, 평창, 강릉)
- 월동 무 : 제주(서귀포, 제주)
- 대파 : 전남(진도, 신안, 영광), 강원(평창)
- 쪽파 : 1형 - 충남(아산), 전남(보성), 2형 - 충남(아산)
- 농업수입보장 마늘 : 전남(고흥), 경북(의성), 경남(창녕), 충남(서산, 태안), 제주(서귀포, 제주)
- 농업수입보장 양파 : 전남(무안, 함평), 전북(익산), 경남(창녕, 합천), 경북(청도)
- 농업수입보장 가을감자 : 전남(보성)
- 농업수입보장 고구마 : 경기(여주, 이천), 전남(영암, 해남), 충남(당진, 아산)
- 농업수입보장 양배추 : 제주(서귀포, 제주)
- 농업수입보장 콩 : 강원(정선), 경기(파주), 전북(김제), 전남(무안), 경북(문경), 제주(서귀포, 제주)

나. 보험가입 기준

1) 과수

가) 계약인수는 과수원(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과수원(농지)당 최저 보험 가입금액은 200만원 이상이다. 단, 하나의 리, 동에 있는 각각 보험가입 금액 200만원 미만의 두 개의 과수원(농지)은 하나의 과수원(농지)으로 취급하여 계약 가능하다.

※ 2개의 과수원(농지)을 합하여 인수한 경우 1개의 과수원(농지)으로 보고 손해평가를 한다.

나) 과수원 구성 방법

(1) 과수원이라 함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한 덩어리 과수원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한다.

- (2)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품목을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개의 계약으로 각각 가입·처리한다.
- (3) 농협은 농협 관할구역에 속한 과수원에 한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 여러 개의 과수원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농협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 (4) 비가림시설은 단지 단위로 가입(구조체 + 피복재)하고 최소 가입면적은 200m² 이상이다.
 - (가) 단위면적당 시설단가를 기준으로 80~130% 범위에서 가입금액 선택 (10% 단위 선택)

2) 벼

가) 계약인수는 농지 단위로 가입하고 개별 농지당 최저 보험가입금액은 50만원 이상이다.

- (1) 단, 가입금액 50만원 미만의 농지라도 인접 농지의 면적과 합하여 50만원 이상이 되면 통합하여 하나의 농지로 가입할 수 있다.
- (2) 통합하는 농지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 가입 후 농지를 분리할 수 없다.
- (3) 하나의 농지 내에 품종, 재배방식, 이앙 일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품종, 재배방식은 가장 많은 것으로, 이앙 일자는 마지막으로 이앙한 날짜로 한다(다만, 숙기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한 품종이 90% 이상 재식되어 있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다).

나) 1인 1증권 계약의 체결

- (1) 1인이 경작하는 다수의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의 전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 (2) 다만, 읍면동을 달리하는 농지를 가입하는 경우, 기타 보험사업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다) 농지 구성 방법

- (1) 리(동) 단위로 가입한다.
- (2) 동일“리(동)”내에 있는 여러 농지를 묶어 하나의 경지번호를 부여한다.
- (3) 가입하는 농지가 여러“리(동)”에 있는 경우 각 리(동)마다 각각 경지를 구성하고 보험계약은 여러 경지를 묶어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한다.
- (4) 전산조작 시 리(동)별로 목적물 등록을 별도로 하여 리(동)별로 경지가 구성되도록 한다.
- (5) 간척농지는 일반농지와 목적물 등록을 별도로 구성되도록 한다.

3) 원예시설

가) 시설 1단지 단위로 가입 (단지 내 인수 제한 목적물은 제외)

- (1) 단지 내 해당되는 시설작물은 전체를 가입해야 하며 일부 하우스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 (2) 연동하우스 및 유리온실 1동이란 기둥, 중방, 방풍벽, 서까래 등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3) 한 단지 내에 단동·연동·유리온실 등이 혼재되어있는 경우 각각 개별단지로 판단한다.

나) 최소 가입면적

구분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경질판)온실
최소 가입면적	300m ²	300m ²	제한 없음

다)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 가능

※ 단, 유리온실(경량철골조)의 경우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만 가입 가능

4) 버섯

가) 최소 가입면적

구분	버섯단동하우스	버섯연동하우스	버섯재배사
최소 가입면적	300m ²	300m ²	제한 없음

나)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 가능

2. 인수 심사

가. 인수 제한 목적물

1) 과수(공통)

가)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과수원

나) 품목이 혼식된 과수원(다만, 품목의 결과주수가 90% 이상인 과수원은 주품목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

라) 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과수원

마) 시험연구를 위해 재배되는 과수원

바) 하나의 과수원에 식재된 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과수원

사)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과수원

아)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과수원

자) 가식(假植)되어 있는 과수원

차)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2) 과수 4종(주요과수 :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가) 사과 : 밀식재배 3년, 반밀식재배 4년, 일반재배 5년

나) 배 : 3년

다) 단감·뽕은감 : 5년

※ 수령(나이)이라 함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3) 기타 과수

가) 포도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3년 미만인 과수원

※ 수령(나이)이라 함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2) 보험가입 직전연도(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

※ 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의 20% 미만이라도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재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 제한

(3) 친환경 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4) 비가림 폭이 $2.4m \pm 15\%$, 동고가 $3m \pm 5\%$ 의 범위를 벗어나는 비가림 시설(과수원의 형태 및 품종에 따라 조정)

나) 복숭아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3년 미만인 과수원

(2) 보험가입 직전연도(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

(3) 친환경 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다) 자두

-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6년 미만인 과수원
- (2) 품종이 '귀양'인 자두

라) 밤

-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5년 미만인 과수원

마) 호두

-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8년 미만인 경우

※ 수령(나이)이라 함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실생묘, 접목묘 포함)이 가입 과수원에 식재되고 봄을 난 해를 1년으로 함.

바) 참다래

-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3년 미만인 경우
- (2) 수령이 혼식된 과수원 (다만, 수령의 구분이 가능하며 동일 수령군이 9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3) 보험가입 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수원(다만, 고사한 나무가 전체의 20% 미만이라도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수를 제한)
- (4) 가입면적이 200m² 미만인 참다래 비가림시설
- (5) 참다래 재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비가림시설
- (6) 목재 또는 죽재로 시공된 비가림시설
- (7) 구조체, 피복재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비가림시설
- (8)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비가림시설
- (9) 건축 또는 공사 중인 비가림시설
- (10)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비가림시설

(11)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비가림시설

(12)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원 또는 비가림시설

사) 대추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4년 미만인 경우

(2) 사과대추(왕대추)류를 재배하는 과수원. 단, 다음 사업지역에서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 충남(부여, 청양), 전남(영광)

(3) 재래종대추와 사과대추(왕대추)류가 혼식되어 있는 과수원

(4) 건축 또는 공사 중인 비가림시설

(5) 목재, 죽재로 시공된 비가림시설

(6) 피복재가 없거나 대추를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7) 작업동, 창고동 등 대추 재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8)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9)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10) 비가림시설 전체가 피복재로 씌 시설(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 차이가 없는 시설은 원예시설보험으로 가입)

아) 매실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5년 미만인 경우

자) 오미자

(1) 식별 3년차 이상 과수원 또는 식별하지 않는 과수원 중 식묘 4년차 이상인 과수원

(2) 가지가 과도하게 번무하여 수관 폭이 두꺼워져 광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3) 유인틀의 상태가 적절치 못하여 수확량이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유인틀의 붕괴, 매우 낮은 높이의 유인틀)

(4) 주간거리가 50cm 이상으로 과도하게 넓은 과수원

차) 유자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4년 미만인 과수원

카) 살구

(1) 가입연도 나무수령이 5년 미만인 과수원

(2) 친환경 재배과수원으로서 일반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과수원

타) 오디

(1) 가입연도 기준 3년 미만(수확연도 기준 수령이 4년 미만)인 뽕나무

(2) 흰 오디 계통(터키-D, 백용왕 등)

(3) 보험가입 이전에 균핵병 등의 병해가 발생하여 과거 보험 가입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수원

파) 감귤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다음 기준 미만인 경우

(가) 온주밀감류, 만감류 재식 : 4년

(나) 만감류 고접 : 2년

(2) 주요품종을 제외한 실험용 기타품종을 경작하는 과수원

(3) 노지 만감류를 재배하는 과수원

(4) 온주밀감과 만감류 혼식과수원

하) 복분자

- (1) 가입연도 기준, 수령이 1년 이하 또는 11년 이상인 포기로만 구성된 과수원
※ 수령(나이)이라 함은 나무의 나이를 말하며, 묘목이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를 1년으로 한다.
- (2) 계약인수 시까지 구결과모지(올해 복분자 과실이 열렸던 가지)의 전정활동(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과수원

거) 무화과

- (1)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나이)이 4년 미만인 과수원
- (2) 관수시설이 미설치된 과수원

4) 논작물 (벼, 맥류)

가) 공통

- (1) 보험가입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
- (2) 하천부지에 소재한 농지
- (3)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 (4)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 (5) 보험가입 전 벼의 피해가 확인된 농지
- (6)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농지
- (7) 보험목적물을 수확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채종농지 등)
- (8)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농지로 결정된 농지
- (9) 전환지(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지 3년 이내인 농지
- (10)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 (11)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나) 벼

- (1) 발벼를 재배하는 농지

다) 밀

- (1) 파종을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 (2)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 (3)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라) 보리

- (1) 파종을 10월 1일 이전과 11월 20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 (2)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파종을 실시한 농지
- (3) 출현율 80% 미만인 농지

5) 밭작물(수확감소보장 및 특정위험보장)

가) 공통

- (1)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 (2)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 (3)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 (4) 시설재배 농지
- (5) 하천부지 및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 (6)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 (7)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나) 마늘

- (1) 한지형은 10월 10일 이전 파종한 농지
- (2) 재식밀도가 30,000주/10a 미만인 농지(=30,000주/1,000m²)
- (3) 마늘 파종 후 익년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농지

- (4) 무멀칭농지
- (5) 홍산마늘, 주아마늘, 코끼리 마늘
- (6) 자가채종하는 마늘

다) 양파

- (1)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
- (2) 재식밀도가 23,000주/10a 미만, 40,000주/10a 초과한 농지
- (3) 9월 30일 이전 정식한 농지
- (4) 양파 식물체가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농지(70° 이하로 정식된 농지)
- (5)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예 : 고랭지 봄파종 재배 적응 품종, 계투린, 고편이황, 고랭지 여름, 덴신, 마운틴1호, 스프링골드, 사포로기, 울프, 장생대고, 장일황, 하루히구마, 히구마 등)
- (6) 무멀칭농지

라) 가을감자

- (1) 가을재배에 부적합 품종 (수미, 남작, 조풍, 신남작, 세풍 등)이 파종된 농지
- (2) 2년 이상 갱신하지 않는 씨감자를 파종한 농지
- (3)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 (4)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 (5)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 (6)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함)

마) 봄감자

- (1) 2년 이상 자가 채종 재배한 농지
- (2) 씨감자 수확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 (3) 파종을 3월 1일 이전에 실시 농지
- (4)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 (5)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 (6) 전작으로 유채를 재배한 농지

바) 고랭지 감자

- (1) 재배 용도가 다른 것을 혼식 재배하는 농지
- (2) 파종을 4월 10일 이전에 실시한 농지
- (3)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 (4) 재식밀도가 3,500주/10a 미만인 농지

사) 고구마

- (1) '수' 품종 재배 농지
- (2) 채소, 나물용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 (3) 재식밀도가 4,000주/10a 미만인 농지
- (4) 무멀칭농지

아) 옥수수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자가채종을 이용해 재배하는 농지
- (3) 1주 1개로 수확하지 않는 농지
- (4) 통상적인 재식 간격의 범위를 벗어나 재배하는 농지
 - (가) 1주 재배 : 1,000㎡당 정식주수가 3,5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
(단, 전남·전북·광주·제주는 1,000㎡당 정식주수가 3,000주 미만 5,000주 초과인 농지)

- (나) 2주 재배 : 1,000m²당 정식주수가 4,000주 미만 6,000주 초과인 농지
- (5) 3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기간 내에 파종(정식)되지 않은 농지
- (6)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싹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함)

자) 양배추

- (1) 관수시설 미설치 농지
- (2) 9월 30일 까지 정식하지 않은 농지(단, 재정식은 10월 15일 이내 정식)
- (3) 재식밀도가 약 3.3m²(1평)당 8구 미만인 농지
- (4) 소구형 양배추(방울양배추 등)를 재배하는 농지

차) 차

- (1) 보험가입면적이 1,000m² 미만인 농지
- (2) 가입하는 해의 나무 수령이 7년 미만인 경우
- (3) 깊은 전지로 인해 '차'나무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30cm 이하인 경우 가입면적에서 제외
- (4) 특수재배(하우스에서 육성재배 등) 농지
- (5) 동상해 피해로 인한 전정, 비배관리 잘못 또는 품종갱신 등의 이유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
- (6) 하나의 다원에 식재된 차나무 중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농지 관상용, 조경수를 목적으로 재배되는 농지
- (7) 재래종 외 외국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 (8)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예 : 말차 경작)

카) 콩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장류 및 두부용, 나물용, 밥밑용 콩 이외의 콩이 식재된 농지
- (3) 출현율이 90%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짝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 (4) 적정 출현 개체수 미만인 농지(10개체/m²), 제주지역 재배방식이 산파인 경우 15개체/m²)
- (5) 다른 작물과 간작 또는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 주체가 된 경우의 농지

타) 팥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6월 1일 이전에 정식(파종)한 농지
- (3) 출현율이 85% 미만인 농지(보험가입 당시 출현 후 고사된 짝은 출현이 안 된 것으로 판단)
- (4) 다른 작물과 간작 또는 혼작으로 다른 농작물이 재배주체가 된 경우의 농지

파) 인삼

- (1) 2년근 미만 또는 6년근 이상인 인삼
※ 단, 직전년도 인삼1형 상품에 5년근으로 가입한 농지에 한하여 6년근 가입 가능
- (2) 산양삼(장뇌삼), 묘삼, 수경재배 인삼
- (3) 식재년도 기준 과거 10년 이내(논은 6년 이내)에 인삼을 재배했던 농지
- (4)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인 농지
- (5)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하는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해가림시설
- (6)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해가림시설

(7) 보험가입 당시 공사 중인 해가림시설

(8)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보험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해가림시설

6) 밭작물(생산비보장방식)

가) 공통

- (1) 보험계약 시 피해가 확인된 농지
- (2) 여러 품목이 혼재된 농지
- (3) 하천부지, 상습 침수지역에 소재한 농지
- (4)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농지
- (5)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
- (6) 시설재배 농지
- (7) 판매를 목적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 (8)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

나) 고추

- (1)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 (2) 노지재배, 터널재배 이외의 재배작형으로 재배하는 농지
- (3) 비닐멀칭이 되어 있지 않은 농지
- (4) 직파한 농지
- (5) 4월 1일 이전과 5월 31일 이후에 고추를 식재한 농지
- (6) 동일 농지 내 재배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농지
(단, 보장생산비가 낮은 재배방법으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 (7) 고추 정식 6개월 이내에 인삼을 재배한 농지
- (8)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하는 농지

(9) 동일 농지 내 재식일자가 동일하지 않은 농지

(단, 농지 전체의 정식이 완료된 날짜로 가입하는 경우 인수 가능)

(10) 재식밀도가 조밀하거나(1,000m²당 1,500주 미만) 넓은(1,000m²당 4,000주 초과)농지

다) 브로콜리

(1) 보험가입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

(2) 정식을 하지 않았거나, 정식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한 농지

(3)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라) 메밀

(1) 보험가입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농지

(2)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3)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4) 파종을 9월 15일 이후에 실시 또는 할 예정인 농지

(5) 춘파재배 방식에 의한 봄 파종을 실시한 농지

(6)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7) 전환지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마) 단호박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2) 5월 29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바) 당근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미니당근 재배 농지(대상 품종 : 베이비당근, 미농, 파맥스, 미니당근 등)
- (3) 8월 31일을 지나 파종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할 예정인 농지
- (4) 목초지, 목야지 등 지목이 목인 농지

사) 시금치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다른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
(단, 인접한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보험사고시 지역 농·축협이 통상적인 손해조사가 가능한 농지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인수 가능)
- (3)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 (4)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 (5)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 (6)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 농지로 결정된 농지
- (7) 전환지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아) 고랭지배추, 월동배추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 (3)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 (4) 최근 5년 이내에 간척된 농지
- (5) 농업용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수용예정농지로 결정된 농지

- (6) 전환지 (개간, 복토 등을 통해 논으로 변경한 농지), 휴경지 등 농지로 변경하여 경작한 지 3년 이내인 농지

자) 고랭지무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7월 31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차) 월동무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가을무에 해당하는 품종 또는 가을무로 수확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지
- (3) 하천부지 및 최근 3년 연속 침수피해를 입은 농지. 다만,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에 해당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함
- (4) 오염 및 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농지
- (5) 10월 15일 까지 무를 파종하지 않은 농지

카) 대파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5월 20일을 초과하여 정식한 농지
- (3) 재식밀도가 15,000주/10a 미만인 농지

타) 쪽파(실파)

- (1) 보험가입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농지
- (2) 종구용(씨쪽파)으로 재배하는 농지
- (3) 상품 유형별 파종기간을 초과하여 파종한 농지

7) 원예시설/버섯

가) 농업용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

- (1) 판매를 목적으로 시설작물을 경작하지 않는 시설

- (2) 작업동, 창고동 등 시설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설
 - ※ 농업용시설물 한 동 면적의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입 가능
- (3) 피복재가 없거나 시설작물(버섯)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시설
 - ※ 다만, 지역적 기후특성에 따른 한시적 휴경은 제외
- (4) 목재, 죽재로 시공된 시설
- (5) 버섯재배사 및 비가림시설
- (6) 구조체, 피복재 등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시설
- (7)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시설
- (8) 건축 또는 공사 중인 시설
- (9) 1년 이내에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
- (10) 하천부지 및 상습침수지역에 소재한 시설
 - ※ 다만, 수재위험 부보장특약에 가입하여 풍재만은 보장 가능
- (11)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다른 계약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시설
- (12)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하우스 및 부대시설

나) 시설작물

- (1) 작물의 재배면적이 시설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
 - ※ 다만, 시설백합, 카네이션의 경우 시설별 200㎡ 미만인 경우 인수 제한
- (2) 분화류의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경우
-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시설작물
- (4) 한 시설에서 화훼류와 비화훼류를 혼식 재배중이거나, 또는 재배 예정인 경우
- (5) 통상적인 재배시기, 재배품목, 재배방식이 아닌 경우
 - ※ 여름재배 토마토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여름재배 토마토를 가입하는 경우, 파프리카 토경재배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토경재배 파프리카를 가입하는 경우
- (6) 시설작물별 10a당 인수제한 재식밀도 미만인 경우

<품목별 인수제한 재식밀도>

품목		인수제한 재식밀도
수박		400주/10a미만
멜론		400주/10a미만
참외		600주/10a미만
호박		600주/10a미만
풋고추		1,000주/10a미만
오이		1,500주/10a미만
토마토		1,500주/10a미만
파프리카		1,500주/10a미만
가지		1,500주/10a미만
장미		1,500주/10a미만
배추		3,000주/10a미만
무		3,000주/10a미만
딸기		5,000주/10a미만
백합		15,000주/10a미만
카네이션		15,000주/10a미만
과	대과	15,000주/10a미만
	쪽과	18,000주/10a미만
국화		30,000주/10a미만
상추		40,000주/10a미만
부추		62,500주/10a미만
시금치		100,000주/10a미만

다)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 (2) 원목 5년차 이상의 표고버섯
- (3) 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 (4)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표고버섯
- (5)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표고버섯

라)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 (2) 균상재배, 병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느타리버섯
-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느타리버섯
-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느타리버섯

마) 새송이버섯(병재배)

-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 (2) 병재배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새송이버섯
-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새송이버섯
-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새송이버섯

바) 양송이버섯(균상재배)

- (1)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 (2) 균상재배 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양송이버섯
- (3)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양송이버섯
- (4)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양송이버섯

제4장 가축재해보험 제도

제1절 제도 일반

1. 사업실시 개요

가. 실시 배경과 사업목적

가축재해보험의 사업목적은 해마다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 등 재해로 인한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 생산성 향상 도모하는 데 있다.

축산업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재해 및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크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개별농가로는 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인해 가축 및 가축사육 시설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나. 사업 운영

표 4-1. 가축재해보험 운영기관

구 분	대 상
사업총괄	농림축산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사업관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사업운영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자 (NH손보, KB손보, DB손보, 한화손보, 현대해상)
보험업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분쟁해결	금융감독원
심의기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가축재해보험의 사업 주관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사업관리기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5조의 2(농어업재해보험 사업관리) 2항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축재해보험 사업관리를 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 관계법령의 개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 보조금 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 업무를 총괄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 업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선정·관리감독, 재해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조사자의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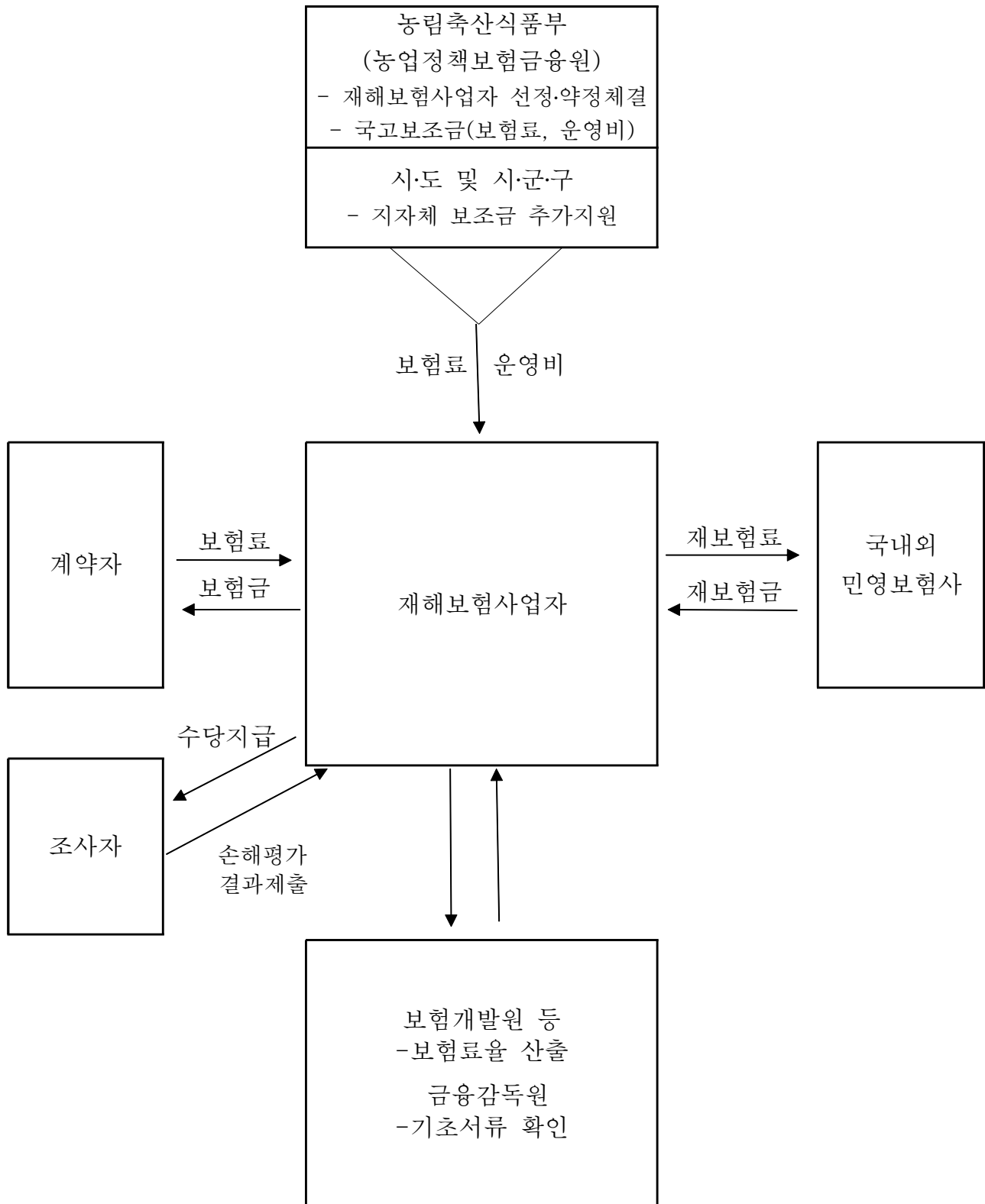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이며, 현재는 가축재해보험사업자는 NH손보, KB손보, DB손보, 한화손보, 현대해상이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을 한다.

가축재해보험도 손해보험이므로 보험업에 대한 감독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분쟁 해결은 금융감독원이다.

가축재해보험을 포함한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설치되어 재해보험 목적물 선정,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사업 재정지원, 손해평가 방법 등 농업재해보험에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그림 4-1. 가축재해보험 운영체계



2. 보험사업시행 주요 내용(2021년 기준)

가. 사업대상자

가축재해보험 사업대상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2021년 현재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로 고시된 가축은 16개 축종이다.

- 가축 16종 :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꿀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 가축 사육시설 :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1의 2. 임산물재해보험 :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작물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1의 2. 임산물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나. 정부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방식은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 대상자(축산농업인)가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이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요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한다.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은 개인 또는 법인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 보험료의 5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요건>

- 가축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요건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로 다음과 같다.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축산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자를 받은 자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농축협으로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 [단, ①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축산업등록 제외 대상은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②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보험 대상 목적물이 없는 경우 지원, ③농축협은 축산법 제22조 제5항에 의한 축산업 등록 제외 대상도 지원]
 - 축사는 적법한 건물(시설 포함)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있어야 하고, 가축 주계약 가입금액 최소 10만 원 이상인 경우 정부 지원 가능
- *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용도 시 정부 지원 제외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따라 사육 가축이 없는 경우 주계약이 최소 1만 원 이상인 경우
- 가축재해보험 관련 정부의 지원은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보험료의 50% 지원. 단, 농업인(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별(법인등록번호) 5천만 원 한도
 - * 예시) 보험 가입하여 4천만 원 국고지원 받고 계약 만기일 전 중도 해지한 후 보험을 재가입할 경우 1천만 원 국고 한도 내 지원 가능
 - ** 말은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 원 한도 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 지원 (외국산 경주마는 정부 지원 제외)

다. 보험 목적물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가축 16개 축종과 축산시설물이다. 이는 축산법 및 동법 시행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고시된 가축 중에서 곤충과 개 등 일부 가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축종이 해당된다.

표 4-2. 축산관련 법령상의 가축과 보험목적물의 가축

구분	축산법	축산법시행령	농식품부 고시
보험 대상 축종 (16종)	소, 말, 양(산양,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토끼, 꿀벌	오소리, 관상조(15종)
보험 미대상 축종	-	기러기, 노새, 당나귀, 개	곤충(14종), 지렁이

축산시설물에는 보험목적물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부속물과 부착물 및 부속 설비 등을 포함하며, 태양광 및 태양열 발전시설은 제외한다.

라. 보험 가입 단위

가축재해보험은 사육하는 가축 및 축사를 전부보험 가입하는 포괄 가입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종모우인 소와 말은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마. 보험 판매 기간

보험 판매 기간은 연중으로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나, 재해보험사업자는 폭염·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신규 가입에 한해 보험 가입 기간을 제한 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험 가입 제한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 1) 폭염 : 6~8월
- 2) 태풍 :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 날부터 태풍특보 해제 시

바.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 수준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풍해, 수해, 설해, 지진 등), 질병(축종별로 다름), 화재 등이다.

가축재해보험도 자연재해, 질병,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축재해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손해보험은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보장 유형이 다양하다. 가축재해보험도 축종별로 재해에 범위 내에서 보장 수준을 별도로 설정한다. 축종별 구체적인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4-3.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및 축종별 보장 수준(2021년 기준)

축종	대상 재해	보장 수준 (피해손해액 대비)				
		60	70	80	90	95
소	자연재해(풍재, 수재, 설해, 지진), 화재, 질병, 부상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긴급도축(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소 도난에 의한 손해 등 ※ 질병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특약) 소 도체결합,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돼지	자연재해(풍재, 수재, 설해, 폭염, 지진), 화재, 질병 등 ※ 질병 : TGE(전염성위장염), PED(돼지유행성설사병), Rota(로타바이러스감염증) (특약) 질병위험, 축산휴지위험, 전기적장치위험, 폭염, 구내 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말	자연재해(풍재, 수재, 설해, 지진), 화재, 질병, 긴급도축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 불임 등 ※ 질병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특약) 말운송위험, 종모마 번식장애,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자연재해(풍재, 수재, 설해, 폭염, 지진), 화재 등 (특약) 전기적장치위험,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	○	○	○	○
기타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자연재해(풍재, 수재, 설해, 지진), 화재, 질병 등 ※ 질병(사슴, 양)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 ※ 질병(꿀벌) : 부저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은 보상 (특약) 구내폭발위험, 화재대물배상, 폐사·긴급도축(사슴, 양), 부저병·낭충봉아부패병(꿀벌) ※ 폐사·긴급도축(사슴, 양) :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긴급도축(산욕마비, 난산 등)	○	○	○	○	○

축종별 보장 수준

1) 소(牛)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 계 약	한우, 육우, 젖소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 화재)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로 긴급도축을 하 여야 하는 경우 ※ 젖소 유량 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관련 사고(긴급도축 제외)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소 도난에 의한 손해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30%, 40%
	종모우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 시 그 외 보상하는 사고는 한우·육우·젖소와 동일	
특 별 약 관	소 도체결합 보장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결함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기타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구내폭발 위험보장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 원
	화재 대물배상	축사 화재로 인해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축재해보험 약관 참조 바람

2) 돼지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 계 약	돼지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 10%, 20%
	질병위험 보장	TGE, PED, Rota virus에 의한 손해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 20%, 30%, 40% 또는 200만 원 중 큰 금액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폐사 시		
폭염재해 보장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특 별 약 관	축산휴지 위험보장	주계약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 으로 축산업이 휴지되었을 경우에 생긴 손해액	-
	구내폭발 위험보장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 원
	설해손해 부보장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부보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화재 대물배상	축사 화재로 인해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축재해보험 약관 참조 바람

3)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 계 약	가금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폭염에 의한 손해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 10%, 20%, 30%, 40%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전기장치가 파손되어 온도의 변화로 가축 폐사 시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 20%, 30%, 40% 또는 200만 원 중 큰 금액
특 별 약 관	폭염 부보장	폭염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부보장에 따라 보험료 할인	
	구내폭발 위험보장	구내에서의 폭발·과열로 인한 손해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 원
	설해손해 부보장	설해에 의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부보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화재 대물배상	축사 화재로 인해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단, 폭염사고는 선택한 자기부담금과 20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함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축재해보험 약관 참조 바람

4) 말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 계 약	경주마, 육성마, 종빈마, 종모마, 일반마, 제주마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 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의 실명으로 긴급도축하여야 하는 경우 불임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비용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 (단, 경주마는 경마장 외 30%, 경마장 내 5%, 10%, 20%, 30% 중 선택)
	말 운송 위험	말 운송 중 발생하는 주계약 보상사고	
특 별 약 관	씨수말 번식 첫해 담보 특약	종모마(수컷)의 번식 장애 보상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 (경주마, 제주마, 육성마 가입 시 자동 담보)	
	구내폭발 위험보장	구내에서의 폭발·과열로 인한 손해	
	축사 특약	화재(벼락 포함)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화재 대물배상	축사 화재로 인해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축재해보험 약관 참조 바람

5) 기타 가축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구 분		보상하는 사고	자기부담금
주계약	사슴, 양, 오소리, 꿀벌, 토끼	화재에 의한 손해 풍재, 수재, 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가축 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 10%, 20%, 30%, 40%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	사슴, 양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산욕마비, 난산으로 긴급도축을 하여야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 10%, 20%, 30%, 40%
낭충봉 아부패병	꿀벌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한 손해	약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 10%, 20%, 30%, 40%
부저병 보장특약		꿀벌 부저병으로 인한 손해	
구내폭발 위험보장	사슴, 양, 오소리, 꿀벌, 토끼	구내에서의 폭발·파열로 인한 손해	
축사 특약	축사	화재에 의한 손해 풍재·수재·설해, 지진에 의한 손해	풍·수재, 설해, 지진 : 50만 원
	화재 대물배상	축사 화재로 인해 인접 농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축재해보험 약관 참조 바람

사. 보험 가입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보험 가입 안내(지역 대리점 등) → 가입신청(계약자) → 사전 현지 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등의 순서를 거친다. (224p 그림4-2 참고)

가축재해보험은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민영보험사 취급점)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를 담당한다.

아. 보험료율 적용기준 및 할인·할증

보험료의 할인·할증의 종류는 축종별,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축종별 재해보험 요율서에 따라 적용된다. 보험료 할인·할증은 과거의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할증, 동물복지축산농장 할인 등을 적용한다.

※ 보험료율 산출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은 보험개발원 할인 할증시스템을 통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간 계약자의 통합손해율, 할인 할증률 등 정보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 공유할 수 있음

자. 손해평가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에 전문가를 조사자를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손해평가 절차>

- ① 보험사고 접수 : 계약자·피보험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사고 발생 사실 통보
- ② 보험사고 조사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접수가 되면, 손해평가반을 구성하여 보험사고를 조사, 손해액을 산정
 -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해당 여부, 사고 가축과 보험목적물이 동일 여부,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원인과 가축 폐사 등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여부, 다른 계약체결 유무, 의무 위반 여부 등 확인 조사
 - 보험목적물이 입은 손해 및 계약자·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등 손해액 산정
- ③ 지급보험금 결정 : 보험 가입금액과 손해액을 검토하여 결정
- ④ 보험금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이 내에 지급하되,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으면 추정보험금의 50%까지 보험금 지급 가능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하여서는 안 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험목적물에 대한 수의사 진단 및 검안 시 시 군 공수의사, 수의사로 하여 진단 및 검안 등 실시
- 소 사고 사진은 귀표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하고 매장 시 매장장소가 확인되도록 전체 배경화면이 나오는 사진 추가, 검안 시 해부 사진 첨부
- 진단서, 폐사 진단서 등은 상단에 연도별 일련번호 표기 및 법정서식 사용

※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발급 등)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하여는 다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손해사정사 및 손해평가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
-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실시

차. 기관별 역할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정부(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등이 있다.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역할 분담과 긴밀한 업무 협조가 절대적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에 가축재해보험 사업 추진단계별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정하고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 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 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마련한 상품개선안을 승인한다.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가축재해보험에 필요한 자금을 배정한다.

가축재해보험의 사고예방을 위한 위험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 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2)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 및 제도개선연구·개선, 위험관리점검,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 계획 수립하고,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을 실시(법 제8조)한다.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해 현장의견·자체검토사항,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하고, 축종별 상품개선안, 보험료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축종별 최종 상품개선안 재해보험사업자에 통보하여 시행한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 농업인·지자체에 제도 홍보 및 손해평가사 교육 등을 추진한다.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를 대상으로 부당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지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계약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손해평가 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손해평가사의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의 경우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보험사업자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재해보험사업자에 요구한다.

3) 재해보험사업자

보험가입 촉진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재해보험 교육·홍보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하고,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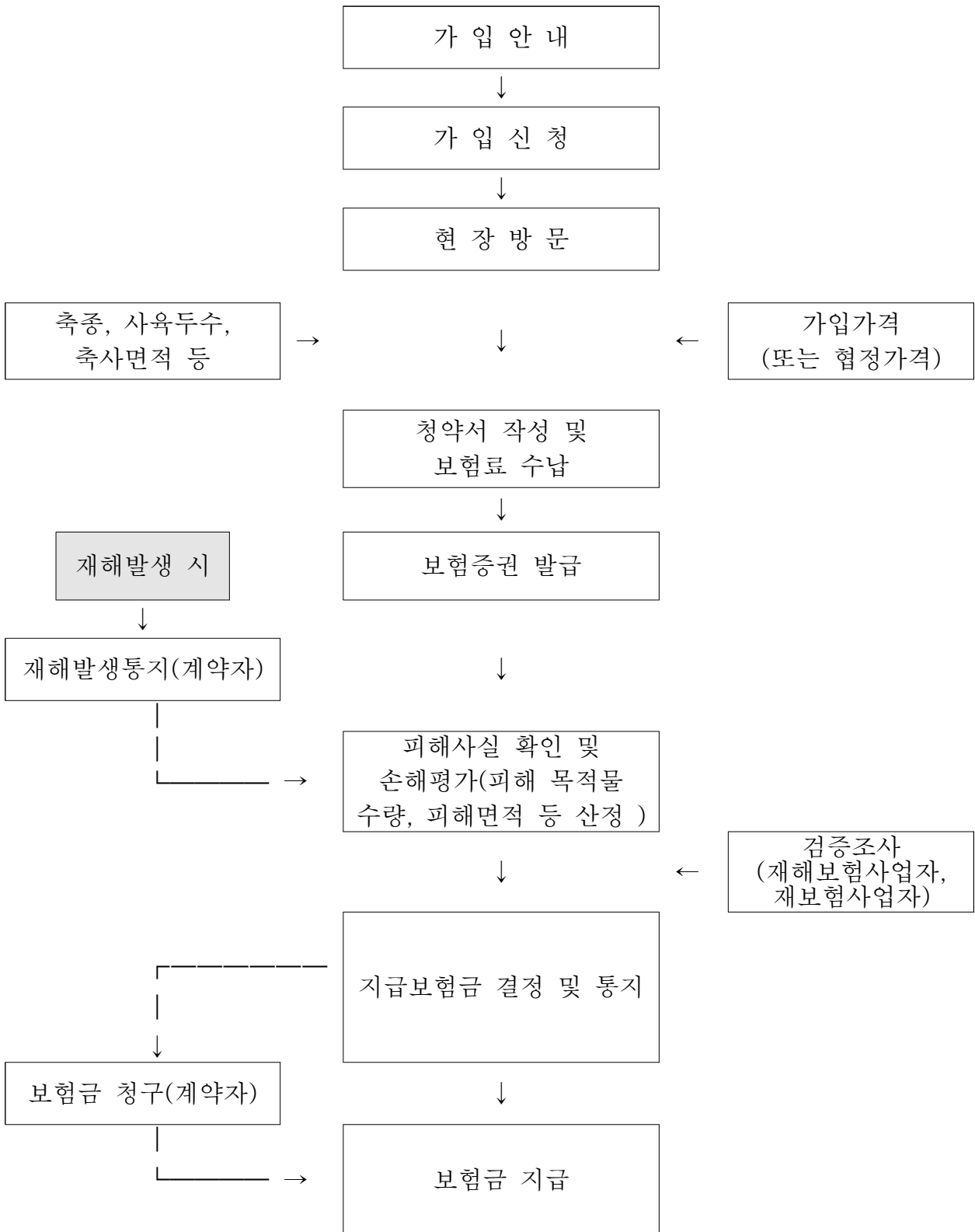
가축재해보험사업 세부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손해평가 실시, 보험사고 접수현황 추정보험금 등 파악하고, 농업인·지자체에 대한 보험 상품 내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지역 대리점 및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사정사에 대한 보험 상품 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한다.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가축재해보험 사업 세부 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계약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계약자 및 보험목적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다른 손해평가반에게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그림 4-2. 가축재해보험 추진절차



제2절 가축재해보험 약관

1. 가축재해보험 약관

산업사회가 고도화되면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축산농가의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보험이 가축재해보험이며 가축재해보험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리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업 운영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축재해보험의 모든 계약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가축재해보험약관이다.

현행 가축재해보험약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축재해보험약관은 특정한 보험계약에 일반적이고 정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조항인 보통보험약관과 보통보험계약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충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계약조항을 담고 있는 22개의 특별보험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보험의 목적인 가축을 소, 돼지, 말,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의 5개 부문 16개 축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부문별 보험의 목적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목적에 보험사고가 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또는 자연인(생명이나 신체)을 의미하며 가축재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가축 등을 의미한다.

현행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축종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牛) 부문

소 부문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소를 한우, 육우, 젖소로 분류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육우는 품종에 관계없이 쇠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비육되는 소로 주로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품종으로는 샤롤레, 헤어포드, 브라만 등이 있으며, 젖소 수컷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도 육우로 분류되고 젖소는 가축으로 사육되는 소 중에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소로 대표적인 품종은 홀스타인종(Holstein)이 있으며 한우는 체질이 강하고 성질이 온순하며 누런 갈색의 우리나라 재래종 소로 넓은 의미로는 한우도 육우의 한 품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가축재해보험에서는 한우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보험의 목적인 소는 보험기간 중에 계약에서 정한 소(牛)의 수용장소(소재지)에서 사육하는 소(牛)는 모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 시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가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는 생후 15일령부터 13세 미만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소는 모두 귀표(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가축의 귀에 다는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젖소 불임우(프리마틴 등)는 암컷으로, 거세우는 수컷으로 분류한다.

계약에서 정한 소(牛)의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소라도 다른 계약이 있거나, 과거 병력, 발육부진 또는 발병 등의 사유로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가축 증가(출산, 매입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한다.

나. 돼지(豚) 부문

돼지 부문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육성돈(후보돈 포함), 자돈(仔豚), 기타 돼지로 분류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돼지는 평균 수명이 10~15년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비육돈은 일반적으로 약 180일 정도 길러져서 도축되며 비육돈은 출산에서 약 4주차까지를 포유기간(포유자돈)으로 어미돼지의 모유를 섭취하고 약 4주차~8주차까지 자돈기간(이유자돈)으로 어미돼지와 떨어져서 이유식에 해당하는 자돈사료를 섭취하게 되며 약 8주차~22주차까지가 육성기간(육성돈)으로 이 시기에 근육이 생성되는 급격한 성장기이며 약 22주차~26주차까지가 비육기간(비육돈)으로 출하를 위하여 근내지방을 침착시키는 시기로 구분되며, 번식을 위하여 기르는 돼지를 종돈이라고 하고 종돈에는 종모돈(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수태지)과 종빈돈(씨를 받기 위하여 기르는 암태지)이 있으며 종돈은 통상 육성돈 단계에서 선발 과정을 거쳐서 후보돈으로 선발되어 종돈으로 쓰이게 된다.

다. 가금(家禽) 부문

가금 부문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관상조,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가금(家禽)으로 분류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닭은 종계(種鷄), 육계(肉鷄), 산란계(産卵鷄), 토종닭 및 그 연관 닭을 모두 포함한다.

- 종계 : 능력이 우수하여 병아리 생산을 위한 종란을 생산하는 닭.
- 산란계 : 계란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
- 육계 : 주로 고기를 얻으려고 기르는 빨리 자라는 식육용의 닭. 즉, 육용의 영계와 채란계(採卵鷄)의 폐계(廢鷄)인 어미닭의 총칭.
- 토종닭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재래닭

라. 말(馬) 부문

말 부문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말을 종마(종모마, 종빈마), 경주마(육성마 포함), 일반마,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말(馬)로 분류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계약에서 정한 말(馬)의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말(馬)이라도 다른 계약이 있거나, 과거 병력, 발육부진 또는 발병 등의 사유로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종마 : 우수한 형질의 유전인자를 갖는 말을 생산할 목적으로 외모, 체형, 능력 등이 뛰어난 마필을 번식용으로 쓰기 위해 사육하는 씨말로 씨수말을 종모마 씨암말을 종빈마라고 한다.
- 경주마 : 경주용으로 개량된 말과 경마에 출주하는 말을 총칭하여 경주마라고 하며 대한민국 내에서 말을 경마에 출주시키기 위해서는 말을 한국마사회에 등록해야 하고 보통 경주마는 태어난 지 대략 2년 정도 뒤 경주마 등록을 하고 등록함으로써 경주마로 인정받게 된다.

마. 종모우(種牡牛) 부문

종모우 부문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종모우(씨수소)를 한우, 육우, 젖소로 분류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목적은 귀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종모우는 능력이 우수하여 자손생산을 위해 정액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수소를 말한다,

바. 기타 가축(家畜) 부문

기타 가축 부문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가축의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가축은 모두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단 계약에서 정한 가축의 수용장소에서 사육하는 가축이라도 다른 계약이 있거나, 과거 병력, 발육부진 또는 발병 등의 사유로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가축 증가(출산, 매입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가축에 대하여는 보험목적에서 제외한다.

제3절 특별약관

1. 의의

특별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의 규정을 바꾸거나 보충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 쓰이는 약관으로 현행 가축보험 약관에서는 일반조항에 대한 9개의 특별약관 과 각 부문 별로 소 1개, 돼지 3개, 돼지·가금 공통 1개, 가금 1개, 말 4개, 기타 가축 3개로 총 22개의 특별약관을 두고 있으며,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해당 부문별 제 규정을 따른다.

2. 일반조항 특약

가. 협정보험가액 특약

특별약관에서 적용하는 가축에 대하여 계약 체결 시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협의하여 정한 보험 가입금액을 보험 가입기간 중에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기평가보험 특약이다.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약관 가축은 종빈우(種牝牛), 종모돈(種牡豚), 종빈돈(種牝豚), 자돈(仔豚 ; 포유돈, 이유돈), 종가금(種家禽), 유량검정젖소, 기타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가축이다.

유량검정젖소란 젖소개량사업소의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직전 월의 305일 평균유량이 10,000kg 이상이고 평균 체세포수가 30만 마리 이하를 충족하는 농가)의 소(최저근 산차 305일 유량이 11,000kg 이상이고, 체세포수가 20만 마리 이하인 젖소)를 의미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유량검정젖소는 시가에 관계없이 협정보험가액 특약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나. 공동인수 특약

재해보험사업자가 상호협정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인수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특별약관이다.

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

계약자가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보험금을 대리 청구 및 수령 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리청구인의 요건 및 보험금 대리 청구 및 수령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약관 이다.

라. 보험료분납 특약

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료 분납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약관이다.

마. 축사(畜舍) 특약

축사 특별약관은 가축 주계약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 가입이 가능하며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의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축사 특별약관에서 보험목적은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로 아래의 물건을 포함한다.

-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공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게시판, 네온사인, 간판,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 소유인 전기가스설비, 급배수설비, 냉난방설비, 급이기, 통풍설비, 착유기, 원유냉각기, 분만틀, 가금사의 기계류(케이지, 부화기, 분류기 등) 등 건물의 주 용도에 적합한 부대시설 및 이와 비슷한 것

바. 설해손해 부보장 추가특약

축사특별약관의 특별약관으로 축사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돈사, 가금사의 설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특약이다.

사. 화재대물배상책임 특약

피보험자가 축사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특약이다.

아.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이 가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특약이다.

자.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 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한다)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다.

3. 소 부문 특별약관 - 소(牛)도체결함보장 특약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하면 이후 축산물품질평가사가 도체에 대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그 판정내용을 표시하는 “등급판정인”을 도체에 찍고 등급판정과정에서 도체에 결함이 발견되면 추가로 “결함인”을 찍게 된다. 결함인은 결함 유형에 따라서 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 제거, 기타의 결함으로 6종류로 분류하여 판정하며 이러한 결함인은 이후 경매 시 경락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도축 후 경매 시까지 발견된 예상치 못한 소 도체 결함으로 인하여 경락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특약이 소도체결함보장 특약이다. 단 특약에서는 경매 후 발견된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 돼지 부문 특약

가.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가축재해보험 돼지부문 보통약관에서는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만 보상하고 있으나 이외에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주는 특약이다. 그러나 모든 질병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포유자돈이나 이유자돈에서 큰 피해를 입히는 3가지 질병으로 인한 폐사로 입은 손해에 한정하여 담보하고 있으며, 보상하는 질병은 전염성위장염(TGE virus 감염증), 돼지유행성설사병(PED virus 감염증), 로타바이러스감염증(Rota virus 감염증)으로 상기 3가지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폐사하거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질병의 발생을 서면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폐사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상기 질병에 대한 진단 확정은 전문 수의사가 조직(fixed tissue) 또는 분변, 혈액검사 등에 대한 형광항체법 또는 PCR(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법 등을 기초로 진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예외적·보충적으로 임상학적 진단도 증거로 인정된다.

나.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증권에 명기된 구내에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의 원인으로 구내 가축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고 피보험자가 영위하는 축산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었을 때 생긴 손해액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 폭염재해보장 추가특약

가축재해보험 돼지부문 보통보험약관에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자기부담금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보험목적 수용장소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의 발령 전 24시간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폭염 특보가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

5. 돼지, 가금 부문 특약 - 전기적 장치 위험보장 특약

가축보험 돼지부문과 가금부문에서는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기적 장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돼지,가금 부문에 공통적용되는 특별약관이다.

특약에서는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그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한다. 단 보험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발생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폐사된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6. 가금부문 특약 - 폭염손해 부보장 특약

보통보험 약관 가금부문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폭염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하는 특약이다.

7. 말부문 특약

가. 씨수말 번식컷해 선천성 불임 확장보장 특약

보험목적이 보험기간 중 불임이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 보상하는 특약으로 특별약관에서 불임의 정의, 약관의 효력 개시요건, 불임 판정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 또는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씨수말 내·외부 생식기의 감염으로 일어난 불임
- 씨암말의 성병으로부터 일어난 불임
- 어떠한 이유로든지 교배시키지 않아서 일어난 불임
- 씨수말의 외상, 질병, 전염병으로부터 유래된 불임

나. 말(馬) 운송위험 확장보장 특약

보험의 목적인 말을 운송 중에 보통약관 말부문의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특약으로 아래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운송 차량의 덮개 또는 화물의 포장 불완전으로 생긴 손해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의 적재중량과 적재용량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으로써 생긴 손해
- 수탁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 14일을 초과하여 발견된 손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나. 너비 : 자동차의 후사경(後寫鏡)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을,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에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의 너비

다. 높이 : 화물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4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 노선의 경우에는 4미터 20센티미터), 소형 3륜 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 50센티미터, 이륜자동차는 지상으로부터 2미터의 높이

다. 경주마 부적격 특약

보험의 목적인 경주마가 건염, 인대염, 골절 혹은 경주중 실명으로 인한 경주마 부적격 판정을 한국마사회 마필보건소에서 받은 경우 보상하는 특약이다. 단 보험의 목적인 경주마가 경주마 부적격 판정 이후 종모마 혹은 종빈마로 용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 경주마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특약

보통약관에서는 질병 등에 의한 폐사는 보험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후에 폐사한 경우만 보상하고 있으나 보험의 목적이 경주마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질병 등에 의한 폐사도 보상한다는 특약이다.

8. 기타 가축 부문 특약

가. 폐사·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

기타 가축 보통보험약관에 보상하는 손해는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폐사한 경우 보상하고 있으나 사슴과 양이 폐사·긴급도축 확장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폐사 및 긴급도축의 경우에도 보상하는 특약으로 긴급도축 요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 후 알릴 의무 등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나. 꿀벌 낭충봉아부패병보장 특약

보통보험약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벌통의 꿀벌이 제2종 가축전염병인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폐사(감염 벌통 소각 포함)했을 경우 벌통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부담금 등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다. 꿀벌 부저병보장 특약

보통보험약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나 벌통의 꿀벌이 제3종 가축전염병인 꿀벌 부저병으로 폐사(감염 벌통 조각 포함)했을 경우 벌통의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으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자기부담금 등에 대하여 특별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럽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주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주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주1)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놀라타만 해당한다)· 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 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한다)·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마(馬)웨스트나일열·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 낭충봉아부패병

주2)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炎)· 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한다)· 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Marek's disease)· 닭전염성에프(F)낭(囊)병

제4절 가축재해보험 계약

1. 축종별 가입대상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등에 대비하고자 축산농가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16종의 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대상으로 보험기간 1년인 순수보장형 단기손해보험상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축보험의 보험 가입대상과 가입형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입대상	가입형태
소	한우, 육우, 젖소	포괄가입
	종모우	개별가입
돼지	제한 없음(종모돈, 종빈돈, 비육돈, 육성돈, 자돈)	포괄가입
말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 육성마, 일반마	개별가입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포괄가입
기타 가축	사슴, 양(면양, 산양), 토끼, 꿀벌, 오소리	포괄가입
축사	가축사육건물 및 관련 시설	포괄가입

가축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을 선택적으로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방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 전부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종모우인 소와 말의 경우는 개별가입 가능하며 소는 1년 이내 출하 예정인 경우, 소 이력제 현황의 70% 이상 가입 시 포괄가입으로 간주한다.

축사의 경우는 가축사육건물 및 관련 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태양열 등 관련 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가입금액

보험사고 발생시 재해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 할 보험 계약상 보상 최고한도인 보험가입금액은 향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목적인 가축의 보험가액에 일치하도록 전부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 볼 수 있으나 가축보험의 보험목적인 가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보험가액이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고,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가축보험 가입 시 가입시점에서 가입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대상 가축 현황에 따라서 재해보험사업자가 기준가액을 산정하고 보험사업자가 제시하는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

3.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불요식의낙성계약으로 계약자의 청약과 재해보험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게 되나 실제 거래에는 다수의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관계로 계약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미리 작성한 정형화된 계약내용을 계약자에게 승인하게 하는 부합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계약은 계약자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청약서 및 재해보험사업자가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게 되며 계약자의 청약을 받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이를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성립하게 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기간 내에 승낙 여부에 대한 통지를 아니 한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보며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별표> 미경과비율표 (단위 %)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구분	품목	판매개시 연도												이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보통약관	사과·배	100%	100%	100%	86%	76%	70%	54%	19%	5%	0%	0%	0%	0%	
	단감·곶은감	100%	100%	99%	93%	92%	90%	84%	35%	12%	3%	0%	0%	0%	
특별약관	나무손해	사과·배·단감·곶은감	100%	100%	100%	99%	99%	90%	70%	29%	9%	3%	3%	0%	0%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구분	품목	판매개시 연도												이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보통약관	사과·배	100%	100%	100%	83%	70%	63%	49%	18%	5%	0%	0%	0%	0%	
	단감·곶은감	100%	100%	98%	90%	89%	87%	79%	33%	11%	2%	0%	0%	0%	
특별약관	나무손해	사과·배·단감·곶은감	100%	100%	100%	99%	99%	90%	70%	29%	9%	3%	3%	0%	0%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50%형															
구분	품목	판매개시 연도												이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보통약관	사과·배	100%	100%	100%	92%	86%	83%	64%	22%	5%	0%	0%	0%	0%	
	단감·곶은감	100%	100%	99%	95%	94%	93%	90%	38%	13%	3%	0%	0%	0%	
특별약관	나무손해	사과·배·단감·곶은감	100%	100%	100%	99%	99%	90%	70%	29%	9%	3%	3%	0%	0%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 착과감소보험금 보장수준 70%형															
구분	품목	판매개시 연도												이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보통약관	사과·배	100%	100%	100%	90%	82%	78%	61%	22%	6%	0%	0%	0%	0%	
	단감·곶은감	100%	100%	99%	94%	93%	92%	88%	37%	13%	4%	0%	0%	0%	
특별약관	나무손해	사과·배·단감·곶은감	100%	100%	100%	99%	99%	90%	70%	29%	9%	3%	3%	0%	0%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1권

품목	분류	판매개시연도										이듬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포도 복숭아	보통 약관								90	80	50	40	20	20	20	0	0	0	0	0	
	특별 약관								100	90	80	75	65	55	50	40	30	15	0	0	
	수량감 소추 가보 장								90	80	50	40	20	20	20	0	0	0	0	0	
포도	비가 림시 설 화재								90	80	75	65	60	50	40	30	25	15	5	0	
자두	보통 약관								90	80	40	25	0	0	0	0	0	0	0		
	특별 약관								100	90	80	75	65	55	50	40	30	15	0		
밤	보통 약관	95	95	90	45	0	0	0													
호두	보통 약관	95	95	95	55	0	0	0													
참다 래	참다 래			95	90	80	75	75	75	75	75	70	70	70	70	65	40	15	0	0	0
	비가 림시 설			100	70	35	20	15	15	15	5	0	0	0	0	0					
	나무 손해			100	70	35	20	15	15	15	5	0	0	0	0	0					
	화재 위험			100	80	70	60	50	40	30	25	20	15	10	5	0					
대추	보통 약관	95	95	95	45	15	0	0													
	특별 약관	85	70	55	40	25	10	0													
매실	보통 약관								95	65	60	50	0	0	0	0					
	특별 약관								100	90	80	75	65	55	50	40	30	15	0	0	
오미 자	보통 약관								95	90	85	85	80	65	40	40	0	0	0		
유자	보통 약관								95	95	95	90	90	80	70	70	35	10	0	0	0
	특별 약관								100	90	80	75	65	55	50	40	30	15	0	0	0
살구	보통 약관								90	65	50	20	5	0	0						
	특별 약관								100	95	95	90	90	90	90	90	55	20	5	0	
오디	보통 약관								95	65	60	50	0	0	0						
복분 자	보통 약관								95	50	45	30	10	5	5	0					
무화 과	보통 약관								95	50	45	30	10	5	5	0					

품목	분류	판매개시연도										이듬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감귤	보통 약관	95	95	95	45	15	0	0	0												
	특약 동상해 보장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0	50	0									
	특약 나무손해 보장 과실손해 추가보장	95	95	95	45	15	0	0	0	0	0	0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1권

품목	분류	판매개시연도										이듬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인삼	인삼 1형		95	95	60	30	15	5	5	5		5	0	0	0							
	1형 (6년근)		95	95	60	20	5	0														
	인삼 2형								95	95	95	90	90	90	90	90	55	20	5	0		
벼	보통 약관	95	95	95	65	20	0	0	0													
	특별 약관	95	95	95	65	20	0	0	0													
밀	보통 약관								85	85	45	40	30	5	5	5	0					
보리	보통 약관								85	85	45	40	30	5	5	5	0					
양파	보통 약관								80	70	30	20	0	0	0	0						
마늘	보통 약관								65	65	55	30	25	10	0	0	0					
고구마	보통 약관		95	95	65	20	0	0														
옥수수	보통 약관		95	95	60	20	0															
봄감자	보통 약관	95	95	95	0																	
가을 감자	보통 약관				100	45	15	10	10	0												
고랭지 감자	보통 약관		95	95	65	20	0	0														
차	보통 약관								90	90	60	55	45	0	0	0						
콩	보통 약관			90	55	20	0	0	0													
팥	보통 약관			95	60	20	5	0	0													
양배추	보통 약관				100	50	20	20	15	5	0	0										
고추	보통 약관	95	95	90	55	20	0	0	0													
브로 콜리	보통 약관				100	100	50	30	25	20	15	5	0									
고랭지 배추	보통 약관	95	95	95	55	20	5	5														
월동 배추	보통 약관						95	95	95	55	20	5										
고랭지 무	보통 약관	95	95	95	55	20	5	0														
월동 무	보통 약관						45	30	25	15	10	5	0									
대파	보통 약관		100	100	60	25	5	0	0	0												
쪽파 1형	보통 약관							35	10	10	0											
쪽파 2형	보통 약관							50	30	25	20	15	5	0	0	0						
단호박	보통 약관	95	95	95	45	0																
당근	보통 약관				60	25	10	5	5	0	0	0										
메밀	보통 약관				100	40	10	0	0													
시금치	보통 약관								40	30	10	0										

<2권>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제1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관

제1절 손해평가의 개요

1.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

손해평가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손해평가는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평가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실제 수확량)를 파악하여 손해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지급될 보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손해평가 결과는 지급보험금액을 확정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손해평가(특히 현지조사)는 농업재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손해평가가 농업재해보험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다. (최경환 외 2013: 39~40).

첫째, 손해평가 결과는 피해 입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로 한다)가 받을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손해평가 결과는 몇 단계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이 확정되지만 이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것은 손해평가 결과물이다.

둘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물론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손해평가 결과가 지역마다, 개개인마다 달라 보험가입자들이 인정하기 어렵다면 손해평가 자체의 문제는 물론이고, 농업재해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조사자의 관점을 통일하고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해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활용한다. 조사자들이 손해평가요령, 업무방법서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손해평가 기술을 연마하면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셋째,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 및 개개인의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 조정된다. 보험금을 많이 받은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인상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지역·보험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인하되는 것이 보험의 기본이다.

넷째, 손해평가가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 되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는 그만큼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되어 당장은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면 보험수지에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율도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므로 결국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기피를 초래하고 보험사업의 운영이 곤란하게 되어 농업재해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손해평가 결과가 계속 축적되면 보험료율 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이외에도 농업재해 통계나 재해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2.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

손해평가는 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있어 어떤 업무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최경환 외 2013: 40).

가.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정한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피해 상황에 따른 정확한 보상을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손해평가에 따른 지역별 피해 자료의 축적을 통해 보험료율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적정한 보험료율을 책정함으로써 보험가입자에게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이룰 수 있다.

나. 선의의 계약자 보호

보험의 원칙은 공통의 위험을 안고 있는 다수의 사람이 각자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부담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

정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취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한다. 다수의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조차도 정확한 손해평가는 중요하다.

다. 보험사업의 건전화

부당 보험금의 증가는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 가입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에 따라 보험 여건은 더 악화되어 결국에는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제도 자체의 존립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공정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는 장기적으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농업재해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제2절 손해평가 체계

1. 관련 법령

손해평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동 시행령 및 손해평가요령 등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손해평가 등)에서 손해평가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손해평가 인력,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교차손해평가, 손해평가요령 고시, 손해평가인 교육, 손해평가인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6. 12. 2.]

2. 손해평가의 주체

손해평가의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업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이다(법 제8조).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법 제14조).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는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②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④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3. 조사자의 유형

농업재해보험 조사자는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및 손해사정사이다. 손해평가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한 자이다.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이 밖에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4. 손해평가 체계

손해평가는 보험가입자인 농업인이 사고 발생 통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현지 조사 및 검증조사(필요 시)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참고> 손해평가요령 제 8조, 제 9조, 제 10조, 제 12조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3.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
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제9조(피해사실 확인)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피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 농지별
2.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3.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가. 사고 발생 통지

보험가입자는 보험 대상 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가입한 대리점 또는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고 발생 보고 전산입력

기상청 자료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험사고 여부를 판단하고, 보험대리점 등은 계약자의 사고접수내용이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이를 지체 없이 전산 입력한다.

다. 손해평가반 구성

재해보험사업자 등은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생육시기·품목·재해종류 등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한다.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요령 제 8조에서와 같이 조사자 1인(손해평가사·손해평가인·손해사정사)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및 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라. 현지조사 실시

손해평가반은 배정된 농지(과수원)에 대해 손해평가요령 제 12조의 손해평가 단위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내용은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품목과 보장방식, 재해종류에 따라 다르다.

마. 현지조사 결과 전산 입력

대리점 또는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 결과를 전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입력한다.

바. 현지조사 및 검증조사

손해평가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등은 현지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손해평가반의 현지조사 내용을 검증조사할 수 있다. 이때 조사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재보험사 및 정부로 한다.

조사 방법은 지역별, 대리점별, 손해평가반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한 농지를 임의 추출하여 현지 농지를 검증조사한다. 검증조사 결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정정한다.

제3절 현지조사 내용

손해평가는 보험사고 즉,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고 정해진 평가 절차를 거쳐 손해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고 현장에서 현지조사가 중요하다. 그러나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품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또한 같은 품목이라도 보험상품(보장)의 내용에 따라 손해평가 방법은 달라진다. 따라서 실제로는 품목(상품)별로 정해진 손해평가요령에 의해 손해평가가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손해평가 절차와 내용은 이후의 각 부문에서 설명되므로 여기에서는 개괄적으로 손해평가 현지조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사의 구분

손해평가를 위한 현지조사는 다양하며, 조사의 단계에 따라 본조사와 재조사 및 검증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는 다시 조사 범위를 전체로 하느냐 일부를 하느냐에 따라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본조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신고된 보험목적물에 대해 손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곧바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재조사는 기 실시된 조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즉, 계약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 다시 손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검증조사는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검증조사이다.

2. 품목별 현지조사의 종류

손해평가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보장 내용 즉, 보험상품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상품(보장 내용)의 유형에 따라 작물의 생육 전체 기간의 각 단계별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과수 4종), 손해 발생 시에만 조사하는 것이 있다(과수 4종 이외의 품목). 특히 이러한 구분은 작물 유형(논작물, 밭작물, 원예시설 등) 및 보장대상위험의 범위가 종합적이냐 특정위험에 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표 1-1. 품목별 현지조사 종류

구분	상품군	해당 품목	조사 종류
공통조사			피해사실확인조사
과수	적과전 종합 위험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적과종료 이전: 피해사실확인조사(확인 사항: 유과 타박률, 낙엽률, 나무피해, 미보상비율) ※ 재해에 따라 확인사항은 다름
			적과후착과수조사
			적과종료 이후: 낙과피해조사(단감, 뽕은감은 낙엽률 포함), 착과피해조사, 고사나무조사 ※ 재해에 따라 조사종류는 다름
	종합 위험	포도(수입보장 포함), 복숭아, 자두, 유자	착과수조사, 과중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밤, 참다래, 대추, 매실, 오미자, 유자, 살구, 호두	수확 개시 전·후 수확량조사
		복분자, 무화과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복분자	경작불능조사
		오디, 감귤	과실손해조사
		감귤, 살구	고사나무조사(나무손해보장 가입건)
	포도(수입보장포함), 복숭아, 자두, 참다래, 매실, 무화과, 유자, 감귤	고사나무조사(나무손해보장 가입건)	
논/ 밭 작물	특정 위험	인삼(작물)	수확량조사
	종합 위험	벼	이앙·직파 불능조사, 재이앙·재직파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수량요소)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수확량(전수)조사, 수확불능확인조사
		마늘(수입보장 포함)	재파종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양파(수입보장 포함), 감자, 옥수수, 고구마, 양배추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조사
		차(茶)	수확량(표본)조사
		밀, 콩(수입보장 포함)	경작불능조사, 수확량(표본, 전수)조사
		고추, 브로콜리, 메밀,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인삼(해가림시설)	해가림시설 손해조사
원예 시설	종합 위험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벚꽃재배사	시설하우스 손해조사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느타리, 표고버섯, 양송이, 새송이	시설작물 손해조사

자료: NH농협손해보험·농림축산식품부, 2021.

제2장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제1절 보장방식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적과전 종합 위험 방식	사과, 배, 단감, 뽕은감	적과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5종한정보장 특약시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만 보장)
		적과종료 이후 : 태풍(강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 일소, 가을동상해

1) 적과이전의 종합위험

- 가)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나)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다)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참고> 재해의 정의

- 태풍피해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경보 또는 태풍주의보)를 발령 시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로 인한 피해
- 우박피해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 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 호우피해 : 평균적인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강풍피해 : 강한 바람 또는 돌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한해(가뭄) : 장기간의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 의한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냉해 :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조해(潮害) : 태풍이나 비바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연안지대의 경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발생하는 피해
- 설해 : 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폭염 :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기타 자연재해 : 상기 자연재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적과이후의 특정위험

- 가)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의 바람을 포함. 바람의 세기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 나) 우박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 다) 지진 : 지구 내부의 급격한 운동으로 지진파가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지진을 말하며,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한 때. 지진통보에서 발표된 진앙이 과수원이 위치한 시군 또는 그 시군과 인접한 시군에 위치하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 라)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 마) 집중호우 :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또는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의 비 또는 농지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 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12시간 누적강수량이 80mm이상인 강우상태
- 바) 일소피해 : 폭염(暴炎)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일소(日燒)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하며,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발령한 때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소의 기상관측장비(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낮 최고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이상으로 관측된 경우를 말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한 날 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보상. 이때 폭염특보는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폭염특보를 적용

사) 가을동상해 :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및 피해는 단감, 뽕은감 품목에 한하여 10월 31일 까지 발생한 가을동상해로 나무의 전체 잎 중 50%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적과종료이전

-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나)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다)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라)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마)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바)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로 인한 손해
- 사)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 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차)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2) 적과종료이후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나)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라)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마)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바) 최대순간풍속 14m/sec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사)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동녹(과실에 발생하는 검은 반점 병) 등 간접손해

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자)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차)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카) 농업인의 부적절한 잎소지(잎 제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타) 병으로 인해 낙엽이 발생하여 태양광에 과실이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파) 식물방역법 제36조(방제명령 등)에 의거 금지 병해충인 과수 화상병 발생에 의한 폐원으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매립으로 발생한 손해

하)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상하지 않는 재해 >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피해를 입었으나 회생 가능한 나무 손해
- 토양관리 및 재배기술의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나무 손해
- 병충해 등 간접손해에 의해 생긴 나무 손해
-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 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2.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과수)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복숭아, 자두, 밤, 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복숭아는 특약으로 병충해 보장(세균구멍병)

나. 재해의 정의

-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4)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다만, 복숭아의 세균 구멍병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
- 5)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6)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7)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 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9)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3.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방식과실손해보장	오디, 감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나. 재해의 정의

-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4)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5)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6)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7)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 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9)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4. 종합위험방식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방식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포도, 대추, 참다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비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나. 재해의 정의

-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3)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4)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
- 6)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7)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8)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9)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 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10)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11)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12)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 13)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5.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손해보장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손해보장	복분자, 무화과	수확 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수확 후	태풍(강풍), 우박

나. 재해의 정의

1) 수확 이전의 종합위험

- 가)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나)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다)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2) 수확 이후의 특정위험

- 가)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발령지역 바람과 비를 말하며, 최대순간풍속 14m/sec이상의 바람을 포함. 바람의 세기는 과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3개 기상관측소(기상청 설치 또는 기상청이 인증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 중 가장 큰 수치의 자료로 판정

- 나) 우박 : 적란운과 봉우리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 또는 얼음덩어리가 내리는 현상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수확 개시 이전

-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나)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다)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라)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마)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바)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폭염 등)로 인한 손해
- 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2) 수확 개시 이후

-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나)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라)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마)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바) 최대순간풍속 14m/sec미만의 바람으로 발생한 손해
- 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아)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나는 손해
- 자) 저장성 약화, 과실경도 약화 등 육안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
- 차)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6.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벼, 맥류)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벼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특약으로 병충해 보장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조사료용 벼, 밀, 보리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나. 재해의 정의

-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4)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다만, 벼 병해충보장 특별약관 가입 시는 제외)
- 5)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6)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7)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 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9)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차, 콩, 양배추, 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감자(고랭지, 봄, 가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나. 재해의 정의

-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 4) 병충해 : 병 또는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다만, 감자(고랭지재배, 봄재배, 가을재배)는 제외)
- 5)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6)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7) 계약체결 시점(계약체결 이후 파종 또는 정식 시, 파종 또는 정식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 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9)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 10)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8.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밭작물)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종합위험 생산비보장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시금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고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나. 재해의 정의

-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 4) 병충해 : 병 또는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4)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단, 고추품목은 제외)
- 5)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6)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7) 계약체결 시점(계약체결 이후 파종 또는 정식 시, 파종 또는 정식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9)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9.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종합위험) 보장방식(인삼)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작물(특정위험) 및 시설 (종합위험)보장	인삼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해가림시설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특약)

나. 재해의 정의

1) 인삼 (작물 특정위험)

- 가) 태풍(강풍) :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특보(태풍주의보, 태풍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최대순간풍속 14m/s이상의 강풍.
- 나) 폭설 : 기상청에서 대설에 대한 특보(대설주의보, 대설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눈 또는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상태
- 다) 집중호우 :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한 때 해당 지역의 비 또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이상인 상태
- 라) 침수 :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인삼 농지에 다량의 물(고랑 바닥으로부터 침수 높이가 최소 15cm 이상)이 유입되어 상면에 물이 잠긴 상태.

- 마) 우박 : 적란운과 봉우리 적운 속에서 성장하는 얼음알갱이나 얼음덩이가 내려 발생하는 피해
- 바) 냉해 : 출아 및 전엽기(4~5월) 중에 해당지역에 최저기온 0.5℃ 이하의 찬 기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인정
- 사) 폭염 : 해당 지역에 최고기온 30℃ 이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잎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타들어간 증상이 50% 이상 있는 경우에 인정
- 아)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2) 해가림시설

- 가)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나)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다) 화재 :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인삼

-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나)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다)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라)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충해로 발생한 손해
- 마) 연작장해, 염류장해 등 생육 장애로 인한 손해
- 바)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사) 해가림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아)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 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차)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2) 해가림시설

-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나)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다)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라)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마)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바)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 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아)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함.
- 자)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차)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함.

- 카)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타)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파) 타)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10. 종합위험보장 (원예시설, 버섯)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종합 위험 보장	원예 시설	(시설작물재배용) 단동(연동)하우스, 내재해형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자연재해, 조수해, 특약(화재, 화재대물배상)
	시설 작물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썩갓,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나. 재해의 정의

-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3)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4)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5)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 6)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재배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7) 제초작업, 시비관리, 온도(냉·보온)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8)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 9)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10)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 11)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12)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보험의 목적인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시설, 수리, 철거 등 관계법령(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포함)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 13)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 14) 출입문을 제거하거나 농업용 시설물이 피복재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 그러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피복재를 제거한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함
- 15)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을 수리 및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

11. 농업수입감소보장

가. 보상하는 손해

구분	품목		보상하는 손해
농업수입 감소보장	과수	포도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가격하락
	밭작물	양파, 마늘, 고구마, 콩,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충해, 가격하락 감자(가을재배)는 병충해 보장

나. 재해의 정의

- 1) 자연재해 :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한해(가뭄 피해), 냉해, 조해(潮害),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 2) 조수해(鳥獸害) : 새나 짐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 3) 화재 : 화재로 인한 피해
- 4) 병충해 : 병 또는 해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을재배 감자만 해당)
- 5) 가격하락 : 기준가격보다 수확기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하는 피해

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2) 수확기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 3)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4)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다만, 감자(가을재배)는 제외
- 5)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 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 6) 하우스, 부대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 7) 계약체결 시점(단, 계약체결 이후 파종 또는 정식 시, 파종 또는 정식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 8)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재해로 발생한 손해
- 9) 개인 또는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확기가격이 하락하여 발생한 손해
- 10)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건조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
- 11)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제2절 손해평가 기본단계

재해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해당 농지에 자연재해 등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했던 대리점(지역농협 등) 등 영업점에 사고 접수를 한다. 영업점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사고접수 사실을 알리고 재해보험사업자는 조사기관을 배정한다. 조사기관은 소속된 조사자를 빠르게 배정하여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해당 손해평가반은 신속하게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2-1 손해평가 업무흐름



손해평가반은 영업점에 도착하여 계약 및 기본사항 등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서를 받아 피해현장에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여부를 심사한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관련조사를 선택하여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서명확인을 받아 전산입력 또는 대리점에게 현지조사서를 제출한다.

그림 2-2 현지조사 절차(5단계)



손해평가는 조사품목, 재해의 종류, 조사 시기 등에 따라 조사방법 등이 달라 지기에 상황에 맞는 손해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3절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1. 적과 전 종합위험방식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보험계약 체결일 ~ 적과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우박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과실) 및 꽃(눈)등의 타박비율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건에 한함
6월1일 ~ 적과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낙엽피해 정도 조사 - 단감·뽕은감에 대해서만 실시 · 조사방법: 표본조사	
적과 후	-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종료 후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 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수를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적과후 ~ 수확기 종료	보상하는 재해	낙과피해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피해과실수 조사 - 낙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단감·뽕은감
	우박, 일소, 가을동상해	착과피해 조사	수확 직전	낙엽률 조사(우박 및 일소 제외) - 낙엽피해정도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수확완료 후 ~ 보험종기	보상하는 재해 전부	고사나무 조사	수확완료 후 보험종기 전	재해로 인하여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과실 수 조사 -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 조사방법: 전수조사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과수4종(사과, 배, 단감, 뽕은감) 현지조사에는 생육시기별 피해사실확인조사, 적과후착과수 조사, 낙과피해조사, 착과피해조사, 낙엽률조사, 고사나무조사가 있으며 낙엽률조사는 감(단감, 뽕은감)품목에 한하여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 피해가 있을 경우 조사하며, 적과전 5종 한정정보장특약 가입 시 적과전의 우박피해는 유과타박률조사를 진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적과 종료 이전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과수원 및 조사 필요 과수원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피해사실 확인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조사자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 피해과수원 사진 : 과수원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나무피해 확인

(가) 고사나무를 확인한다.

- ① 품종·재배방식·수령별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 ② 고사나무 중 과실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 유의한다.
- ③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주수로 조사한다.

(나) 수확불능나무를 확인한다.

- ①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수확불능주수를 조사한다.
-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수확불능 상태인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주수로 조사한다.

(다) 유실·매몰·도복·절단(1/2)·소실(1/2)·침수로 인한 피해나무를 확인한다
(5종 한정 특약 가입건만 해당).

- ① 해당 나무는 고사주수 및 수확불능주수에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나무의 상태 (유실·매몰·도복·절단(1/2)·소실(1/2)·침수)를 기준으로 별도로 조사한다.
- ② 단, 침수의 경우에는 나무별로 과실침수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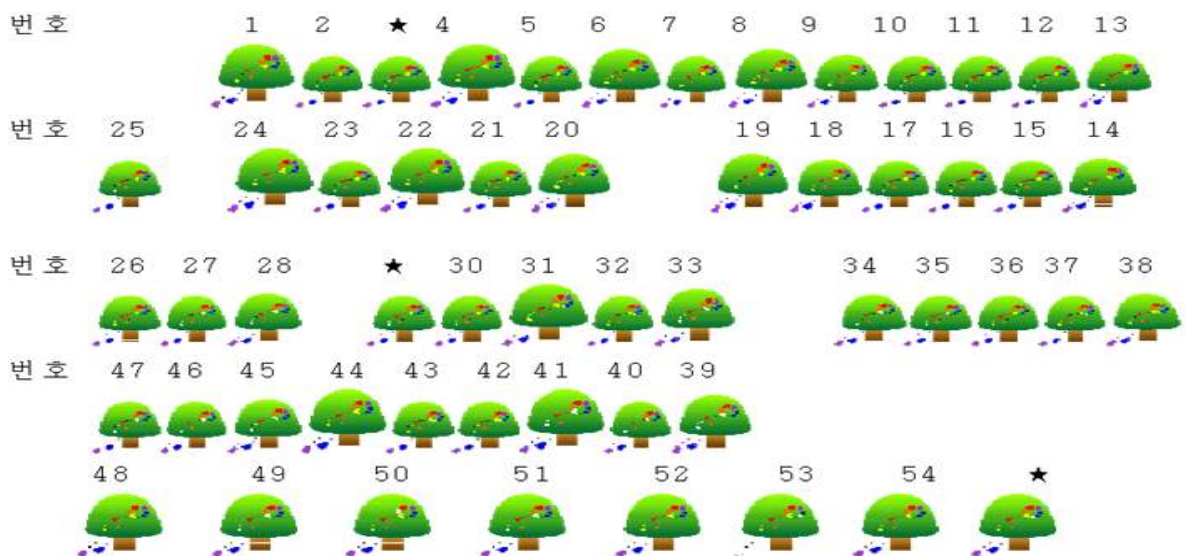
[침수 주수 산정방법]

- ㉠ 표본주는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침수피해를 입은 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로 1주 이상 선정한다.
- ㉡ 표본주의 침수된 착과(화)수와 전체 착과(화)수를 조사한다.
- ㉢ 과실침수율 = $\frac{\text{침수된 착과(화)수}}{\text{전체 착과(화)수}}$
- ㉣ 전체 착과수 = 침수된 착과(화)수 + 침수되지 않은 착과(화)수
- ㉤ 침수주수 = 침수피해를 입은 나무수 × 과실침수율

(라) 피해규모 확인

- 조수해 및 화재 등으로 전체 나무 중 일부 나무에만 피해가 발생된 경우 실시한다.
- 피해대상주수(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일부피해주수) 확인한다.
- 일부피해주수는 대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무수 중에서 고사주수 및 수확 불능주수를 제외한 나무수를 의미한다.

그림 2-3 표본주 선정



(3) 유과타박률 확인(5종 한정 특약 가입 건의 우박피해 시 및 필요시)

(가) 적과 종료 전의 착과된 유과 및 꽃눈 등에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유과(꽃눈)의 비율을 표본조사 한다.

(나) 표본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표본주수를 선정한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한다. 표본주는 수령이나 크기, 착과과실수를 감안하여 대표성이 있는 표본주를 선택하고 과수원 내 골고루 분포되도록 한다. <그림 2-3 참고> 선택된 표본주가 대표성이 없는 경우 그 주변의 나무를 표본주로 대체할수 있으며 표본주의 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 이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 선정된 표본주마다 동서남북 4곳의 가지에 각 가지별로 5개 이상의 유과(꽃눈 등)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피해유과(꽃눈 등)와 정상 유과(꽃눈 등)의 개수를 조사한다(단, 사과, 배는 선택된 과(화)총당 동일한 위치(번호)의 유과(꽃)에 대하여 우박 피해 여부를 조사).

그림 2-4 유과타박률 조사요령

◆ 품목별 유과타박률 조사요령

사과, 배

선택된 과(화)총당 동일한 위치(번호)의 유과(꽃)에 대하여 우박피해 여부를 조사



단감, 뽕은감

선택된 유과(꽃)에 대하여 우박피해 여부를 조사



$$\text{유과타박률} = \frac{\text{표본주의 피해유과수 합계}}{\text{표본주의 피해유과수 합계} + \text{표본주의 정상유과수 합계}}$$

(4) 낙엽률 확인(단감 또는 뽕은감, 수확연도 6월 1일 이후 낙엽피해 시, 적과 종료 이전 특정 5종 한정 특약 가입건)

(가) 조사 대상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의 표본주수에 따라 주수를 산정한다.

(나)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조사용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과지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하여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산정한다 (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세는 것이다).

(다) (나)에서 선정된 표본주의 낙엽수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병해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착엽수로 구분한다.

$$\text{낙엽률} = \frac{\text{표본주의 낙엽수 합계}}{\text{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 \text{표본주의 착엽수 합계}}$$

(5)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가) 재해 종류 및 특별약관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확인 사항을 조사함

(나) 적과 종료 여부 확인(적과 후 착과수조사 이전 시)

(다) 착과피해조사 필요 여부 확인(우박 피해 발생 시)

(6) 미보상비율 확인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착과가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

2) 적과후착과수조사

가)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뽕은감 품목을 재배하는 과수원 전체

나) 대상 재해 : 해당 없음

다) 조사 시기 :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뚝은감은 1차 생리적 낙과) 종료 시점(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라 함은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시군 등)의 기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과실의 적과가 종료되거나 자연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말함) 조사 시 사고 발생을 확인한 경우,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보험가입자에게 알린다.

라) 조사 방법

(1) 나무 조사

과수원 내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고사주수, 수확 불능주수를 파악한다.

(2) 조사 대상주수 계산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를 빼고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3) 적정표본주수 산정

(가) 조사 대상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1)에 따라 과수원별 전체 적정표본주수를 산정한다.

(나) 적정표본주수는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적정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text{적정표본주수} = \text{전체표본주수} \times (\text{품종별 조사 대상주수} / \text{조사 대상주수 합})$$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예시) 사과품목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적정표본주수 산정예시

품종	재배방식	수령	실제 결과 주수	미보 상주 수	고사 주수	수확 불능 주수	조사 대상 주수	적정 표본 주수	적정표본주수 산정식
스가루	반밀식	10	100	0	0	0	100	3	12 × (100/550)
스가루	반밀식	20	200	0	0	0	200	5	12 × (200/550)
홍로	밀식	10	100	0	0	0	100	3	12 × (100/550)
부사	일반	10	150	0	0	0	150	4	12 × (150/550)
합계			550	0	0	0	550	15	-

※ 조사 대상주수 550주, 전체 표본주수 12주에 대한 적정표본주수 산출예시(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4) 표본주 선정 및 리본 부착

품종·재배방식·수령별 표본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 후 조사용 리본을 부착한다.

(5) 조사 및 조사 내용 현지조사서 등 기재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재배방식, 수령 및 착과수(착과과실수)를 조사하고 현지 조사서 및 리본에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6)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착과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착과수

$$= \left[\frac{\text{품종} \cdot \text{재배방식} \cdot \text{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text{품종} \cdot \text{재배방식} \cdot \text{수령별 표본주 합계}} \right] \times \text{품종} \cdot \text{재배방식} \cdot \text{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착과수의 합계를 과수원별 『적과 후 착과수』로 함

(7) 미보상비율 확인<별표 2 참고>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

3) 낙과 피해 조사

가) 조사 대상 : 적과 종료 이후 낙과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나) 대상 재해 : 태풍(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조사 방법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보한다.<피해사실확인조사 참고>

(2) 조사 항목 결정

(가) 나무 조사

- ① 과수원 내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수확 완료주수 및 일부침수주수(금번 침수로 인한 피해주수 중 침수로 인한 고사주수 및 수확불능주수는 제외한 주수)를 파악한다.
- ②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및 수확 완료주수를 빼고 조사 대상주수(일부침수주수 포함)를 계산한다.
- ③ 무피해나무 착과수조사
 - ㉠ 금번 재해로 인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 무피해나무는 고사나무, 수확불능나무, 미보상나무, 수확 완료나무 및 일부침수나무를 제외한 나무를 의미한다.
 - ㉢ 품종·재배방식·수령별 무피해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1주 이상 선정하여 품종·재배방식·수령별 무피해나무 1주당 착과수를 계산한다.
(단, 선정한 나무에서 금번 재해로 인해 낙과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착과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 다만, 이전 실시한 (적과 후)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착과수 조사포함)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 시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일부침수나무 침수착과수조사

- ㉠ 금번 재해로 인한 일부 침수주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 ㉡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일부 침수나무 중 가장 평균적인 나무를 1주 이상 선정하여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일부 침수나무 1주당 침수착과수를 계산한다.

(나) 낙과수조사

낙과수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① 전수조사(조사 대상주수의 낙과만 대상)

- ㉠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과수원 내 전체 낙과를 조사한다.
- ㉡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 참고>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단,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 가능).

② 표본조사

- ㉠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과수원별 전체 표본주수<별표 1 참고>를 산정하되(다만 거대재해 발생 시 표본조사의 표본주수는 정해진 값의 1/2 만으로도 가능), 품종·재배방식·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재배방식·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 ㉡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나무를 선정하고, 표본나무별로 수관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
- ㉢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수가 100개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 가능하다.

$$\text{피해구성률} = \frac{(10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1) + (8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0.8) + (5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0.5)}{100\% \text{형피해과실수} + 80\% \text{형피해과실수} + 50\% \text{형피해과실수} + \text{정상과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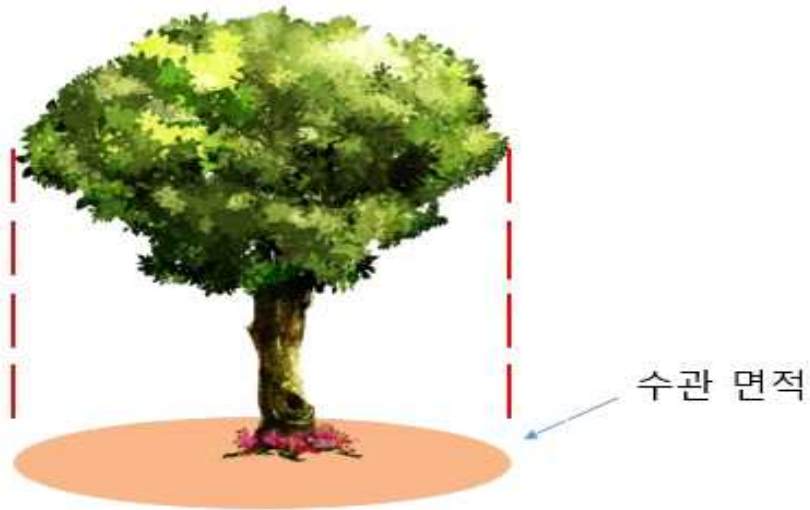
예시) 사과 품목 “중생/홍로”에 대한 낙과 피해 구성 비율 산정예시

○ 과실 피해 구성 비율(품종구분 여 / 부)

숙기/품종	정상	50%형	80%형	100%형	합계	피해구성비율
중생/홍로	50	20	10	20	100	38%
합계	50	20	10	20	100	38%

※ 품종 구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계 칸에만 피해구성비율을 표시

그림 2-5 수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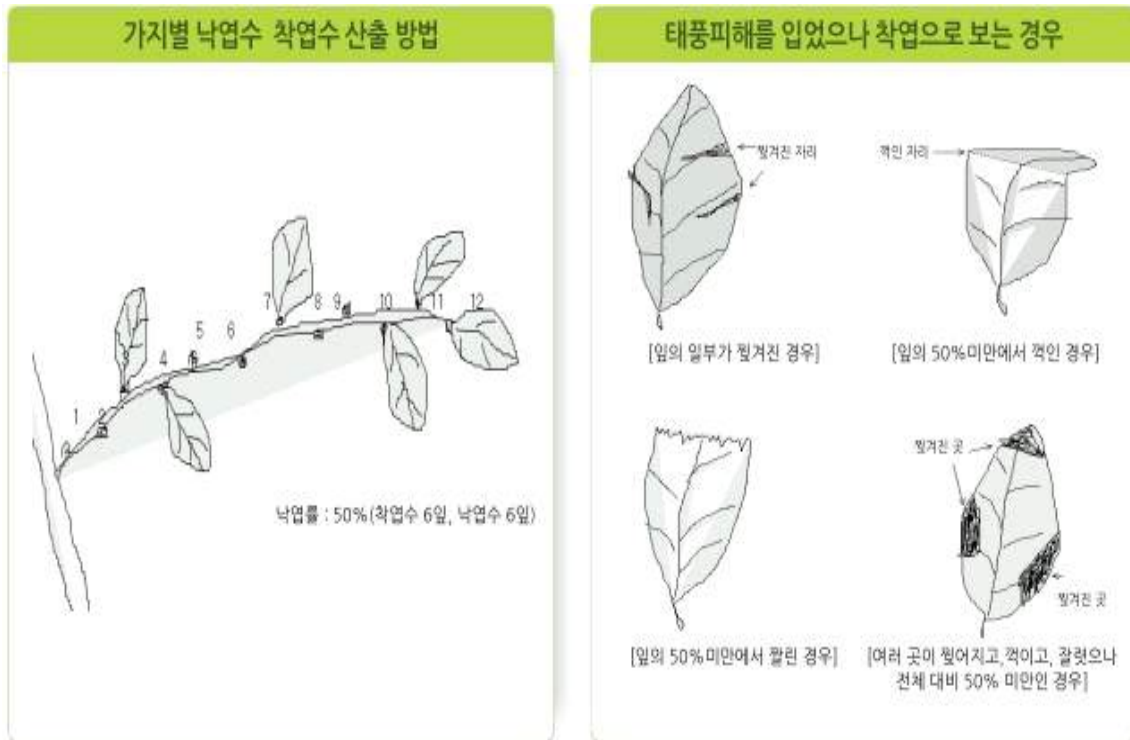
(다) 낙엽률조사 (단감, 뽕은감에 한함, 우박·일소피해는 제외)

- ① 조사 대상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의 표본주수에 따라 주수를 산정한다.
- ② 표본주 간격에 따라 표본주를 정하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 남북 4곳의 결과지(신초, 1년생 가지)를 무작위로 정하여 각 결과지 별로 낙엽수와 착엽수를 조사하여 리본에 기재한 후 낙엽률을 산정한다(낙엽수는 잎이 떨어진 자리를 센다).
- ③ 사고 당시 착과과실수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을 곱하여 해당 감수 과실수로 산정한다.

$$\text{인정피해율} = (1.0115 \times \text{낙엽률}) - (0.0014 \times \text{경과일수})$$
 ※ 경과일수 = 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

④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한다.<별표 2 참고>

그림 2-6 가지별 낙엽 판단 (예시)



4) 착과 피해 조사

가) 조사 대상 : 적과 종료 이후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또는 적과 종료 이전 우박피해 과수원

나) 대상 재해 : 우박, 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다) 조사 시기 :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수확 전 대상 재해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마치며, 착과 피해 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라) 조사 방법

- (1)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대표품종(적과후착과수 기준 60% 이상 품종)으로 하거나 품종별로 실시할 수 있다.
- (2) 착과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적과후)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금차 조사 시의 착과 피해 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 조사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착과수 확인은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미보상주수 및 수확 완료주수를 뺀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하며 이후 조사 방법은 위 「적과 후 착과수조사」 방법과 같다.
- (4)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과수원당 3주 이상)으로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별표 3 참고> 에 따라 품종별로 정상과, 50%형 피해과, 80%형 피해과 100%형 피해과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다만, 거대 재해 등 필요 시에는 해당 기준 표본수의 1/2만 조사도 가능하다. 또한, 착과피해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 (5)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구성조사로 추가적인 감수가 인정되기 어려울 때에는 품종별로 피해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표품종만 조사한 경우에는 품종별 피해 상태에 따라 대표 품종의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6) 다만, 일소피해의 경우 피해과를 수확기까지 착과시켜 놓을 경우 탄저병 등 병충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과피해조사의 방법이나 조사시기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시행지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그림 2-7 착과피해조사 과실 분류



5) 고사나무조사

가) 조사 대상 : 나무손해보장 특약 가입 건 중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화재, 조수해

다) 조사 시기 : 수확 완료 후 나무손해보장 종료 직전

라) 조사 방법

- (1) 품종별·재배방식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및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적과 후 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및 낙과피해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 된 주수를 의미하며,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주수를 말한다.)
- (2)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 미보상 고사주수로 조사한다(미보상 고사주수는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적과 후 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및 낙과피해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여 미보상주수로 조사된 주수를 포함한다).
- (3)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가 없는 경우(계약자 유선 확인 등)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금은 적과이전의 사고를 보상하는 착과감소보험금과 적과이후의 사고를 보상하는 과실손해보험금으로 구분된다.

1) 적과전종합위험방식(사과, 배, 단감, 뽕은감)의 보험금 산정

가) 기준수확량의 산정

(1) “기준착과수”라 함은 보험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과실 수(數)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가)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없는 과수원

- 적과 후 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 한다. 다만, 적과 후 착과수조사 이후의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착과수를 기준착과수로 할 수 있다.

(나)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과수원

- 위항에서 조사된 적과 후 착과수에 해당 착과감소과실수를 더하여 기준착과수로 한다.

(2) 기준수확량은 기준착과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입과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1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한다.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나) 감수량의 산정 (세부내용은 별표 7 참고)

(1) 적과 종료 이전 착과감소량

(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착과감소과실수를 산출한다. 다만, 우박으로 인한 착과피해는 수확 전에 착과를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를 적용하여 감수과실수를 별도로 산출 (이하 “착과 감수과실수 산정 방법”이라 한다)하여 적과 후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하는 감수 과실수에 합산한다.

$$\text{착과감소과실수} = \text{최소값}(\text{평년착과수} - \text{적과후착과수}, \text{최대인정감수과실수})$$

- (나) 착과감소량은 착과감소과실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 (다) 가입과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1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한다.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 (라) 피해사실확인조사에서 “피해규모가 일부”인 사고만 있는 경우에는 착과 감
소량을 아래와 같이 최대인정감소량으로 제한한다.
 - 착과감소량이 최대인정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인정감소량을 착과
감소량으로 한다.
 - 최대인정감소량 = 평년착과량 × 최대인정피해율
 -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최대인정피해율
 - 최대인정피해율 = 피해대상주수(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일부피해주수)
÷ 실제결과주수
 -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피해대상주수를 누적하여
계산한다.
- (마) 적과 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상하는 재해와 착과감소량을 제한한다.
 - 적과 종료 이전 대상 재해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 재해보험사업자는 착과감소과실수가 아래의 최대인정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인정감소량을 착과감소량으로 한다.

$$\text{최대인정감소과실수} = \text{평년착과수} \times \text{최대인정피해율}$$

- 최대인정피해율은 아래 제①호부터 제③호까지 산정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 ① 나무피해율 : 과수원별 유실 · 매몰 · 도복 · 절단(1/2) · 소실(1/2) · 침수
된 주수를 전체주수로 나눈 값. 이때 침수의 경우 나무별로 과실침수율을
곱하여 침수주수를 계산한다.

②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 단감, 뽕은감에 한하여 6월 1일부터 적과 종료 이전까지 태풍(강풍)·집중호우·화재·지진으로 인한 낙엽피해가 발생한 경우 낙엽률을 조사하여 산출한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③ 우박 발생 시 조사한 유과타박률

(2)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량

(가) 재해보험사업자는 적과 종료 이전 보상하는 손해 ‘자연재해’로 인하여 착과 감소과실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착과손해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미만인 경우

$$\text{감수과실수} = \text{적과후착과수} \times 5\%$$

-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text{감수과실수} = \text{적과후착과수} \times 5\% \times (100\% - \text{착과율}) / 40\%$$

※ 착과율 = 적과후착과수 ÷ 평년착과수

(나)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 종료 이후 착과손해 감수량은 착과 감수과실수에 가입과증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본 감수량은 보험약관 중 2019년부터 변경된 적과전종합위험방식에 적용하며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한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사실 확인과 재해별로 아래와 같은 조사를 실시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가) 태풍(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① 낙과손해

낙과를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를 적용하여 감수 과실수를 산출(이하 “낙과 감수과실수 산출방법”이라 한다)한다.

② 침수손해

조사를 통해 침수 나무의 평균 착과수를 산정하고, 이에 침수 주수를 곱하여 감수 과실수를 산출한다.

③ 나무의 유실·매몰·도복·절단 손해

조사를 통해 무피해 나무의 평균 착과수를 산정하고, 이에 유실·매몰·도복·절단된 주수를 곱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④ 소실손해

조사를 통해 무피해 나무의 평균 착과수를 산정하고, 이에 소실된 주수를 곱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⑤ 착과손해(사과, 배에 한함)

『① 낙과손해』에 의해 결정된 낙과 감수과실수의 7%를 감수과실수로 한다.

(나) 우박

① 착과손해

수확 전에 착과 감수과실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② 낙과손해

낙과 감수과실수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다) 적과 종료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낙엽피해 (단감·뽕은감에 한함)

보험기간 적과 종료일 이후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태풍(강풍)·집중호우·화재·지진으로 인한 낙엽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통해 착과수와 낙엽률을 산출하며,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 율에서 기발생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의 최대값을 차감하고 착과수를 곱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라) 가을동상해

① 착과 손해

피해과실을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를 적용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이때 단감·뽕은감의 경우 일 피해가 인정된 경우에는 정상과실의 피해인정계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text{피해인정계수} = 0.0031 \times \text{잔여일수}$$

※ 잔여일수 : 사고발생일부터 가을동상해 보장종료일까지 일자 수

(마) 일소피해

① 일소피해로 인한 감수과실수는 보험사고 한 건당 적과 후 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과실수로 인정한다.

② 착과손해

피해과실을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를 적용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③ 낙과손해

낙과를 분류하고, 이에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를 적용하여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바) 재해보험사업자는 감수과실수의 합계로 적과 종료 이후 감수과실수를 산출한다. 다만, 일소·가을동상해로 발생한 감수과실수는 부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사) 적과 종료 이후 감수량은 적과 종료 이후 감수 과실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아) 가입과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1개당 평균 과실 무게를 말한다.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자) 재해보험사업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해 산정된 감수량은 동시 또는 선·후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보험사고의 감수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차) 보상하는 재해가 여러 차례 발생하는 경우 금차사고의 조사값(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착과피해구성률, 낙과피해구성률)에서 기사고의 조사값(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고값을 제외하고 감수과실수를 산정한다.

(카) 누적감수과실수(량)는 기준착과수(량)를 한도로 한다.

다) 착과감소보험금의 계산

- (1) 적과종료이전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착과감소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text{보험금} = (\text{착과감소량} - \text{미보상감수량} - \text{자기부담감수량}) \times \text{가입가격} \times \text{보장수준}(50\%, 70\%)$$

- (2) 착과감소보험금 보장 수준(50%, 70%)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보장 수준으로 한다.
- (3)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써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 (4)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 (5) 자기부담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로 한다.
- (6)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kg당 평균 가격을 말한다.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라) 과실손해보험금의 계산

- (1)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이 자기부담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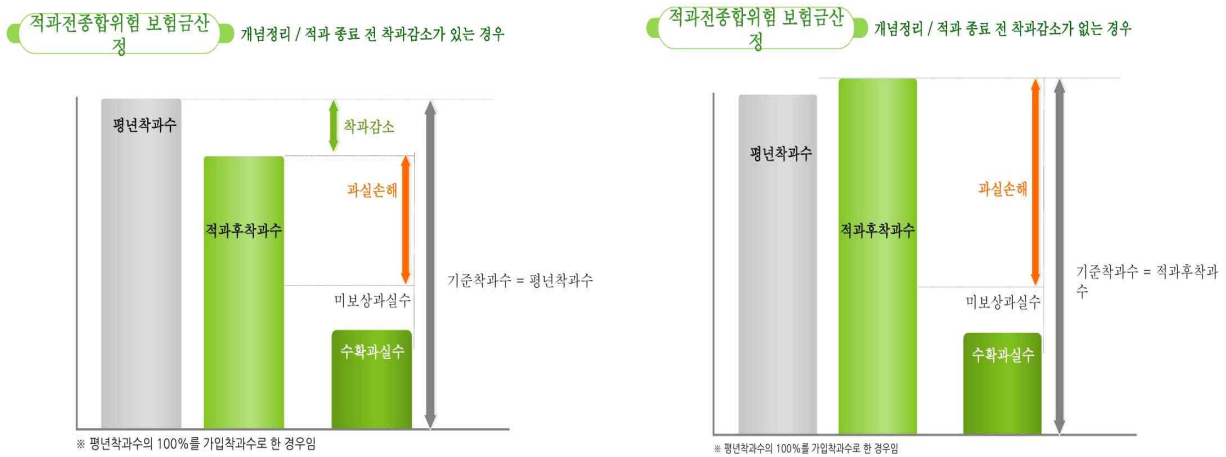
$$\text{보험금} = (\text{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text{미보상감수량} - \text{자기부담감수량}) \times \text{가입가격}$$

- (2) 적과 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은 보장종료 시점까지 산출된 감수량을 누적인 값으로 한다.
- (3) 미보상감수량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감소되었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감소량으로서 감수량에서 제외된다.
- (4) 자기부담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착과감소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과감소량에서 적과 종료 이전에 산정된

미보상감수량을 뺀 값을 자기부담감수량에서 제외한다.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

- (5) 자기부담비율은 계약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자기부담비율로 한다.
- (6) 가입가격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kg당 평균 가격을 말한다.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 마)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따라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 (1 -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 (1 - 자기부담비율)을 보험금으로 한다 (단, 보험가입금액은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 후 보험가입금액으로 한다).

그림 2-8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금 산정



2) 나무손해보장 (특약) 보험금 산정

가)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차감한 값을 곱하여 산정하며, 피해율은 피해주수(고사된 나무)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text{※ 피해율} = \text{피해주수(고사된 나무)} \div \text{실제결과주수}$$

2.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포도, 복숭아, 자두, 밤, 호두, 참다래, 대추,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이란 보험목적에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전품목
수확 직전	-	착과수조사	수확직전	해당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 수를 조사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포도, 복숭아, 자두만 해당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품목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품목
수확완료 후 ~ 보험종기	보상하는 재해 전부	고사나무 조사	수확완료 후 보험종기 전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 조사방법: 전수조사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복숭아만 해당 - 세균구멍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50%만 보상)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피해사실 확인조사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나) 피해 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다)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확량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수확량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수확량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수확기에 손해평가반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2) 포도, 복숭아, 자두 수확량조사

본 항의 수확량조사는 포도, 복숭아, 자두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수확량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가) 착과수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2) 대상 재해 : 해당 없음

(3) 조사 시기 :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4) 조사 방법

(가)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량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나) 조사 대상주수 계산

품종별·수량별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다) 표본주수 산정

- ① 과수원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 ②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량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품종별·수량별 적정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량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량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마) 착과된 전체 과실수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하되, 품종별 수확 시기 차이에 따른 자연낙과를 감안한다.

(바)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과중 조사

- (1) 과중 조사는 사고 접수가 된 농지에 한하여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한다.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확 시기 판단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2)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3)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 조사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4)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중 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품종별 평균과중을 적용(자두 제외)하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수확 전 대상 재해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 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그림 2-9 포도, 복숭아, 자두 과중조사



(5) 미보상비율 조사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하며, 품종별로 미보상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품종별 미보상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미보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 (6)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중 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값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조사 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 값을 적용한다.

다) 착과피해조사

- (1) 착과피해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며,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의 종류와 과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한다.

- (2) 착과피해조사는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필요 시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3) 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수확 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착과피해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 할 수 있다.

(4)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뺀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5) 적정 표본주수 산정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별표 1 참고>한다.

(6) 이후 조사 방법은 위 가)의 착과수조사 방법과 같다.

(7)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으로 하며 표본 과실을 추출할 때에는 품종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추출한다.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또한, 착과피해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 (8)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구성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에는 품종별로 피해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낙과피해조사

- (1) 낙과피해조사는 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 (2)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 (3) 표본조사 실시

낙과피해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 둔 경우 등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4)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뺀 조사대상주수를 계산한다.

- (5) 적정표본주수 산정 및 낙과수조사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농지별 전체 적정표본주수를 산정하되(거대재해 발생 시 표본조사의 표본주수는 『품목별 표본주수표』 <별표 1>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선정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량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 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별로 수관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이때 표본주의 수관면적 내의 낙과는 표본주와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본다).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6)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 복숭아·자두는 농지당 60개 이상)으로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다만, 전체 낙과수가 60개 미만일 경우 등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7) 조사 당시 수확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이 있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는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밤, 호두 수확량조사

본 항의 수확량조사는 밤, 호두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품종의 수확기가 다른 경우에는 한 번에 조사가 불가하며, 해당 품종의 수확 시작 도래 전마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수확량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품종별 조사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최초 조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3)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4) 표본주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 및 수령별 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수 선정

산정한 품종 및 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6) 착과 및 낙과수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수 및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과실수의 기준은 밤은 송이, 호두는 청피로 한다)

(가) 착과수 확인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한다.

(나) 낙과수 확인

선정된 표본주별로 수관면적 내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 둔 경우 등 표본주별 낙과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한다.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7) 과중 조사

(가) 농지에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한다.

(나) 밤의 경우, 품종별 과실(송이) 개수를 파악하고, 과실(송이) 내 과립을 분리하여 지름 길이를 기준으로 정상(30mm 초과)·소과(30mm 이하)를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소과(30mm 이하)인 과실은 해당 과실 무게를 실제 무게의 80%로 적용한다.

$$\text{품종별 개당 과중} = \text{품종별} \{ \text{정상 표본과실 무게 합} + (\text{소과 표본과실 무게합} \times 0.8) \} \div \text{표본과실 수}$$

(다) 호두의 경우, 품종별 과실(청피) 개수를 파악하고, 무게를 조사한다.

그림 2-10 밤 소과 구분 요령

30mm 지름의 원형모양 구멍이 뚫린 규격대를 준비하여 샘플조사 시 해당 구멍을 통과하는 과립은 ‘소과’로 따로 분류한다.

- 아래 그림과 같이 과정부를 위로 향하게 하고 밤의 볼록한 부분이 정면을 향하게 하여 밤이 통과하는지 확인한다.
- 밤의 가장 긴 부분이 보이도록 밤을 넣어야 하며, 세로로 넣는 등 구멍에 통과하기 위하여 밤의 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8)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구성 조사

(가) 낙과피해 구성 조사

낙과 중 임의의 과실 20개 이상(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다만, 전체 낙과수가 60개 미만일 경우 등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 조사가 가능하다).

(나) 착과피해 구성 조사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20개 이상(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다)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9)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수확이 시작된 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품종별 조사 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최초 조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 나무주수를 파악한다.

(3)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뺀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4) 표본주 선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6) 착과 및 낙과수 표본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수 및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과실수의 기준은 밤은 송이, 호두는 청피로 한다)

(가) 착과수 확인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한다.

(나) 낙과수 확인

선정된 표본주별로 수관면적 내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 둔 경우 등 표본주별 낙과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수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한다.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7) 과중 조사

(가) 농지에서 품종별로 평균적인 착과량을 가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한다.

(나) 밤의 경우, 품종별 과실(송이) 개수를 파악하고, 과실(송이) 내 과립을 분리하여 지름 길이를 기준으로 정상(30mm 초과)·소과(30mm 이하)를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다) 호두의 경우, 품종별 과실(청피) 개수를 파악하고, 무게를 조사한다.

(8) 기수확량 조사

출하자료 및 문답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9)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구성 조사

(가) 낙과피해 구성 조사

낙과 중 임의의 과실 20개 이상(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다만, 전체 낙과수가 60개 미만일 경우 등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나) 착과피해 구성 조사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20개 이상(품종별 20개 이상, 농지당 6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다)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0)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4) 참다래 수확량조사

본 항의 수확량조사는 참다래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수확량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나무수 조사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3)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4) 표본주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6) 재식 간격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량별로 재식 간격을 조사한다.(가입 시 재식 간격과 다를 경우 계약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현지 조사서에 기재한다.)

(7) 면적 및 착과수조사

(가) 면적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주 구역의 면적 조사를 위해 길이(윗변, 아랫변, 높이 : 윗변과 아랫변의 거리)를 재고 면적을 확인한다.

$$\text{표본구간 면적} = (\text{표본구간 윗변 길이} + \text{표본구간 아랫변 길이}) \times \text{표본구간 높이(윗변과 아랫변의 거리)} \div 2$$

그림 2-11 참다래 표본구역 선정



(나) 착과수조사

선정된 해당 구역에 착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8) 과중 조사

(가)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한다.

- (나) 품종별로 과실 개수를 파악하고, 개별 과실 과중이 50g 초과하는 과실과 50g 이하인 과실을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개별 과실 중량이 50g 이하인 과실은 해당 과실의 무게를 실제 무게의 70%로 적용한다.

$$\text{품종별 해당 과중} = \text{품종별} \{50\text{g 초과 표본과실 무게 합} + (50\text{g 이하 표본과실 무게 합} \times 0.7)\} \div \text{표본과실 수}$$

(9) 착과피해 구성 조사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착과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가)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 (나)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0)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된 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나무수 조사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3)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뺀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4) 표본주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6) 재식 간격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로 재식 간격을 조사한다(가입 시 재식 간격과 다를 경우 계약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현지 조사서에 기재).

(7) 면적, 착과 및 낙과수 조사

(가) 면적확인

선정된 표본주별로 해당 표본주 구역의 면적 조사를 위해 길이(윗변, 아랫변, 높이 : 윗변과 아랫변의 거리)를 재고 면적을 확인한다.

(나) 착과 및 낙과수 확인

① 선정된 해당 구역에 착과 및 낙과된 과실수를 조사한다.

②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 둔 경우 등 낙과수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과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 한다.

(8) 과중 조사

(가)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한다.

(나) 품종별로 과실 개수를 파악하고, 개별 과실 과중이 50g 초과하는 과실과 50g 이하인 과실을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개별 과실 중량이 50g 이하인 과실은 해당 과실의 무게를 실제 무게의 70%로 적용한다.

$\text{품종별 해당 과중} = \text{품종별} \{50\text{g 초과 표본과실 무게 합} + (50\text{g 이하 표본과실 무게 합} \times 0.7)\} \div \text{표본과실 수}$

(9) 기수확량 조사

출하자료 및 문답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10)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구성 조사

(가) 낙과피해 구성 조사

품종별로 낙과 중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나) 착과피해 구성 조사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다)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구성 조사 없이 피해과실 분류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1)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5) 대추, 매실, 살구 수확량조사

본 항의 수확량조사는 대추, 매실, 살구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수확량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3)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4) 표본주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6) 과중 조사

(가) 표본과실 수확 및 착과 무게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하여 수확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표본주의 착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품종·수량별 주당 착과 무게 = 품종·수량별 (표본주의 착과 무게 ÷ 표본주수)
- ▷ 표본주 착과 무게 = 조사 착과량 × 품종별 비대추정지수(매실) × 2(절반조사 시)

(7) 비대추정지수 조사 (매실)

매실 품목의 경우 품종별 적정 수확 일자 및 조사 일자, 매실 품종별 과실 비대추정지수<별표 4>를 참조하여 품종별로 비대추정지수를 조사한다.

(8) 착과피해 구성 조사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착과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가) 각 표본주별로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과실을 추출하여 과실 분류 기준<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 또는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개수 조사 시에는 표본주당 표본과실수는 100개 이상으로 하며, 무게 조사 시에는 표본주당 표본과실 중량은 1,000g 이상으로 한다.

(나)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대추·매실·살구의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를 따른다.

(9)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된 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나무수 조사

농지 내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3)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뺀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4) 표본주수 산정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6) 과중 조사

(가) 표본과실 수확 및 착과 무게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하여 수확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표본주의 착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나) 낙과 무게

① 선정된 표본주별로 수관면적 내 낙과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 ②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 둔 경우 등 낙과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낙과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 무게를 재고 전체 낙과 중 1,000g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text{품종별 낙과량} = \text{전체 낙과량} \times \left\{ \frac{\text{품종별 표본과실수(무게)}}{\text{표본과실수(무게)}} \right\}$$

- ③ 현장 상황에 따라 표본주별로 착과 및 낙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7) 비대추정지수 조사(매실)

매실 품목의 경우 품종별 적정 수확 일자 및 조사 일자, 매실 품종별 과실 비대추정지수<별표 4>를 참조하여 품종별로 비대추정지수를 조사한다.

(8) 기수확량 조사

출하자료 및 문답 등을 통하여 기수확량을 조사한다.

그림 2-12 기수확량 확인



(9)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구성 조사

(가) 낙과피해 구성 조사

품종별 낙과 중 임의의 과실 100개 또는 1,000g 이상을 추출하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른 개수 또는 무게를 조사한다.

(나) 착과피해 구성 조사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표본주별로 수확한 착과 중 임의의 과실 100개 또는 1,000g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른 개수 또는 무게를 조사한다.

(다)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0)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6) 오미자 수확량조사

본 항의 수확량조사는 오미자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수확량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 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유인틀 길이 측정

가입대상 오미자에 한하여 유인틀 형태 및 오미자 수령별로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측정한다.

(3) 조사 대상 길이 계산

실제재배 길이에서 고사 길이와 미보상 길이를 빼서 조사 대상 길이를 계산한다.

(4) 표본구간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 길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구간)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구간수를 산정하되, 형태별·수령별 표본구간수는 형태별·수령별 조사 대상 길이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구간 선정

산정한 형태별·수령별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형태별·수령별 조사 대상 길이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을 선정한다.

(6) 과중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표본구간 내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하여 수확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표본구간의 착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하여 조사할 수 있다.

(7) 착과피해 구성 조사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착과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가) 표본구간에서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과실을 추출하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표본으로 추출한 과실 중량은 3,000g 이상(조사한 총착과 과실 무게가 3,000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실 전체)으로 한다.

(나)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8)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된 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 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유인틀 길이 측정

가입대상 오미자에 한하여 유인틀 형태 및 오미자 수령별로 유인틀의 실제 재배 길이, 수확 완료 길이, 고사 길이, 미보상 길이를 측정한다.

(3) 조사 대상 길이 계산

실제재배 길이에서 수확 완료 길이, 고사 길이와 미보상 길이를 빼서 조사대상 길이를 계산한다.

(4) 표본구간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 길이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구간)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구간수를 산정하되, 형태별·수령별 표본구간수는 형태별·수령별 조사 대상 길이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구간 선정

산정한 형태별·수령별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형태별·수령별 조사 대상 길이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를 선정한다.

(6) 과중 조사

- (가)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표본구간 내 착과된 과실과 낙과된 과실의 무게를 조사한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표본구간별로 착과된 과실 중 절반만을 수확하여 조사할 수 있다.
- (나)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곳에 모아 둔 경우 등 낙과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낙과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낙과에 대하여 무게를 조사한다.

(7) 기수확량 조사

출하자료 및 문답 등을 통하여 기수확량을 조사한다.

(8) 낙과피해 및 착과피해 구성 조사

- (가) 낙과피해 구성 조사는 표본구간의 낙과(낙과 전수조사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전체 낙과를 기준으로 한다) 중 임의의 과실 3,000g 이상(조사한 총 낙과과실 무게가 3,000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실 전체)을 추출하여 아래 피해 구성 구분 기준에 따른 무게를 조사한다.
- (나) 착과피해 구성 조사는 표본구간에서 수확한 과실 중 임의의 과실을 추출하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무게를 조사한다. 이때 표본으로 추출한 과실 중량은 3,000g 이상(조사한 총착과 과실 무게가 3,000g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과실 전체)으로 한다.
- (다)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경우 등에는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9)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7) 유자 수확량조사

본 항의 수확량조사는 유자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는 조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의 수확이 시작기전에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 개시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나무수 조사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3)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4) 표본주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6) 착과수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한다.

(7) 과중 조사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당 최소 6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8) 착과 피해 구성 조사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착과피해 구성 조사를 실시한다.

(가) 착과피해 구성 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 시행하며,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 한다.

(나)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9)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8) 종합위험 비가림시설 피해조사(포도, 참다래, 대추)

본 항의 비가림시설 피해조사는 포도, 참다래, 대추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의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조사기준 :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시설의 구조체와 피복재의 재조달가액을 기준금액으로 수리비를 산출한다.

나) 평가 단위 :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을 기준으로 보험 목적물별 평가한다.

다) 조사 방법

(1) 피복재 : 피복재의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2) 구조체

(가)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 산정

(나)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보수 면적 확인 후 보수비용 산정

그림 2-13 비가림시설



9) 나무손해보장 특약 고사나무조사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참다래, 살구)
본 항의 고사나무조사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참다래, 살구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의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나무손해보장 특약 가입 여부 및 사고 접수 여부 확인

해당 특약을 가입한 농지 중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고사나무 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의 결정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되, 나무손해보장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 한다.

라) 나무수 조사

(1) 포도,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품목에 대해서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및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가)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 조사 및 수확개시 전·후 수확량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말한다.

(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주수를 말한다.

(다) 미보상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주수를 의미하며 고사 나무조사 이전 조사(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및 낙과피해조사, 수확개시 전·후 수확량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여 미보상주수로 조사된 주수를 포함한다.

(라)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가 없는 경우(계약자 유선 확인 등)에는 고사 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참다래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와 고사주수,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마) 미보상비율조사(모든 조사 시 동시조사)

상기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수확감소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가)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필요한 보험 가입금액, 평년수확량,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자기부담비율 등은 과수원별로 산정하며, 품종별로 산정하지 않는다.

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 보험금이 발생한다.

$$(1) \text{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2) \text{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3) \text{복숭아 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 \text{병충해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4) \text{미보상감수량}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times \text{미보상비율}$$

$$(5) \text{병충해감수량} = \text{병충해 입은 과실의 무게} \times 0.5$$

2) 포도, 복숭아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약의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text{나) 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times 10\%)$$

$$\text{다) 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text{※ 복숭아 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 \text{병충해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3)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text{가) 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text{나) 피해율} = \text{피해주수(고사된 나무)} \div \text{실제결과주수}$$

다) 피해주수는 수확 전 고사주수와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미보상 고사주수는 피해주수에서 제외한다.

라) 대상품목 및 자기부담비율은 약관에 따른다.

4) 종합위험 비가림시설(포도, 참다래, 대추)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가)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1사고 마다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가) 보험금 =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나)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다)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 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지급 보험금을 계산한다.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로 보상한다.

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재해보험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바) 자기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재해보험사업자는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자기부담금(10만 원)과 최대자기부담금(30만 원)을 한도로 한다.
- (2)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3.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오디, 감귤)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이란 보험 목적에 대한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해로 과실손해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수확량감소에 대한 보장받는 방식이다.

가. 품목별 조사 종류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전품목
		과실손해조사	결실완료 후	결실수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오디만 해당
수확 직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과실손해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과실피해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감귤만 해당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동상해 과실손해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표본주의 착과피해 조사 - 12월1일~익년 2월말일 사고 건에 한함 · 조사방법: 표본조사	감귤만 해당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피해사실 확인 방법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나)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다)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추가조사(수확량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수확량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수확량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수확기에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2) 수확 전 사고조사 (감귤)

가) 본 항의 수확 전 사고조사는 감귤 품목에만 해당한다.

나) 사고가 발생한 과수원에 대하여 실시하며,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후 즉시 실시한다. 다만, 수확 전 사고 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부담비율 이하의 사고) 등의 사유로 조사를 취소한 과수원은 수확 전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수확 전 사고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 (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표본조사

(가) 표본주 선정 : 농지별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한다(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본 주수를 줄일 수도 있으나 최소 3주 이상 선정한다).

(나) 표본주 조사

- 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수관 면적 내 피해 및 정상과실을 조사한다.
- ② 표본주의 과실을 100%형 피해 과실과 정상과실로 구분한다.
- ③ 100%형 피해 과실은 착과된 과실 중 100% 피해가 발생한 과실 및 보상하는 재해로 낙과된 과실을 말한다.
- ④ ②항에서 선정된 과실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병충해, 생리적 낙과 포함)에 해당하는 과실과 부분 착과피해 과실은 정상과실로 구분한다.

라) 수확 전 사고조사 건은 추후 과실손해조사를 진행한다.

3) 과실손해조사 (오디)

본 항의 과실손해조사는 오디 품목에만 해당한다.

가)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수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 :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과실손해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부담비율 이내의 사고) 등의 사유로 과실손해조사 실시를 취소한 과수원은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과실손해조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나무수 조사

품종별·수령별 로 실제결과주수를, 품종별·수령별 결실불능주수, 미보상주수 확인하며, 확인한 실제결과주수가 가입 주수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가) 품종별·수령별 결실불능주수 확인

품종별·수령별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결실이 불가능한 주수를 조사한다.

(나) 품종별·수령별 미보상주수 확인

품종별·수령별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수를 조사한다.

(3) 조사 대상주수 계산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품종별·수령별 결실불능주수 및 품종별·수령별 미보상주수를 빼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4) 표본주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5)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6) 표본주 조사

(가) 표본가지 선정 :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가지로 선정한다.

(나) 길이 및 결실수 조사 : 표본가지별로 가지의 길이 및 결실수를 조사한다.

그림 2-14 오디 결실수 조사



4) 과실손해조사(감귤)

본 항의 과실손해조사는 감귤 품목에만 해당한다. 또한, 과실손해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가)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및 수확 전 사고조사 시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수원에 대하여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 : 주품종 수확 시기에 한다. 다만, 과실손해 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부담비율 이하의 사고) 등의 사유로 조사를 취소한 과수원은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과실손해조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표본조사

(가) 표본주 선정 : 농지별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한다(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본 주수를 줄일 수도 있으나 최소 2주 이상 선정한다).

(나) 표본주 조사

- ① 선정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주지별(원가지) 아주지(버금가지) 1~3개를 수확한다.
- ② 수확한 과실을 정상과실, 등급 내 피해과실 및 등급 외 피해과실로 구분한다.
- ③ 등급 내 피해과실은 30%형 피해과실, 50%형 피해과실,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로 구분하여 등급 내 과실피해율을 산정한다.
- ④ 등급 외 피해과실은 30%형 피해과실, 50%형 피해과실,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로 구분한 후, 인정비율(50%)을 적용하여 등급 외 과실피해율을 산정한다. [만감류의 경우 등급 외 피해과실을 피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등급 내 피해과실만으로 피해율 산정함)]
- ⑤ 위의 ③,④항에서 선정된 과실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병충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과실로 구분한다.

그림 2-15 감귤 등급 내·외 과실 분류



라) 주 품종 최초 수확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과실손해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수확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확한 과실은 정상과실로 본다.

5) 동상해 과실손해조사(감귤)

본 항의 동상해 과실손해조사는 감귤 품목에만 해당한다. 또한, 과실손해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가) 동상해 과실손해조사는 수확기 동상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표본조사

(가) 표본주 선정 : 농지별 가입면적을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표본주수를 과수원에 고루 분포되도록 선정한다.(단,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표본주수를 줄일 수도 있으나 최소 2주 이상 선정한다)

(나) 표본주 조사

- ① 선정된 표본주에 리본을 묶고 동서남북 4가지에 대하여 기수확한 과실수를 조사한다.
- ② 기수확한 과실수를 파악한 뒤, 4가지에 착과된 과실을 전부 수확한다.
- ③ 수확한 과실을 정상과실,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로 구분하여 동상해 피해과실수를 산정한다(다만, 필요시에는 해당 기준 절반 조사도 가능하다).

(다) 위의 (나)항의 ③에서 선정된 과실 중 보상하지 않는 손해(병충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과실로 구분한다. 또한 사고 당시 기수확한 과실비율이 수확기 경과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기수확한 과실비율과 수확기 경과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를 정상과실로 한다.

6) 나무피해조사

본 항의 나무피해조사는 감귤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각 호의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나무손해보장 특약 가입 여부 및 사고 접수 여부 확인

해당 특약을 가입한 농지 중 나무피해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나무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의 결정

나무피해조사는 해당 사고가 접수 된 직후 실시한다.

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라) 품종·수령별로 금차 피해주수를 전수조사한다.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과실손해보험금의 산정

(1) 오디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실손해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xt{과실손해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p>※ 피해율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감수결실수) ÷ 평년결실수</p>

(가) 조사결실수

품종별·수령별로 환산결실수에 조사 대상주수를 곱한 값에 주당 평년결실수에 미보상주수를 곱한 값을 더한 후 전체 실제결과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미보상 감수 결실수

평년결실수에서 조사결실수를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다) 환산결실수

품종별·수령별로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를 표본가지 길이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라) 조사 대상주수

실제결과주수에서 고사주수와 미보상주수를 빼어 산출한다.

(마) 주당 평년결실수

품종별로 평년결실수를 실제결과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바)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선택한 비율로 한다.

(2) 감골

감골 품목의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기간 중 산정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text{과실손해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보험 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가) 수확 전 과실손해 피해율

$$(\text{금차 } 100\% \text{ 피해과실수 합계} / \text{과실수 합계}) \times (1 - \text{미보상비율})$$

(나) 과실 손해 피해율

$$\{(\text{등급 내 피해과실수} + \text{등급 외 피해과실수} \times 50\%) / \text{기준과실수}\} \times (1 - \text{미보상비율})$$

① 수확 전 과실손해 피해가 있는 경우 과실손해 피해율

(수확전 사고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과실손해피해율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 {(1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 (과실손해 피해율 ÷ (1 - 과실손해미보상비율))} × {1 - 최댓값(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과실손해 미보상비율)}

- ◆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00%형 피해과실수 ÷ (정상 과실수 + 100%형 피해과실수)} × (1-미보상비율)
-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이전 100%피해과실수 + 금차 100%피해과실수) ÷ (정상 과실수 + 100%형 피해과실수)} × (1-미보상비율)

② 피해 인정 과실수 = 등급 내 피해 과실수 + (등급 외 피해 과실수 × 50%)

㉞ 등급 내 피해 과실수

$$(\text{등급 내 } 30\% \text{형 과실수 합계} \times 0.3) + (\text{등급 내 } 50\% \text{형 과실수 합계} \times 0.5) + (\text{등급 내 } 80\% \text{형 과실수 합계} \times 0.8) + (\text{등급 내 } 100\% \text{형 과실수 합계} \times 1)$$

㉔ 등급 외 피해 과실수

$$(등급 외 30\%형 과실수 합계 \times 0.3) + (등급 외 50\%형 과실수 합계 \times 0.5) + (등급 외 80\%형 과실수 합계 \times 0.8) + (등급 외 100\%형 과실수 합계 \times 1)$$

※ 만감류는 등급 외 피해 과실수를 피해 인정 과실수 및 과실손해 피해율에 반영하지 않음

③ 기준 과실수 : 표본주의 과실수 총 합계

2) 동상해 과실손해보험금의 산정(특별약관, 감괄)

가) 동상해 과실손해보험금은 보험기간 내에 동상해로 인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동상해 손해보험금을 지급한다.

$$\text{동상해 과실손해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 가입금액 - (보험 가입금액 × 기사고피해율)} × 수확기잔존비율 × 동상해피해율 × (1 - 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절대값{보험 가입금액 × 최솟값 (주계약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0)}

※ 단, 기사고 피해율은 주계약피해율의 미보상비율을 반영하지 않은 값과 이전 사고의 동상해 과실손해피해율을 합산한 값임

나) 동상해피해율

동상해피해율은 80%형 피해과실, 100%형 피해과실로 구분하여 피해율을 산정하며, 동상해 피해 과실수를 기준과실수로 나눈 값임

※ 동상해 피해 과실수 = (동상해 피해 80%형 과실수 합계 × 0.8) + (동상해 피해 100%형 과실수 합계 × 1)

※ 기준과실수 = 정상과실수 + 동상해피해 80%형 과실수 + 동상해피해 100%형 과실수

다) 수확기 잔존비율

[기준일자별 수확기 잔존비율표(감괄)]

사고발생 월	수확기 잔존비율(%)
12월	100 - (1.5 × 사고 발생일자)
1월	(100 - 47) - (1.3 × 사고 발생일자)
2월	(100 - 88) - (0.4 × 사고 발생일자)

[기준일자별 수확기 잔존비율표(만감류)]

사고발생월	수확기 잔존비율(%)
12월	$100 - (0.4 \times \text{사고 발생일자})$
1월	$(100 - 13.1) - (1.3 \times \text{사고 발생일자})$
2월	$(100 - 52.6) - (1.7 \times \text{사고 발생일자})$

주) 사고 발생일자는 해당 월의 사고 발생일자를 의미

3) 과실손해 추가보장 보험금 산정 (특별약관, 감률)

가)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나) 보험금 = 보험 가입금액 × 피해율 × 10%

다) 피해율 = (등급 내 피해과실수 + 등급외 피해과실수 × 50%) ÷ 기준과실수 × (1 - 미보상비율)

4) 나무손해보장 보험금 산정(특별약관, 감률)

가)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1) 지급보험금 = 보험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2)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나)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한다.

4. 수확 전 종합위험보장방식(복분자, 무화과)

보험의 목적에 대해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수확 개시 이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수확 개시 이후부터 수확 종료 시점까지는 태풍(강풍), 우박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이다.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전 품목
		경작불능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복분자만 해당
		과실손해조사	수정완료 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및 수정 불량(송이)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복분자만 해당
수확 직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과실손해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과실피해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무화과만 해당
수확 시작 후 ~ 수확종료	태풍(강풍), 우박	과실손해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 - 6월1일~6월20일 사고 건에 한함 · 조사방법: 표본조사	복분자만 해당
				표본주의 고사 및 정상 결과지수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무화과만 해당
수확 완료 후 ~ 보험종기	보상하는 재해 전부	고사나무 조사	수확완료 후 보험종기 전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 조사방법: 전수조사	(무화과)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1) 수확 개시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2) 수확 개시 이후 : 태풍(강풍), 우박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피해사실확인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나)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다)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추가조사(과실손해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과실손해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수확기에 손해평가반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2) 경작불능조사

가) 대상 품목 : 복분자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로 한다.

라) 손해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1) 보험기간 확인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 개시 시점(단, 가입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로, 해당 기간 내 사고인지 확인한다.

(2)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 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3)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4)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은 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 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인지를 조사한다.

(5)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6)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대상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7)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후 조사)

이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농지에 대하여 경작불능전 조사 이후 해당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3)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가) 대상 품목 : 복분자

(1) 조사 대상 : 종합위험방식 보험기간(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가입 이듬해 5월 31일 이전)까지의 사고로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조사 결과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결정된 농지

(2) 조사 시기 :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3) 조사 제외 대상 :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부담 비율 이내의 사고) 등의 사유로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취소한 농지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손해조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나) 실제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다) 재식면적 확인

재식면적은 주간 길이와 이랑 폭을 곱하여 산출하며, 조사한 재식면적이 가입 재식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라) 표본조사

① 표본포기수 산정

가입포기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구간수표<별표 1>에 따라 표본포기수를 산정한다. 다만, 실제경작면적 및 재식면적이 가입사항과 차이가 나서 계약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될 가입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한다.

② 표본포기 선정

산정한 표본포기수를 바탕으로 조사 농지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포기를 선정한다.

③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포기 전후 2포기씩 추가하여 총 5포기를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다만, 가입 전 고사한 포기 및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포기가 표본구간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포기를 표본구간에서 제외하고 이웃한 포기를 표본구간으로 선정하거나 표본포기를 변경한다.

④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각 표본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합계를 조사한다.

⑤ 수정불량(송이) 피해율 조사

각 표본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1송이당 맺혀있는 전체 열매수와 피해(수정불량) 열매수를 조사한다. 다만, 현장 사정에 따라 조사할 송이 수는 가감할 수 있다.

나) 대상 품목 : 무화과

손해조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조사 대상 : 종합위험방식 보험기간(계약 체결일 24시부터 가입 이듬해 7월 31일 이전)까지의 사고로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2) 조사 시기 :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이전까지

(3) 나무수 조사 :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조사한다.

(4)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5) 표본주수 산정

농지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하되 품종별, 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 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6)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7) 착과수조사

선정된 표본주마다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세고 리본 및 현지 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8) 착과피해조사

착과피해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한다.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의 종류와 과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한다.

(가) 품종별로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임의의 과실 100개 이상을 추출한 후 피해 구성 구분 기준<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 그 개수를 조사한다.

(나) 조사 당시 착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가) 대상 품목 : 복분자

(1) 조사 대상 : 특정위험방식 보험기간(가입 이듬해 6월 1일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다만 가입 이듬해 6월 20일 초과할 수 없음)까지)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로 한다.

(3) 조사 제외 대상 :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부담비율 이내의 사고) 등의 사유로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취소한 농지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4) 손해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나) 실제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다) 재식면적 확인

재식면적은 주간 길이와 이랑 폭을 곱하여 산출하며, 조사한 재식면적이 가입 재식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라) 잔여 수확량 비율 적용을 위한 기준일자 확인

기준일자는 사고 발생 일자로 하되, 농지의 상태 및 수확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마) 표본조사

① 표본포기수 산정

가입포기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구간수표<별표 1>에 따라 표본포기수를 산정한다. 다만, 실제경작면적 및 재식면적이 가입사항과 차이가 나서 계약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될 가입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한다.

② 표본포기 선정

산정한 표본포기수를 바탕으로 조사 농지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포기를 선정한다.

③ 표본송이 조사

각 표본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를 선정하여 1송이당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와 수확 가능한 열매수(전체 결실수)를 조사한다. 다만, 현장 사정에 따라 조사할 송이수는 가감할 수 있다.

그림 2-16 복분자 과실손해조사



나) 대상 품목 : 무화과

(1) 조사 대상 : 특정위험방식 보험기간 (가입 이듬해 8월 1일 이후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가입한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 손해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수확기 사고조사

① 3주 이상의 표본주에 달려있는 결과지수를 구분하여 고사결과지수, 정상 결과지수를 각각 조사한다.

- ② 기준일자는 사고 일자로 하되, 농지의 상태 및 수확 정도 등에 따라 조사자가 수정할 수 있다.
- ③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병해충 등)으로 고사한 결과지수는 미보상고사 결과지수로 한다.

5) 나무손해조사

가) 조사 대상 : 무화과

나) 손해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나무손해보장 특약 가입 여부 및 사고 접수 여부 확인

해당 특약을 가입한 농지 중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고사나무 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 시기의 결정

고사나무조사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되, 나무손해보장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4)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및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가)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및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

(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주수

(다) 미보상 고사주수는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주수를 의미하며,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및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여 미보상 주수로 조사된 주수를 포함한다.)

(5)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가 없는 경우(계약자 유선 확인 등)에는 고사나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미보상비율조사(공통)

미보상비율 적용표에 따라 미보상비율<별표 2>을 조사한다.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경작불능보험금의 산정

가) 대상 품목 : 복분자

나) 지급조건 : 경작불능조사 결과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 지급보험금 = 보험 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별 지급비율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비율표]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지급 비율	45%	42%	40%	35%	30%

2) 과실손해보험금의 산정

가) 대상 품목 : 복분자

(1) 지급보험금 = 보험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2) 피해율 산출은 고사결과모지수를 평년결과모지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고사 결과모지수는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와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를 통해 계산된 고사결과모지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가)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에서의 고사결과모지수 산출

① 고사결과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수정불량 환산 고사결과모지수를 뺀 후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를 더한 값을 평년결과모지수에서 빼어 산출 한다.

②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표본구간 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합계를 표본구간 포기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각 표본구간별로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 수정불량환산계수를 곱한 값의 합계를 표본구간 포기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를 뺀 값을 평년결과모지수에서 뺀 후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⑤ 수정불량환산계수

표본구간별로 피해 열매수를 전체 열매수로 나눈 값에서 0.15를 뺀 값으로 해당 수치가 0보다 작을 때에는 0으로 한다.

<p>*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합 ÷ (표본구간수 × 5)</p> <p>*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수정불량 고사결과모지수의 합 ÷ (표본구간수×5)</p> <p>* 표본구간 수정불량 고사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계수</p> <p>* 수정불량환산계수 = (수정불량결실수 ÷ 전체결실수) - 자연수정불량률 = 최댓값(표본포기 6송이 피해 열매수의 합 ÷ 표본포기 6송이 열매수의 합계)-15%, 0) → 자연수정불량률 : 15%(2014 복분자 수확량 연구용역 결과반영)</p> <p>*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최댓값(평년결과모지수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결과모지수)) × 미보상비율, 0)</p>
--

(나)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에서의 고사결과모지수 산출

① 고사결과모지수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에서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를 빼어 산출한다.

②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 실시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서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를 뺀 후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년결과모지수에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수확감소환산계수를 합하여 산출한다.

④ 수확감소환산계수

기준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에서 결실율[표본송이 중 수확 가능한 총열매수(전체 결실수)를 표본송이의 총 열매수(전체 개화수)로 나눈 값]을 빼서 산출한다. 다만, 산출한 결과가 0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조사의 수확감소환산계수는 0으로 한다.

⑤ 기준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

기준일자에 따라 잔여수확량 비율을 산출한다.

[기준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표]

기준일자	잔여수확량비율(%)	기준일자	잔여수확량비율(%)	기준일자	잔여수확량비율(%)
6.1	97	6.8	90	6.15	20
6.2	96	6.9	77	6.16	14
6.3	95	6.10	65	6.17	9
6.4	94	6.11	54	6.18	5
6.5	93	6.12	44	6.19	2
6.6	92	6.13	35	6.20	0
6.7	91	6.14	27		

⑥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수의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일 높은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평년결과모지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수확감소환산계수의 합
 → 수확감소환산계수 = 최댓값(기준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 - 결실률, 0)
 → 결실률 = 전체결실수 ÷ 전체개화수
 = $\Sigma(\text{표본송이의 수확 가능한 열매수}) \div \Sigma(\text{표본송이의 총열매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최댓값(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미보상비율)

나) 대상 품목 : 무화과

(1) 지급보험금 = 보험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2) 피해율은 7월 31일 이전 사고피해율과 8월 1일 이후 사고피해율을 합산한다.

(가) 피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① 무화과의 7월 31일 이전 사고피해율

$$\text{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② 무화과의 8월 1일 이후 사고피해율

㉠ 피해율 = (1 - 수확 전사고 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피해율

㉡ 결과지 피해율 = (고사결과지수 + 미고사결과지수 × 착과피해율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기준결과지수

㉢ 기준결과지수 = 고사결과지수 + 정상결과지수

㉣ 고사결과지수 = 보상고사결과지수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3) 나무손해보장 보험금 산정(특별약관, 무화과)

가)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에서 규정한 재해로 인한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1) 지급보험금 = 보험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2)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나) 자기부담비율은 5%로 한다.

제4절 논작물(벼, 맥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1. 수확감소보장

수확감소보장이란 자연재해 등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어 수확량의 감소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전 품목
		이앙(직파) 불능 조사	이앙 한계일 (7.31)이후	이앙(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만 해당
		재이앙(재직파)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앙(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만 해당
		경작불능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벼·밀·만 해당
수확 직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수확 시작 후 ~ 수확 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수확불능확인 조사	조사 가능일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율 및 정상출하 불가 확인 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만 해당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해충 7종(해당특약 가입시 보장 - 벼품목만 해당)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피해사실 확인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자료

(나)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다) ICT 기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피해농지 촬영

(2)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이양·직파불능 조사(농지 전체이양·직파불능 시), 재이양·재직파 조사(면적피해율 10% 초과), 경작불능조사(식물체피해율 65% 이상), 수확량조사(자기부담비율 초과) 중 필요한 조사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3)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이양·직파불능 조사(벼)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이양·직파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손해평가반은 피해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이양·직파불능 여부를 조사한다.

가) 조사 대상 : 벼

나) 조사 시기 : 이양 한계일(7월 31일) 이후

다) 이양·직파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이양·직파불능 판정 기준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이양 한계일(7월 31일)까지 해당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한 경우 이양·직파불능피해로 판단한다.

(4) 통상적인 영농활동 이행 여부 확인

대상 농지에 통상적인 영농활동(논둑 정리, 논갈이, 비료시비, 제초제 살포 등)을 실시했는지를 확인한다.

3) 재이양·재직파조사 (벼)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재이양·재직파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손해평가반은 피해농지를 방문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가) 조사 대상 : 벼

나) 조사 시기 : 이앙 한계일(7월 31일) 이후

다) 재이앙·재직과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1차 : 재이앙·재직과 전(前) 조사)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피해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실제 경작면적대비 피해면적을 비교 및 조사한다.

(4) 피해면적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묘가 본답의 바닥에 있는 흙과 분리되어 물 위에 뜬 면적

(나) 묘가 토양에 의해 묻히거나 잎이 흙에 덮여져 햇빛이 차단된 면적

(다) 묘는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라) 재이앙·재직과 이행 완료 여부 조사(재이앙·재직과 후(後) 조사) 재이앙·재직과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전(前) 조사) 시 재이앙·재직과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이앙·재직과가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피해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이앙·재직과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이앙·재직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마) 단, 농지별 상황에 따라 재이앙·재직파 전(前) 조사가 어려운 경우, 최초 이앙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최초이앙 시기와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림 2-17 재이앙·재직파조사



4) 경작불능조사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

가) 조사 대상 : 벼, 조사료용 벼, 밀, 보리

나) 조사 시기 : 사고 후 ~ 출수기

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경작불능 전(前) 조사)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

(4)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밀, 보리만 해당)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5) 수확량조사 대상 확인(조사료용 벼 제외)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6) 산지폐기 여부 확인

이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해당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5) 수확량조사(조사료용벼 제외)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수확량조사의 조사 방법은 수량요소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가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거대재해 발생 시 대표농지를 선정하여 각 수확량조사의 조사 결과 값(조사수확비율,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등)을 대표농지의 인접 농지(동일‘리’등 생육환경이 유사한 인근 농지)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농지에 대하여 복수의 조사 방법을 실시한 경우 피해를 산정의 우선 순위는 전수조사, 표본조사, 수량요소조사 순으로 적용한다.

가) 조사 대상에 따른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벼	수량요소조사
벼, 밀, 보리	표본조사
	전수조사

나) 조사 시기에 따른 조사 방법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수확 전 14일 전후	수량요소조사
알곡이 여물어 수확이 가능한 시기	표본조사
수확시	전수조사

다) 수확량조사 손해평가 절차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 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 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여부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인지 확인한다.

(3) 면적확인

(가)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나) 고사면적 확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해당 작물이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을 확인한다.

(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확인

해당 작물 외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사유로 수확이 감소한 면적을 확인한다.

(라) 기수확면적 확인

조사 전에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확인한다.

(마) 조사대상 면적 확인

실제경작면적에서 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을 제외하여 조사 대상 면적을 확인한다.

(4) 수확불능 대상 여부 확인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 단, 경작불능보험금 대상인 경우에는 수확불능에서 제외한다.

(5) 조사 방법 결정 : 조사 시기 및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한다.

라) 수량요소조사 손해평가 방법

(1) 표본포기 수 : 4포기(가입면적과 무관함)

(2) 표본포기 선정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 포기를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포기가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포기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포기를 표본으로 선정한다.

(3) 표본포기 조사

선정한 표본 포기별로 이삭상태 점수 및 완전난알상태 점수를 조사한다.

(가) 이삭상태 점수 조사

표본 포기별로 포기당 이삭 수에 따라 아래 이삭상태 점수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이삭상태 점수표>

포기당 이삭수	점수
16 미만	1
16 이상	2

(나) 완전난알상태 점수 조사

표본 포기별로 평균적인 이삭 1개를 선정하여, 선정한 이삭별로 이삭당 완전난알수에 따라 아래 완전난알상태 점수표를 참고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완전난알상태 점수표>

이삭당 완전난알수	점수
51개 미만	1
51개 이상 61개 미만	2
61개 이상 71개 미만	3
71개 이상 81개 미만	4
81개 이상	5

그림 2-18 이삭상태, 완전날알수 조사



이삭상태조사

완전날알수 조사

(4) 수확비율 산정

- (가) 표본 포기별 이삭상태 점수(4개) 및 완전날알상태 점수(4개)를 합산한다.
- (나) 합산한 점수에 따라 조사수확비율 환산표에서 해당하는 수확비율 구간을 확인한다.
- (다) 해당하는 수확비율구간 내에서 조사 농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확비율을 산정한다.

<조사수확비율 환산표>

점수 합계	조사수확비율(%)	점수 합계	조사수확비율(%)
10점 미만	0% ~ 20%	16점 ~ 18점	61% ~ 70%
10점 ~ 11점	21% ~ 40%	19점 ~ 21점	71% ~ 80%
12점 ~ 13점	41% ~ 50%	22점 ~ 23점	81% ~ 90%
14점 ~ 15점	51% ~ 60%	24점 이상	91% ~ 100%

(5) 피해면적 보정계수 산정 : 피해정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피해면적 보정계수>

피해 정도	피해면적 비율	보정계수
매우 경미	10% 미만	1.2
경미	10% 이상 30% 미만	1.1
보통	30% 이상	1

(6)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벼만 해당)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마) 표본조사 손해평가 방법

(1) 표본구간수 선정

조사대상 면적에 따라 아래 적정 표본구간수 이상의 표본구간수를 선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계약 변경 대상)에는 실제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수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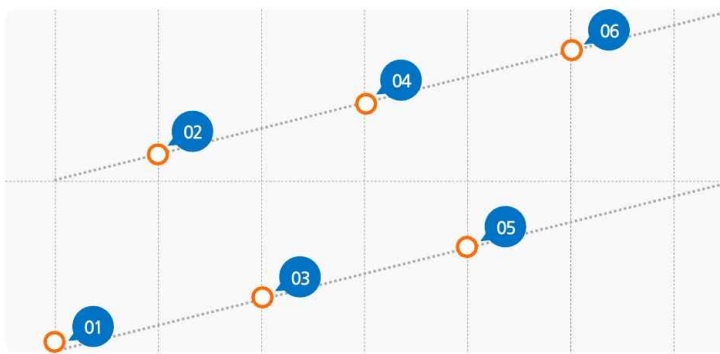
<종합위험방식 논작물 품목(벼, 밀, 보리)>

조사대상 면적	표본구간	조사대상 면적	표본구간
2,000m ² 미만	3	4,000m ² 이상 5,000m ² 미만	6
2,000m ² 이상 3,000m ² 미만	4	5,000m ² 이상 6,000m ² 미만	7
3,000m ² 이상 4,000m ² 미만	5	6,000m ² 이상	8

(2)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그림 2-19 표본구간 선정 예시



표본구간의 목적물(작물)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인접한 다른 구간을 조사한다.

(3) 표본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

- (가) 표본구간 면적 : 표본구간마다 4포기의 길이와 포기 당 간격을 조사한다 (단, 농지 및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4포기를 2포기로 줄일 수 있다).
- (나) 표본 중량 조사 : 표본구간의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한다.
- (다) 함수율 조사 :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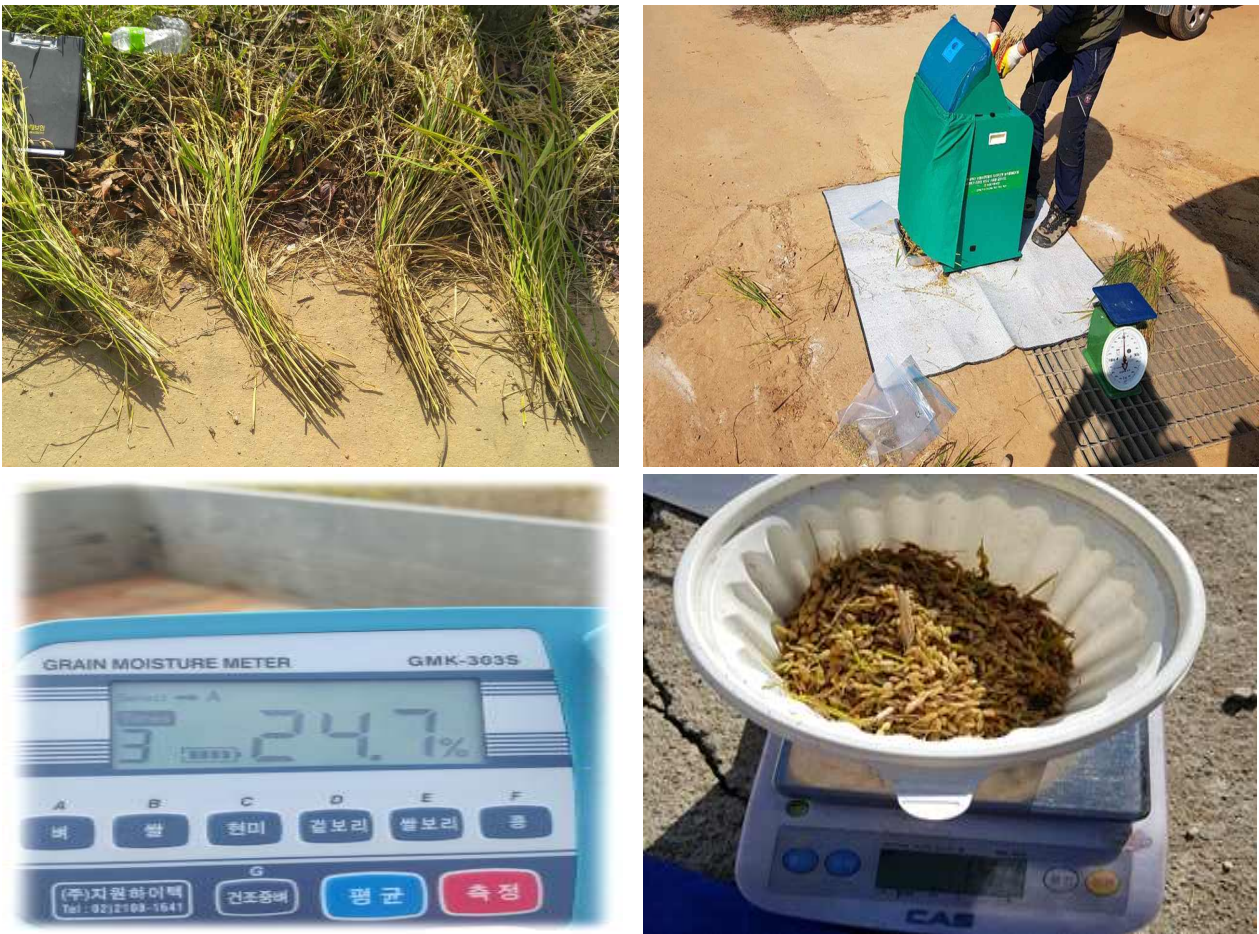
(4)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벼만 해당)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그림 2-20 표본구간 수확



그림 2-21 표본 중량 조사



바) 전수조사 손해평가 방법

(1)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

전수조사는 기계수확(탈곡 포함)을 하는 농지에 한한다.

(2) 조곡의 중량 조사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조곡의 중량을 조사하며, 전체 중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콤바인, 톤백, 콤바인용 포대, 곡물적재함 등을 이용하여 중량을 산출한다.

(3) 조곡의 함수율 조사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한다.

(4) 병해충 단독사고 여부 확인(벼만 해당)

농지의 피해가 자연재해, 조수해 및 화재와는 상관없이 보상하는 병해충만으로 발생한 병해충 단독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병해충 단독사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가장 주된 병해충명을 조사한다.

그림 2-22 전수조사



6) 수확불능확인조사(벼만 해당)

수확량조사 시 수확불능 대상 농지(벼의 체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농지)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조사 시점은 수확 포기가 확인되는 시점으로 한다.

가) 조사 대상 : 벼

나) 조사 시기 : 수확포기가 확인되는 시점

다) 수확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수확불능 대상여부 확인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지를 확인한다.

그림 2-23 수확포기 여부 확인



(4) 수확포기 여부 확인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수확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가)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

(나) 목적물을 수확하지 않고 갈아엎은 경우(로터리 작업 등)

(다) 대상 농지의 수확물 모두가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7) 미보상비율 조사(모든 조사 시 동시 조사)

상기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이양·직파불능 보험금 산정 (벼만 해당)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농지 전체를 이양·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이양·직파불능보험금으로 지급한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10\%$$

나) 지급 거절 사유

논둑 정리, 논갈이,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 이양 전의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이양·직파불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이양·직파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재이양 · 재직파불능 보험금 산정 (벼만 해당)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양(재직파)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재이양·재직파 보험금을 1회 지급한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25\% \times \text{면적 피해율}$ $\text{면적 피해율} = \text{피해면적} \div \text{보험가입면적}$
--

3) 경작불능조사 보험금 산정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1) 적용 품목 : 벼·밀·보리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표>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 × 45%
15%형	보험가입금액 × 42%
20%형	보험가입금액 × 40%
30%형	보험가입금액 × 35%
40%형	보험가입금액 × 30%

(2) 적용 품목 : 조사료용벼

(가) 보장비율은 조사료용벼 가입 시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비율을 말하며, 보험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나) 경과비율은 사고발생일이 속한 월에 따라 같이 계산한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보장비율} \times \text{경과비율}$
--

자기부담비율	보장비율	월별	경과비율
10%형	45%	5월	80%
15%형	42%	6월	85%
20%형	40%	7월	90%
30%형	35%	8월	100%
40%형	30%		

나) 지급거절 사유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벼가 산지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24 경작불능 대상 농지



4) 수확량감소보험금 산정 (조사료용 벼 제외)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begin{aligned}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text{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end{aligned}$$

- (1) 평년수확량은 과거 조사 내용, 해당 농지의 식재 내역, 현황 및 경작 상황 등에 따라 정한 수확량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 (2) 자기부담비율은 보험가입할 때 선택한 비율로 한다.

나) 지급거절사유 (벼만 해당)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수확감소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다) 경작불능보험금 및 수확불능보험금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계약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5) 수확불능보험금 산정(벼만 해당)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의 목적인 벼(조곡)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확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산정된 보험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확불능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기부담비율별 수확불능보험금표>

자기부담비율	수확불능보험금
10%형	보험가입금액 × 60%
15%형	보험가입금액 × 57%
20%형	보험가입금액 × 55%
30%형	보험가입금액 × 50%
40%형	보험가입금액 × 45%

나) 지급거절 사유

- (1) 경작불능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수확불능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
- (2)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벼가 산지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수확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5절 발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발작물의 농작물재해보험 보장방식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생산비보장방식,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방식 상품이 있다.

1.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마늘, 양배추, 양파,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차(茶), 콩, 팥)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전 품목
		재파종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마늘만 해당
		재정식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양배추만 해당
		경작불능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발작물(차(茶)제외)
수확 직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수확 시작 후 ~ 수확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조사	조사 가능일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농지의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차(茶)만 해당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전 품목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해충
단, 병해충은 감자품목에만 해당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피해사실 확인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자료

(나)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재정식조사, 재파종조사, 경작불능조사 및 수확량조사)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3)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파종조사 (마늘)

가) 적용 품목 : 마늘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재파종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 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재파종 전 조사)

(가) 표본구간수 산정

조사대상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수<별표 1> 이상의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계약 변경 대상 건)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text{조사대상 면적} = \text{실경작면적} - \text{고사면적} - \text{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text{기수확면적}$$

(나)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지점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마늘의 출현율이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지점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다) 표본구간 길이 및 출현주수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 이상(또는 1m)에 해당하는 이랑 길이, 이랑 폭(고랑 포함) 및 출현주수를 조사한다.

(4) 재파종 이행완료 여부 조사(재파종 후(後)조사)

(가)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시기 확인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재파종 전(前)조사) 시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 조사를 진행한다.

(나) 표본구간 선정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재파종 전(前)조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 표본구간 길이 및 파종주수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 길이, 이랑 폭 및 파종주수를 조사한다.

3) 재정식조사 (양배추)

가) 적용 품목 : 양배추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시 재정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재정식 전(前)조사)

(가) 피해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실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비교 및 조사한다.

(나) 피해면적의 판정 기준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4) 재정식 이행 완료 여부 조사(재정식 후(後) 조사)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전(前) 조사) 시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정식이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5) 농지별 상황에 따라 재정식 전(前) 조사를 생략하고 재정식 후 조사 시 면적조사(실제경작면적 및 피해면적)를 실시할 수 있다.

4) 경작불능조사

가) 적용 품목 :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사료용옥수수),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콩, 양배추, 팔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경작불능 전(前) 조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 (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 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

(4)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5) 수확량조사 대상 확인(사료용 옥수수 제외)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6)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 조사)

양파·마늘·감자(가을재배)·콩·양배추·팥 품목에 대하여 경작불능 전(前)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5) 수확량조사

가) 적용 품목 : 마늘, 양배추, 양파, 고구마,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제외),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차(茶), 콩, 팥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조사 결과 수확량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

다) 조사 시기

(1) 수확 직전(단, 차(茶)의 경우에는 조사 가능 시기)

(2) 수확량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부담비율 이내의 사고) 등의 사유로 수확량조사 실시를 취소한 농지는 수확량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손해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수확량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게 아래 표에서 수확량조사 적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양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마늘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잎과 줄기가 1/2~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삼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감자 (고랭지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과종일로부터 110일 이후)
감자 (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과종일로부터 95일 이후)
감자 (가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과종일로부터 제주지역은 110일 이후, 이외 지역은 95일 이후)
옥수수	옥수수의 수확 적기(수염이 나온 후 25일 이후)
차(茶)	조사 가능일 직전 (조사 가능일은 대상 농지에 식재된 차나무의 대다수 신초가 1심2엽의 형태를 형성하며 수확이 가능할 정도의 크기(신초장 4.8cm 이상, 엽장 2.8cm 이상, 엽폭 0.9cm 이상)로 자란 시기를 의미하며, 해당 시기가 수확연도 5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확연도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함)
콩	콩의 수확 적기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팥	팥의 수확 적기(꼬투리가 70~80% 이상이 성숙한 시기)
양배추	양배추의 수확 적기(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3) 면적 확인

(가)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나) 수확불능(고사)면적 확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해당 작물이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을 확인한다.

(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확인

해당 작물 외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사유로 수확이 감소한 면적을 확인한다.

(라) 기수확면적 확인

조사 전에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확인한다.

(마) 조사대상 면적 확인

실제경작면적에서 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을 제외하여 조사대상 면적을 확인한다.

(바) 수확면적을 확인(차(茶) 품목에만 해당)

목측을 통해 보험 가입 시 수확면적율과 실제 수확면적율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수확면적율이 보험 가입 수확면적율과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4) 조사 방법 결정

품목 및 재배 방법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한다.

(가) 표본조사 방법

① 적용 품목

마늘, 양배추, 양파, 고구마,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차(茶), 콩, 팥,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제외)

② 표본구간수 산정

조사대상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수<별표1> 이상의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계약 변경 대상)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 수를 산정한다.

③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④ 표본구간 면적 및 수확량 조사

해당 품목별로 선정된 표본구간의 면적을 조사하고, 해당 표본구간에서 수확한 작물의 수확량을 조사한다.

⑤ 양파, 마늘의 경우 지역별 수확 적기보다 일찍 조사를 하는 경우, 수확 적기까지 잔여일수별 비대지수를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품목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 옥수수	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차(茶)	규격의 테(0.04m ²) 사용
콩, 팥	점과 : 이랑 길이(4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산과 : 규격의 원형(1m ²)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품목별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품목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양파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하여 해당 무게를 조사 (단, 양파의 최대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에는 80%(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는 공급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 100%(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작물)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 무게의 20%, 0%를 수확량으로 인정)
마늘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3cm 윗부분을 절단하여 무게를 조사(단, 마늘통의 최대지름이 2cm(한지형), 3.5cm(난지형) 미만인 경우에는 80%(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는 공급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 100%(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작물)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 무게의 20%, 0%를 수확량으로 인정)
고구마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고구마와 50%형 고구마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고구마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 피해 고구마(일반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100% 피해 고구마(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없는 품질)로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
감자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병충해별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100% 이하 발병 감자로 구분하여 해당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로 함.
옥수수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착립장 길이에 따라 상(17cm 이상)·중(15cm 이상 17cm 미만)·하(15cm 미만)로 구분한 후 해당 개수를 조사
차(茶)	표본구간 중 두 곳에 20cm × 20cm 테를 두고 테 내의 수확이 완료된 새싹의 수를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1심2엽)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조사
콩, 팥	표본구간 내 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
양배추	표본구간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하여 수확(외엽 2개 내외 부분을 제거)한 후, 정상 양배추와 80%피해 양배추(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 품질이거나 일반시장 출하는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 100%피해 양배추(일반시장 및 가공용 출하 불가)로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

그림 2-25 이랑 길이, 이랑폭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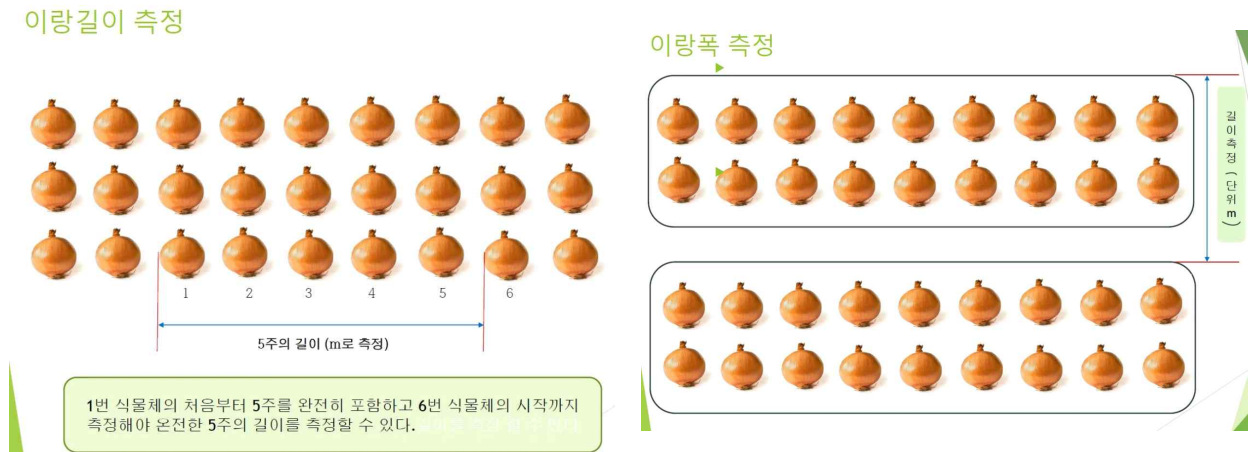


그림 2-26 작물별 표본 조사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 조사		양파 수확량감소조사
<p>수확시기</p> <p>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p>	<p>표본구간 면적조사</p> <p>이랑길이(5주) 및 이랑폭 조사</p>	<p>표본구간 수확량 조사</p> <p>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 하고 무게 측정</p>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 조사		고구마 수확량감소조사
<p>수확시기</p> <p>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삼식일로부터 120일 이후 수확)</p>	<p>표본구간 면적조사</p> <p>이랑길이(5주) 및 이랑폭 조사</p>	<p>표본구간 수확량 조사</p> <p>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고구마와 비정상 비대 고구 마를 분리하여 무게 측정</p>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 조사

감자 수확량감소조사

수확시기

고랭지재배 : 파종일로부터 110일 이후
 봄재배 :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가을재배 :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
 제주 110일 이후



표본구간 면적조사

이랑길이(5주 또는 1m 이상)
 및
 이랑폭 조사



표본구간 수확량 조사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와 병해충 감자를
 분리하여 무게 측정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 조사

차(茶) 수확량감소조사

수확시기

차나무의 신초가 1심2엽의
 형태를 형성, 크기가
 아래의 규격에 이르렀을 때



표본구간 면적조사

사각형모양의 테(0.04㎡) 사용



표본구간 수확량 조사

0.04㎡내, 수확이 끝난 새싹의
 수를 세고, 남아있는 모든 새싹
 (1심2엽)을 따서 개수를 세고
 무게를 측정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 조사

양배추 수확량감소조사

수확시기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표본구간 면적조사

이랑길이(5주) 및 이랑폭 조사



표본구간 수확량 조사

표본구간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
 하여 수확 후, 무게를 조사
 (외엽 2개 내외 부분을 제거)



(나) 전수조사 방법 (콩, 팥)

① 적용 품목 : 콩, 팥

②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

전수조사는 기계수확(탈곡 포함)을 하는 농지 또는 수확 직전 상태가 확인된 농지 중 자른 작물을 농지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탈곡을 시행하는 농지에 한한다.

③ 콩(종실), 팥(종실)의 중량 조사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콩(종실), 팥(종실)의 무게를 조사하며,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 해당 수치에 수확한 전체 포대 수를 곱하여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

④ 콩(종실), 팥(종실)의 함수율 조사

10회 이상 종실의 함수율을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한다. 단, 함수율을 측정할 때에는 각 횟수마다 각기 다른 포대에서 추출한 콩, 팥을 사용한다.

5) 미보상비율 조사(모든 조사 시 동시 조사)

상기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조기파종 보험금 산정 (마늘)

가) 지급 사유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 적용되며 한지형 마늘 최초 판매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월 31일 이전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25\% \times \text{표준출현 피해율}$ $\text{표준출현 피해율}(10a \text{ 기준}) = (30,000 - \text{출현주수}) \div 30,000$

2) 재파종보험금 산정 (마늘)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 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재파종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

$$\begin{aligned}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35\% \times \text{표준출현 피해율} \\ \text{표준출현 피해율}(10a \text{ 기준}) &= (30,000 - \text{출현주수}) \div 30,000 \end{aligned}$$

3) 재정식보험금 산정 (양배추)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재정식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 지급한다.

$$\begin{aligned}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20\% \times \text{면적 피해율} \\ \text{면적 피해율} &= \text{피해면적} \div \text{보험 가입면적} \end{aligned}$$

4) 경작불능보험금 산정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 (1) 적용 품목 : 양과, 마늘,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팔,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자기부담비율별 보장비율}$$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보장비율]

품목	자기부담비율				
	10%형	15%형	20%형	30%형	40%형
양파, 마늘, 고구마, 옥수수(사료용옥수수), 콩, 감자	45%	42%	40%	35%	30%
양배추, 팔	-	-	40%	35%	30%

(2) 사료용 옥수수의 경작불능보험금은 경작불능조사 결과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에 지급하며,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다음 보장비율과 경과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가) 보장비율

구분	45%형	42%형	40%형	35%형	30%형
보장비율	45%	42%	40%	35%	30%

(나) 경과비율

월별	5월	6월	7월	8월
경과비율	80%	80%	90%	100%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자기부담비율별 보장비율} \times \text{경과비율}$$

나)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5) 수확감소보험금 산정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손해 정한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수확감소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나) 적용 품목

- (1) 마늘, 양배추, 양파, 고구마, 감자(봄재배, 가을재배, 고랭지재배), 차(茶), 콩, 팥
- (2) 단, 콩과 팥 품목의 경우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 내에 식물체피해율이 65% 이상으로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대상인 경우 수확감소보험금 산정 적용 품목에서 제외된다.

$\begin{aligned}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text{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end{aligned}$

- (3) 감자 피해율의 경우에는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과 미보상감수량을 뺀 값에 병충해감수량을 더한 후 평년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 \text{병충해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

- (4) 옥수수 수확감소 보험금 산정

$\begin{aligned} &\text{MIN}(\text{보험가입금액},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 &\quad * \text{손해액} = \text{피해수확량} \times \text{가입가격} \\ &\quad * \text{자기부담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자기부담비율} \end{aligned}$
--

다) 수확량 조사

- (1) 표본조사 시 수확량 산출

표본구간수확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눈 후 표본조사 대상면적 합계를 곱한 값에 평년수확량을 실제 경작면적으로 나눈 후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과 기수확면적을 합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가) 표본구간수확량 합계

다음과 같이 품목별 표본구간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품목별 표본구간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품목	표본구간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감자	표본구간별 작물 무게의 합계						
양배추	표본구간별 정상 양배추 무게의 합계에 80%형 양배추의 무게에 0.2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						
차(茶)	표본구간별로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눈 값에 기수확 새싹수와 기수확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하여 산정 * 기수확지수는 기수확비율(기수확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기수확 새싹수와 수확한 새싹수를 더한 값)에 따라 산출						
양파, 마늘	표본구간별 작물 무게의 합계에 비대추정지수에 1을 더한 값(비대추정지수 + 1)을 곱하여 산정 [단, 마늘의 경우 이 수치에 품종별 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 (품종별 환산계수 : 난지형 0.72 / 한지형 0.7)]						
고구마	표본구간별 정상 고구마의 무게 합계에 50%형 고구마의 무게에 0.5, 80%형 고구마의 무게에 0.2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						
옥수수	표본구간 내 수확한 옥수수 중 “하” 항목의 개수에 “중” 항목 개수의 0.5를 곱한 값을 더한 후 품종별 표준중량을 곱하여 피해수확량을 산정 <품종별 표준중량(g)>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head> <tr> <th>미백2호</th> <th>대학찰(연농2호)</th> <th>미흑찰 등</th> </tr> </thead> <tbody> <tr> <td>180</td> <td>160</td> <td>190</td> </tr> </tbody> </table>	미백2호	대학찰(연농2호)	미흑찰 등	180	160	190
미백2호	대학찰(연농2호)	미흑찰 등					
180	160	190					
콩, 팥	표본구간별 종실중량에 1에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을 나누어 산정한 중량의 합계						

<기수확비율에 따른 기수확지수(차(茶)만 해당)>

기수확비율	기수확지수	기수확비율	기수확지수
10% 미만	1.000	50% 이상 60% 미만	0.958
10% 이상 20% 미만	0.992	60% 이상 70% 미만	0.949
20% 이상 30% 미만	0.983	70% 이상 80% 미만	0.941
30% 이상 40% 미만	0.975	80% 이상 90% 미만	0.932
40% 이상 50% 미만	0.966	90% 이상	0.924

(나) 표본구간 면적 합계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 합계 산정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 합계 산정 방법]

품목	표본구간 면적 합계 산정 방법
양파, 마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양배추	표본구간별 면적(이랑 길이 × 이랑 폭)의 합계
콩, 팥	표본구간별 면적(이랑 길이(또는 세로 길이) × 이랑 폭(또는 가로 길이))의 합계 단, 규격의 원형(1m ²)을 이용하여 조사한 경우에는 표본구간수에 규격 면적(1m ²)을 곱해 산정
차(茶)	표본구간수에 규격 면적(0.08m ²)을 곱하여 산정

(다) 조사 대상 면적

실제 경작면적에서 수확불능(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 수확 면적을 빼어 산출한다.

조사대상 면적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2) 전수조사 시 수확량 산출

(가) 적용 품목 : 콩, 팥

(나) 전수조사 수확량 합계에 평년수확량을 실제경작면적으로 나눈 후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과 기수확면적의 합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품목별 전수조사 수확량 산정 방법>

품목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
콩, 팥	전체 종실 중량에 1에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 0.86을 나누어 산정한 중량의 합계

(다) 미보상감수량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병충해 감수량은 감자 품목에만 해당하며,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합계를 표본구간 면적 합계로 나눈 후 조사 대상 면적 합계를 곱하여 산출한다.

①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합계 산정

표본구간 병충해감수량 합계는 각 표본구간별 병충해감수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② 병충해감수량 산정

병충해감수량은 병충해를 입은 괴경의 무게에 손해정도비율과 인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병충해감수량} = \text{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times \text{손해정도비율} \times \text{인정비율}$$

(3) 손해정도비율 산정

손해정도비율은 병충해로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병충해 감수량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아래 표와 같다.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 비율>

품목	손해정도	손해정도비율	손해정도	손해정도비율
감자	1~20%	20%	61~80%	80%
	21~40%	40%	81~100%	100%
	41~60%	60%		

(4) 인정 비율 산정

인정 비율은 병·해충별 등급에 따라 병충해 감수량으로 인정하는 비율로 아래 표와 같다.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

구분		병·해충	인정비율
품목	급수		
감자	1급	역병, 갈죽병, 모자이크병, 무름병, 둘레썩음병, 가루더듬이병, 잎말림병, 감자빨나방	90%
	2급	홍색부패병, 시들음병, 마른썩음병, 풋마름병, 줄기검은병, 더듬이병, 균핵병, 검은무늬썩음병, 줄기기부썩음병, 진딧물류, 아메리카잎굴파리, 방아벌레류	70%
	3급	반쪽시들음병, 흰비단병, 잿빛곰팡이병, 탄저병, 겹둥근무늬병, 오이총채벌레, 뿌리혹선충, 과밤나방, 큰28점박이무당벌레, 기타	50%

2.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 (고추,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무(고랭지무, 월동무), 단호박, 메밀,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대파, 쪽파(실파)[1형], 쪽파(실파)[2형])

종합위험 생산비보장방식이란 보상하는 재해로 사고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 시기별 조사 종류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정식 (파종) ~ 수확 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생산비 피해조사	사고발생시 마다	① 재배일정 확인 ② 경과비율 산출 ③ 피해율 산정 ④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노지 고추만 해당)	전품목
수확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메밀, 단호박, 노지 배추, 노지 당근, 노지 파, 노지 무만 해당
		경작불능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 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수확 직전		생산비 피해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피해비율 및 손해 정도 비율 확인을 통한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적용 품목 :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나)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다)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라)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마) 피해사실확인 방법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나)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또는 경작불능손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3)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경작불능조사

가) 적용 품목 :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경작불능 전(前) 조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험기간 확인

경작불능보장의 보험기간은 ‘계약체결일 24시’와 ‘정식(과종)완료일 24시 (단, 각 품목별 아래의 일자를 초과할 수 없음(메밀, 시금치 제외))’ 중 늦은 때부터 수확 개시일 직전(다만, 약관에서 정하는 보장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까지로 해당 기간 내 사고인지 확인한다.

품목	정식 완료일			과종 완료일	
	고랭지 배추	대파	단호박	고랭지 무	당근
일자	7월 31일	5월 20일	5월 29일	7월 31일	8월 31일

(2)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 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3)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4)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 (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 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

(5)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대상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생산비보장 손해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6) 산지폐기 여부 확인(2차 : 경작불능 후 조사)

월동무, 월동배추, 쪽파, 당근, 메밀, 시금치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경작불능 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3)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가) 적용 품목

(1) 고추, 브로콜리

(2)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중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65% 이상이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나) 조사 시기

(1) 사고 접수 직후 : 고추, 브로콜리

(2) 수확 직전 :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

(3) 단,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부담비율 이내의 사고) 등의 사유로 수확량조사 실시를 취소한 농지는 생산비보장 손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고추, 브로콜리의 경과비율 조사

(가) 사고 발생일 확인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하고,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발생일은 재해가 끝나는 날(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 발생일로 한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 해당 재해로 추가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 수확 예정 일자, 수확 개시 일자, 수확 종료 일자 확인

- ① 사고 일자를 기준으로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확 예정 일자를 확인한다.
- ② 사고 일자 전에 수확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확을 시작한 일자와 수확 종료 (예정) 일자를 확인한다.

(3)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4) 피해면적조사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피해 이랑 또는 식물체 피해 면적을 확인한다. 단, 메밀 품목은 도복으로 인한 피해면적과 도복 이외 피해면적을 나누어 조사한다.

(5) 손해정도비율 조사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

손해정도	1%~20%	21%~40%	41%~60%	61%~80%	81%~100%
손해정도비율	20%	40%	60%	80%	100%

(가) 고추

① 표본이량수 선정

조사된 피해면적에 따라 표본이량수<별표1>를 선정한다.

② 표본이량 선정

선정한 표본이량 수를 바탕으로 피해 이량 중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이량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이량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작물의 상태가 현저히 좋거나 나빠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피해 이량을 표본이량으로 선정한다.

③ 표본이량 내 작물 상태 조사

표본이량별로 식재된 작물(식물체 단위)을 손해정도비율표<별표 6>와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작물 및 타작물은 정상으로 분류하며,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식물체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식물체도 정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고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

등 급	종류	인정비율
1등급	역병, 풋마름병, 바이러스병, 탄저병, 세균성점무늬병	70%
2등급	잣빛곰팡이병, 시들음병, 담배가루이, 담배나방	50%
3등급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	30%

④ 미보상비율 조사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브로콜리

① 표본구간수 선정

조사된 피해면적에 따라 표본구간수<별표1>를 선정한다.

②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대상 이랑을 연속해서 잡거나 1~2이랑씩 간격을 두고 선택한다.

③ 표본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각 표본구간 내에서 연속하는 10구의 작물피해율 조사를 진행한다. 작물 피해율조사 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작물이 훼손된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정상, 50%형 피해송이, 80%형 피해송이, 100%형 피해송이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다) 메밀 (도복 이외의 피해면적만을 대상으로 함)

① 표본구간수 선정

조사된 도복 이외 피해면적에 따라 표본구간수<별표1>를 선정한다.

②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피해면적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③ 표본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에 규격의 원형(1m²)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1m×1m를 구획하여, 표본 구간 내 식재된 메밀을 손해정도비율표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이때 피해가 없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메밀 및 타작물은 정상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다만, 기 조사시 100%형 피해로 보험금 지급완료 후 새로 파종한 메밀 등 보장대상과 무관한 작물은 평가제외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라) 배추, 무, 사과, 당근, 시금치

① 표본구간수 산정 조사된 피해면적에 따라 표본구간 수<별표1>를 산정한다.

② 표본구간 선정 및 표식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피해면적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표본구간마다 첫 번째 작물과 마지막 작물에 리본 등으로 표시한다.

③ 표본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표본구간 내에서 연속하는 10구의 손해정도 비율 조사를 진행한다. 손해정도비율 조사 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작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정도비율표<별표 6>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마) 단호박

① 표본구간수 선정

조사된 피해면적에 따라 표본구간수<별표 1>를 선정한다.

②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피해면적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③ 표본구간 내 작물 상태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에 표본구간의 가로(이랑 폭)·세로(1m) 길이를 구획하여, 표본 구간 내 식재된 단호박을 손해정도비율표<별표 6>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한다.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경작불능보험금의 산정(배추, 무, 단호박, 사과, 당근, 메밀, 시금치)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표>

자기부담비율	경작불능보험금
20%형	보험 가입금액 × 40%
30%형	보험 가입금액 × 35%
40%형	보험 가입금액 × 30%

나) 지급거절 사유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품목이 산지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27 생산비보장방식 식물체 손해정도 비율 조사



2) 생산비보장보험금 산정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생산비 보장보험금을 지급한다.

가) 고추

① 생산비보장보험금	
병충해가 없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 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병충해가 있는 경우	생산비보장보험금 = (잔존보험 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보상액(기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합계액)	

②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 준비기생산비계수 + [(1 - 준비기생산비계수) × (생장일수 ÷ 표준생장일수)]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과비율 = 1 - (수확일수 ÷ 표준수확일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비기생산비계수는 55.6%로 한다. 2.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3. 표준생장일수(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00일로 한다. 4. 생장일수를 표준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6.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③ 피해율	
$\text{피해율} = \text{피해비율} \times \text{손해정도비율} \times (1 - \text{미보상비율})$	
$\text{피해비율} = \text{피해면적(주수)} \div \text{재배면적(주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비율은 재배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의미하며, 피해면적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손해정도비율은 표본구간 내 고추의 손해정도를 의미하며, 표본이랑 내 각 손해정도비율별 고추(식물체 단위)수에 손해정도비율(정상 고추의 손해정도 비율은 0으로 한다)을 곱한 값의 합계를 전체 고추 수에서 평가제외 고추를 뺀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브로콜리

① 생산비보장보험금
$\text{생산비보장보험금} = (\text{잔존보험가입금액} \times \text{경과비율}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금}$

② 경과비율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text{경과비율} = \text{준비기생산비계수} + \{(1 - \text{준비기생산비계수}) \times (\text{성장일수} \div \text{표준성장일수})\}$
수확기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text{경과비율} = 1 - (\text{수확일수} \div \text{표준수확일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비기생산비계수는 49.5%로 한다. 2. 성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3. 표준성장일수(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성장일수)는 사전에 설정된 값으로 130일로 한다. 4. 성장일수를 표준성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로 한다. 6. 표준수확일수는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③ 피해율	
$\text{피해율} = \text{피해비율} \times \text{작물피해율}$	
$\text{피해비율} = \text{피해면적(m}^2\text{)} \div \text{재배면적(m}^2\text{)}$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물피해율은 피해면적 내 피해송이 수를 총 송이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2. 피해송이는 송이별로 피해 정도에 따라 아래 피해인정계수를 정하며, 피해송이 수는 피해송이별 피해인정계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p>▷ 작물피해율 = $\{(50\% \text{형 피해송이 개수} \times 0.5) + (80\% \text{형 피해송이 개수} \times 0.8) + (100\% \text{형 피해송이 개수})\} \div (\text{정상 송이 개수} + 50\% \text{형 피해송이 개수} + 80\% \text{형 피해송이 개수} + 100\% \text{형 피해송이 개수})$</p>	

<브로콜리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구분	정상 밭작물	50%형 피해 밭작물	80%형 피해 밭작물	100%형 피해 밭작물
피해인정계수	0	0.5	0.8	1

다) 메밀

- (1) 생산비보장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생산비보장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2) 피해율은 피해면적을 실제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text{피해율} = \text{피해면적} \div \text{실제 재배면적}$$

- (3) 피해면적은 도복으로 인한 피해면적에 70%를 곱한 값과 도복 이외 피해면적에 손해정도비율을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text{피해면적} = (\text{도복으로 인한 피해면적} \times 70\%) + (\text{도복 이외 피해면적} \times \text{손해정도비율})$$

- (4) 손해정도비율은 각각의 표본구간 면적(1㎡)에 표본구간별 손해정도 비율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해당 값을 표본구간 면적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라)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시금치

- (1) 생산비보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피해율에서 자기부담비율을 뺀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text{생산비보장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2) 피해율은 피해비율에 손해정도비율, (1 -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각 요소는 아래 목과 같이 산출한다.

$$\text{피해율} = \text{피해비율} \times \text{손해정도비율} \times (1 - \text{미보상비율})$$

(가) 피해비율

실제 재배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의미하며, 피해면적을 실제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text{피해비율} = \text{피해면적} \div \text{실제 재배면적}$$

(나) 손해정도비율

표본이랑 내 작물의 손해정도를 의미하며, 표본이랑 내 각 손해정도비율별 작물 수에 손해정도비율(정상 작물의 손해정도 비율은 0으로 한다.)을 곱한 값의 합계를 전체 작물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손해정도비율} = & \{(2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times 0.2) + (4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times 0.4) \\ & + (6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times 0.6) + (8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times 0.8) \\ & + (10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div \{(\text{정상작물 개수} + 20\% \text{형} \\ & \text{피해작물 개수} + 4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 6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 & + 8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 100\% \text{형 피해작물 개수} \} \end{aligned}$$

(다) 미보상비율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조사한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3. 작물특정 및 시설종합위험 인삼손해보장방식

가. 작물특정 인삼손해보장

보상하는 재해(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로 인삼(작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자기부담비율(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나. 시설(해가림시설) 종합위험 손해보장

보상하는 재해(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해가림시설(시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자기부담비율(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에는 발생한 손해액에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단,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에는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하여 산정한다.

다. 시기별 조사 종류

생육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보험 기간 내	태풍(강풍) · 폭설· 집 중호우· 침 수· 화재· 우박· 냉해 · 폭염	수확량 조사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감소된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인삼
	보상하는 재해 전부	해가림시설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해가림 시설

라. 손해평가 현지조사 종류 및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적용 품목 : 인삼, 해가림시설

나)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다) 대상 재해

(1) 인삼 :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우박, 냉해, 폭염 (특정위험)

(2) 해가림시설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종합위험)

라)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마) 피해사실확인 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나) 피해 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수확량조사 및 해가림시설손해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3)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확량조사

가) 적용 품목 : 인삼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라) 조사 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수확량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

조사 시점이 인삼의 수확량을 확인하는데 적절한지 검토하고, 부적절한 경우 조사 일정을 조정한다.

(3) 전체 칸수 및 칸 넓이 조사

(가) 전체 칸수조사

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센다.(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이용한 칸수조사(경작면적 ÷ 칸 넓이)도 가능하다)

(나) 칸 넓이 조사

지주목간격, 두둑 폭 및 고랑 폭을 조사하여 칸 넓이를 구한다(칸 넓이 = 지주목 간격 × (두둑 폭 + 고랑 폭))

(4) 조사 방법에 따른 수확량 확인

(가) 전수조사

① 칸수 조사 : 금번 수확칸수, 미수확칸수 및 기수확칸수를 확인한다.

② 실 수확량 확인 : 수확한 인삼 무게를 확인한다.

(나) 표본조사 시

① 칸수 조사 : 정상 칸수 및 피해 칸수를 확인한다.

② 표본칸 선정

피해칸수에 따라 적정 표본칸수<별표 1>를 선정하고, 해당 수의 칸이 피해 칸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칸을 선정한다.

③ 인삼 수확 및 무게 측정 : 표본칸 내 인삼을 모두 수확한 후 무게를 측정 한다.

3) 인삼 해가림시설 손해조사

가) 적용 품목 : 해가림시설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후

라) 손해조사 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전체 칸수 및 칸 넓이 조사

(가) 전체 칸수조사

농지 내 경작 칸수를 센다. (단, 칸수를 직접 세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작면적을 이용한 칸수조사(경작면적 ÷ 칸 넓이)도 가능하다.)

(나) 칸 넓이 조사

지주목 간격, 두둑 폭 및 고랑 폭을 조사하여 칸 넓이를 구한다.

(3) 피해 칸수 조사

피해 칸에 대하여 전체파손 및 부분파손(20%형, 40%형, 60%형, 80%형)으로 나누어 각 칸수를 조사한다.

그림 2-28 해가림시설 손해조사

시설손해조사(종합위험)

해가림시설



(4) 손해액 산정

(가) 단위면적당 시설가액표, 파손 칸수 및 파손 정도 등을 참고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기평가한 재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나) 산출된 피해액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산출한다.

4) 미보상비율 조사(모든 조사 시 동시 조사)

상기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마. 보험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1) 인삼보험금 산정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나) 기지급 보험금이 있을 경우에는 가)호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에서 차감한다.

다) 피해율은 다음 목과 같이 전수조사 시와 표본조사 시로 나누어 산정한다.

(1) 전수조사란 수확하는 모든 인삼의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가) 전수조사 시 피해율은 연근별기준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후 연근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과 피해면적(금차 수확칸수)을 재배면적(실경작칸수)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한다.

[연근별 기준수확량(가입 당시 연근 기준) (단위 : kg/m²)

구분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불량	0.45	0.57	0.64	0.66
표준	0.50	0.64	0.71	0.73
우수	0.55	0.70	0.78	0.81

(나) 수확량은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과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은 총수확량을 금차수확면적(금차수확칸수 × 조사칸넓이)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을 뺀 값과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표본조사란 수확하는 인삼 중 표본<별표 1>을 정하고 해당 표본의 무게 조사를 통해 전체 무게를 조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가) 표본조사 시 피해율은 연근별 기준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후 연근별 기준 수확량으로 나눈 값과 피해면적(피해칸수)을 재배면적(실경작칸수)으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수확량은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과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을 합하여 계산한다.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은 표본수확량 합계를 표본칸 면적(표본칸수 × 조사칸넓이)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은 기준수확량에서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을 뺀 값과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금 산정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나)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그러나,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다음과 같이 비례보상한다.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imes (\text{보험 가입금액} \div \text{보험가액})$$

* 자기부담금은 최소자기부담금(10만 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 원)을 한도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라)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div \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text{지급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 \div \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마) 해가림시설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비용의 합은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바)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손해방지비용은 농지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절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원예작물 및 원예 시설, 버섯 및 버섯재배사)

1. 보험의 목적

가. 원예시설

1) 농업용 시설물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유리(경질판)온실의 구조체 및 피복재

2) 부대시설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 (단, 동산시설 제외)

3) 시설작물

가) 화훼류 : 국화, 장미, 백합, 카네이션

나) 비화훼류 :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부추, 시금치, 가지, 배추, 파(대파·쪽파), 무, 쪽갓, 미나리

나. 버섯

1)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단동하우스(광폭형하우스를 포함한다), 연동하우스 및 경량철골조 등 버섯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하는 구조체, 피복재 또는 벽으로 구성된 시설

2) 부대시설

버섯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에 부대하여 설치한 시설 (단, 동산시설은 제외함)

3) 시설재배 버섯

농업용 시설물(버섯재배사)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느타리버섯(균상재배, 병재배), 표고버섯(원목재배, 톱밥배지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2.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가.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원예시설과 버섯의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손해조사

가) 조사기준

(1)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며, 손해액 산출 시에는 농업용시설물 감가율을 적용한다.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					
1. 고정식 하우스					
	구분	내용연수	경년감가율		
구조체	단동하우스	10년	8%		
	연동하우스	15년	5.3%		
피복재	장수PE, 삼중EVA, 기능성필름, 기타	1년	40% 고정감가		
	장기성PO	5년	16%		
2. 이동식 하우스(최초 설치년도 기준)					
	구분	경과기간			
		1년 이하	2~4년	5~8년	9년 이상
	구조체 (고정감가)	0%	30%	50%	70%
	피복재	40%(고정감가)			
3. 유리온실 부대시설					
	구분	내용연수	경년감가율		
	부대시설	8년	10%		
유리온실	철골조/석조/연와석조	60년	1.33%		
	블록조/경량철골조/단열판넬조	40년	2.0%		
※ 유리온실은 손해보험협회가 발행한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 건물의 추정내용연수 및 경년 감가율표를 준용 ※ 경년감가율은 월단위로 적용(경과연수=사고년월-취득년월)하여 월단위 감가 적용한다. 다만, 고정식하우스의 피복재(내용연수 1년)와 이동식하우스의 구조체, 피복재는 고정감가를 적용					

(2)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단,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로 보상한다.

나) 평가단위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을 기준으로 계약 원장에 기재된 목적물 별로 평가한다.

다) 조사 방법

(1) 계약사항 확인

(가) 계약 원장 및 현지 조사표를 확인하여 사고 목적물의 소재지 및 보험시기 등을 확인한다.

(나) 계약 원장 상의 하우스 규격(단동, 연동, 피복재 종류 등)을 확인한다.

(2) 사고 현장 방문

(가) 계약 원장 상의 목적물과 실제 목적물 소재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나)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 사고 일시 등을 확인한다.

(다) 면담 결과, 사고 경위, 기상청 자료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맞는지 판단한다.

(3) 손해평가

(가) 피복재

다음을 참고하여 하우스 폭에 피해길이를 감안하여 피해 범위를 산정한다.

- ①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체 교체를 한 경우 전체 피해로 인정
- ②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부분 교체를 한 경우 교체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
- ③ 전체 교체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한 부분만 피해로 인정

(나) 구조체 및 부대시설

다음을 참고하여 교체수량(비용), 보수 및 수리 면적(비용)을 산정하되,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보수 불가) 또는 수리 비용이 교체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제조달비용을 산정한다.

① 손상된 골조(부대시설)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교체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 산정

② 손상된 골조(부대시설)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리 및 보수비용 산정

(다) 인건비

실제 투입된 인력, 시방서, 견적서, 영수증 및 시장조사를 통해 피복재 및 구조체 시공에 소모된 인건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원예시설작물 · 시설재배 버섯 손해조사

가) 조사기준

- (1) 1사고 마다 생산비보장 보험금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 (2) 평가단위는 목적물 단위로 한다.
- (3) 동일 작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 동일 작기 작물의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4) 평가 시점은 피해의 확정이 가능한 시점에서 평가한다.

나) 조사 방법

(1) 계약사항 확인

(가) 계약 원장 및 현지 조사표를 확인하여 사고 목적물의 소재지 및 보험시기 등을 확인한다.

(나) 계약 원장 상의 하우스 규격 및 재배면적 등을 확인한다.

(2) 사고 현장 방문

(가) 면담을 통해 사고 경위, 사고 일자 등을 확인한다.

(나) 기상청 자료 확인, 계약자 면담, 작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계약자에게 아래의 자료를 요청하여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한다.

①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② 출하내역서(과거 출하내역 포함)

③ 기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다) 재배 일정 확인(정식·파종·종균접종일, 수확개시·수확종료일 확인)

① 문답 조사를 통하여 확인

② 필요 시 재배 일정 관련 증빙서류(모종구매내역, 출하 관련 증명서, 영농일지 등)를 확인

(라) 사고 일자 확인 : 계약자 면담, 기상청 자료 등을 토대로 사고 일자를 특정한다.

① 수확기 이전 사고

연속적인 자연재해(폭염, 냉해 등)로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상특보 발령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한다. 다만 지역적 재해 특성, 계약자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확기 중 사고

연속적인 자연재해(폭염, 냉해 등)로 사고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출하 일자를 사고 일자로 추정한다. 다만 지역적 재해 특성, 계약자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손해조사

(1) 경과비율 산출

사고 현장 방문 시 확인한 정식일자(파종·종균접종일), 수확개시일자, 수확종료일자, 사고 일자를 토대로 작물별 경과비율을 산출한다.

(2) 재배비율 및 피해비율 확인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주수) 및 피해면적(주수)를 조사한다.

(3) 손해정도비율

보험목적물의 뿌리, 줄기, 잎 과실 등에 발생한 부분의 손해정도비율<별표6>을 산정한다.

3) 화재대물배상책임

손해평가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한다.

나.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원예시설과 버섯의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보험금 산정

가) 시설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파이프, 경량철골조) 손해액에 피복재 손해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부대시설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한다.

나) 손해액 산출 기준

(1)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농업용시설물 감가율을 적용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2) 재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단,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로 보상한다.

다) 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보전비용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

마) 지급보험금의 계산

- (1)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2) 보험금 = $\text{MIN}(\text{손해액}-\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 (3) 자기부담금
 - (가)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 (나) 피복재단독사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3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다)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은 두 보험의 목적의 손해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하고 두목적물의 손해액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 (라)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 (마)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원예시설작물 및 시설재배 버섯 보험금 산정

가) 보험금 지급기준

- (1) 생산비보장보험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액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 (2) 동일 작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 동일 작기 작물의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시설작물 보장생산비(2021년 계약기준)>

구분		보장생산비(단위 원)
수박		5,100
딸기		15,800
토마토		12,500
오이		8,300
참외		7,000
풋고추		7,900
호박		8,100
국화	일반	14,100
	재절화	11,100
파프리카		26,300
멜론		7,400
장미 (가입하는 월과 작물의 재식연도에 따라 보장생산비 상이)		가입시 설정
상추		4,500
시금치		1,9,00
부추		5,500
가지		13,200
배추		2,400
파	대파	2,100
	쪽파	2,600
무		2,600
백합		11,900
카네이션	일반	25,400
	재절화	15,300
미나리		7,700
쑥갓		2,100

<작물별 표준생장일수>

품목	품종	표준생장일수	
딸기	전체	90일	
오이		45일(75일)	
토마토		80일(120일)	
참외		90일	
풋고추		55일	
호박		40일	
수박		100일	
멜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40일	
국화		스탠다드형	120일
		스프레이형	90일
가지	전체	50일	
배추	전체	70일	
과	대과	120일	
	쪽과	60일	
무	일반	80일	
	기타	50일	
백합	전체	100일	
카네이션	전체	150일	
미나리	전체	130일	
쑥갓	전체	50일	

※ 단, 관호안의 표준생장일수는 9월~11월에 정식하여 겨울을 나는 재배일정으로 3월 이후에 수확을 종료하는 경우에 적용

※ 무 품목의 기타 품종은 알타리무, 열무 등 큰 무가 아닌 품종의 무임.

나) 보험금 산출방법

(1) 적용 품목 :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국화, 멜론, 상추, 가지, 배추, 파(대파),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수박

(가) 생산비보장보험금 = 피해작물 재배면적 × 단위 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나) 경과비율

① 수확기 이전 사고

㉠ 경과비율 = $a + (1-a) \times (\text{성장일수} \div \text{표준성장일수})$

㉡ a = 준비기 생산비 계수 (40%, 국화·카네이션 재절화재배는 20%)

㉢ 성장일수 : 정식(파종)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표준성장일수 :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성장일수

㉤ 성장일수를 표준성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수확기 중 사고

㉠ 경과비율 = $1 - (\text{수확일수} \div \text{표준수확일수})$

㉡ 수확일수 : 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표준수확일수 :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

㉣ 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국화·수박·멜론의 경과비율은 1

(다)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별표 6>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2) 적용 품목 : 장미

(가)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① 생산비보장보험금 = 장미 재배면적 × 장미 단위면적 당 나무생존시 보장 생산비 × 피해율

②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별표 6>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나) 나무가 죽은 경우

① 생산비보장보험금 = 장미 재배면적 × 장미 단위 면적당 나무고사 보장생산비 × 피해율

②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별표 6>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손해정도비율 = 100%

(3) 적용 품목 : 부추

(가) 생산비보장보험금 = 부추 재배면적 × 부추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피해율 × 70%

(나)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별표 6>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4) 적용 품목 : 시금치 · 파(쪽파) · 무 · 쪽갓

(가) 생산비보장보험금 = 피해작물 재배면적 × 단위 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나) 경과비율

① 수확기 이전 사고

㉠ 경과비율 = $a + (1-a) \times (\text{성장일수} \div \text{표준성장일수})$

㉡ a = 준비기 생산비 계수 (10%)

㉢ 성장일수 : 파종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표준성장일수 : 파종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성장일수

㉤ 성장일수를 표준성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수확기 중 사고

㉠ 경과비율 = $1 - (\text{수확일수} \div \text{표준수확일수})$

㉡ 수확일수 : 수확개시일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표준수확일수 :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

(다)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별표 6>

-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시설재배 버섯 보장생산비>

구분		보장생산비	기준
표고버섯 (원목재배)	1년차	보험가입시 설정	원목 한 본
	2년차	보험가입시 설정	
	3년차	보험가입시 설정	
	4년차	보험가입시 설정	
표고버섯(툽밥배지재배)		2,600원	배지 한 봉
느타리버섯(균상재배)		11,480원	m ² 기준
느타리버섯(병재배)		364원	한 병
새송이버섯(병재배)		450원	한 병
양송이버섯(균상재배)		20,800원	m ² 기준

<버섯 종류별 표준생장일수>

품목	품종	표준생장일수
표고버섯(툽밥배지재배)	전체	90일
느타리버섯(균상재배)	전체	28일
양송이버섯(균상재배)	전체	30일

(5) 적용 품목 : 표고버섯(원목재배)

(가) 생산비보장보험금 = 재배원목(본)수 × 원목(본)당 보장생산비 × 피해율

(나)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① 피해비율 = 피해원목(본)수 ÷ 재배원목(본)수

② 손해정도비율 = (표본원목의 피해면적 ÷ 표본원목의 전체면적)

<표본원목 선정기준>

피해 원목수	1000본 이하	1300본 이하	1500본 이하	1800본 이하	2000본 이하	2300본 이하	2300본 초과
조사 표본수	10	14	16	18	20	24	26

(6) 적용 품목 : 벼(표고벼(툽밥배지재배), 느타리벼(균상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가) 생산비보장보험금

① 표고벼(툽밥배지재배)

$$\text{생산비보장보험금} = \text{재배배지(봉)수} \times \text{배지(봉)당 보장생산비} \times \text{경과비율} \times \text{피해율}$$

② 느타리벼(균상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text{생산비보장보험금} = \text{재배면적} \times \text{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times \text{경과비율} \times \text{피해율}$$

(나) 경과비율

① 수확기 이전 사고

㉠ 경과비율 = $\alpha + (1 - \alpha) \times (\text{성장일수} \div \text{표준성장일수})$

㉡ 준비기 생산비 계수 = α

품목	표고벼 (툽밥배지재배)	느타리벼 (균상재배)	양송이버섯 (균상재배)
준비기생산비 계수	81.9%	67.8%	80.4%

㉢ 성장일수 = 평균접종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표준성장일수 : 평균접종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성장 일수

㉤ 성장일수를 표준성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 할 수 없음

② 수확기 중 사고

㉠ 경과비율 = $1 - (\text{수확일수} \div \text{표준수확일수})$

㉡ 수확일수 = 수확개시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 표준수확일수 =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일수

(다)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① 표고버섯(툽밥배지재배) 피해비율 = 피해배지(봉)수 ÷ 재배배지(봉)수
- ② 느타리버섯(균상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재배면적
- ③ 손해정도비율
 - ㉔ 표고버섯(툽밥배지재배) = 손해정도에 따라 50%, 100%에서 결정
 - ㉕ 느타리버섯(균상재배), 양송이버섯(균상재배)

손해정도	1~20%	21~40%	41~60%	61~80%	81~100%
손해정도비율	20%	40%	60%	80%	100%

(7) 느타리버섯(병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가) 생산비보장보험금 = 재배병수 × 병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나) 경과비율

품목	느타리버섯(병재배)	새송이버섯(병재배)
경과비율	90.8%	91.4%

(다)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별표 6>

- 피해비율 = 피해병수 ÷ 재배병수

그림 2- 29 시설하우스 손해조사

조사방법

1 손해액 조사

- 피복재 : 피복재의 피해면적 조사
- 구조체
 -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교체 수량
 -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보수면적 확인
- 부대시설 : 보상 가능한 목적물 중 피해목적물에 대한 피해정도 조사 후 수리 및 보수비용 확인

2 잔존물 확인

- 피해목적물을 재사용(수리·복구) 할 수 없는 경우 경제적 가치 확인

관련사진



침수로 매몰된 하우스



강풍 피해 하우스



화재 피해 하우스

제7절 농업수입보장방식의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농업수입보장보험이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에 농산물 가격하락을 반영한 농업수입 감소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은 산출시가격은 기준가격과 수확기가격 중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즉, 수확기가격이 상승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적용되는 가격은 가입할 때 결정된 기준가격이다. 따라서, 실제수입을 산정할 때 실제수확량이 평년수확량보다 적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확기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확량 감소에 의한 손해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감소에 따른 계약자의 손해에 농산물 가격 하락에 의한 손해까지 더하여 보상한다.

1. 과수(포도, 비가림시설)

가. 시기별 조사종류

- 1) 조사 종류 : (종합위험방식과 동일) 피해사실 확인조사, 착과수조사, 과중 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고사나무조사, 비가림시설피해 조사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가격하락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나)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다)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확량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수확량조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수확량조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수확기에 손해평가반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2) 수확량조사

본 항의 수확량조사는 포도 품목에만 해당하며, 다음 호의 조사 종류별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또한, 수확량조사 시 따거나 수확한 과실은 계약자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가) 착과수조사

(1) 조사 대상 :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

(2) 대상 재해 : 해당 없음

(3) 조사 시기 :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4) 조사 방법

(가)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나) 조사 대상주수 계산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에서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빼서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다) 표본주수 산정

- ① 과수원별 전체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주수표<별표 1>에 따라 농지별 전체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 ② 적정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품종별·수령별 적정표본주수의 합은 전체 표본주수 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 표본주 선정

산정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한다.

(마) 착과된 전체 과실수 조사

선정된 표본주별로 착과된 전체 과실수를 조사하되, 품종별 수확 시기 차이에 따른 자연낙과를 감안한다.

(바)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나) 과중 조사

- (1) 조사 대상 : 사고 접수가 된 농지 (단, 수입보장포도는 가입된 모든 농지 실시)
- (2) 조사 시기 : 수확 시기(조기 수확 및 수확 해태 등으로 수확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확 시기 판단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전문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3) 조사 방법

(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나)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 조사

농지에서 품종별로 착과가 평균적인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실을 품종별 20개 이상(농지당 30개 이상) 추출하여 품종별 과실 개수와 무게를 조사한다.

(다) 과중 조사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 목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과중 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경우, 품종별 평균과중을 적용하거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의 품종별 출하 자료로 과중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수확 전 대상 재해 발생 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소 10일 전에 보험가입 대리점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는 조사를 실시한다.)

(라) 미보상비율 조사

품목별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하며, 품종별로 미보상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품종별 미보상비율 중 가장 높은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미보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미보상비율을 적용한다.

(마) 여러 차례의 과중 조사가 실시된 경우

하나의 품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과중 조사가 실시된 경우에는 최초 조사 값을 적용한다. 다만,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로 조사값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의 조사 값을 적용한다.

다) 착과피해조사

- (1) 착과피해조사는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시행하며, 해당 재해 여부는 재해의 종류와 과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자가 판단한다.
- (2) 착과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실시하며, 필요 시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 (3) 조사 방법

(가) 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착과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할 착과수는 수확 전 착과수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다만, 이전 실시한 착과수조사(이전 착과피해조사 시 실시한 착과수조사 포함)의 착과수와 착과

피해조사 시점의 착과수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착과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과수조사 값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①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②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뺀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③ 적정 표본주수 산정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주수를 산정한다.

④ 이후 조사 방법은 이전 착과수조사 방법과 같다.

(나)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① 표본과실 추출

착과수 확인이 끝나면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 (포도 농지당 30개 이상)으로 하며 표본 과실을 추출할 때에는 품종별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추출한다.

② 피해구성조사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표” <별표 3> 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

(다) 조사 당시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을 때에는 품종별로 피해구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낙과피해조사

(1) 낙과피해조사는 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조사 방법

(가)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나) 표본조사

낙과피해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과실을 한 곳에 모아 둔 경우 등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① 나무수 조사

농지내 품종별·수령별 실제결과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파악한다.

② 조사 대상주수 계산

실제결과주수에서 수확 완료주수, 미보상주수 및 고사나무주수를 뺀 조사 대상주수를 계산한다.

③ 적정표본주수 산정

조사 대상주수를 기준으로 농지별 전체 적정표본주수를 산정하되(거대재해 발생 시 표본조사의 표본주수는 『품목별 표본주수표』 <별표 1>의 1/2 이하로 할 수 있다.),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는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선정된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를 바탕으로 품종별·수령별 조사 대상주수의 특성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별로 수관면적 내에 있는 낙과수를 조사한다(이때 표본주의 수관면적 내의 낙과는 표본주와 품종이 다르더라도 해당 표본주의 낙과로 본다).

(다) 전수조사

낙과수 전수조사 시에는 농지 내 전체 낙과를 품종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단,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낙과수를 세고 전체 낙과수 중 10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여 해당 표본의 품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 품종별 표본과실 선정 및 피해구성조사

낙과수 확인이 끝나면 낙과 중 품종별로 표본 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 과실수는 품종별 20개 이상(포도는 농지당 30개 이상)으로 하며, 추출한 “표본 과실을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표” <별표 3>에 따라 품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과실 개수를 조사한다(다만, 전체 낙과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등에는 해당 기준 미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

(마) 조사 당시 수확기에 해당하지 않는 품종이 있거나 낙과의 피해 정도가 심해 피해 구성 조사가 의미가 없는 경우 등에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고사나무조사

본 항의 고사나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가) 나무손해보장 특약 가입 여부 및 사고 접수 여부 확인 해당 특약을 가입한 농지 중 사고가 접수된 모든 농지에 대해서 고사나무조사를 실시한다.

나) 조사 시기의 결정

고사나무조사는 수확 완료 시점 이후에 실시하되, 나무손해보장특약 종료 시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라) 나무수 조사

(1) 품종별·수령별로 실제결과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및 미보상 고사주수를 조사한다.

(가)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낙과피해조사 및 수확개시 전·후 수확량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것으로 확인된 주수를 말한다.

(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 중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주수를 말한다.

(다) 미보상 고사주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한 나무주수를 의미하며 고사나무조사 이전 조사(착과수조사, 착과피해조사 및 낙과피해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하여 미보상주수로 조사된 주수를 포함한다.

마)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가 없는 경우(계약자 유선 확인 등)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가림시설 피해조사

본 항의 비가림시설 피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조사 기준 : 해당 목적물인 비가림시설의 구조체와 피복재의 재조달가액을 기준금액으로 수리비를 산출한다.

(2) 평가 단위 :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1동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 별로 평가한다.

(3) 조사 방법

(가) 피복재 : 피복재의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나) 구조체

①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교체 수량 확인 후 교체 비용 산정

② 손상된 골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 : 보수 면적 확인 후 보수 비용 산정

다.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기준

1) 농업수입감소 보험금 산정

가)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begin{aligned} \text{농업수입감소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text{피해율} &= (\text{기준수입} - \text{실제수입}) \div \text{기준수입} \end{aligned}$$

나) 기준수입은 평년수확량에 농지별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실제 수입은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다만, 수확량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년수확량)에 미보상감수량을 더한 값에 농지별 기준가격⁷⁾과 농지별 수확기가격⁸⁾ 중 작은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조사를 하지 못하여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마)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바) 포도의 경우 착색 불량된 송이는 상품성 저하로 인한 손해로 보아 감수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특약의 보험금

가)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begin{aligned} \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times 10\%) \\ \text{피해율}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end{aligned}$$

3) 나무손해보장특약의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금 = 보험 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7) 기준가격 산정방법은 1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의 농업수입감소보험 부분 참고

8) 수확기가격 산정방법은 1권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의 농업수입감소보험 부분 참고

나)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다) 피해주수는 수확 전 고사주수와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를 더하여 산정하며, 미보상 고사주수는 피해주수에서 제외한다.

라) 대상품목 및 자기부담비율은 약관에 따른다.

4) 비가림시설 보험금 산정

가)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1사고 마다 재조달가액(보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한다.

$$\text{지급보험금} = \text{MIN}(\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나)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text{보험금}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험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다)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 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라)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로 보상한다.

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재해보험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바) 자기부담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재해보험사업자는 최소자기부담금(3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100만원)을 한도로 보험사 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자기부담금(10만원)과 최대자기부담금(30만 원)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의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한다.

2. 발작물 (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가. 시기별 조사종류

1) 조사 종류 : (종합위험방식과 동일) 피해사실 확인조사, 경작불능조사, 수확량 조사, 재과종조사(마늘만 해당), 재정식조사(양배추만 해당),

나. 손해평가 현지조사 방법

1) 피해사실 확인조사

가) 조사 대상 : 대상 재해로 사고 접수 농지 및 조사 필요 농지

나) 대상 재해 :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병해충(감자 품목만 해당)

다) 조사 시기 : 사고 접수 직후 실시

라) 피해사실 확인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한다.

(가)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및 손해평가인 소견서 등 재해 입증 자료

(나) 피해농지 사진 : 농지의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2) 추가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재해 여부 및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조사(재정식조사, 재파종조사, 경작불능조사 및 수확량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추가조사 일정을 수립한다.

(3) 단, 태풍 등과 같이 재해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파종조사(마늘)

가) 적용 품목 : 마늘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재파종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 사실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재파종 전(前) 조사)

(가) 표본구간수 산정

조사대상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수 <별표1>이상의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계약 변경 대상 건)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text{조사대상 면적} = \text{실경작면적} - \text{고사면적} - \text{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text{기수확면적}$$

(나)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 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지점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마늘의 출현율이 현저히 높거나 낮아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지점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다) 표본구간 길이 및 출현주수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8주 이상(또는 1m)에 해당하는 이랑 길이, 이랑 폭(고랑 포함) 및 출현주수를 조사한다.

(4) 재파종 이행 완료 여부 조사(재파종 후(後) 조사)

(가) 조사 대상 농지 및 조사 시기 확인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1차 조사) 시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 조사를 진행한다.

(나) 표본구간 선정

재파종 보험금 대상 여부 조사(재파종 전 조사)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 표본구간 길이 및 파종주수 조사

선정된 표본구간별로 이랑 길이, 이랑 폭 및 파종주수를 조사한다.

3) 재정식조사(양배추)

가) 적용 품목 : 양배추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시 재정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조사 방법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재정식 전(前) 조사)

(가) 피해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실제 경작면적 대비 피해면적을 비교 및 조사한다.

(나) 피해면적의 판정 기준

작물이 고사되거나 살아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4) 재정식 이행완료 여부 조사(재정식 후(後)조사)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전(前)조사) 시 재정식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농지에 대하여, 재정식이 완료되었는지를 조사한다. 피해 면적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면적은 피해 면적에서 제외한다.

- (5) 농지별 상황에 따라 재정식 전 조사를 생략하고 재정식 후(後) 조사 시 면적조사(실제경작면적 및 피해면적)를 실시할 수 있다.

4) 경작불능조사

가) 적용 품목 : 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나) 조사 대상 :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경작불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피해가 예상되는 농지

다) 조사 시기 : 피해사실 확인조사 직후 또는 사고 접수 직후

라)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 조사(경작불능 전(前) 조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한다.

(2)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 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3)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측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식물체 피해율(고사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 가입식물체(수 또는 면적)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식물체 판정의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이 65% 이상 여부를 조사한다.

(4)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계약자에게 경작불능보험금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5) 수확량조사 대상 확인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콩 제외)

(6) 산지폐기 여부 확인(경작불능 후(後) 조사)

콩, 양배추, 양파·마늘·감자(가을재배)·콩·양배추·팥 품목에 대하여 1차 조사(경작불능 전조사)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농지에 대하여 산지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5) 수확량조사

가) 적용 품목 : 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나) 조사 대상

- (1)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수확량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 결과 수확량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된 농지
- (2) 수확량조사 전 계약자가 피해 미미(자기부담비율 이내의 사고) 등의 사유로 수확량조사 실시를 취소한 농지는 수확량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손해조사 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농지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근거자료(피해사실 확인조사 참조)를 확보할 수 있다.

(2) 수확량조사 적기 판단 및 시기 결정

해당 작물의 특성에 맞게 아래 표에서 수확량조사 적기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품목별 수확량조사 적기]

품목	수확량조사 적기
콩	콩잎이 누렇게 변하여 떨어지고 꼬투리의 80~90% 이상이 고유한 성숙(황색)색깔로 변하는 시기인 생리적 성숙기로부터 7~14일이 지난 시기
양배추	결구 형성이 완료된 때
양파	양파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식물체의 도복이 완료된 때)
감자 (가을재배)	감자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과종일로부터 95일 이후)
마늘	마늘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잎과 줄기가 1/2 ~ 2/3 황변하여 말랐을 때와 해당 지역의 통상 수확기가 도래하였을 때)
고구마	고구마의 비대가 종료된 시점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 농지별로 적용)

(4) 면적 확인

(가) 실제 경작면적 확인

GPS 면적측정기 또는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 가입 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을 비교한다. 이때 실제 경작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나) 수확불능(고사)면적 확인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해당 작물이 수확될 수 없는 면적을 확인한다.

(다) 타작물 및 미보상 면적 확인

해당 작물 외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사유로 수확이 감소한 면적을 확인한다.

(라) 기수확면적 확인

조사 전에 수확이 완료된 면적을 확인한다.

(마) 조사대상 면적 확인

실제경작면적에서 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을 제외하여 조사 대상 면적을 확인한다.

(5) 조사 방법 결정

품목 및 재배 방법 등을 참고하여 다음의 적절한 조사 방법을 선택한다.

(가) 표본조사 방법

① 적용 품목 : 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② 표본구간수 산정

조사대상 면적 규모에 따라 적정 표본구간수 이상의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다만, 가입면적과 실제 경작면적이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계약 변경 대상)에는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표본구간수를 산정한다.

③ 표본구간 선정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 방법 및 품종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면적에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다만, 선정한 구간이 표본으로 부적합한 경우(해당 지점 작물의 수확량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서 표본으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가까운 위치의 다른 구간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한다.

④ 표본구간 면적 및 수확량 조사

해당 품목별로 선정된 표본구간의 면적을 조사하고, 해당 표본구간에서 수확한 작물의 수확량을 조사한다.

⑤ 양파, 마늘의 경우 지역별 수확 적기보다 일찍 조사를 하는 경우, 수확 적기까지 잔여일수별 비대지수를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품목별 표본구간 면적조사 방법]

품목	표본구간 면적 조사 방법
콩	점파 : 이랑 길이(4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산파 : 규격의 원형(1㎡) 이용 또는 표본구간의 가로·세로 길이 조사
양배추, 양파, 마늘 감자(가을재배), 고구마	이랑 길이(5주 이상) 및 이랑 폭 조사

(나) 전수조사 방법

① 적용 품목 : 콩

② 전수조사 대상 농지 여부 확인

전수조사는 기계수확(탈곡 포함)을 하는 농지 또는 수확 직전 상태가 확인된 농지 중 자른 작물을 농지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기계 탈곡을 시행하는 농지에 한한다.

③ 중량 조사

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전체 콩(종실)의 무게를 조사하며, 전체 무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0포대 이상의 포대를 임의로 선정하여 포대당 평균 무게를 구한 후 해당 수치에 수확한 전체 포대 수를 곱하여 전체 무게를 산출한다.

④ 콩(종실)의 함수율 조사

10회 이상 종실의 함수율을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한다. 단, 함수율을 측정할 때에는 각 횟수마다 각기 다른 포대에서 추출한 콩을 사용한다.

6) 미보상비율 조사(모든 조사 시 동시 조사)

상기 모든 조사마다 미보상비율 적용표<별표 2>에 따라 미보상비율을 조사한다.

[품목별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품목	표본구간별 수확량 조사 방법
콩	표본구간 내 콩을 수확하여 꼬투리를 제거한 후 콩 종실의 무게 및 함수율(3회 평균) 조사
양배추	표본구간 내 작물의 뿌리를 절단하여 수확(외엽 2개 내외 부분을 제거)한 후, 정상 양배추와 80%피해 양배추(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이 예상되는 품질이거나 일반시장 출하는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 100%피해 양배추(일반시장 및 가공용 출하 불가)로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
양파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5cm 윗부분 줄기를 절단하여 해당 무게를 조사(단, 양파의 최대 지름이 6cm 미만인 경우에는 80%(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는 공급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 100%(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작물)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 무게의 20%, 0%를 수확량으로 인정)
마늘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종구 3cm 윗부분을 절단하여 무게를 조사(단, 마늘통의 최대 지름이 2cm(한지형), 3.5cm(난지형) 미만인 경우에는 80%(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는 공급될 수 있는 작물을 말하며,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는 무관), 100%(보상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작물)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 무게의 20%, 0%를 수확량으로 인정)
감자 (가을 재배)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감자, 병충해별 20% 이하, 21%~40% 이하, 41%~60% 이하, 61%~80% 이하, 81%~100% 이하 발병 감자로 구분하여 해당 병충해명과 무게를 조사하고 최대 지름이 5cm 미만이거나 피해 정도 50% 이상인 감자의 무게는 실제 무게의 50%를 조사 무게로 함.
고구마	표본구간 내 작물을 수확한 후 정상 고구마와 50%형 고구마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 고구마에 비해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 피해 고구마(일반시장에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 단, 가공공장 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100% 피해 고구마(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없는 품질)로 구분하여 무게를 조사

다. 보험금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

1) 재파종보험금 산정(마늘)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재파종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에 한하여 보상한다.

$$\begin{aligned}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35\% \times \text{표준출현 피해율} \\ \text{표준출현 피해율(10a기준)} &= (30,000 - \text{출현주수}) \div 30,000 \end{aligned}$$

2) 재정식보험금 산정(양배추)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정식한 경우 재정식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하며 1회 지급한다.

$$\begin{aligned} \text{지급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20\% \times \text{면적 피해율} \\ \text{면적 피해율} &= \text{피해면적} \div \text{보험 가입면적} \end{aligned}$$

3) 경작불능보험금 산정(콩, 양배추, 양파, 감자(가을재배), 마늘, 고구마)

가) 지급 사유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경작불능보험금은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다.

<품목별 자기부담비율별 경작불능보험금 지급 비율>

품목	자기부담비율		
	20%형	30%형	40%형
콩, 양배추, 양파, 감자, 마늘, 고구마	보험가입금액 × 40%	보험가입금액 × 35%	보험가입금액 × 30%

나) 지급거절 사유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품목이 산지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한 보험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농업수입감소 보험금 산정

가)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한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한다.

$\begin{aligned} \text{농업수입감소보험금} &= \text{보험 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 \text{피해율} &= (\text{기준수입} - \text{실제수입}) \div \text{기준수입} \end{aligned}$
--

나) 기준수입은 평년수확량에 농지별 기준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실제 수입은 수확기에 조사한 수확량(다만, 수확량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년수확량)에 미보상감수량을 더한 값에 농지별 기준가격과 농지별 수확기가격 중 작은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라) 미보상감수량은 평년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값에 미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평년수확량 보다 수확량이 감소하였으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소한 수량을 모두 미보상감수량으로 한다.

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량조사를 하지 못하여 수확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업수입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바)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가입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비율로 한다.

제3장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제1절 보상하는 손해

1. 부문별 보상하는 손해

가. 소

소는 각종 재해 및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이 폐사, 긴급도축, 도난 및 행방 불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장하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폐사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폐사한 것이 확실한 때로 하며 통상적으로는 수의사의 검안서 등의 소견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 2) 긴급도축은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 감소 등이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긴급도축에서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하며, 젖소의 유량 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질병으로 인하여 수의학적으로 유량 감소가 예견되어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약관에서 열거하는 질병 및 상해 이외의 경우에도 수의사의 진료 소견에 따라서 치료 불가능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긴급도축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산욕마비 : 일반적으로 분만 후 체내의 칼슘이 급격히 저하되어 근육의 마비를 일으켜 기립불능이 되는 질병이다.
- 급성고창증 : 이상발효에 의한 개스의 충만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면 폐사로 이어질수 있는 중요한 소화기 질병으로 변질 또는 부패 발효된 사료, 비맞은 풀, 두과풀(알과과류) 다량 섭취, 갑작스런 사료변경 등으로 인하여 반추위내의 이상 발효로 장마로 인한 사료 변패 등으로 인하여 여름철에 많이 발생함.
- 대사성질병 : 비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유발되는 질병(대사 : 생명 유지를 위해 생물체가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일)

- 4) 도난손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 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불법 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도난 행위로 입은 직접손해(가축의 상해, 폐사를 포함)로 한정하고 있으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장소에서 이탈하여 운송 도중 등에 발생한 도난손해 및 도난 행위로 입은 간접손해(경제능력 저하, 전신쇠약, 성장 지체·저하 등)는 도난손해에서 제외된다.
- 5) 도난, 행방불명의 사고 발생 시 계약자, 피보험자, 피보험자의 가족,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경찰서와 재해보험사업자에 알려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 관할 경찰서의 도난신고(접수) 확인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도난, 행방불명의 경우는 경찰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나. 종모우

종모우에서는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의 목적이 폐사, 긴급도축, 경제적 도살의 사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2) 폐사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폐사한 것이 확실한 때로 한다.
- 3) 긴급도축의 범위는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급성고창증이 발생한 소(牛)를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종모우는 긴급도축의 범위를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2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부상의 경우도 범위를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 4)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한다.
- 5) 경제적 도살은 종모우가 연속 6주 동안 정상적으로 정액을 생산하지 못하고, 자격 있는 수의사에 의하여 종모우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로 한다. 이 경우 정액 생산은 6주 동안 일주일에 2번에 걸쳐 정액을 채취한 후 이를 근거로 경제적 도살 여부를 판단한다.

다. 돼지

돼지에서는 화재(벼락을 포함 이하 동일함),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폐사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폐사가 확실시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 2)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의 발생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피해를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 3) 상기 손해는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후에 폐사되어도 보상한다.

여기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손해가 기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가금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가금에서는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 폭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화재, 풍재·수재·설해·지진 또는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이 폐사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이 수의학적으로 폐사가 확실시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 2) 화재, 풍재·수재·설해·지진 또는 폭염의 발생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피해를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 3) 상기 손해는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후에 폐사되어도 보상한다.

- 4) 폭염 손해는 폭염특보 발령 전 24시간(1일)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1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고 폭염특보는 보험목적의 수용장소(소재지)에 발표된 해당 지역별 폭염특보를 적용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까지 폭염특보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을 폭염특보 해제일로 본다. 폭염특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되는 기상경보로,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되며 주의보와 경보 모두 폭염특보로 본다.

마. 말

말에서는 폐사, 긴급도축, 불임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의 목적이 폐사, 긴급도축, 불임의 사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 2) 폐사는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하여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폐사한 것이 확실한 때로 한다.
- 3) 긴급도축의 범위는 “사육하는 장소에서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 경주마 중 실명이 발생한 말(馬)을 즉시 도축장에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말은 소와 다르게 긴급도축의 범위를 약관에서 열거하고 있는 상기 5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부상의 경우도 범위를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 4) 부상 범위는 경추골절, 사지골절 및 탈구(탈골)에 한하여 인정한다.
- 5) 불임은 임신 가능한 암컷 말(종빈마)의 생식기관의 이상과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구적인 번식 장애를 말한다.

바. 기타 가축 (사슴, 양, 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가축에서는 화재, 풍재, 수재, 설해, 지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폐사로 입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목적 이 폐사 또는 맥박, 호흡 그 외 일반증상으로 수의학적으로 구할 수 없는 상태가 확실시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
- 2)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의 발생에 따라서 보험의 목적의 피해를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3) 상기 손해는 사고 발생 때부터 120시간(5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하며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때 부터 120시간(5일) 이후에 폐사되어도 보상한다.
- 4) 꿀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별통에 한하여 보상한다.
 - 가) 서양종(양봉)은 꿀벌이 있는 상태의 소비(巢脾)가 3매 이상 있는 별통
 - 나) 동양종(토종벌, 한봉)은 봉군(蜂群)이 있는 상태의 별통

2. 비용손해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중 아래 5가지 비용을 가축재해보험에서는 손해의 일부로 간주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상하고 있으며 인정되는 비용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발생하는 휴업 손실, 일당 등의 소극적 손해는 제외되고 적극적 손해만을 대상으로 약관 규정에 따라서 보상하고 있다.

가. 잔존물처리비용

보험목적물이 폐사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견인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다. 다만,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축재해보험에서 잔존물처리비용은 목적물이 폐사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인정하는 비용의 범위는 폐사한 가축에 대한 매몰 비용이 아니라 견인비용

및 차에 신는 비용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매물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적법한 시설에서의 렌더링비용은 잔존물처리비용으로 보상하고 있다.

나. 손해방지비용

보험사고가 발생 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한다 다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목적의 관리 의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제외한다.

보험목적의 관리의무에 따른 비용이란 일상적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예방 접종, 정기검진, 기생충구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보험목적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 및 조치를 취하는 비용 등을 의미하며, “필요 또는 유익한”의 판단은 사회통념상으로 보아서 인정되는 정도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결과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대위권 보전비용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고,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재해보험사업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며 이와 같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라.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이란 보험사고로 인해 멸실된 보험목적물의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으로 이러한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그러나 잔존물 보전비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즉 재해보험사업자가 잔존물에 대한 취득 의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마. 기타 협력비용

재해보험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보상한다.

제2절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의의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게 되나 보험의 합리적 발전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재해보험사업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고 있는데 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 또는 면책손해라 한다.

가축보험 보통약관에서는 모든 부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9개 항목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문별로 적용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각 부문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공통적용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항목에 각 부문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된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공통적용 조항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험사업자의 법정 면책사유(상법 제659조)에도 해당한다.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로 인한 손해
-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
가축전염병에 의한 손해는 평사시에 예측 가능한 위험이 아닌 이상 위험으로 손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면책사유로 하고 있으며 구제역 또는 조류독감 등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 4) 보험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목적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다만, 풍수해 사고로 인한 직접손해 등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 5)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은
사용된 연료를 포함하며,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한다.
- 7)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상기 5), 6), 7)의 경우는 이상 위험으로 손해 정도 등을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
여 타당한 보험금 산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손해증대로 인하여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법(상법 제660조)에서도 당사자 간에 특약이 없는 한 면책으로 하고
있으므로 약관에서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 8) 지진의 경우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지진(본진, 여진을 포함한다)
으로 인한 손해
- 9)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
특보 관련 재해(풍재, 수재, 설해, 지진, 폭염)로 인한 손해

상기 8), 9)의 경우 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진 발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 계약은 상법상(상법 제644조) 무효의 계약이 되나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계
약은 유효한 계약이 되나 상기 면책조항에 따라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된다.

3. 부문별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 소(牛)

소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 1) 사료 공급 및 보호, 피난처 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가축의 번식 장애, 경제능력 저하 또는 전신쇠약, 성장 지체·저하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다만, 유량 감소(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질병으로 인하여 수의학적으로 유량 감소가 예견되어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따른 도태는 보상한다.
- 3) 개체 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4)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폐사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 자격 없는 사람이 수술 등의 외과적인 치료행위로 인하여 폐사한 경우 면책조항이다.
- 5)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폐사 손해
- 6)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재해보험사업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고로 재해보험사업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 출하 지시를 통보(구두, 유선 및 문서 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육 또는 치료하다 발생한 손해 및 자격 있는 수의사가 도살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8)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날의 다음 월 응당일(다음 월 응당일이 없는 경우는 다음 월 마지막 날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발생한 긴급도축과 화재·풍수해에 의한 직접손해 이외의 질병 등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보험목적에 추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이 규정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1년 이상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계약이 아닌 경우 질병 등에 의한 폐사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날로부터 재해보험사업자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경과 이후에 폐사한 경우만 보상한다는 규정이다. 1개월 이내의 질병 등에 의한 폐사는 도덕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면책 사유로 하고 있고 긴급도축이나 사고에 의한 폐사 등의 경우는 보상한다.

9) 도난손해(도난, 행방불명)와 관련하여 아래의 12가지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손해

나)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피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監守人)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이들의 묵인하에 생긴 도난손해

다)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라)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마) 절도, 강도 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 손해

바) 보관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서 일어난 줌도둑으로 인한 손해

사)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아) 망실 또는 분실 손해

자)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차)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카) 보관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타) 보험의 목적이 보관장소를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 손해

도난 행위라 함은 완력이나 기타 물리력을 사용하여 보험의 목적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외부로부터 침입 시에는 침입한 흔적 또는 도구, 폭발물, 완력, 기타의 물리력을 사용한 흔적이 뚜렷하여야 한다.

도난손해에서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은 민법 제779조 및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다(다만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업무종사자와 법정대리인의 가족, 친족도 포함한다).

도난손해에서 망실(忘失)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험의 목적을 보관 또는 관리하던 장소 및 시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며, 분실(紛失)이라 함은 보관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보관·관리에 일상적인 주의를 태만히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① 8촌 이내의 혈족
- ② 4촌 이내의 인척
- ③ 배우자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돼지(豚)

돼지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7개 항목을 합하여 총 16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 1)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다만, 붕괴가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3)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 5) 보상하는 재해로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 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6) 모돈의 유산으로 인한 태아폐사 또는 성장 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해
- 7)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다. 가금(家禽)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가금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 1)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다만, 붕괴가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이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3)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 5) 보상하는 재해로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 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6) 성장 저하, 산란율 저하로 인한 직·간접 손해
- 7)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8) 폭염으로 인하여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손해
- 9)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발령 중인 폭염특보로 인한 손해

라. 말(馬), 종모우(種牡牛)

말, 종모우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 과 부문별 조항에서 9개 항목을 합하여 총 18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 1) 사료 공급 및 보호, 피난처 제공,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가축의 번식 장애, 경제능력 저하 또는 전신쇠약, 성장 지체·저하에 의해 도태시키는 경우

- 3) 개체 표시인 귀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4) 외과적 치료행위로 인한 폐사 손해. 다만, 보험목적의 생명유지를 위하여 질병, 질환 및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자격 있는 수의사가 확인하고 치료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5) 독극물의 투약에 의한 폐사 손해
- 6)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여하여 발생한 손해. 다만, 재해보험사업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고로 재해보험사업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 출하 지시를 통보(구두, 유선 및 문서 등)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육 또는 치료하다 발생한 손해 및 자격 있는 수의사가 도살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 8)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9)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날의 다음 월 응당일(다음 월 응당일이 없는 경우는 다음 월 마지막 날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발생한 긴급도축과 화재·풍수해에 의한 직접손해 이외의 질병 등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보험 기간 중에 계약자가 보험목적에 추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이 규정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1년 이상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기타 가축(家畜) (사슴, 양, 염소, 꿀벌, 토끼, 오소리)

기타 가축 부문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일반조항에서 9개 항목과 부문별 조항에서 8개 항목을 합하여 총 17개 항목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다.

- 1) 댐 또는 제방 등의 붕괴로 생긴 손해. 다만, 붕괴가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다.

- 2)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긴 손해. 다만, 보험의 목적이 들어 있는 시설물(벌통 포함)이 설해, 풍재, 수재 또는 지진으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3)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장치 또는 설비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한다.
- 5) 보상하는 재해로 긴급피난 시 피난처에서 사료 공급, 보호, 환기, 수의사의 검진, 소독 등 사고의 예방 및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당연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6) 10kg 미만(1마리 기준)의 양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 7) 벌의 경우 CCD(Colony Collapse Disorder : 벌떼폐사장애), 농약, 밀원수(蜜原樹)의 황화현상(黃化現象), 공사장의 소음, 전자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꿀벌의 손해가 없는 벌통만의 손해
- 8)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제3절 손해의 평가

1. 의의

가축재해보험에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산정은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 이후 손해액과 보험가액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확정된 손해액 및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보험계약자 등의 사고 접수로 시작되는 손해평가에서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후 손해의 조사를 통하여 손해액을 확정하게 되는 과정은 손해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축종별로 손해액을 확정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가축재해보험약관에서는 축종별로 손해액을 확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액 평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2.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가.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 후 알릴 의무

가축재해보험에서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로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통지를 받은 때에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모든 부문 축종에 적용되는 계약 후 알릴 의무와 특정 부분의 가축에게만 추가로 적용되는 계약 후 알릴 의무가 있다.

1) 계약 후 알릴 의무

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나) 양도할 때

다) 보험목적 또는 보험목적 수용장소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 발생(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질환 포함) 또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집단폐사가 이루어진 경우

라)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마)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바)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사)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아) 도난 또는 행방불명 되었을 때

자) 의외의 재난이나 위험에 의해 구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차) 개체 수가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카)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2) 부문별 계약 후 알릴 의무

가) 소 부문

- (1) 개체 표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되어 새로운 개체 표시를 부착하는 경우
- (2) 거세, 제각, 단미 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 (3)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소싸움대회, 소등 타기 대회 등에 출전할 경우

나) 말 부문

- (1) 외과적 수술을 하여야 할 경우
- (2) 5일 이내에 폐사가 예상되는 큰 부상을 입을 경우
- (3) 거세, 단미(斷尾) 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 (4)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등에 출전할 경우

다) 종모우 부문

- (1) 개체 표시가 떨어지거나 오손, 훼손, 멸실된 경우
- (2) 거세, 제각, 단미 등 외과적 수술을 할 경우
- (3) 품평회, 경진회, 박람회, 소싸움대회, 소등 타기 대회 등에 출전할 경우

다.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는 법정 의무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라는 내용으로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는 보험자의 신속한 사고조사를 통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무인 동시에 약관상 의무이며, 보험계약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확대된 손해 또는 회복 가능한 손해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라. 손해방지의무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손해발생을 방지 또는 경감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의무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상법 680조)"라는 내용의 법정 의무인 동시에 약관상 의무이기도 하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마. 보험목적관리의무

가축재해보험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생명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의 목적에 대한 관리의무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으며 만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 관리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손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며, 재해보험사업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아래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또는 계약자를 대신하여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사육, 관리, 보호함에 있어서 그 보험 목적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수면 등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사육관리를 할 것
-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예방접종, 정기검진, 기생충구제 등을 실시할 것
-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가축재해보험 약관에서는 보험목적의 수용장소와 사용과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의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험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 1) 보험목적은 보험기간동안 언제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재해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험목적의 수용장소를 변경한 경우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2) 보험 목적을 양도 또는 매각하기 위해 보험목적의 수용장소가 변경된 이후 다시 본래의 사유장소로 되돌아온 경우에는 가축이 수용장소에 도착한 때 원상복귀 되는 것으로 한다.
- 3) 보험목적은 보험기간동안 언제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3. 보험목적의 조사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및 보험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사업자 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손해평가사의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는 손해평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약관에서는 이러한 보험목적에 대한 조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재해보험사업자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1) 보험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다.
- 2)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
- 3)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다.

4. 손해액의 조사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에 상응하는 공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과 약관에서는 통상의 경우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축재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약관의 각 부문별 제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부문별로 손해액 산정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법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①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소 부문

1) 손해액 산정

가축재해보험 소 부문에서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아래의 축종별 보험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고 이용물 처분액의 계산은 도축장 발행 정산서 자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분리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용물 처분액 산정	
도축장발행 정산자료인 경우	도축장발행 정산자료의 지육금액 × 75%
도축장발행 정산자료가 아닌 경우	중량 × 지육가격 × 75%

※ 중량 : 도축장발행 사고소의 도체(지육)중량

※ 지육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사고일 기준 사고소의 등급에 해당 하는 전국평균가격(원/kg)

실무적으로 도축장발행 정산서가 없는 경우는 통상 축산물이력제에서 해당 소의 이력번호로 조회하여 도체중, 육질등급에서 확인되는 도체중량과 등급을 적용한다.

폐사의 경우는 보험목적의 전부손해에 해당하고 사고 시점에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이 보험가액이므로 보험가액이 손해액이 되며 긴급도축의 경우는 보험목적인 소의 도축의 결과로 얻어지는 고기, 가죽 등에 대한 수익을 이용물처분액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용물처분액을 보험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되고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소(한우, 젃소, 육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월령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월령은 폐사는 폐사 시점, 긴급도축은 긴급도축 시점의 월령을 만(滿)으로 계산하고 월 미만의 일수는 무시하고, 다만 사고 발생일까지가 1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

2) 한우(암컷, 수컷) 보험가액 산정

한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월령을 기준으로 6개월령 이하와 7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령	보험가액
6개월 이하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
7개월 이상	체중 × kg당 금액

<그림 3-1 발육표준표>

발육표준표

한우 수컷 (거세우 포함)		한우 암컷				육우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월령	체중(kg)
2	-	2	-	26	385	2	-
3	-	3	-	27	390	3	210
4	-	4	-	28	400	4	220
5	-	5	-	29	410	5	230
6	-	6	-	30	420	6	240
7	230	7	230	31	425	7	250
8	240	8	240	32	430	8	270
9	250	9	250	33	435	9	290
10	260	10	260	34	440	10	310
11	295	11	270	35	445	11	330
12	325	12	280	36	450	12	350
13	360	13	290	37	455	13	370
14	390	14	300	38	460	14	390
15	420	15	305	39	465	15	410
16	450	16	310	40	470	16	430
17	480	17	315			17	450
18	505	18	320			18	470
19	530	19	325			19	490
20	555	20	330			20	500
21	580	21	340			21	520
22	600	22	350			22	540
23	620	23	360			23	560
24	640	24	370			24	580
25	655	25	380			25	600

- 가) 월령이 질병사고는 2개월 이하, 질병 이외 사고는 1개월 이하인 경우는 보험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송아지 가격의 50%를 보험가액으로 한다.
- 나) 사고 시점에서 산정한 월령 7개월 이상의 보험가액이 송아지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송아지 가격을 적용한다.
- 다) 체중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월령별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 소(牛)의 월령에 해당되는 체중을 적용한다. 다만 한우 수컷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55kg으로, 한우 암컷 월령이 40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470kg으로 인정한다.
- 라) kg당 금액은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350kg 및 600kg 성별 전국산지평균가격 중 kg당 가격이 높은 금액)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전국산지평균가격은 가축시장가격조사 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한우는 송아지(4-5월령), 송아지(6-7월령), 350kg, 600kg으로 분류하여 월별산지가격동향을 발표하고 있으며, 송아지 산지 가격은 4~5월령 조사가격이 적용된다.

3) 젓소(암컷) 보험가액 산정

젓소의 보험가액 산정은 월령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가격을 기준으로 9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령이 질병사고는 2개월 이하, 질병 이외 사고는 1개월 이하인 경우는 보험 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암컷 가격의 50%를 보험가액으로 한다.

월령	보험가액
1개월~7개월	분유떼기 암컷 가격
8개월~12개월	분유떼기암컷가격 + (수정단계가격 - 분유떼기암컷가격) / 6 × (사고월령 - 7개월)
13개월~18개월	수정단계가격
19개월~23개월	수정단계가격 + (초산우가격 - 수정단계가격) / 6 × (사고월령 - 18개월)
24개월~31개월	초산우가격
32개월~39개월	초산우가격 + (다산우가격 - 초산우가격) / 9 × (사고월령 - 31개월)
40개월~55개월	다산우가격
56개월~66개월	다산우가격 + (노산우가격 - 다산우가격) / 12 × (사고월령 - 55개월)
67개월 이상	노산우가격

4) 육우 보험가액 산정

육우의 보험가액 산정은 월령을 기준으로 2개월령 이하와 3개월령 이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월령	보험가액
2개월 이하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젓소 수컷 가격
3개월 이상	체중 × kg당 금액

- 가) 월령이 질병사고는 2개월 이하, 질병 이외 사고는 1개월 이하인 경우는 보험사고 전전월 전국산지평균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의 50%를 보험가액으로 한다.
- 나) 사고 시점에서 산정한 월령별 보험가액이 사고 시점의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분유떼기 젖소 수컷 가격을 적용한다.
- 다) 체중은 약관에서 확정하여 정하고 있는 월령별 "발육표준표"에서 정한 사고소(牛)의 월령에 해당 되는 체중을 적용한다. 다만 육우 월령이 25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kg으로 인정한다.
- 라) kg당 금액은 보험사고 전전월 젖소 수컷 500kg 해당 전국 산지평균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누어 구한다. 단, 전국산지평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월 전국도매시장 지육평균 가격에 지육율 58%를 곱한 가액을 kg당 금액으로 한다.

지육율은 도체율이라고도 하며 도체중의 생체중에 대한 비율이며, 생체중은 살아있는 생물의 무게이고 도체중 생체에서 두부,내장,족 및 가죽 등 부분을 제외한 무게를 의미한다.

나. 돼지 부문

1) 손해액 산정

가축재해보험 돼지 부문에서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아래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는데 피보험자가 이용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재해보험사업자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사업자의 입회 없이 이용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 평가하여 손해액을 차감하고,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가액 산정 시 보험목적물이 임신 상태인 경우는 임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2) 종모돈의 보험가액 산정

종모돈은 종빈돈의 평가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종빈돈의 보험가액 산정

종빈돈의 보험가액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전국 도매시장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탕박)에 의하여 아래 표의 비육돈 지육단가 범위에 해당하는 종빈돈 가격으로 한다. 다만,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육돈의 산출방식과 같이 계산한다.

<그림 3-2 종빈돈 보험가액(비육돈 지육단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종빈돈 가격)>

비육돈 지육단가 (원/kg)	종빈돈 가격 (원/두당)	비육돈 지육단가 (원/kg)	종빈돈 가격 (원/두당)
1,949 이하	350,000	3,650 ~ 3,749	530,000
1,950 ~ 2,049	360,000	3,750 ~ 3,849	540,000
2,050 ~ 2,149	370,000	3,850 ~ 3,949	550,000
2,150 ~ 2,249	380,000	3,950 ~ 4,049	560,000
2,250 ~ 2,349	390,000	4,050 ~ 4,149	570,000
2,350 ~ 2,449	400,000	4,150 ~ 4,249	580,000
2,450 ~ 2,549	410,000	4,250 ~ 4,349	590,000
2,550 ~ 2,649	420,000	4,350 ~ 4,449	600,000
2,650 ~ 2,749	430,000	4,450 ~ 4,549	610,000
2,750 ~ 2,849	440,000	4,550 ~ 4,649	620,000
2,850 ~ 2,949	450,000	4,650 ~ 4,749	630,000
2,950 ~ 3,049	460,000	4,750 ~ 4,849	640,000
3,050 ~ 3,149	470,000	4,850 ~ 4,949	650,000
3,150 ~ 3,249	480,000	4,950 ~ 5,049	660,000
3,250 ~ 3,349	490,000	5,050 ~ 5,149	670,000
3,350 ~ 3,449	500,000	5,150 ~ 5,249	680,000
3,450 ~ 3,549	510,000	5,250 ~ 5,349	690,000
3,550 ~ 3,649	520,000	5,350 이상	700,000

4) 비육돈, 육성돈 및 후보돈의 보험가액

보험가액 산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대상범위(적용체중) : 육성돈(31kg초과~110kg 미만(출하 대기 규격돈 포함)까지 10kg 단위구간의 중간 생체중량)

단위구간 (kg)	31~40	41~50	51~60	61~70	71~80	81~90	91~100	101~110 미만
적용체중 (kg)	35	45	55	65	75	85	95	105

주) 1. 단위구간은 사고돼지의 실측중량(kg/1두) 임

2. 110kg 이상은 110kg으로 한다.

나) 110kg 비육돈 수취가격 =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 평균돈육대표가격
(전체, 탕박) × 110kg × 지급(육)율(76.8%)

다) 보험가액 = 자돈가격(30kg 기준) + (적용체중 - 30kg) × [110kg 비육돈
수취가격 - 자돈가격(30kg 기준)] / 80

라) 위 나)의 돈육대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가격(원/kg) 적용

5) 자돈의 보험가액

자돈은 포유돈(젓먹이 돼지)과 이유돈(젓을 뗀 돼지)으로 구분하여 재해보험
사업자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

6) 기타 돼지의 보험가액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 가금 부문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1) 손해액 산정

가축재해보험 가금 부문에서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아래의
보험가액 산정 방법에 따라서 산정한 보험가액으로 한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며 피보험자가 이용물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재해보험 사업자의 입회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사업자의 입회 없이 이용물을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인정 평가하여 손해액을 차감하고, 이용물 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3 발육표준표(가금)>

육 계				토종닭						오 리			
일령	중량(g)	일령	중량(g)	일령	중량(g)	일령	중량(g)	일령	중량(g)	일령	중량(g)	일령	중량(g)
1	42	29	1,439	1	41	29	644	57	1,723	1	51	29	2,123
2	56	30	1,522	2	52	30	677	58	1,764	2	75	30	2,219
3	71	31	1,606	3	63	31	712	59	1,805	3	100	31	2,315
4	89	32	1,692	4	74	32	748	60	1,846	4	127	32	2,411
5	108	33	1,776	5	86	33	785	61	1,887	5	156	33	2,506
6	131	34	1,862	6	99	34	823	62	1,928	6	187	34	2,601
7	155	35	1,951	7	112	35	861	63	1,969	7	220	35	2,696
8	185	36	2,006	8	127	36	899	64	2,010	8	267	36	2,787
9	221	37	2,050	9	144	37	936	65	2,050	9	330	37	2,873
10	256	38	2,131	10	161	38	973	66	2,090	10	395	38	2,960
11	293	39	2,219	11	179	39	1,011	67	2,130	11	461	39	3,046
12	333	40	2,300	12	198	40	1,049	68	2,170	12	529	40	3,130
13	376			13	218	41	1,087	69	2,210	13	598	41	3,214
14	424			14	239	42	1,125	70	2,250	14	668	42	3,293
15	472			15	260	43	1,163	71	2,290	15	748	43	3,369
16	524			16	282	44	1,202	72	2,329	16	838	44	3,434
17	580			17	305	45	1,241	73	2,367	17	930	45	3,500
18	638			18	328	46	1,280	74	2,405	18	1,025		
19	699			19	353	47	1,319	75	2,442	19	1,120		
20	763			20	379	48	1,358	76	2,479	20	1,217		
21	829			21	406	49	1,397	77	2,515	21	1,315		
22	898			22	433	50	1,436	78	2,551	22	1,417		
23	969			23	461	51	1,477	79	2,585	23	1,519		
24	1,043			24	490	52	1,518	80	2,619	24	1,621		
25	1,119			25	519	53	1,559	81	2,649	25	1,723		
26	1,196			26	504	54	1,600	82	2,679	26	1,825		
27	1,276			27	580	55	1,641	83	2,709	27	1,926		
28	1,357			28	612	56	1,682	84	2,800	28	2,027		

- 보험가액(중량 × kg당 시세)이 병아리 시세보다 낮은 경우는 병아리 시세로 보상한다.
- 육계 일령이 40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2.3kg으로 인정한다.
- 토종닭 일령이 84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2.8kg으로 인정한다.
- 오리 일령이 45일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3.5kg으로 인정한다.
- 삼계(蔘鷄)의 경우는 육계 중량의 70%를 적용한다.

2) 닭·오리의 보험가액

닭·오리의 보험가액은 종계, 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 모두 5가지로 분류하여 산정하며, 보험가액 산정에서 적용하는 평균 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고시하는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대한양계협회의 가격을 적용한다.

가) 종계의 보험가액

종계	해당주령	보험가액
병아리	생후 2주 이하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육용 종계 병아리 평균가격
성계	생후 3~64주	계약 당시 협정한 가격
노계	생후 65주 이상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종계 성계육 평균가격

나) 산란계의 보험가액

산란계	해당주령	보험가액
병아리	생후 1주 이하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산란실용계 병아리 평균가격
	생후 2~9주	산란실용계병아리가격 + (산란중추가격 - 산란실용계 병아리가격) / 9 × (사고주령 - 1주령)
중추	생후 10~15주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산란중추 평균가격
	생후 16~19주	산란중추가격 + (20주 산란계가격-산란중추가격) / 5 × (사고주령 - 15주령)
산란계	생후 20~70주	(550일 - 사고일령) × 70% ×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계란 1개 평균가격 - 계란 1개의 생산비)
산란노계	생후 71주 이상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산란성계육 평균가격

- ※ 계란 1개 평균가격은 종량규격(왕란/특란/대란이하)별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 평균가격을 종량규격별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말한다.
- ※ 종량규격별 비중 : 왕란(2.0%), 특란(53.5%), 대란 이하(44.5%)
- ※ 산란계의 계란 1개의 생산비는 77원으로 한다.
- ※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계란 1개 평균가격에서 계란 1개의 생산비를 공제한 결과가 10원 이하인 경우 10원으로 한다.

다) 육계의 보험가액

육계	주령	보험가액
병아리	생후 1주 미만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육용실용계 병아리 평균가격
육계	생후 1주 이상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육용실용계 평균가격(원/kg)에 발육표준표 해당 일령 사고 육계의 중량을 곱한 금액

라) 토종닭의 보험가액

토종닭	주령	보험가액
병아리	생후 1주 미만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토종닭 병아리 평균가격
토종닭	생후 1주 이상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토종닭 평균가격(원/kg)에 발육표준표 해당 일령 사고 토종닭의 중량을 곱한 금액 단, 위 금액과 사육계약서상의 중량별 매입단가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마) 오리의 보험가액

오리	주령	보험가액
새끼오리	생후 1주 미만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새끼오리 평균가격
오리	생후 1주 이상	사고 당일 포함 직전 5영업일의 생체오리 평균가격(원/kg)에 발육표준표 해당 일령 사고 오리의 중량을 곱한 금액

3)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등 기타 가금의 보험가액
보험계약 당시 협정한 가액으로 한다.

라. 말, 종모우, 기타 가축 부문

가축보험 말, 종모우, 기타 가축 부문에서 손해액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와 협의하여 평가한 보험가액 (이하 “협정보험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기, 가죽 등 이용물 처분액 및 보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며,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4절 특약의 손해 평가

1. 축사(畜舍) 특약

가.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 및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입은 직접손해, 피난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난손해,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그리고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손해로 아래와 같다.

- 1) 화재에 따른 손해
-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 3)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조수(潮水), 우박, 지진, 분화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입은 손해
- 4) 설해에 따른 손해
- 5) 화재 또는 풍재·수재·설해·지진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보험기간 내의 5일 동안에 생긴 상기 손해를 포함한다.)

지진 피해의 경우 아래의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한다.

- 가) 기둥의 1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나) 보의 1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다) 지붕틀의 1개 이하를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라) 기둥, 보, 지붕틀, 벽 등에 2m 이하의 균열이 발생한 것
- 마) 지붕재의 2㎡ 이하를 수선하는 것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 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인 잔존물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서 보상하며 잔존물 제거비용에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 1) 화재 또는 풍재·수재·설해·지진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2)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3) 풍재·수재·설해·지진과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4)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 5) 추위, 서리, 얼음으로 생긴 손해
-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보상한다.
-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 만에 생긴 손해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다. 지급보험금의 계산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에서는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이 많이 적용되는데 동 조항이 적용되면 전부 또는 초과 보험의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전액 지급하지만 일부보험인 경우는 계약체결 시에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일정한 비율 이상이면 보험 가입금액 이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그대로 보상하고 약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만 비례보상한다.

축사특별약관에서도 위와 같이 부보비율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이상인 경우는 전부보험으로 보고 비례보상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1)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일부보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text{보험가입금액} / \text{보험가액의 80\% 해당액}$$

3) 동일한 계약의 보험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한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

나)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text{이 계약의 보험금} / \text{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다)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

라)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한다.

마) 풍재·수재·설해·지진으로 인한 손해일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자기 부담금 50만 원을 빼고 상기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라.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장소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보험목적물의 경년감가율은 한국감정원의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준용하며, 이 보험목적물이 지속적인 개·보수가 이루어져 보험목적물의 가치증대가 인정된 경우 잔가율은 보온덮개·쇠파이프 조인 축사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그 외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로 수정하여 보험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6개월 이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잔가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0%로 수정하여 평가한다.

마. 손해방지의무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손해방지의무에 추가하여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한다)은 보험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기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보상하며, 지급보험금에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한다. 즉 손해방지비용도 부보비율(80%) 조건부 실손 보상조항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소(牛)도체결합보장 특약

가. 손해액의 산정

특약에서 손해액 산정은 사고소의 도체등급과 같은 등급의 전국평균 경락가격과 사고소 도체의 경락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text{손해액} = \text{보험가액} - \text{사고소의 1두 경락가격}$$

※ 보험가액 = 사고소 해당 등급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고 전월 전국지육경매평균가격(원/지육kg)
× 사고소(牛)의 도체중(kg)

※ 도축 후 경매를 통하지 않고 도체가 전량 폐기처분된 경우의 손해액은 보통약관 소 부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따른다.

나.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에서 전부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 중복보험의 보험금 계산방식과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계산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돼지 질병위험보장 특약

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축보험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1)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사법기관 등의 결정 여부에 관계 없이 고의적인 도살은 보상하지 않는다. 단,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목적의 도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험목적이 보상하는 손해의 질병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고, 상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보험자가 선정한 수의사가 인도적인 면에서 도살이 필연 적이라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상하며, 이 경우 보험자는 보험자가 선정한 수의사에게 부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다음의 결과로 발생하는 폐사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가) 보상하는 손해의 주된 원인이 이 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나) 외과적 치료행위 및 약물 투약의 결과 발생한 폐사 다만, 수의사가 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실행한 외과적 치료, 투약의 경우에는 보상한다.

약물이라 함은 순수한 음식물이 아닌 보조식품이나 단백질, 비타민, 호르몬, 기타 약품을 의미한다.

다) 보험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라)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날의 다음 월 응당일(다음월 응당일이 없는 경우는 다음 월 마지막 날로 한다.) 이내에 발생한 손해.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보험목적에 추가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같다. 다만 이 규정은 보험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1년 이상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손해액 산정

보상할 손해액은 보통약관의 돼지부문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보험가액} = \text{모든두수} \times 2.5 \times \text{자돈가격}$$

다. 자기부담금

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은 보통약관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을 곱한 금액과 200만 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4. 돼지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가. 손해액 및 지급보험금

축산휴지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은 보험가액으로 하며, 보험가액 및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에 따라서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자기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약관에서는 특별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이익률을 공정하게 조정 할 수 있는 조항과 피보험자의 손해경감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단, 종빈돈은 아래 계산한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text{종빈돈} \times 10 \times \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평균가격} \times \text{이익률}$$

※ 후보돈과 임신, 분만 및 포유 등 종빈돈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 종빈돈은 제외한다.

※ “이익률”은 손해발생 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을 말한다.

$$\bullet \text{ 이익률} = (\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text{경영비}) \div \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로 한다.

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돼지부문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 또는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 1) 사용, 건축, 수리 또는 철거를 규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이에 준하는 명령
- 2) 리스, 허가, 계약, 주문 또는 발주 등의 정지, 소멸, 취소
- 3) 보험의 목적의 복구 또는 사업의 계속에 대한 방해
- 4)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의 손해
- 5) 관계당국에 의해 구내 출입금지 기간이 14일 초과하는 경우. 단, 14일까지는 보상한다.

제5절 보험금 지급 및 심사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가축재해보험은 상법상 손해보험에 해당하며 손해보험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칙 중의 하나는 이득금지의 원칙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은 “보험으로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라는 원칙으로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 결과 그 사고 발생 직전의 경제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에 놓인다면 고의로 보험사고가 유발되는 등 손해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의 본질과 보험단체의 형평을 유지하고 도덕적 위험을 강하게 억제하고자 하는 원칙이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입게 될 경제적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하며, 피보험이익을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 것이 보험가액이다. 그러므로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의 기능은 이득금지의 판정 기준이 되며 보험가액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법률상 보상한도액으로 보험계약 상 재해보험사업자의 보상한도액인 보험가입금액과 비교된다.

보험가액과 보험 가입금액 통상 일치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보험가액은 통상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되므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에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에서 상호 일치하는 경우를 전부보험이라 하고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보험, 중복보험 및 일부보험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은 전부보험, 초과보험의 경우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손해액을 보상하며 중복보험의 경우는 각 보험증권별로 지급보험금 계산방식이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로 계산방식이 같은 경우는 비례분담방식, 다른 경우는 독립책임액분담방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지급보험 계산 방식

- 1)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약관 각 부문별 제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한다.

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일부보험) :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text{손해액} \times \text{보험가입금액} / \text{보험가액}$$

2)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 약관 각 부문별 제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여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 \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

나)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text{이 계약의 보험금} / \text{이 계약의 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다)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한다.

라)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보험계약에서 보상한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나의 보험 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 가입금액에 대한 각 가입금액의 비율로 보험 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한다.

3.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재해보험사업자의 지출비용을 축소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고 피보험자의 자기부담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 및 사고방지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가축보험에서 소, 돼지, 종모우, 가금, 기타 가축 부분의 자기부담금은 상기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가금 부분의 폭염손해는 위의 자기부담금과 200만 원 중 큰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말 부분의 경우는 상기 지급보험금의 계산방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경주마(보험 가입 후 경주마로 용도 변경된 경우 포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한다.

4. 잔존보험 가입금액

보험기간의 중도에 재해보험사업자가 일부손해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손해 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액에서 그 지급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보험 가입금액으로 하여 보장하는데 이때 보험 가입금액을 잔존보험 가입금액이라고 한다.

가축보험은 돼지, 가금, 기타 가축 부문에서 약관 규정에 따라서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 보험 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 가입금액으로 하고 있다.

5. 비용손해의 지급한도

가축보험에서는 잔존물처리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 협력비용 등 5가지 비용손해를 보상하는 비용손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손해의 지급한도는 다음과 같다.

- 1) 가축보험 약관상 보험의 목적이 입은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약관에서 규정하는 잔존물 처리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잔존물 처리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2)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약관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한다. 단, 이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 3)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한다.

일부보험이나 중복보험인 경우에는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상기 비례분담 방식 등으로 계산하며 자기부담금은 공제하지 않고 계산한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하고 협력비용은 일부보험이나 중복보험인 경우에도 비례분담 방식 등으로 계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며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6. 보험금 심사

보험사고 접수 이후 피해 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 손해평가 과정 이후 재해보험사업자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보험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험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사고보험금 심사는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약관형식으로 판매되는 손해보험 특성상 약관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며 보험계약의 단체성과 부합계약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관의 해석은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해석의 원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약관의 해석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약관은 개별약정으로 보통약관에 우선 적용되나 특별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약관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보험금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

보험금 지급의 면·부책 판단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르며, 보험금 청구서류 서면심사 및 손해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보험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판단하게 되며 면·부책 판단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 보험기간 내에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인지 여부
- 2) 원인이 되는 사고와 결과적인 손해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 여부
- 3) 보험사고가 상법과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4)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항 이외에도 알릴 의무 위반 효과에 의거 손해보상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

나. 손해액 평가

손해액 산정 및 평가는 약관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다.

다. 보험금 지급심사 시 유의사항

1) 계약체결의 정당성 확인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 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여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 수익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고의, 역선택 여부 확인

가) 고의적인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나)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를 요하며, 보험계약이 역선택에 의한 계약인지 확인한다.

3) 고지의무위반 등 여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전, 후 알릴 의무 및 각종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4) 면책사유 확인

고지의무 위반 여부,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보험사고 발생의 고의성,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표기, 청구시효 소멸 여부를 확인한다.

5) 기타 확인

가) 개별약관을 확인하여 위에 언급한 사항 이외에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나) 미비된 보험금 청구 서류의 보완 지시로 인한 지연지급,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금 청구서류 중 사고의 유무, 손해액 또는 보험금의 확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7. 보험사기 방지

가. 보험사기 정의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 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고의적이며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의 한 유형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성립요건

1)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에게 고의가 있을 것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의 고의에 보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는 고의와 그 착오로 인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 등

2)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이란 허위진술을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것, 통상 진실이 아닌 사실을 진실이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하거나 알려야 할 경우에 침묵, 진실을 은폐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

3) 상대방인 보험자가 착오에 빠지는 것

상대방인 보험자가 착오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보험자의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음

4) 상대방인 보험자가 착오에 빠져 그 결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

착오에 빠진 것과 그로 인해 승낙 의사표시 한 것과 인과관계 필요

5) 사기가 위법일 것

사회생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기망 행위는 보통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

다. 사기행위자

사기행위에 있어 권유자가 사기를 교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권유자가 개입해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에게도 사기행위가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과 달리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사기증명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를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사기를 주장하는 재해보험사업자 측에서 사기 사실 및 그로 인한 착오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마. 보험사기 조치

- 1) 청구한 사고보험금 지급을 거절 가능
- 2) 약관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별표 1] 품목별 표본주(구간)수 표

<사과, 배, 간감, 뽕은감, 포도(수입보장 포함), 복숭아, 자두, 밤, 호두, 무화과>

조사대상주수	표본주수
50주 미만	5
50주 이상 100주 미만	6
100주 이상 150주 미만	7
150주 이상 200주 미만	8
200주 이상 300주 미만	9
300주 이상 400주 미만	10
400주 이상 500주 미만	11
500주 이상 600주 미만	12
600주 이상 700주 미만	13
700주 이상 800주 미만	14
800주 이상 900주 미만	15
900주 이상 1,000주 미만	16
1,000주 이상	17

<유자>

조사대상주수	표본주수	조사대상주수	표본주수
50주 미만	5	200주 이상, 500주 미만	8
50주 이상, 100주 미만	6	500주 이상, 800주 미만	9
100주 이상, 200주 미만	7	800주 이상	10

<참다래,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

참다래		매실, 대추		오미자	
조사대상주수	표본주수	조사대상주수	표본주수	조사대상 유인틀 길이	표본주수
50주 미만	5	100주 미만	5	500m 미만	5
50주 이상 100주 미만	6	100주 이상 300주 미만	7	500m 이상 1,000m 미만	6
100주 이상 200주 미만	7	300주 이상 500주 미만	9	1,000m 이상 2,000m 미만	7
200주 이상 500주 미만	8	500주 이상 1,000주 미만	12	2,000m 이상 4,000m 미만	8
500주 이상 800주 미만	9	1,000주 이상	15	4,000m 이상 6,000m 미만	9
800주 이상	10			6,000m 이상	10

<오디, 복분자, 감귤>

오디		복분자		감귤	
조사대상주수	표본주수	조사대상주수	표본포기수	가입면적	표본주수
50주 미만	6	1,000포기 미만	8	5,000m ² 미만	4
50주 이상 100주 미만	7	1,000포기 이상 1,500포기 미만	9	10,000m ² 미만	6
100주 이상 200주 미만	8	1,500포기 이상 2,000포기 미만	10	10,000m ² 이상	8
200주 이상 300주 미만	9	2,000포기 이상 2,500포기 미만	11		
300주 이상 400주 미만	10	2,500포기 이상 3,000포기 미만	12		
400주 이상 500주 미만	11	3,000포기 이상	13		
500주 이상 600주 미만	12				
600주 이상	13				

<벼, 밀, 보리>

가입면적	표본구간	가입면적	표본구간
2,000m ² 미만	3	4,000m ² 이상 5,000m ² 미만	6
2,000m ² 이상 3,000m ² 미만	4	5,000m ² 이상 6,000m ² 미만	7
3,000m ² 이상 4,000m ² 미만	5	6,000m ² 이상	8

<고구마, 양파, 마늘, 옥수수, 양배추>

※ 수입보장 포함

가입면적	표본구간	가입면적	표본구간
1,500m ² 미만	4	3,000m ² 이상, 4,500m ² 미만	6
1,500m ² 이상, 3,000m ² 미만	5	4,500m ² 이상	7

<감자, 차, 콩, 팥>

※ 수입보장 포함

가입면적	표본구간	가입면적	표본구간
2,500m ² 미만	4	7,500m ² 이상, 10,000m ² 미만	7
2,500m ² 이상, 5,000m ² 미만	5	10,000m ² 이상	8
5,000m ² 이상, 7,500m ² 미만	6		

<인삼>

피해칸수	표본칸수	피해칸수	표본칸수
300칸 미만	3칸	900칸 이상 1,200칸 미만	7칸
300칸 이상 500칸 미만	4칸	1,200칸 이상 1,500칸 미만	8칸
500칸 이상 700칸 미만	5칸	1,500칸 이상, 1,800칸 미만	9칸
700칸 이상 900칸 미만	6칸	1,800칸 이상	10칸

<고추, 메밀,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시금치>

실제경작면적 또는 피해면적	표본구군(이랑) 수
3,000m ² 미만	4
3,000m ² 이상, 7,000m ² 미만	6
7,000m ² 이상, 15,000m ² 미만	8
15,000m ² 이상	10

<표고버섯(원목재배)>

피해 원목수	조사 표본수
1,000본 이하	10
1,300본 이하	14
1,500본 이하	16
1,800본 이하	18
2,000본 이하	20
2,300본 이하	24
2,300본 초과	26

[별표 2] 농작물재해보험 미보상비율 적용표

<감자, 고추 제외 전 품목>

구분	제초 상태	병해충 상태	기타
해당 없음	0%	0%	0%
미흡	10% 미만	10% 미만	10% 미만
불량	20% 미만	20% 미만	20% 미만
매우 불량	20% 이상	20% 이상	20% 이상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이 조사 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하여 제초 상태, 병해충 상태 및 기타 항목에 따라 개별 적용한 후 해당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제초 상태(과수품목은 피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초만 해당)

- 가) 해당 없음 :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 나) 미흡 :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이상 4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 다) 불량 : 잡초가 농지 면적의 40% 이상 6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또는 경작불능조사 진행건이나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비료 및 농약 영수증 등)가 부족한 경우
- 라) 매우 불량 : 잡초가 농지 면적의 60% 이상으로 분포한 경우 또는 경작 불능조사 진행건이나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비료 및 농약 영수증 등)가 없는 경우

2) 병해충 상태 (각 품목에서 별도로 보상하는 병해충은 제외)

- 가) 해당 없음 : 병해충이 농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 나) 미흡 : 병해충이 농지 면적의 20% 이상 4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 다) 불량 : 병해충이 농지 면적의 40% 이상 6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또는 경작불능조사 진행건이나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비료 및 농약 영수증 등)가 부족한 경우

라) 매우 불량 : 병해충이 농지 면적의 60% 이상으로 분포한 경우 또는 경작 불능조사 진행건이나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비료 및 농약 영수증 등)가 없는 경우

3) 기타 : 영농기술 부족, 영농 상 실수 및 단순 생리장애 등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거리, 생리장애(원소 결핍 등), 시비관리, 토양관리(연작 및 pH과다·과소 등), 전정(강전정 등), 조방재배, 재식밀도(인수기준 이하), 농지상태(혼식, 멀칭, 급배수 등), 가입 이전 사고 및 계약자 중과실손해, 자연감모, 보상재해이외(중자불량, 일부 가입 등)]에 적용

가) 해당 없음 : 위 사유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미흡 : 위 사유로 인한 피해가 10%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불량 : 위 사유로 인헌 피해가 20%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매우 불량 : 위 사유로 인한 피해가 20%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자, 고추 품목>

구분	제초 상태	기타
해당 없음	0%	0%
미흡	10% 미만	10% 미만
불량	20% 미만	20% 미만
매우 불량	20% 이상	20% 이상

미보상 비율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이 조사 농지의 수확량 감소에 영향을 준 비율을 의미하여 제초 상태, 병해충 상태 및 기타 항목에 따라 개별 적용한 후 해당 비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제초 상태(과수품목은 피해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잡초만 해당)

가) 해당 없음 :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나) 미흡 : 잡초가 농지 면적의 20% 이상 4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다) 불량 : 잡초가 농지 면적의 40% 이상 60% 미만으로 분포한 경우 또는 경작불능조사 진행건이나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비료 및 농약 영수증 등)가 부족한 경우

라) 매우 불량 : 잡초가 농지 면적의 60% 이상으로 분포한 경우 또는 경작불능조사 진행건이나 정상적인 영농활동 시행을 증빙하는 자료(비료 및 농약 영수증 등)가 없는 경우

2) 기타 : 영농기술 부족, 영농 상 실수 및 단순 생리장애 등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해거리, 생리장애(원소 결핍 등), 시비관리, 토양관리(연작 및 pH과다·과소 등), 전정(강전정 등), 조방채배, 재식밀도(인수기준 이하), 농지상태(혼식, 멀칭, 급배수 등), 가입 이전 사고 및 계약자 중과실손해, 자연감모, 보상재해이외(중자불량, 일부 가입 등)]에 적용

가) 해당 없음 : 위 사유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미흡 : 위 사유로 인한 피해가 10%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불량 : 위 사유로 인하여 피해가 20%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라) 매우 불량 : 위 사유로 인한 피해가 20%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표 3]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복숭아, 감귤 외 과실>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 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복숭아>

과실분류	피해인정계수	비 고
정상과	0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형 피해과실	0.5	일반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50%정도의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공장공급 및 판매 여부와 무관)
80%형 피해과실	0.8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나 가공용으로 공급될 수 있는 품질의 과실 (단,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100%형 피해과실	1	일반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가공용으로도 공급될 수 없는 품질의 과실
병충해 피해과실	0.5	세균구멍병 피해를 입은 과실

<감귤>

과실분류		비 고
정상과실	0	무피해 과실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내로 피해가 있는 경우
등급 내 피해과실	30%형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의 피해가 있는 경우
	50%형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30% 이상 50% 미만의 피해가 있는 경우
	80%형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50% 이상 80% 미만의 피해가 있는 경우
	100%형	보상하는 재해로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80% 이상 피해가 있거나 과육의 부패 및 무름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
등급 외 피해과실	30%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18조 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무피해 과실 또는 보상하는 재해로 과피 및 과육 피해가 없는 경우를 말함
	50%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18조 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이상 피해가 있으며 과실 횡경이 70mm 이상인 경우를 말함
	80%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18조 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보상하는 재해로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의 10%이상 피해가 있으며 과실 횡경이 49mm 미만인 경우를 말함
	100%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 18조 4항에 준하여 과실의 크기만으로 등급 외 크기이면서 과육부패 및 무름 등의 피해가 있어 가공용으로도 공급 될 수 없는 과실을 말함

[별표 4] 매실 품종별 과실 비대추정지수

조사일	남고	백가하	재래종	천매
30일전	2,871	3,411	3,389	3,463
29일전	2,749	3,252	3,227	3,297
28일전	2,626	3,093	3,064	3,131
27일전	2,504	2,934	2,902	2,965
26일전	2,381	2,775	2,740	2,800
25일전	2,258	2,616	2,577	2,634
24일전	2,172	2,504	2,464	2,518
23일전	2,086	2,391	2,351	2,402
22일전	2,000	2,279	2,238	2,286
21일전	1,914	2,166	2,124	2,171
20일전	1,827	2,054	2,011	2,055
19일전	1,764	1,972	1,933	1,975
18일전	1,701	1,891	1,854	1,895
17일전	1,638	1,809	1,776	1,815
16일전	1,574	1,728	1,698	1,735
15일전	1,511	1,647	1,619	1,655
14일전	1,465	1,598	1,565	1,599
13일전	1,419	1,530	1,510	1,543
12일전	1,373	1,471	1,455	1,487
11일전	1,326	1,413	1,400	1,431
10일전	1,280	1,355	1,346	1,375
9일전	1,248	1,312	1,300	1,328
8일전	1,215	1,270	1,254	1,281
7일전	1,182	1,228	1,208	1,234
6일전	1,149	1,186	1,162	1,187
5일전	1,117	1,144	1,116	1,140
4일전	1,093	1,115	1,093	1,112
3일전	1,070	1,096	1,070	1,084
2일전	1,047	1,057	1,046	1,056
1일전	1,023	1,029	1,023	1,028
수확일	1	1	1	1

※ 위에 없는 품종은 남고를 기준으로 함 (출처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별표 5] 무화과 품목 사고발생일에 따른 잔여수확량 비율

사고발생 월	잔여수확량 산정식(%)
8월	{100 - (1.06 × 사고발생일자)}
9월	{(100 - 33) - (1.13 × 사고발생일자)}
10월	{(100 - 67) - (0.84 × 사고발생일자)}

[별표 6] 손해정도에 따른 손해정도비율

손해정도	1%~20%	21%~40%	41%~60%	61%~80%	81%~100%
손해정도비율	20%	40%	60%	80%	100%

[별표 7]

품목별 감수과실 수 및 피해율 산정 방법

1.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과수 품목 감수과실수 산정방법

품목	조사시기	재해종류	조사종류	감수과실수 산정 방법
사과 · 배 · 단감 · 뽕은감	적과 종료 이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피해사실 확인조사	<p><input type="checkbox"/> 적과종료이전 사고는 보상하는 재해(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중복해서 발생한 경우에도 아래 산식을 한번만 적용함</p> <p>○ 착과감소과실수 = 최솟값(평년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최대인정감소과실수)</p> <p>○ 적과종료이전의 미보상감수과실수 = {(착과감소과실수 × 미보상비율)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p> <p>※ 적과전 사고 조사에서 미보상비율적용은 미보상비율조사값 중 가장 큰값만 적용</p> <p><input type="checkbox"/> 적과종료이전 최대인정감소량(5종 한정 특약 가입건 제외)</p> <p>사고접수 건 중 피해사실확인조사결과 모든 사고가 “피해규모 일부” 인 경우만 해당하며, 착과감소량(과실수)이 최대인정감소량(과실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인정감소량(과실수)을 착과감소량(과실수)으로 함</p> <p>○ 최대인정감소량 = 평년착과량 × 최대인정피해율</p> <p>○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최대인정피해율</p> <p>- 최대인정피해율 = 피해대상주수(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일부피해주수) ÷ 실제결과주수</p> <p>※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피해대상주수를 누적하여 계산</p> <p><input type="checkbox"/> 적과종료이전 최대인정감소량(5종 한정 특약 가입건만 해당)</p> <p>「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특별약관」 가입 건에 적용되며, 착과감소량(과실수)이 최대인정감소량(과실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인정감소량(과실수)을 착과감소량(과실수)으로 함</p> <p>○ 최대인정감소량 = 평년착과량 × 최대인정피해율</p> <p>○ 최대인정감소과실수 = 평년착과수 × 최대인정피해율</p> <p>※ 최대인정피해율은 아래의 값 중 가장 큰 값</p> <p>- 나무피해</p> <p>· (유실, 매몰, 도복, 절단(1/2), 소실(1/2), 침수주수) ÷ 실제결과주수</p> <p>단, 침수주수는 침수피해를 입은 나무수에 과실침수율을 곱하여 계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나무피해주수를 누적하여 계산 - 우박피해에 따른 유과타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댓값(유과타박률1, 유과타박률2, 유과타박률3, ...) - 6월1일부터 적과종료 이전까지 단감·뽕은감의 낙엽피해에 따른 인정피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댓값(인정피해율1, 인정피해율2, 인정피해율3, ...)
	자연재해	해당 조사없음	<p>□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인한 적과종료 이후 착과 손해 감수과실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미만인 경우, 감수과실수 = 적과후착과수 × 5% - 적과후착과수가 평년착과수의 60%이상 100%미만인 경우, $\text{감수과실수} = \text{적과후착과수} \times 5\% \times \frac{100\% - \text{착과율}}{40\%}, \quad \text{착과율} = \text{적과후착과수} \div \text{평년착과수}$ <p>※ 상기 계산된 감수과실수는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에 합산하며, 적과종료 이후 착과피해율(max A 적용)로 인식함</p> <p>※ 적과전종합방식(Ⅱ)가입 건 중 「적과종료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특별약관」 미가입시에만 적용</p>

품목	조사시기	재해종류	조사종류	감수과실수 산정 방법
사과 · 배	적과 종료 이후	태풍(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낙과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과 손해(전수조사)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1.07 ○ 낙과 손해(표본조사) : (낙과과실수 합계 / 표본주수) × 조사대상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1.07 ※ 낙과 감수과실수의 7%를 착과손해로 포함하여 산정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
			나무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의 고사 및 수확불능 손해 - (고사주수 + 수확불능주수) × 무피해 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 × (1 - max A) ○ 나무의 일부침수 손해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1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 × (1 - max A)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
		우박	낙과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과 손해(전수조사)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낙과 손해(표본조사) : (낙과과실수 합계 / 표본주수) × 조사대상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 “(해당과실의 피해구성률 - max A)”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
			착과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 “(해당과실의 피해구성률 - max A)”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
		가을동상해	착과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

품목	조사시기	재해종류	조사종류	감수과실수 산정 방법
단감 / 곶은감	적과 종료 이후	태풍(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낙과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과 손해(전수조사)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낙과 손해(표본조사) : (낙과과실수 합계 / 표본주수) × 조사대상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
			나무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무의 고사 및 수확불능 손해 - (고사주수 + 수확불능주수) × 무피해 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 × (1 - max A) ○ 나무의 일부침수 손해 - (일부침수주수 × 일부침수나무 1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 × (1 - max A)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
			낙엽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엽 손해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인정피해율 - max A) × (1 - 미보상비율)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 ↳ “(인정피해율 - max A)” 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 ↳ 미보상비율은 금차 사고조사의 미보상비율을 적용함
		우박	낙과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과 손해(전수조사)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낙과 손해(표본조사) - (낙과과실수 합계 / 표본주수) × 조사대상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
			착과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과 손해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

품목	조사시기	재해종류	조사종류	감수과실수 산정 방법
단감 / 뽕은감	적과 종료 이후	가을동상해	착과 피해조사	<p>○ 착과 손해</p> <p>-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p> <p>※ 단, ‘일 50% 이상 고사 피해’ 인 경우에는 착과피해구성률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착과피해구성률</p> $= \frac{(\text{정상과실수} \times 0.0031 \times \text{잔여일수}) + (5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0.5) + (8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0.8) + (10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1)}{\text{정상과실수} + 50\% \text{형피해과실수} + 80\% \text{형피해과실수} + 100\% \text{형피해과실수}}$ <p>- 잔여일수 : 사고발생일로부터 예정수확일(가을동상해 보장종료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날짜)까지 남은 일수</p> </div> <p>-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p> <p>※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p>
사과 · 배 · 단감 · 뽕은감	적과 종료 이후	일소피해	낙과·착과 피해조사	<p>○ 낙과 손해 (전수조사 시) : 총낙과과실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p> <p>○ 낙과 손해 (표본조사 시) : (낙과과실수 합계 ÷ 표본주수) × 조사대상주수 × (낙과피해구성률 - max A)</p> <p>-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p> <p>※ “(낙과피해구성률 - max A)” 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p> <p>○ 착과손해</p> <p>-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 (착과피해구성률 - max A)</p> <p>-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또는 인정피해율 중 최댓값을 말함</p> <p>※ “(착과피해구성률 - max A)” 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p> <p>○ 일소피해과실수 = 낙과 손해 + 착과 손해</p> <p>- 일소피해과실수가 보험사고 한 건당 적과후착과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수과실수로 인정</p> <p>- 일소피해과실수가 보험사고 한 건당 적과후착과수의 6%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조사의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p>

※ 용어 및 관련 산식

품목	조사종류	내 용
사과 · 배 · 단감 · 뽕은감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주수 = 실제결과주수 - 고사주수 - 수확불능주수 - 미보상주수 - 수확완료주수 ○ 미보상주수 감수과실수 = 미보상주수 ×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1주당 평년착과수 ○ 기준착과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과종료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없는 과수원 :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적과종료전에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있는 과수원 : 기준착과수 = 적과후착과수 + 착과감소과실수
	나무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율 = $\frac{\text{침수 꽃(눈) · 유과수의 합계}}{\text{침수 꽃(눈) · 유과수의 합계} + \text{미침수 꽃(눈) · 유과수의 합계}}$ ○ 나무피해 시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주당 평년착과수 = (전체 평년착과수 × $\frac{\text{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표준수확량 합계}}{\text{전체 표준수확량 합계}}$) ÷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로 구분하여 산식에 적용
	유과타박률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과타박률 = $\frac{\text{표본주의 피해유과수 합계}}{\text{표본주의 피해유과수 합계} + \text{표본주의 정상유과수 합계}}$
	피해구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성률 = $\frac{(10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1) + (8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0.8) + (50\% \text{형피해과실수} \times 0.5)}{100\% \text{형피해과실수} + 80\% \text{형피해과실수} + 50\% \text{형피해과실수} + \text{정상과실수}}$ ※ 착과 및 낙과피해조사에서 피해구성률 산정시 적용
	낙엽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피해율 = (1.0115 × 낙엽률) - (0.0014 × 경과일수) - 경과일수 = 6월 1일부터 낙엽피해 발생일까지 경과된 일수 - 낙엽률 = $\frac{\text{표본주의 낙엽수 합계}}{\text{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 \text{표본주의 착엽수 합계}}$
	착과피해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당시 착과과실수” 는 “적과후착과수 - 총낙과과실수 - 총적과종료후 나무피해과실수 - 총 기수확과실수” 보다 클 수 없음
	적과후 착과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착과수 = [$\frac{\text{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합계}}{\text{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표본주 합계}}$] ×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 · 재배방식 · 수령별 착과수의 합계를 과수원별 『적과후착과수』로 함

2. 특정위험방식 발작물 품목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인삼	수확량조사	수확량 확인이 가능한 시점	<p>□ 전수조사 시</p> <p>○ 피해율 = $(1 - \frac{\text{수확량}}{\text{연근별기준수확량}}) \times \frac{\text{피해면적}}{\text{재배면적}}$</p> <p>○ 수확량 =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 -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 총조사수확량 ÷ 금차 수확면적 ▷ 금차 수확면적 = 금차 수확칸수 × 지주목간격 × (두둑폭 + 고랑폭) -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 = (기준수확량 -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 미보상비율</p> <p>○ 피해면적 = 금차 수확칸수</p> <p>○ 재배면적 = 실제경작칸수</p> <p>□ 표본조사 시</p> <p>○ 피해율 = $(1 - \frac{\text{수확량}}{\text{연근별기준수확량}}) \times \frac{\text{피해면적}}{\text{재배면적}}$</p> <p>○ 수확량 =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 -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 표본수확량 합계 ÷ 표본칸 면적 ▷ 표본칸 면적 = 표본칸 수 × 지주목간격 × (두둑폭 + 고랑폭) - 단위면적당 미보상감수량 = (기준수확량 - 단위면적당 조사수확량) × 미보상비율</p> <p>○ 피해면적 = 피해칸수</p> <p>○ 재배면적 = 실제경작칸수</p>

3.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과수 품목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p>자두, 복숭아, 포도,</p>	<p>수확량조사</p>	<p>착과수조사 (최초 수확 품종 수확전) / 과중조사 (품종별 수확시기) / 착과피해조사 (피해 확인 가능 시기) / 낙과피해조사 (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 시) / 고사나무조사 (수확완료 후)</p>	<p>□ 착과수(수확개시 전 착과수조사 시)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p> <p>□ 착과수(착과피해조사 시)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수확완료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 품종별·수령별 표본주수</p> <p>□ 과중조사 (사고접수건에 대해 실시) ○ 품종별 과중 = 품종별 표본과실 무게 ÷ 품종별 표본과실 수</p> <p>□ 낙과수 산정 (착과수조사 이후 발생한 낙과사고마다 산정) ○ 표본조사 시 : 품종·수령별 낙과수 조사 ▷ 품종·수령별 낙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낙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수확완료주수 - 품종·수령별주당 낙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의 낙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p> <p>○ 전수조사 시 : 품종별 낙과수 조사 ▷ 전체 낙과수에 대한 품종 구분이 가능할 때 : 품종별로 낙과수 조사 ▷ 전체 낙과수에 대한 품종 구분이 불가능할 때 (전체 낙과수 조사 후 품종별 안분) - 품종별 낙과수 = 전체 낙과수 × (품종별 표본과실 수 ÷ 품종별 표본과실 수의 합계) ◆ 품종별 주당 낙과수 = 품종별 낙과수 ÷ 품종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별 고사주수 - 품종별 미보상주수 - 품종별 수확완료주수)</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자두, 복숭아, 포도,	수확량조사	착과수조사 (최초 수확 품종 수확전) / 과중조사 (품종별 수확시기) / 착과피해조사 (피해 확인 가능 시기) / 낙과피해조사 (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 시) / 고사나무조사 (수확완료 후)	<p>□ 피해구성조사 (낙과 및 착과피해 발생 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성률 = $\{(50\% \text{형 피해과실 수} \times 0.5) + (80\% \text{형 피해과실 수} \times 0.8) + (100\% \text{형 피해과실 수} \times 1)\} \div \text{표본과실 수}$ ○ 금차 피해구성률 = 피해구성률 - max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차 피해구성률은 다수 사고인 경우 적용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 금차 피해구성률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함 <p>□ 착과량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과량 = 품종 · 수령별 착과량의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 · 수령별 착과량 = (품종 · 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품종 · 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단, 품종별 과중이 없는 경우(과중 조사 전 기수확 품종)에는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을 품종·수령별 착과량으로 한다. - 품종 · 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 · 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품종 · 수령별 표준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주당 표준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실제결과주수 <p>□ 감수량 산정 (사고마다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차 감수량 = 금차 착과 감수량 + 금차 낙과 감수량 +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차 착과 감수량 = 금차 품종 · 수령별 착과 감수량의 합 - 금차 품종 · 수령별 착과 감수량 = 금차 품종 · 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품종별 착과피해구성률 - 금차 낙과 감수량 = 금차 품종 · 수령별 낙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 = 품종 · 수령별 금차 고사주수 × (품종 · 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 · 수령별 주당 낙과수) × 품종별 과중 × (1 - max A) ▷ 품종 · 수령별 금차 고사주수 = 품종 · 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 · 수령별 기초사 고사주수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p>자두, 복숭아, 포도,</p>	<p>수확량조사</p>	<p>착과수조사 (최초 수확 품종 수확전) / 과중조사 (품종별 수확시기) / 착과피해조사 (피해 확인 가능 시기) / 낙과피해조사 (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 시) / 고사나무조사 (수확완료 후)</p>	<p>□ 피해율 산정</p> <p>○ 피해율(포도, 자두)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피해율(복숭아)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최댓값(미보상비율1, 미보상비율2, ...)</p> <p>□ 수확량 산정</p> <p>○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병충해 감수량(복숭아만 해당)</p> <p>○ 병충해감수량 = 금차 병충해 착과감수량 + 금차 병충해 낙과감수량</p> <p>▷ 금차 병충해 착과감수량 = 금차 품종 · 수령별 병충해 인정피해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품종 · 수령별 병충해 인정피해 착과수 = 금차 품종 · 수령별 착과 과실수 × 품종별 병충해 착과피해구성률</p> <p>◆ 품종별 병충해 착과피해구성률 = (병충해 착과 피해과실수 × (0.5 - max A)) ÷ 표본 착과과실수</p> <p>▷ 금차 병충해 낙과감수량 = 금차 품종 · 수령별 병충해 인정피해 낙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품종 · 수령별 병충해 인정피해 낙과수 = 금차 품종 · 수령별 낙과 과실수 × 품종별 병충해 낙과피해구성률</p> <p>◆ 품종별 병충해 낙과피해구성률 = (병충해 낙과 피해과실수 × (0.5 - max A)) ÷ 표본 낙과과실수</p> <p>※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0.5 - max A)의 값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병충해감수량은 영(0)으로 함</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밤, 호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최초 수확 전	<p>□ 수확개시 이전 수확량 조사</p> <p>○ 기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별 미보상주수 - 품종별 고사나무주수 ▷ 품종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별 주당 표준수확량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표준수확량) ▷ 품종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별 평년수확량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p>○ 착과수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별 주당 착과수 = 품종별 표본주의 착과수 ÷ 품종별 표본주수 <p>○ 낙과수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별 주당 낙과수 = 품종별 표본주의 낙과수 ÷ 품종별 표본주수 ▷ 전수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 품종별 낙과수 조사 -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낙과수 조사 후 낙과수 중 표본을 추출하여 품종별 개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별 낙과수 = 전체 낙과수 × (품종별 표본과실 수 ÷ 전체 표본과실 수의 합계) · 품종별 주당 낙과수 = 품종별 낙과수 ÷ 품종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별 고사주수 - 품종별 미보상주수 <p>○ 과중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 품종별 개당 과중 = 품종별 {정상 표본과실 무게 + (소과 표본과실 무게 × 0.8)} ÷ 표본과실 수 ▷ (호두) 품종별 개당 과중 = 품종별 표본과실 무게 합계 ÷ 표본과실 수 <p>○ 피해구성 조사(품종별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 수×0.5) + (80%형 피해과실 수×0.8) + (100%형 피해과실 수×1)} ÷ 표본과실 수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량 = {품종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별 주당 착과수 × (1 - 착과피해구성률) × 품종별 과중} + {품종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별 주당 낙과수 × (1 - 낙과피해구성률) × 품종별 과중} + (품종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별 미보상주수) ▷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밤, 호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p>○ 감수량 $= (\text{품종별 조사대상 주수} \times \text{품종별 주당 착과수} \times \text{금차 착과피해구성률} \times \text{품종별 개당 과중}) + (\text{품종별 조사대상 주수} \times \text{품종별 주당 낙과수} \times \text{금차 낙과피해구성률} \times \text{품종별 개당 과중}) + (\text{품종별 금차 고사주수} \times (\text{품종별 주당 착과수} + \text{품종별 주당 낙과수}) \times \text{품종별 개당 과중} \times (1 - \max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별 실제 결과주수 - 품종별 미보상주수 - 품종별 고사나무주수 - 품종별 수확완료주수 ▷ 품종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별 주당 표준수확량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표준수확량) ▷ 품종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별 평년수확량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별 금차 고사주수 = 품종별 고사주수 - 품종별 기초사 고사주수 </p> <p>□ 피해율 산정</p> <p>○ 금차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없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평년수확량 - 금차 감수량 - 미보상 감수량 = 금차 감수량 × 미보상비율 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 × 미보상비율 <p>○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가 포함된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 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 3)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량』 이면서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수확개시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p>○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만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모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인 경우)</p> <p>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p> <p>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인 경우</p> <p>①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평년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 감수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p>②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참다래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최초 수확 전	<p>○ 착과수조사</p> <p>▷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조사 대상면적 × 품종·수령별 면적(m²)당 착과수</p> <p>- 품종·수령별 표본조사 대상면적 = 품종·수령별 재식 면적 × 품종·수령별 표본조사 대상 주수</p> <p>- 품종·수령별 면적(m²)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구간 착과수 ÷ 표본구간 넓이)</p> <p>- 재식 면적 = 주간 거리 × 열간 거리</p> <p>- 품종별·수령별 표본조사 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 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나무주수</p> <p>- 표본구간 넓이 = (표본구간 윗변 길이 + 표본구간 아랫변 길이) × 표본구간 높이(윗변과 아랫변의 거리) ÷ 2</p> <p>○ 과중 조사</p> <p>▷ 품종별 개당 과중 = 품종별 표본과실 무게 합계 ÷ 표본과실 수</p> <p>○ 피해구성 조사(품종별로 실시)</p> <p>▷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 × 0.5) + (80%형 피해과실수 × 0.8) + (100%형 피해과실수 × 1)) ÷ 표본과실수</p> <p>▷ 금차 피해구성률 = 피해구성률 - max A</p> <p>- 금차 피해구성률은 다수 사고인 경우 적용</p> <p>-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p> <p>※ 금차 피해구성률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함</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p>○ 피해율 산정</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1 - 피해구성률)) + (품종 · 수령별 면적(m²)당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 · 수령별 재식면적)</p> <p>- 품종 · 수령별 면적(m²)당 평년수확량 = 품종별 · 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재식면적 합계</p> <p>- 품종 · 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별 · 수령별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p> <p>-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참다래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조사일기준)	사고 발생 직후	<p>○ 착과수조사</p> <p>▷ 품종 · 수령별 착과수 = 품종 · 수령별 표본조사 대상면적 × 품종 · 수령별 면적(m²)당 착과수</p> <p>▷ 품종 · 수령별 조사대상 면적 = 품종 · 수령별 재식 면적 × 품종 · 수령별 표본조사 대상 주수</p> <p>▷ 품종 · 수령별 면적(m²)당 착과수 = 품종별 · 수령별 표본구간 착과수 ÷ 품종 · 수령별 표본구간 넓이</p> <p>▷ 재식 면적 = 주간 거리 × 열간 거리</p> <p>▷ 품종 · 수령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 · 수령별 실제 결과주수 - 품종 · 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 · 수령별 고사나무주수 - 품종 · 수령별 수확완료주수</p> <p>▷ 표본구간 넓이 = (표본구간 윗변 길이 + 표본구간 아랫변 길이) × 표본구간 높이(윗변과 아랫변의 거리) ÷ 2</p> <p>○ 낙과수 조사</p> <p>▷ 표본조사</p> <p>- 품종 · 수령별 낙과수 = 품종 · 수령별 조사대상면적 × 품종 · 수령별 면적(m²)당 낙과수</p> <p>- 품종 · 수령별 면적(m²)당 낙과수 = 품종 · 수령별 표본주의 낙과수 ÷ 품종 · 수령별 표본구간 넓이</p> <p>▷ 전수조사</p> <p>-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 품종별 낙과수 조사</p> <p>-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품종별 낙과수 = 전체 낙과수 × (품종별 표본과실수 ÷ 전체 표본과실수의 합계)</p> <p>○ 과중 조사</p> <p>▷ 품종별 개당 과중 = 품종별 표본과실 무게 합계 ÷ 표본과실 수</p> <p>○ 피해구성 조사(품종별로 실시)</p> <p>▷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0.5)+(80%형 피해과실수×0.8)+(100%형 피해과실수×1)} ÷ 표본과실수</p> <p>▷ 급차 피해구성률 = 피해구성률 - max A</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참다래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사고 발생 직후	<p>- 금차 피해구성률은 다수 사고인 경우 적용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조사된 작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 금차 피해구성률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함</p> <p>○ 금차 수확량 = {품종·수령별 작과수 × 품종별 개당 과중 × (1 - 금차 작과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낙과수 × 품종별 개당 과중 × (1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m² 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재식면적}</p> <p>○ 금차 감수량 = {품종·수령별 작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작과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낙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m² 당 평년수확량 × 금차 고사주수 × (1 - max A)} × 품종·수령별 재식면적 ▷ 금차 고사주수 = 고사주수 - 기초조사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면적(m²)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재식면적 합계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p> <p>□ 피해율 산정</p> <p>○ 금차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없는 경우) 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평년수확량 - 금차 감수량 - 미보상 감수량 = 금차 감수량 × 미보상비율 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 -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 × 미보상비율</p> <p>○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가 포함된 경우) 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 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 3)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량』 이면서</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p>『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수확개시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p>○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만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모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인 경우)</p> <p>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p> <p>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인 경우</p> <p>①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평년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 감수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p>②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매실, 대추, 살구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최초 수확 전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 · 수령별 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품종 · 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미보상주수)</p> <p>○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p>▷ 품종 · 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 · 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 · 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 · 수령별 고사나무주수</p> <p>▷ 품종 · 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별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p> <p>▷ 품종 · 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별 · 수령별 (평년수확량 ÷ 실제결과주수)</p> <p>▷ 품종 · 수령별 주당 착과량 = 품종별 · 수령별 (표본주의 착과무게 ÷ 표본주수)</p> <p>- 표본주 착과무게 = 조사 착과량 × 품종별 비대추정지수(매실) × 2(절반조사 시)</p> <p>○ 피해구성 조사</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p>▷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무게×0.5)+((80%형 피해과실무게×0.8)+(100%형 피해과실무게×1))÷표본과실무게</p>
매실, 대추, 살구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사고 발생 직후	<p>○ 금차 수확량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량 × (1 - 금차 착과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별(·수령별) 주당 낙과량 × (1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품종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별 미보상주수)</p> <p>○ 금차 감수량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량 × 금차 착과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별(·수령별) 주당 낙과량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품종·수령별 금차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량 + 품종별(·수령별) 주당 낙과량) × (1 - max A)}</p> <p>▷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 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나무주수 - 품종·수령별 수확완료주수</p> <p>▷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준수확량 합계 × 품종·수령별 표준수확량</p> <p>▷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p> <p>▷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량 = 품종·수령별 표본주의 착과량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p> <p>▷ 표본주 착과무게 = 조사 착과량 × 품종별 비대추정지수(매실) × 2(절반조사 시)</p> <p>▷ 품종·수령별 금차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기초사 고사주수</p> <p>○ 낙과량 조사</p> <p>▷ 표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수령별 주당 낙과량 = 품종·수령별 표본주의 낙과량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 <p>▷ 전수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별 주당 낙과량 = 품종별 낙과량 ÷ 품종별 표본조사 대상 주수 -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 품종별 낙과량 조사 - 전체 낙과에 대하여 품종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 품종별 낙과량 = 전체 낙과량 × (품종별 표본과실 수(무게) ÷ 표본 과실 수(무게)) <p>○ 피해구성 조사</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매실, 대추, 살구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사고 발생 직후	<p>▷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무게×0.5)+(80%형 피해과실무게×0.8) 100%형 피해과실무게) ÷ 표본과실무게</p> <p>▷ 금차 피해구성률 = 피해구성률 - max A</p> <p>- 금차 피해구성률은 다수 사고인 경우 적용</p> <p>-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작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p> <p>※ 금차 피해구성률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함</p> <p>□ 피해율 산정</p> <p>○ 금차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없는 경우)</p> <p>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평년수확량 - 금차 감수량</p> <p>- 미보상 감수량 = 금차 감수량 × 미보상비율</p> <p>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p> <p>-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 × 미보상비율</p> <p>○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가 포함된 경우)</p> <p>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p> <p>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p> <p>3)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량』 이면서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수확개시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p>○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만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모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인 경우)</p> <p>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p> <p>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인 경우</p> <p>①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평년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 감수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p>②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 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오미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최초 수확 전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형태·수령별 조사대상길이 × 형태·수령별 m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 + (형태·수령별 m당 평년수확량 × 형태·수령별 미보상 길이)</p> <p>▷ 형태·수령별 조사대상길이 = 형태·수령별 실제재배길이 - 형태·수령별 미보상길이 - 형태·수령별 고사길이)</p> <p>▷ 형태·수령별 길이(m)당 착과량 = 형태·수령별 표본구간의 착과무게 ÷ 형태·수령별 표본구간 길이의 합 - 표본구간 착과무게 = 조사 착과량 × 2(절반조사 시)</p> <p>▷ 형태·수령별 길이(m)당 평년수확량 = 형태·수령별 평년수확량 ÷ 형태·수령별 실제재배길이 - 형태·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형태·수령별 m당 표준수확량 × 형태·수령별 실제재배길이) ÷ 표준수확량}</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p>○ 피해 구성 조사 -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무게 × 0.5) + (80%형 피해과실무게 × 0.8) + (100%형 피해과실무게 × 1)) ÷ 표본과실무게</p>
오미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사고 발생 직후	<p>○ 기본사항</p> <p>▷ 형태·수령별 조사대상길이 = 형태·수령별 실제재배길이 - 형태·수령별 미보상길이 - 형태·수령별 고사 길이</p> <p>▷ 형태·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표준수확량 × 형태·수령별 표준수확량</p> <p>▷ 형태·수령별 길이(m)당 평년수확량 = 형태·수령별 평년수확량 ÷ 형태·수령별 실제재배길이</p> <p>▷ 형태·수령별 길이(m)당 착과량 = 형태·수령별 표본구간의 착과무게 ÷ 형태·수령별 표본구간 길이의 합</p> <p>▷ 표본구간 착과무게 = 조사 착과량 × 2(절반조사 시)</p> <p>▷ 형태·수령별 금차 고사 길이 = 형태·수령별 고사 길이 - 형태·수령별 기초조사 고사 길이</p> <p>○ 낙과량 조사</p> <p>▷ 표본조사 형태·수령별 길이(m)당 낙과량 = 형태·수령별 표본구간의 낙과량의 합 ÷ 형태·수령별 표본구간 길이의 합</p> <p>▷ 진수조사 길이(m)당 낙과량 = 낙과량 ÷ 전체 조사대상길이의 합</p> <p>○ 피해구성조사</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오미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사고 발생 직후	<p>▷ 피해구성률 = ((50%형 과실무게×0.5) + ((80%형 과실무게×0.8) + (100%형 과실무게×1)) ÷ 표본과실무게</p> <p>▷ 금차 피해구성률 = 피해구성률 - max A</p> <p>-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조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p> <p>※ 금차 피해구성률이 영(0)보다 작은 경우 : 금차 감수과실수는 영(0)으로 함</p> <p>○ 금차 수확량 = {형태·수령별 조사대상길이 × 형태·수령별 m당 착과량 × (1 - 금차 착과피해구성률)} + {형태·수령별 조사대상길이 × 형태·수령별 m당 낙과량 × (1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형태·수령별 m당 평년수확량 × 형태별수령별 미보상 길이)</p> <p>○ 금차 감수량 = (형태·수령별 조사대상길이 × 형태·수령별 m당 착과량 × 금차 착과피해구성률) + (형태·수령별 조사대상길이 × 형태·수령별 m당 낙과량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형태·수령별 금차 고사 길이 × (형태·수령별 m당 착과량 + 형태·수령별 m당 낙과량) × (1 - max A))</p> <p>□ 피해율 산정</p> <p>○ 금차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가 최초 조사인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없는 경우)</p> <p>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평년수확량 - 금차 감수량</p> <p>- 미보상 감수량 = 금차 감수량 × 미보상비율</p> <p>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p> <p>-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금차 수확량 + 기수확량)) × 미보상비율</p> <p>○ 수확 개시 전 수확량 조사가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에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가 포함된 경우)</p> <p>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p> <p>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p> <p>3)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조사 수확량』 이면서</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오미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 (조사일 기준)	사고 발생 직후	<p>『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수확개시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 개시 전 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p>○ 수확 개시 후 수확량 조사만 있는 경우(이전 수확량조사가 모두 수확 개시 후 수확량조사인 경우)</p> <p>1)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 ⇒ 오류 수정 필요</p> <p>2)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이전 조사 금차 수확량 + 이전 조사 기수확량』인 경우</p> <p>①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평년수확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 감수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p>② 최초 조사가 『금차 수확량 + 금차 감수량 + 기수확량 ≥ 평년수확량』인 경우</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최초 조사 금차 수확량 + 최초 조사 기수확량) + 2차 이후 사고당 감수량의 합} × max(미보상비율)</p>
유자	수확량조사	수확개시전	<p>○ 기본사항</p> <p>▷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p> <p>▷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표준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준수확량</p> <p>-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p> <p>▷ 품종·수령별 과중 = 품종·수령별 표본과실 무게합계 ÷ 품종·수령별 표본과실수</p> <p>▷ 품종·수령별 표본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 착과수 합계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p> <p>▷ 품종·수령별 표본주당 착과량 = 품종·수령별 표본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과중</p> <p>○ 피해구성 조사</p> <p>▷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수×0.5) + (80%형 피해과실수×0.8) + (100%형 피해과실수×1)) ÷ 표본과실수</p>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품종·수령별 표본조사 대상 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당 착과량 × (1 - 착과피해구성률)}</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 (\text{품종} \cdot \text{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times \text{품종} \cdot \text{수령별 미보상주수})$ $\triangleright \text{미보상감수량} =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times \text{미보상비율}$

4. 종합위험 및 수확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방식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오디	과실손해 조사	결실완료 시점 ~ 수확 전	<p>□ 피해율 = (평년결실수 - 조사결실수 - 미보상 감수 결실수) ÷ 평년결실수</p> <p>○ 조사결실수 = $\sum\{(\text{품종·수량별 환산결실수} \times \text{품종·수량별 조사대상주수}) + (\text{품종별 주당 평년결실수} \times \text{품종·수량별 미보상주수})\} \div \text{전체 실제결과주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수량별 환산결실수 = 품종·수량별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 품종·수량별 표본가지 길이 합계 - 품종·수량별 표본조사 대상 주수 = 품종·수량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량별 고사주수 - 품종·수량별 미보상주수 - 품종별 주당 평년결실수 = 품종별 평년결실수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별 평년결실수 = (평년결실수 × 전체 실제결과주수) × (대상 품종 표준결실수 × 대상 품종 실제결과주수) ÷ $\sum(\text{품종별 표준결실수} \times \text{품종별 실제결과주수})$ <p>○ 미보상감수결실수 = $\text{Max}((\text{평년결실수} - \text{조사결실수}) \times \text{미보상비율}, 0)$</p>
감귤	과실손해 조사	착과피해 조사	<p>○ 과실손해 피해율 = $\{(\text{등급 내 피해과실수} + \text{등급 외 피해과실수} \times 50\%) \div \text{기준과실수}\} \times (1 - \text{미보상비율})$</p> <p>○ 피해 인정 과실수 = 등급 내 피해 과실수 + 등급 외 피해과실수 × 50%</p> <p>1) 등급 내 피해 과실수 = (등급 내 30%형 과실수 합계×0.3) + (등급 내 50%형 과실수 합계×0.5) + (등급 내 80%형 과실수 합계×0.8) + (등급 내 100%형 과실수×1)</p> <p>2) 등급 외 피해 과실수 = (등급 외 30%형 과실수 합계×0.3) + (등급 외 50%형 과실수 합계×0.5) + (등급 외 80%형 과실수 합계×0.8) + (등급 외 100%형 과실수×1)</p> <p>※ 만감류는 등급 외 피해 과실수를 피해 인정 과실수 및 과실손해 피해율에 반영하지 않음</p> <p>3) 기준과실수 : 모든 표본주의 과실수 총 합계</p> <p>※ 단, 수확전 사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수확전 사고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과실손해피해율 = $[(\text{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div (1 - \text{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 \{(1 - (\text{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div (1 - \text{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times (\text{과실손해 피해율} \div (1 - \text{과실손해 미보상비율}))]$ × {1 - $\text{최댓값}(\text{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조사 미보상비율}, \text{과실손해 미보상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100\% \text{형 피해과실수} \div (\text{정상 과실수} + 100\% \text{형 피해과실수})\} \times (1 - \text{미보상비율})$ ◆ 최종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 = $\{(\text{이전 } 100\% \text{피해과실수} + \text{금차 } 100\% \text{피해과실수}) \div (\text{정상 과실수} + 100\% \text{형 피해과실수})\} \times (1 - \text{미보상비율})$ </div>
	동상해조사	착과피해 조사	<p>○ 동상해 과실손해 피해율 = 동상해 피해 과실수 ÷ 기준과실수</p> <p>= $\frac{(80\% \text{형 피해과실수} \times 0.8) + (100\% \text{형 피해과실수} \times 1)}{\text{정상과실수} + 80\% \text{형 피해과실수} + 100\% \text{형 피해과실수}}$</p>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2권

			<p>※ 동상해 피해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x 0.8) + (100%형 피해과실수 x 1) ※ 기준과실수(모든 표본주의 과실수 총 합계) = 정상과실수 + 80%형 피해과실수 + 100%형 피해과실수</p>
--	--	--	--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복분자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	수정완료 시점 ~ 수확 전	<p> <input type="checkbox"/>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합 ÷ (표본구간수 × 5)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수정불량 고사결과모지수의 합 ÷ (표본구간수×5) ○ 표본구간 수정불량 고사결과모지수 = 표본구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계수 ○ 수정불량환산계수 = (수정불량결실수 ÷ 전체결실수) - 자연수정불량률 = 최댓값((표본포기 6송이 피해 열매수의 합 ÷ 표본포기 6송이 열매수의 합계)-15%, 0) ▷ 자연수정불량률 : 15%(2014 복분자 수확량 연구용역 결과반영)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최댓값{평년결과모지수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결과모지수)} × 미보상비율, 0) </p> <p> <input type="checkbox"/>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 = (기준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 수정불량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평년결과모지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누적수확감소환산계수 = 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수확감소환산계수의 합 ▷ 수확감소환산계수 = 최댓값(기준일자별 잔여수확량 비율 - 결실율, 0) ▷ 결실율 = 전체결실수 ÷ 전체개화수 = $\Sigma(\text{표본송이의 수확 가능한 열매수}) \div \Sigma(\text{표본송이의 총열매수})$ ○ 미보상 고사결과모지수 = 수확감소환산 고사결과모지수 × 최댓값(특정위험 과실손해조사별 미보상비율) </p> <p> <input type="checkbox"/> 피해율 = 고사결과모지수 ÷ 평년결과모지수 - 고사결과모지수 =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 특정위험 과실손해 고사결과모지수 </p>
	특정위험 과실손해 조사	사고접수 직후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무화과	수확량조사	수확전 수확후	<p>□ 기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주당 표준수확량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표준수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p>□ 7월31일 이전 피해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량 = { 품종별·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수확량 × (1 - 피해구성률) } + (품종·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수령별 주당 수확량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표준과중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 과실수의 합계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피해구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구성률 : {(50%형 과실수 × 0.5) + (80%형 과실수 × 0.8) + (100%형 과실수 × 1)} ÷ 표본과실수 <p>□ 8월1일 이후 피해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 (1 - 수확전사고 피해율) × 잔여수확량비율 × 결과지 피해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 피해율 = (고사결과지수 + 미고사결과지수 × 착과피해율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기준결과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결과지수 = 고사결과지수 + 미고사결과지수 - 고사결과지수 = 보상고사결과지수 + 미보상고사결과지수 ※ 8월1일 이후 사고가 중복 발생할 경우 금차 피해율에서 전차 피해율을 차감하고 산정함

5.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논작물 품목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벼	수량요소 (벼만 해당)	수확 전 14일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단, 병해충 단독사고일 경우 병해충 최대인정피해율 적용) ▷ 수확량 = 표준수확량 × 조사수확비율 × 피해면적 보정계수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표본	수확 가능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단, 병해충 단독사고일 경우 병해충 최대인정피해율 적용) ▷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면적 ·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작물 중량 합계 × (1 - Loss율)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 Loss율 : 7% / 기준함수율 : 메벼(15%), 찰벼(13%) · 표본구간 면적 = 4포기 길이 × 포기당 간격 × 표본구간 수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전수	수확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단, 병해충 단독사고일 경우 병해충 최대인정피해율 적용) ▷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작물 중량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 기준함수율 : 메벼(15%), 찰벼(13%)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 하나의 농지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수확량조사가 실시되었을 경우, 피해율 적용 우선순위는 전수, 표본, 수량요소 순임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밀, 보리	표본	수확 가능시기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유효중량 =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유효중량 = 표본구간 작물 중량 합계 × (1 - Loss율)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p> <p>· Loss율 : 7% / 기준함수율 : 밀(13%), 보리(13%)</p> <p>· 표본구간 면적 = 4포기 길이 × 포기당 간격 × 표본구간 수</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전수	수확 시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조사대상면적 수확량 = 작물 중량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p> <p>· 기준함수율 : 밀(13%), 보리(13%)</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6.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방식 밭작물 품목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양배추	수확량조사 (수확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확직전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표본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정상 양배추 중량 + (80% 피해 양배추 중량 × 0.2)</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수확량조사 (수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직후	
양파, 마늘	수확량조사 (수확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확직전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정상 작물 중량 + (80% 피해 작물 중량 × 0.2)) × (1 + 비대추정지수) × 환산계수</p> <p>· 환산계수는 마늘에 한하여 0.7(한지형), 0.72(난지형)를 적용</p> <p>· 누적비대추정지수 = 지역별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 일자별 비대추정지수</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수확량조사 (수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직후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차(茶)	수확량조사 (조사 가능일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가능일 직전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합계 × 수확면적을</p> <p>·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수확한 새싹무게 ÷ 수확한 새싹수) × 기수확 새싹수 × 기수확지수} + 수확한 새싹무게</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수확량조사 (조사 가능일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직후	
콩, 팥	수확량조사 (수확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확직전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표본조사)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수확량(전수조사) = {전수조사 수확량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별 종실중량 합계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p> <p>· 기준함수율 : 콩(14%), 팥(14%)</p> <p>-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수확량조사 (수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직후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감자	수확량조사 (수확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확직전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별 정상 감자 중량 + (최대 지름이 5cm미만이거나 50%형 피해 감자 중량 × 0.5) +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p>
	수확량조사 (수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직후	<p>▷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피경의 무게 × 손해정도비율 × 인정비율</p> <p>※ 위 산식은 각각의 표본구간별로 적용되며, 각 표본구간 면적을 감안하여 전체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p> <p>- 손해정도비율 = 표 2-4-9) 참조, 인정비율 = 표 2-4-10) 참조</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고구마	수확량조사 (수확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확직전	<p>○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p>
	수확량조사 (수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직후	<p>·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별 정상 고구마 중량 + (50% 피해 고구마 중량 × 0.5) + (80% 피해 고구마 중량 × 0.2)</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p>
옥수수	수확량조사 (수확 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확직전	<p>○ 손해액 = (피해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가입가격</p> <p>▷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표본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고사면적)</p> <p>- 단위면적당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피해수확량 =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p>
	수확량조사 (수확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직후	<p>- 표본구간 피해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하” 품 이하 옥수수 개수 + “중” 품 옥수수 개수 × 0.5) × 표준중량 × 재식시기지수 × 재식밀도지수</p> <p>▷ 미보상감수량 = 피해수확량 × 미보상비율</p>

7.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방식 밭작물 품목 보험금 산정 방법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고추, 브로콜리,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생산비보장 손해조사	사고발생 직후	<p>□ 보험금 산정(고추, 브로콜리)</p> <p>○ 보험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단, 고추는 병충해가 있는 경우 병충해등급별 인정비율 추가하여 피해율에 곱함)</p> <p>▷ 경과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기 이전에 사고시 = $\left\{ a + (1 - a) \times \frac{\text{생장일수}}{\text{표준생장일수}} \right\}$ · 수확기 중 사고시 = $\left(1 - \frac{\text{수확일수}}{\text{표준수확일수}} \right)$ <p>※ α(준비기생산비계수) = (고추 : 55.6%, 브로콜리 : 49.5%)</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용어의 정의></p> <p>생장일수 : 정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표준생장일수 : 정식일로부터 수확개시일까지의 일수로 작목별로 사전에 설정된 값 (고추 : 100일, 브로콜리 : 130일)</p> <p>수확일수 : 수확개시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 경과일수 표준수확일수 : 수확개시일부터 수확종료(예정)일까지 일수</p> </div> <p>▷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3% 또는 5%)</p> <p>□ 보험금 산정(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메밀, 시금치)</p> <p>○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p> <p>□ 품목별 피해율 산정</p> <p>○ 고추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심도) × (1 - 미보상비율)</p> <p>▷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실제경작면적(재배면적)</p> <p>▷ 손해정도비율 = $\{ (2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times 0.2) + (4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times 0.4) + (6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times 0.6) + (8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times 0.8) + (10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 \div (\text{정상 고추주수} + 2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 4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 6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 80\% \text{형 피해 고추주수} + 100\% \text{형 피해 고추주수})$</p>

			<p>○ 브로콜리 피해율 = 피해비율 × 작물피해율</p> <p>▷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실제경작면적(재배면적)</p> <p>▷ 작물피해율 = {(50%형 피해송이 개수 × 0.5) + (80%형 피해송이 개수 × 0.8) + (100%형 피해송이 개수)} ÷ (정상 송이 개수 + 50%형 피해송이 개수 + 80%형 피해송이 개수 + 100%형 피해송이 개수)</p> <p>○ 배추, 무, 단호박, 파, 당근, 시금치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심도) × <u>(1-미보상비율)</u></p> <p>▷ 피해비율 = 피해면적 ÷ 실제경작면적(재배면적)</p> <p>▷ 손해정도비율</p> <p>= {(20%형 피해작물 개수 × 0.2) + (40%형 피해작물 개수 × 0.4) + (60%형 피해작물 개수 × 0.6) + (80%형 피해작물 개수 × 0.8) + (100%형 피해작물 개수)} ÷ (정상 작물 개수 + 20%형 피해작물 개수 + 40%형 피해작물 개수 + 60%형 피해작물 개수 + 80%형 피해작물 개수 + 100%형 피해작물 개수)</p> <p>○ 메밀 피해율 = 피해면적 ÷ 실제경작면적(재배면적)</p> <p>▷ 피해면적</p> <p>= (도복으로 인한 피해면적 × 70%) + [도복 이외로 인한 피해면적 × {(20%형 피해 표본면적 × 0.2) + (40%형 피해 표본면적 × 0.4) + (60%형 피해 표본면적 × 0.6) + (80%형 피해 표본면적 × 0.8) + (100%형 피해 표본면적 × 1)} ÷ 표본면적 합계]</p>
--	--	--	--

8.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과수작물 품목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포도	수확량조사	착과수조사 (최초 수확 품종 수확전) / 과중조사 (품종별 수확시기) / 착과피해조사 (피해 확인 가능 시기) / 낙과피해조사 (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 시) / 고사나무조사 (수확완료 후)	<p>□ 착과수(수확개시 전 착과수조사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 <p>□ 착과수(착과피해조사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수령별 착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수확완료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의 착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 <p>□ 과중조사 (사고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농지마다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별 과중 = 품종별 표본과실 무게 ÷ 품종별 표본과실 수 <p>□ 낙과수 산정 (착과수조사 이후 발생한 낙과사고마다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시 : 품종·수령별 낙과수 조사 ▷ 품종·수령별 낙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 주수 × 품종·수령별 주당 낙과수 - 품종·수령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수령별 미보상주수 - 품종·수령별 수확완료주수 - 품종·수령별주당 낙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의 낙과수 ÷ 품종·수령별 표본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 시 : 품종별 낙과수 조사 ▷ 전체 낙과수에 대한 품종 구분이 가능할 때 : 품종별로 낙과수 조사 ▷ 전체 낙과수에 대한 품종 구분이 불가능할 때 (전체 낙과수 조사 후 품종별 안분) - 품종별 낙과수 = 전체 낙과수 × (품종별 표본과실 수 ÷ 품종별 표본과실 수의 합계)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포도	수확량조사	착과수조사 (최초 수확 품종 수확전) / 과중조사 (품종별 수확시기) / 착과피해조사 (피해 확인 가능 시기) / 낙과피해조사 (착과수조사 이후 낙과피해 시) / 고사나무조사 (수확완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별 주당 낙과수 = 품종별 낙과수 ÷ 품종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별 조사대상주수 = 품종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별 고사주수 - 품종별 미보상주수 - 품종별 수확완료주수) □ 피해구성조사 (낙과 및 착과피해 발생 시 실시) ○ 피해구성률 = {(50%형 피해과실 수 × 0.5) + (80%형 피해과실 수 × 0.8) + (100%형 피해과실 수 × 1)} ÷ 표본과실 수 ○ 금차 피해구성률 = 피해구성률 - max A ▷ 금차 피해구성률은 다수 사고인 경우 적용 ▷ max A : 금차 사고전 기초사된 착과피해구성률 중 최댓값을 말함 ※ 금차 피해구성률이 영(0)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0)으로 함 □ 착과량 산정 ○ 착과량 = 품종 · 수령별 착과량의 합 ▷ 품종 · 수령별 착과량 = (품종 · 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품종 · 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미보상주수) - 품종 · 수령별 주당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품종 · 수령별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품종 · 수령별 표준수확량 ÷ 표준수확량) - 품종 · 수령별 표준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주당 표준수확량 × 품종 · 수령별 실제결과주수 □ 감수량 산정 (사고마다 산정) ○ 금차 감수량 = 금차 착과 감수량 + 금차 낙과 감수량 +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 ▷ 금차 착과 감수량 = 금차 품종별 · 수령별 착과 감수량의 합 - 금차 품종 · 수령별 착과 감수량 = 금차 품종 · 수령별 착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품종별 착과피해구성률 - 금차 낙과 감수량 = 금차 품종 · 수령별 낙과수 × 품종별 과중 × 금차 낙과피해구성률 - 금차 고사주수 감수량 = 품종 · 수령별 금차 고사주수 × (품종 · 수령별 주당 착과수 + 품종 · 수령별 주당 낙과수) × 품종별 과중 × (1 - max A) ▷ 품종 · 수령별 금차 고사주수 = 품종 · 수령별 고사주수 - 품종 · 수령별 기초사 고사주수 □ 피해율 산정 ○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 미보상 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최댓값(미보상비율) <input type="checkbox"/> 수확량 산정 <input type="checkbox"/> 품종별 개당 과중이 모두 있는 경우 ▷ 수확량 = 착과량 - 사고당 감수량의 합

9. 농업수입감소보장방식 발작물 품목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콩	수확량조사	수확직전	<input type="checkbox"/>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 - 수확량(표본조사) $= (\text{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times \text{조사대상면적}) + (\text{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times (\text{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text{기수확면적}))$ - 수확량(전수조사) $= \{ \text{전수조사 수확량} \times (1 - \text{함수율}) \div (1 - \text{기준함수율}) \} + (\text{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times (\text{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text{기수확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 면적 · 표본구간 수확량 합계 = 표본구간별 종실중량 합계 × {(1 - 함수율) ÷ (1 - 기준함수율)} · 기준함수율 : 콩(14%) ·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고사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
양파	수확량조사	수확직전	<input type="checkbox"/>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 ▷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 ▷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정상 양과 중량 + 80%형 피해 양과 중량의 20%) × (1 + 누적비대추정지수)</p> <p>- 누적비대추정지수 = 지역별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 비대추정지수</p>
--	--	---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마늘	수확량조사	수확직전	<p>○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p> <p>▷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p> <p>▷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 환산계수)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정상 마늘 중량 + 80%형 피해 마늘 중량의 20%) × (1 + 누적비대추정지수)</p> <p>- 환산계수 : 0.7(한지형), 0.72(난지형)</p> <p>- 누적비대추정지수 = 지역별 수확적기까지 잔여일수 × 비대추정지수</p>
고구마	수확량조사	수확직전	<p>○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p> <p>▷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p> <p>▷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정상 고구마 중량 + 50% 피해 고구마 중량 × 0.5 + 80% 피해 고구마 중량 × 0.2)</p> <p>※ 위 산식은 표본구간 별로 적용됨</p>

품목별	조사종류별	조사시기	피해율 산정 방법
감자 (기을재배)	수확량조사	수확직전	<p>○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p> <p>▷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p> <p>▷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수확기가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p> <p>- 병충해감수량 = 병충해 입은 괴경의 무게 × 손해정도비율 × 인정비율</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정상 감자 중량 + (50%형 피해 감자 중량 × 0.5) + 병충해 입은 감자 중량)</p> <p>※ 위 산식은 각각의 표본구간별로 적용되며, 각 표본구간 면적을 감안하여 전체 병충해 감수량을 산정</p> <p> 손해정도비율 : 표 2-4-9) 참조, 인정비율 : 표 2-4-10) 참조</p>
양배추	수확량조사	수확직전	<p>○ 피해율 = (기준수입 - 실제수입) ÷ 기준수입</p> <p>▷ 기준수입 = 평년수확량 × 농지별 기준가격</p> <p>▷ 실제수입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최솟값(농지별 기준가격, 농지별 수확기가격)</p> <p>-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비율 (또는 보상하는 재해가 없이 감소된 수량)</p> <p>○ 수확량 =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조사대상면적) +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단위면적당 평년수확량 = 평년수확량 ÷ 실제경작면적</p> <p>▷ 조사대상면적 = 실경작면적 - 수확불능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 기수확면적</p> <p>▷ 표본구간 단위면적당 수확량 =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면적</p> <p>- 표본구간 수확량 = (표본구간 정상 양배추 중량 + 80% 피해 양배추 중량 × 0.2)</p> <p>※ 위 산식은 표본구간 별로 적용됨</p>

부

부

<부록 1> 농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 1.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 2.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용어**
- 3.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1.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용어

- (농어업재해)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
- (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
-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재해보험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료)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하는 금액
- (계약자부담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
- (보험금)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시범사업) 보험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

2.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용어

가. 농작물재해보험 계약관련 용어

- (가입(자)수) 보험에 가입한 농가, 과수원(농지)수 등
- (가입률) 가입대상면적 대비 가입면적을 백분율(100%)로 표시한 것
- (가입금액)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재해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
- (계약자)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의 목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의 과실 또는 나무,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등
- (농지)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가입의 기본 단위임.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지번)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도 있음
- (과수원) 한 덩어리의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지번)와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
- (나무) 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
- (농업용시설물)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사용되는 구조체 및 피복재로 구성된 시설

- (구조체) 기초, 기둥, 보, 중방, 서까래, 가로대 등 철골, 파이프와 이와 관련된 부속자재로 하우스의 구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
- (피복재) 비닐하우스의 내부온도 관리를 위하여 시공된 투광성이 있는 자재
- (부대시설) 시설작물 재배를 위하여 농업용시설물에 설치한 시설
- (동산시설) 저온저장고, 선별기, 소모품(멀칭비닐, 배지, 펠라이트, 상토 등), 이동 가능(휴대용) 농기계 등 농업용 시설물 내 지면 또는 구조체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시설
- (계약자부담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 (환급금) 무효, 효력상실, 해지 등에 의하여 환급하는 금액
- (자기부담금) 손해액 중 보험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 즉, 일정비율 이하의 손해는 보험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손해액이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상
 - 자기부담제도 : 소액손해의 보험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비 지출의 억제, 계약자 보험료 절약, 피보험자의 도덕적 위험 축소 및 방관적 위험의 배제 등의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 대부분 운용
- (자기부담비율)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

나.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관련 용어

- (보험사고) 보험계약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이라고도 함)

- (사고율) 사고수(농가 또는 농지수) ÷ 가입수(농가 또는 농지수) X 100
- (손해율)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
- (피해율) 보험금 계산을 위한 최종 피해수량의 백분율
- (식물체피해율) 경작불능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수 또는 면적)를 보험가입 식물체(수 또는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 (전수조사)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
- (표본조사)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서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
- (재조사)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조사
- (검증조사) 재해보험사업자 또는 재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임의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

다. 수확량 및 가격 관련 용어

- (평년수확량) 가입년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 수확량과 표준수확량을 가입 횟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 (표준수확량) 가입품목의 품종, 수령, 재배방식 등에 따라 정해진 수확량
- (평년착과량) 가입수확량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

- (평년착과수) 평년착과량을 가입과중으로 나누어 산출 한 것
- (가입수확량) 보험 가입한 수확량으로 평년수확량의 일정범위(50%~100%)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결정한 수확량으로 가입금액의 기준
- (가입과중)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1개당 평균 과실무게
- (기준착과수)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한 과수원별 기준 과실수
- (기준수확량) 기준착과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 양
- (적과후착과수)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 종료 시점의 착과수
- (적과후착과량) 적과후 착과수에 가입과중을 곱하여 산출한 양
- (감수과실수) 보장하는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 수
- (감수량) 감수과실수에 가입과중을 곱한 무게
- (평년결실수)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결실수와 표준결실수(품종에 따라 정해진 결과모지 당 표준적인 결실수)를 가입 헛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실수
 - ※ 결과지 : 과수에 꽃눈이 붙어 개화 결실하는 가지(열매가지라고도 함)
 - ※ 결과모지 : 결과지보다 1년이 더 묵은 가지
- (평년결과모지수) 가입연도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실제결과모지수와 표준결과모지수(하나의 주지에서 자라나는 표준적인 결과모지수)를 가입 헛수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해당 과수원에 기대되는 결과모지수
- (미보상감수량) 감수량 중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양
- (생산비) 작물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나 용역의 가치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영농광열비, 수리비, 기타 재료비, 소농구비, 대농구 상각비, 영농시설 상각비, 수선비, 기타 요금, 임차료, 위탁 영농비, 고용노동비, 자가노동비, 유동자본용역비, 고정자본용역비, 토지자본용역비 등을 포함

- (보장생산비) 생산비에서 수확기에 발생하는 생산비를 차감한 값
- (가입가격)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kg당 가격
- (표준가격) 농작물을 출하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표준적인 kg당 가격
- (기준가격)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농작물의 kg당 가격
- (수확기가격)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수확기 kg당 가격
 - ※ 올림픽 평균 : 연도별 평균가격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남은 값들의 산술평균
 - ※ 농가수취비율 : 도매시장 가격에서 유통비용 등을 차감한 농가수취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사전에 결정된 값

라. 조사 관련 용어

- (실제결과주수)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농지(과수원)에 식재된 모든 나무 수. 다만,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유목 및 제한 품종 등) 수는 제외
- (고사주수)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고사된 나무 수
- (미보상주수)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고사되거나 수확량(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나무 수
- (기수확주수) 실제결과나무수 중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나무 수
- (수확불능주수) 실제결과나무수 중 보상하는 손해로 전체주지·꽃(눈) 등이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수준이상 분리되었거나 침수되어,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나 나무가 죽지는 않아 향후에는 수확이 가능한 나무 수
- (조사대상주수) 실제결과나무수에서 고사나무수, 미보상나무수 및 수확완료나무수, 수확불능나무수를 뺀 나무 수로 과실에 대한 표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나무 수
- (실제경작면적)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면적을 의미하며, 수확불능(고사)면적,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기수확면적을 포함
- (수확불능(고사)면적) 실제경작면적 중 보상하는 손해로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

-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 실제경작면적 중 목적물 외에 타작물이 식재되어 있거나 보상하는 손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된 면적
- (기수확면적) 실제경작면적 중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수확이 완료된 면적

마. 재배 및 피해형태 구분 관련 용어

<재배>

- (꽃눈분화) 영양조건, 기간, 기온, 일조시간 따위의 필요조건이 다차서 꽃눈이 형성되는 현상
- (꽃눈분화기) 과수원에서 꽃눈분화가 50%정도 진행된 때
- (낙과)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
- (착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 (적과)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행위
- (열과) 과실이 숙기에 과다한 수분을 흡수하고 난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수분을 배출하면서 과실이 갈라지는 현상
- (나무) 보험계약에 의해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
- (발아) (꽃 또는 잎) 눈의 인편이 1~2mm정도 밀려나오는 현상
- (발아기) 과수원에서 전체 눈이 50% 정도 발아한 시기
- (신초발아) 신초(당년에 자라난 새가지)가 1~2mm정도 자라기 시작하는 현상을 말한다.
- (신초발아기) 과수원에서 전체 신초(당년에 자라난 새가지)가 50%정도 발아한 시점을 말한다.
- (수확기) 농지(과수원)가 위치한 지역의 기상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시기

- (유실) 나무가 과수원 내에서의 정위치를 벗어나 그 점유를 잃은 상태
- (매몰) 나무가 토사 및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의 30%이상이 묻힌 상태
- (도복) 나무가 45°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
- (절단)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꽃(눈) 등의 2/3이상이 분리된 상태
- (절단 (1/2)) 나무의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전체 주지·꽃(눈) 등의 1/2 이상이 분리된 상태
- (신초 절단) 단감, 뽕은감의 신초의 2/3이상이 분리된 상태
- (침수) 나무에 달린 과실(꽃)이 물에 잠긴 상태
- (소실) 화재로 인하여 나무의 2/3 이상이 사라지는 것
- (소실(1/2)) 화재로 인하여 나무의 1/2 이상이 사라지는 것
- (이양) 못자리 등에서 기른 모를 농지로 옮겨심는 일
- (직파(답수점파)) 물이 있는 논에 파종 하루 전 물을 빼고 종자를 일정 간격으로 점파하는 파종방법
- (종실비대기) 두류(콩, 팥)의 꼬투리 형성기
- (출수) 벼(조곡)의 이삭이 줄기 밖으로 자란 상태
- (출수기) 농지에서 전체 이삭이 70%정도 출수한 시점
- (정식) 온상, 묘상, 모밭 등에서 기른 식물체를 농업용 시설물 내에 옮겨심는 일
- (정식일) : 정식을 완료한 날
- (작기) 작물의 생육기간으로 정식일(파종일)로부터 수확종료일까지의 기간
- (출현) 농지에 파종한 씨(종자)로부터 자란 싹이 농지표면 위로 나오는 현상
- ((버섯)종균접종) 버섯작물의 종균을배지 혹은 원목을 접종하는 것

바. 기타 보험 용어

- (연단위 복리)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영업일) 재해보험사업자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
-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 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미보상
-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대위권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기타 협력비용) 재해보험사업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청소비용 : 사고 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3. 가축재해보험 관련 용어

가. 가축재해보험 계약관련

- (보험의 목적)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축 등
- (보험계약자) 재해보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
 - ※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는 약정서
- (보험사고) 보험계약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사건 또는 위험)
-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
 - ※ 재해보험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
- (보험금 분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
- (대위권)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
- (제조달가액)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제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 (가입률) 가입대상 두(頭)수 대비 가입두수를 백분율(100%)
- (손해율)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백분율(100%)
- (사업이익) 1두당 평균 가격에서 경영비를 뺀 잔액
- (경영비)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의 비육돈 평균 경영비
- (이익률) 손해발생 시에 다음의 산식에 의해 얻어진 비율 단, 이 기간 중에 이익률이 16.5% 미만일 경우 이익률은 16.5%

$$\text{이익률} = (\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 \text{경영비}) / \text{1두당 비육돈(100kg 기준)의 평균가격}$$

나. 가축재해 관련

- (풍재·수재·설해·지진)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조수, 우박, 지진, 분화 등으로 인한 피해
- (폭염)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내려지는 폭염특보(주의보 및 경보)
- (소(牛)도체결합)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합이 경락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손해 발생한 경우
- (축산휴지)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을 말함
- (축산휴지손해) 보험의 목적의 손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전부 또는 일부의 축산업 중단되어 발생한 사업이익과 보상위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사업이익의 차감금액을 말한다.
- (전기적장치위험)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장치 또는 설비 중 전기장치 또는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 가축질병 관련

-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 Coronavirus 속에 속하는 전염성 위장염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돼지의 전염성 소화기병 구토, 수양성 설사, 탈수가 특징으로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며 자돈일수록 폐사율이 높게 나타남, 주로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전파력이 높음
- (돼지 유행성설사병(PED)) Coronavirus에 의한 자돈의 급성 유행성설사병으로 포유자돈의 경우 거의 100%의 치사율을 나타남(로타바이러스감염증) 레오바이러스과의 로타바이러스 속의 돼지 로타바이러스가 병원체이며, 주로 2~6주령의 자돈에서 설사를 일으키며 3주령부터 폐사가 더욱 심하게 나타남
- (구제역) 구제역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우제류 동물(소·돼지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의 악성가축전염병(1종법정가축전염병)으로 발굽 및 유두 등에 물집이 생기고, 체온상승과 식욕저하가 수반되는 것이 특징
- (AI(조류인플루엔자, Avian Influenza)) AI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병원의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AI의 경우 세계 동물보건기구(OIE)의 관리대상질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발생 시 OIE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돼지열병)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나, 발생국은 돼지 및 돼지고기의 수출이 제한

※ '01년 청정화 이후, '02년 재발되어 예방접종 실시

- (난계대 전염병) 조류의 특유 병원체가 종란에 감염하여 부화 후 초생추에서 병을 발생시키는 질병(추백리 등)

라. 기타 축산 관련

- (가축계열화) 가축의 생산이나 사육·사료공급·가공·유통의 기능을 연계한 일체의 통합 경영활동을 의미

- (가축계열화 사업) 농민과 계약(위탁)에 의하여 가축·사료·동물용 의약품·기자재·보수 또는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공급(제공)하고, 당해 농민이 생산한 가축을 도축·가공 또는 유통하는 사업방식
- (돼지 MSY(Marketing per Sow per Year)) 어미돼지 1두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 출하체중(110kg)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출하한 마리 수
- (산란수) 산란계 한 계군에서 하루 동안에 생산된 알의 수를 의미하며, 산란계 한 마리가 산란을 시작하여 도태 시까지 낳는 알의 총수는 산란지수로 표현
- (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축산업자 및 학계·소비자·관계 공무원 및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품목별로 설치되어 해당 품목의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사업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 (축산자조금(9개 품목)) 한우, 양돈, 낙농, 산란계, 육계, 오리, 양륙, 양봉, 육우
-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특허청에 브랜드를 등록하고 회원 농가들과 종축·사료·사양관리 등 생산에 대한 규약을 체결하여 균일한 품질의 고급육을 생산·출하하는 축협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쇠고기 이력제도)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
- (수의사 처방제)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축산물 내 약품잔류 및 항생제 내성문제 등의 예방을 위해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토록 하는 제도

〈부록 2〉 주요 법령

1. 농어업재해보험법
2.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3.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요령
4.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5.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1.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1.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이하 “농업재해”라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이하 “재해보험사업”이라 한다)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보험사업을 말한다.

제3조(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1.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6.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11.>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이나 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⑥ 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12. 8.>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 [제목개정 2013. 3. 23.]

제2장 재해보험사업

제4조(재해보험의 종류 등)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장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 7. 25., 2015. 8. 11.>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②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하고,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사업자)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5.>

1. 삭제 <2011. 3. 31.>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 2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③ 제2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는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28.>

[제목개정 2017. 11. 28.]

제10조(보험모집) ①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31., 2011. 7. 25., 2016. 5. 29.>

1.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수협중앙회장 또는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 2의2. 「산림조합법」 제48조(제12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산림조합중앙회장이나 그 회원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3.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해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5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에 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31., 2011. 7. 25., 2012. 12. 18., 2020. 3. 24.>

제10조의2(사고예방의무 등)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 2. 11.>

[본조신설 2016. 12. 2.]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하거나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이하 “손해평가사”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2020. 2. 11.>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 및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6. 3., 2016. 12. 2.>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내에서 교차손해평가(손해평가인 상호간에 담당지역을 교차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손해평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2. 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

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 2020. 2. 11.>

[제목개정 2016. 12. 2.]

제11조의2(손해평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4. 6. 3.]

제11조의3(손해평가사의 업무)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6. 3.]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① 손해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8. 11.>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개정 2015. 8. 11.>

1. 제3항에 따라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
2. 제11조의5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수수료, 시험과목, 시험과목의 면제, 시험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⑥ 손해평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2. 11.>

⑦ 누구든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4. 6. 3.]

제11조의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1.>

1.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 2.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4. 6. 3.]

제11조의6(손해평가사의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2. 11.>
[본조신설 2014. 6. 3.]

제11조의7(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1.]

제12조(수급권의 보호) ①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11.>

② 제11조의7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2. 11.>

제13조(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4조(업무 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구분)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2015. 8. 11.>

제17조(분쟁조정)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3. 24.>

제18조(「보험업법」 등의 적용) ①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8조제1항,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7조, 제128조, 제131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4조제1항, 제136조, 제162조, 제176조 및 제181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5. 8. 11., 2020. 3. 24.>

② 이 법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적용한다. 이 경

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신설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

-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재보험사업 및 농어업재해보험기금

- 제20조(재보험사업)** ①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하 “재보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하 “재보험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6. 3., 2017. 3. 14.>

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3. 23.>

- 제22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12. 2.>
1.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받은 재보험료
 2.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5. 제2항에 따른 차입금
 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제2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의 지급
 2. 제22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보험사업을 유지·개선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제4장 보험사업의 관리

제25조의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2. 11., 2020. 5. 26.>

1.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2.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3.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5.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4., 2020. 5. 26.>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약정 체결 관련 업무
3.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제도 운용 관련 업무
4.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4.>

[본조신설 2014. 6. 3.]

[제목개정 2020. 5. 26.]

제26조(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대상의 현황, 보험확대 예비품목(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한 보험목적물 도입예정 품목을 말한다)의 현황, 피해 규모, 피해 원인 등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정부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제28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보험가입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촉진계획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제29조(보고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재해보험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29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2.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본조신설 2014. 6. 3.]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받은 보험가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2. 11.>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2.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자

3.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4.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8. 11., 2020. 3. 24.>

1.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1.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부칙 <제17595호, 2020. 12. 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 22.]

제4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 1. 22.>

1. 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2. 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
 - 가.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 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 1. 22.>

1. 농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농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2. 어업인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 중 어업인안전보험에 관한 사항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 22.>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 22.>

제7조 삭제 <2016. 1. 22.>

제8조(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5. 29.>

제9조(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 12. 28., 2017. 5. 29.>

1. 농작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자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제10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3. 3. 23.>

제11조(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제12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 5. 29.>

1.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2. 농어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5. 29.>

제12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하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8. 12.>

1. 시험의 일시 및 장소
2.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 응시원서의 제출방법 및 응시수수료
4. 합격자 발표의 일시 및 방법
5. 선발예정인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3(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방법)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12조의5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은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4(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 및 제2차 시험 과목은 별표 2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5(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3.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한다.
다.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제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제3항에 따른 면제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19. 12. 10.>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6(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全)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셋째자리 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7(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8(손해평가 등의 교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

제12조의9(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2조의10(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2조의11(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절차 등) ①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하는 보험금 지급청구서에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보험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업무 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보험금을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보험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12.]

제12조의12(보험금의 압류 금지)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험금 액수를 말한다.

1.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 전액
2. 제1호 외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입금된 보험금: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

[본조신설 2020. 8. 12.]

제13조(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8., 2014. 4. 22., 2016. 11. 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 삭제 <2017. 5. 29.>

제15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

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신설 2011. 12. 28.>

제16조(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삭제 <2017. 5. 29.>

제17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5. 29.>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기금수탁관리자” 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2013. 3. 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0조의2 삭제 <2017. 5. 29.>

제21조(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8., 2013. 3. 23., 2016. 11. 8., 2017. 5. 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7.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8.>

제22조(시범사업 실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22조의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2.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3. 농어업재해보험 교육 및 홍보계획
 4. 보험상품의 개선·개발계획
 5. 그 밖에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험가입촉진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29.]

[중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7. 5. 29.>]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 2017. 5. 29., 2020. 8. 12.>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5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6에 따른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8. 6.]

[제22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7. 5. 29.>]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② 삭제 <2020. 3. 3.>

[전문개정 2016. 12. 30.]

[제22조의3에서 이동 <2017. 5. 29.>]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31553호, 2021. 3. 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중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을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를 각각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1.22.>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8조 관련)

재해보험의 종류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1. 농작물·임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
2. 가축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
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비고: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대상 재해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제12조제1항 관련)

재해 보험의 종류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농작물 재해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지도, 농산물 품질관리 또는 농업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 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전공하고 농업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10.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임산물 재해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 대상 임산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임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에서 임산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지도 또는 임업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임산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임산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산림경영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임산물재배 관련학을 전공하고 임업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재해보험 대상 임산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가축 재해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5년 이상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에서 가축사육 분야에 관한 연구·지도 또는 가

	<p>축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3.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가축사육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가축사육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가축사육 관련학을 전공하고 축산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p> <p>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p> <p>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9.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p> <p>1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p>
<p>양식 수산물 재해보험</p>	<p>1.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5년 이상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p> <p>2. 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물양식 분야 또는 수산생명의학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p> <p>3. 교원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수산물양식 분야 또는 수산생명의학 분야의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p>

- 식 관련학 또는 수산생명의학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및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또는 보험·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관련학 또는 수산생명의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수산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소지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10.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1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4.12.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과목 (제12조의4 관련)

구분	과목
1. 제1차 시험	가. 「상법」 보험편 나.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령을 말한다) 다. 농학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2. 제2차 시험	가.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나.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3] <신설 2020. 8. 12.>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법 제11조의5 제1항제1호	자격 취소	자격 취소
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5 제1항제2호	시정명령	
다. 법 제11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1조의5 제1항제3호	자격 취소	
라. 법 제11조의4제7항을 위반하여 손해평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 제11조의5 제1항제4호	자격 취소	
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5 제1항제5호	자격 취소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4] <신설 2020. 8. 12.>

손해평가사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 처분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6 제1항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1년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법 제11조의6 제1항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1년
다.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6 제1항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라.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해 손해평가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6 제1항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마.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을 준수하지 않고 손해평가를 한 경우	법 제11조의6 제1항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바. 그 밖에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의6 제1항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3. 2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해당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
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1,000만원
나.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1호	500만원
다.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2호	300만원
라.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1호	500만원
마.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2호	300만원
바. 재해보험사업자의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18조제1항에서 적용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3호	200만원
사.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32조제3항제3호	300만원

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81호, 2019.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평가"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조 및 제11조의3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손해평가사"라 함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4.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정한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재해보험"이란 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한다.

제3조(손해평가인의 업무) ① 손해평가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손해평가인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게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손해평가인 위촉)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군·자치구별 보험가입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험사업자 및 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손해평가인 실무교육)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는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손해평가인 정기교육)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2.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
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
4.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때
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와 위촉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⑥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손해평가반 구성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의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손해평가인
2.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평가사
3.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2.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
3.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
4.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

제8조의2(교차손해평가)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교차손해평가가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규모, 가입분포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 대상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시·군·구 내에서 손해평가 경력, 타지역 조사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차손해평가를 담당할 지역손해평가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 교차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지역손해평가인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거대재해 발생,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피해사실 확인) ① 보험가입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피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손해평가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서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고 손해평가시의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반은 현지조사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평가결과 검증) ①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증조사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평가 단위) ①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 농지별
2.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3.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②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농작물의 보험가액 및 보험금 산정) ① 농작물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삼은 가입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되,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연근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4. 생산비보장의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나무손해보장의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 수(피해 나무 수 포함)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농작물에 대한 보험금 산정은 [별표1]과 같다.

③ 농작물의 손해수량에 대한 품목별·재해별·시기별 조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해발생 전부터 보험품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생육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손해평가반은 조사결과 1부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가축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가축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폐사 등 피해를 입은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가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시장가격 등을 감안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5조(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①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제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② 농업시설물에 대한 손해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당시 보험가입자와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가액 및 손해액 산정 방식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제16조(손해평가업무방법서) 재해보험사업자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81호, 2019. 12.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구분	보장 범위	산정내용	비고
특정위험방식	인삼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1 - \frac{\text{수확량}}{\text{연근별기준수확량}}) \times \frac{\text{피해면적}}{\text{재배면적}}$	인삼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착과감소	(착과감소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 80%	
	과실손해	(적과종료 이후 누적감수량 - 미보상감수량 - 자기부담감수량) × 가입가격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종합위험방식	해가림시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인삼
	비가림시설	MIN(손해액 -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금액)	
	수확감소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벼·감자·복숭아 제외)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 피해율(벼) = (보장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보장수확량 ※ 피해율(감자·복숭아)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병충해감수량} ÷ 평년수확량	옥수수 외
	수확감소	MIN(보험가입금액,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피해수확량 × 가입가격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비율	옥수수
	수확량감소 추가보장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10%) 단,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나무손해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주수(고사된 나무) ÷ 실제결과주수	
	이양·직파불능	보험가입금액 × 10%	벼
	재이양·재직파	보험가입금액 × 25% × 면적피해율 단, 면적피해율이 10%를 초과하고 재이양(재직파) 한 경우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벼

	재파종	보험가입금액 × 35% × 표준출현피해율 단, 10a당 출현주수가 30,000주보다 작고, 10a당 30,000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한함 ※ 표준출현피해율(10a 기준) = (30,000 - 출현주수) ÷ 30,000	마늘
	재정식	보험가입금액 × 20% × 면적피해율 단,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면적피해율 = 피해면적 ÷ 보험가입면적	양배추
	경작불능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비율상이)	
	수확불능	보험가입금액 × 일정비율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비율상이)	벼
	생산비보장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보상액(기 발생 생산비보장보험금 합계액)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계약 시 선택한 비율	브로콜리
		- 병충해가 없는 경우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병충해가 있는 경우 (잔존보험가입금액 × 경과비율 × 피해율 ×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 자기부담금 ※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1 - 미보상비율) ※ 자기부담금 = 잔존보험가입금액 × 계약 시 선택한 비율	고추 (시설 고추 제외)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배추, 파, 무, 단호박, 당근 (시설 무 제외)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피해면적(m ²) ÷ 재배면적(m ²) - 피해면적 : (도복으로 인한 피해면적×70%) + (도복 이외 피해면적×손해정도비율)	메밀
		보험가입면적 × 피해작물 단위면적당 보장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 피해율 = 재배비율 × 피해비율 × 손해정도비율 ※ 단, 장미, 부추, 버섯은 별도로 구분하여 산출	시설작물
	농업시설물·버섯재배사·부대시설	1사고마다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비율(50% ~ 100%, 10%단위) 만큼을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보상	

		<p>※ $\text{Min}(\text{손해액} - \text{자기부담금},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보상비율}$ 다만,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로 보상</p>	
	과실손해보장	<p>보험가입금액 \times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7월 31일 이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text{평년수확량} - \text{수확량} - \text{미보상감수량}) \div \text{평년수확량}$ ※ 피해율(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1 - \text{수확전사고 피해율}) \times \text{경과비율} \times \text{결과지 피해율}$</p>	무화과
	과실손해보장	<p>보험가입금액 \times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text{고사결과모지수} \div \text{평년결과모지수}$</p>	복분자
<p>보험가입금액 \times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text{평년결실수} - \text{조사결실수} - \text{미보상감수결실수}) \div \text{평년결실수}$</p>		오디	
<p>과실손해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 \times 피해율 ※ 자기부담금 = 보험가입금액 \times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text{등급내 피해과실수} + \text{등급외 피해과실수} \times 70\%) \div \text{기준과실수}$</p>		감귤	
<p>동상해손해보험금 = 손해액 - 자기부담금 ※ 손해액 = $\{\text{보험가입금액}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기사고 피해율})\} \times \text{수확기 잔존비율} \times \text{동상해피해율}$ ※ 자기부담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min}(\text{주계약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0)$ ※ 동상해 피해율 = $\text{수확기 동상해 피해 과실수} \div \text{기준과실수}$</p>			
	과실손해 추가보장	<p>보험가입금액 \times (피해율 \times 10%) 단,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피해율 = $(\text{등급 내 피해 과실수} + \text{등급 외 피해 과실수} \times 70\%) \div \text{기준과실수}$</p>	감귤
	농업수입감소	<p>보험가입금액 \times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 피해율 = $(\text{기준수입} - \text{실제수입}) \div \text{기준수입}$</p>	

* (참고) 위 손해평가 요령은 2019년 12월 18일 개정 고시되어 있으나, 이후 지속적인 보험상품 개선으로 일부 품목의 경우 보험금 산정 방식이 위와 상이할 수 있음. 현행(2021년) 상품의 보험금 산정 방식은 <별표 7>과 같음

[별표 2]

농작물의 품목별·재해별·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1. 특정위험방식 상품(인삼)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보험 기간	태풍(강풍)·폭설·집중호우·침수·화재·우박·냉해·폭염	수확량 조사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감소된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뽕은감)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보험계약 체결일 ~ 적과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우박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우박으로 인한 유과(어린과실) 및 꽃(눈)등의 타박비율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건에 한함
6월1일 ~ 적과전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낙엽피해 정도 조사 - 단감, 뽕은감에 대해서만 실시 · 조사방법: 표본조사	
적과 후	-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적과 종료 후	보험가입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해당 농지의 적과종료 후 총 착과수를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적과후 ~ 수확기 종료	보상하는 재해	낙과피해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피해과실수 조사 - 낙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우박, 일소, 가을동상해	착과피해 조사	수확 직전	낙엽률 조사(우박 및 일소 제외) - 낙엽피해정도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단감, 뽕은감
수확완료 후 ~ 보험종기	보상하는 재해 전부	고사나무 조사	수확완료 후 보험종기 전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 조사방법: 전수조사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표본조사는 손해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이론을 기초로 산정한 조사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

3.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

① 해가림시설·비가림시설 및 원예시설

생육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재해 전부	해가림시설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인삼
		비가림시설 조사			
		시설 조사			원예시설, 버섯재배사

② 수확감소보장·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

생육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수확 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이앙(직파) 불능피해 조사	이앙 한계일 (7.31)이후	이앙(직파)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만 해당
		재이앙(재직파)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앙(재직파)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만 해당
		재파종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마늘만 해당
		재정식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양배추만 해당
		경작불능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의 식물체 피해율 조사	벼·밀, 밭작물(채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茶)제외),복분자만 해당
		과실손해조사	수정완료 후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및 수정 불량(송이)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복분자만 해당
			결실완료 후	결실수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오디만 해당
		수확전 사고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표본주의 과실 구분 · 조사방법: 표본조사	감귤만 해당
수확 직전	-	착과수조사	수확직전	해당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 수를 조사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포도, 복숭아, 자두만 해당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 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과실손해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과실피해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무화과, 감귤만 해당
수확 시작 후 ~ 수확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수확량조사	조사 가능일	사고발생농지의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차(茶)만 해당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동상해 과실손해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표본주의 착과피해 조사 - 12월1일~익년 2월말일 사고 건에 한함 · 조사방법: 표본조사	감귤만 해당
		수확불능확인 조사	조사 가능일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을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 조사방법 :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벼만 해당
	태풍(강풍), 우박	과실손해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 - 6월1일~6월20일 사고 건에 한함	복분자만 해당

				· 조사방법: 표본조사	
				표본주의 고사 및 정상 결과지수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무화과만 해당
수확완료 후 ~ 보험종기	보상하는 재해 전부	고사나무 조사	수확완료 후 보험종기 전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 조사방법: 전수조사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생산비 보장

생육 시기	재해	조사내용	조사시기	조사방법	비고
정식 (파종) ~ 수확 종료	보상하는 재해 전부	생산비 피해조사	사고발생시 마다	① 재배일정 확인 ② 경과비율 산출 ③ 피해율 산정 ④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노지 고추만 해당)	
수확전	보상하는 재해 전부	피해사실 확인 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메밀, 단호박, 노지 배추, 노지 당근, 노지 파, 노지 무만 해당
		경작불능조사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의 식물체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수확 직전		생산비 피해조사	수확직전	사고발생 농지의 피해비율 및 손해 정도 비율 확인을 통한 피해율 조사 · 조사방법: 표본조사	

[별표 3]

업무정지·위촉해지 등 제재조치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조치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제재조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제재조치를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위촉해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로, 경고인 경우에는 주의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조문	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크게 악화 시킨 경우 2)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4)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5)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6) 검증조사 결과 부당·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7) 기타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킨 경우	제6조제2항제1호	위촉해지 경고 주의	 업무정지 3개월 경고	 위촉해지 업무정지 3개월
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제6조제2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위촉해지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제6조제2항제3호	위촉해지		

4.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2. 1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6호, 2020. 2.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 의한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 제20조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말한다.
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보험계약사항 및 보험료 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3. "운영비 사용계획서"란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는 운영비사용현황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4. "통계작성방법서"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각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농업재해보험사업의 통계 추적, 보험료 및 재보험료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출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또는 재보험사업약정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영,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농특회계유자업무지침」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삭제

제5조(위탁업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재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사업 수행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을 전담하는 부서(이하"보험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보험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약정의 체결) ①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와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재해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은 매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 체결된 약정서 상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고, 약정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재보험 사업관리) ① 수탁기관은 매년 영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약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재보험조건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재보험사업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보험사업약정서 및 「농업재해재보험기금운용규정」에 따른다.

제8조(재해보험 사업의 관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9조 및 영 제15조에 따른 보험료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약정서 등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업무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에 대한 세부 검토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관련법령과 농업재해보험약정서에 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보고한 자료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 및 정산 금액 등을 확정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 연구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농업현장의 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해보험상품 연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연구를 실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재해보험상품 연구 및 보급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① 수탁기관은 농업재해보험의 관리 및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분석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통계 생산 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방법서 작성) ① 수탁기관은 재해 관련 통계를 생산·축적하고,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보험사업자와 제6조에 따른 재보험사업약정 및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시 통계작성방법서를 제시하여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방법서에는 재해보험상품의 각 계약자별·보험증권별 계약정보, 사고정보, 보험금 지급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① 수탁기관은 손해평가의 신속성, 편리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재해보험사업자 및 손해평가사 등에게 보급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필요한 경우 손해평가기법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를 재해보험사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수탁기관의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시험 : 2만원
2. 제2차 시험 : 3만3천원

③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응시원서 제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면제신청서류) 영 제12조의5 제3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평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2조의7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 발급시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으로 쓸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손해평가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5조(손해평가사 교육 및 자격시험 등) ① 수탁기관은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2조의8에 따라 손해평가사의 손해평가 능력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
 2.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3. 제6조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사업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수탁기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재해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교육
- ③ 손해평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1. 실무교육 : 자격증 취득 후 1회 이상
 2. 보수교육 : 자격증 취득년도 후 3년마다 1회 이상
- ④ 교육기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⑤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다음 해 1월 15일 까지 수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수탁기관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료 등을 포함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타 세부사항) 수탁기관은 이 고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법, 영 및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키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16호, 2020. 2.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5.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

[시행 2020. 3. 19.]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21호, 2020. 3. 19., 일부개정.]

제1조 (보험목적물) 농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재해보험의 종류	보험목적물
농작물 재해보험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목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오디·차·느타리버섯·양배추·밀·유자·무화과·메밀·인삼·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배추·무·파·호박·당근·팔·살구·시금치·보리·시설패(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멜론·파프리카·부추·시금치·상추·배추·가지·파·무·백합·카네이션·미나리·쑥갓)
	위 농작물의 재배시설 (부대시설 포함)
임산물 재해보험	얇은감·밤·대추·복분자·표고버섯·오미자·호두
	위 임산물의 재배시설 (부대시설 포함)
가축 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오소리·관상조(觀賞鳥)
	위 가축의 축사 (부대시설 포함)

비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의 보험목적물의 범위에서 다양한 보험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1호, 2020. 3.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3〉 참고문헌

- 강봉순. 2006. 『농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 구재서·권원달·김영수·이동호. 2004. 『개정 농업경영학』. 선진문화사.
- 권 오. 2011. 『보험학원론』. 형지사.
- 김미복·김용렬·김태후·이형용·박진우. 2020.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제도 발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배성·김태균·김태영·백승우·신용광·안동환·유찬주·정원호. 2019. 『스마트시대 농업경영학』. 박영사.
- 김용택·김석현·김태균. 2003. 『농업경영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진만(대표 역자). 1988. Oxford Advanced Learner's Dictionary of Current English. 범문사.
- 김창기. 2020. 『보험학원론』. 문우사.
- 문 원(대표 역자). 2011. 『원예학』.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석승훈. 2020. 『위험한 위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신창구. 2019. 『농어업재해보험법』. 지식과 감성
- 심영근·이상무. 2003. 『새로 쓴 농업경영학의 이해』. 삼경문화사.
- 이경룡. 2013. 『보험학원론』. 영지문화사.
- 최경환. 2003.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정원호·김우태. 2013. 『농작물재해보험 조사체계 및 선진사례 분석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정호. 2014. 『리스크와 보험』. 청람.
- 한낙현·김흥기. 2008. 『위험관리와 보험』. 우용출판사.
- 허 연. 2000. 『생활과 보험』. 문영사.
- 황희대. 2010. 『핵심 보험이론 및 실무』. 보험연수원.

Kay, R. D., W.M.Edwards, and P.A.Duffy. 2016. Farm Management(8th edition). McGraw-Hill.

P.K.Ray. 1981. Agricultural Insurance : Principles, Organization and Applic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Pergamon Press Ltd., London.

농림축산식품부. 2021.1. 『2021농업재해대책업무편람』 .

농림축산식품부. 2021.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2021.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1. 『농업정책보험 정책방향 및 업무편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0. 『농업재해보험연감』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0. 『농업재해보험 기본자료집』 .

농촌진흥청. 2021. 『농사로 : 작물개황, 재배환경 등』 .

농협, 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작물재해보험 10년사』 .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

농협. 202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각 품목(축종)별 약관』 .

농협. 2021.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각 품목(축종)별 상품요약서』 .

보험경영연구회. 2013. 『리스크와 보험』 . 문영사.

보험경영연구회. 2021. 『리스크와 보험(제3판)』 . 문영사.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2015. 『농업재해보험손해평가사』 .